대외유출 주의



본 평가보고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영향평가 자료입니다.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항목(평가표)

2025. 10.

KISM (주)한국전산감리원

< 목 차 >

[1]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1

[2]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57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 92

[4]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 168

[1]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영향평가 영역	1.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평가분야	1.1 개인정보보호 조직
평가 목적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였는지를 점검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이 수립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

세부 분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1.1.1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법령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인사발령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령 ②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자로 지정				

평가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Ⅳ.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보안처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Ⅲ. 7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각 부서장을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정보보안처장으로 지정하고 인사발령 등으로 공식화 하였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표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법률 기준에 따른 CPO의 공식 임명 및 공개 현황]

구분	점검결과	적절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CPO 지정	• 법률 기준에 적합한 3급 이상 공무원인 정보보안처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음	○
공식 발령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Ⅲ.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서 정보보안처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분야별 및 담당자 포함) 지정' 공문으로 승인 받음	○
CPO 지정 공개여부	•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에 공개하고 있음.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평가근거]

-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Ⅳ.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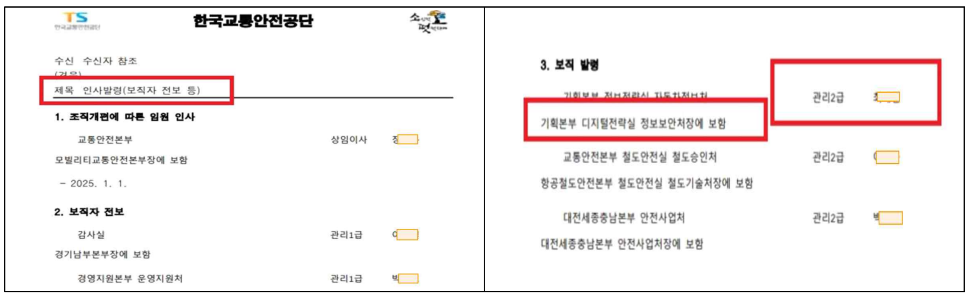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개인정보보호 총괄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임무를 수행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부서·직급·성명 : 정보보안처장 관리2급 최대진
- 이 메 일 : djchoi@kotsa.or.kr
- 전화번호 및 Fax : 054-459-7480, 0502-384-5467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인사발령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사발령(보직자 전보 등)

1. 조직개편에 따른 임원 인사

교통안전본부 상임이사
모빌리티교통안전본부장에 보함

- 2025. 1. 1.

2. 보직자 전보

감사실 관리1급
경기남부본부장에 보함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처 관리1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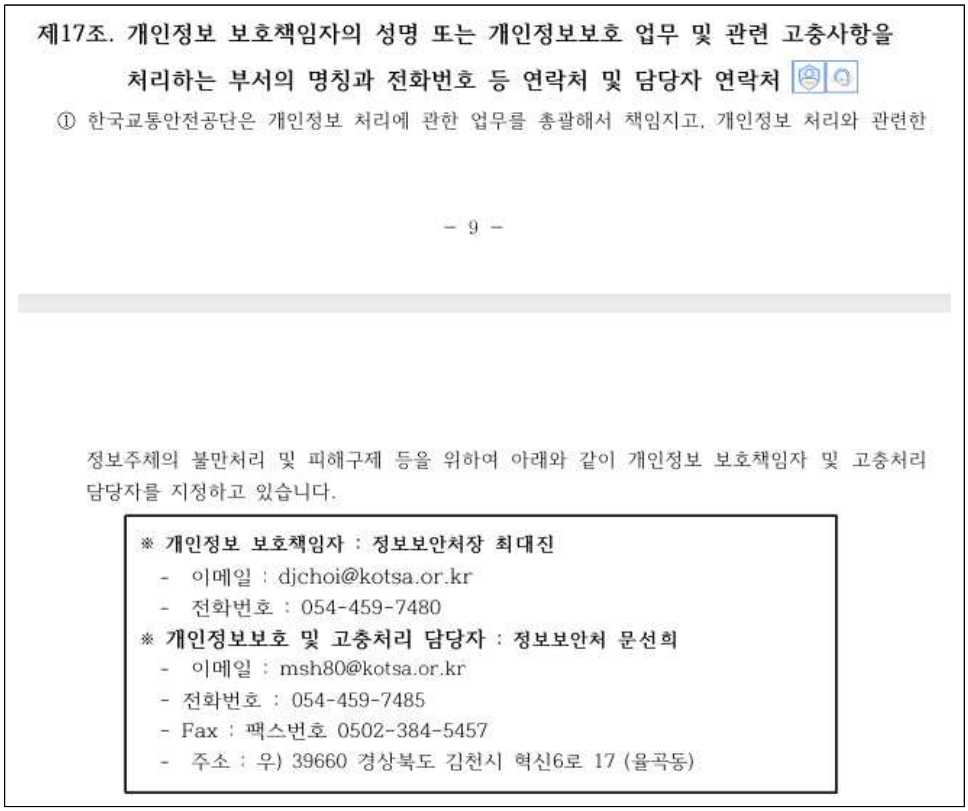
3. 보직 발령

기획본부 디지털전략실 정보보안처장에 보함 관리2급

교통안전본부 철도안전실 철도승인처 관리2급
항공철도안전본부 철도안전실 철도기술처장에 보함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사업처 관리2급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사업처장에 보함

-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표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공개

<table>
<tr><td></td><td>
제1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및 담당자 연락처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 9 -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안처장 최대진
- 이메일 : djchoi@kotsa.or.kr
- 전화번호 : 054-459-7480

※ 개인정보보호 및 고충처리 담당자 : 정보보안처 문선희
- 이메일 : msh80@kotsa.or.kr
- 전화번호 : 054-459-7485
- Fax : 팩스번호 0502-384-5457
- 주소 :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td></tr>
<tr><td>항목 설명</td><td>●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의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한다.

[용어설명]
❖ 개인정보 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 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
❖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td></tr>
<tr><td>평가 예시</td><td>● 이행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및 업무 등이 반영된 지침 또는 직무기술서, 임명장 등 관련 문서 및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활동 내역(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해당 사항을 전체 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증거(지침, 임명장, 인사발령 등)가 없거나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td></tr>
<tr><td>관련 법률 및 문서</td><td>●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 표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제2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td></tr>
</table>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역할수행</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1.1.2</td><td>●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법령 등에서 정하는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책화하고, 이에 근거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법률 등에서 정하는 책임 및 역할이 공식적으로 부여
② 관련 업무를 실제적으로 수행(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관행의 조사・개선 등)</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Ⅳ.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추진 계획,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검토 및 시행 관리,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의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2025년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정책 개정,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절차서 개정, 202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개인정보 재해·재난 위기 대응절차서 개정, 2025년 용역업체 보안점검 등의 관련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음.

[CPO의 책임 및 역할 부여와 관련 업무 수행 현황]
<table>
<tr><th>CPO 책임 및 역할</th><th>관련 규정 (내부 관리계획)</th><th>관련 업무 수행 내역</th><th>적절성</th></tr>
<tr><td rowspan="3">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td><td rowspan="3">Ⅱ.1 ~3항</td><td>•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 보고</td><td>○</td></tr>
<tr><td>• 2025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td><td>○</td></tr>
<tr><td>• 2025년 개인정보 보호업무 추진계획 보고</td><td>○</td></tr>
<tr><td>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 조사 및 개선</td><td>Ⅱ.1 ~3항</td><td>•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 2025년 용역업체 보안점검</td><td>○</td></tr>
<tr><td>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td><td>Ⅱ.1 ~3항</td><td>•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td><td>○</td></tr>
</table>
</td></tr>
</table>

		에 안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Ⅶ.2항	•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절차서 개정 • 2025년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Ⅴ. 1~2항	• 202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Ⅳ. 1~2항	• 개인정보파일 관리 계획 보고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Ⅳ. 1~2항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Ⅵ. 4항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
개인정보의 파기	Ⅶ. 7항	• 개인정보파일 관리 계획 보고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Ⅳ.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9대 필수 업무>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이행 관리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및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이사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결과에 관한 업무 등을 연2회 이상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25년 하반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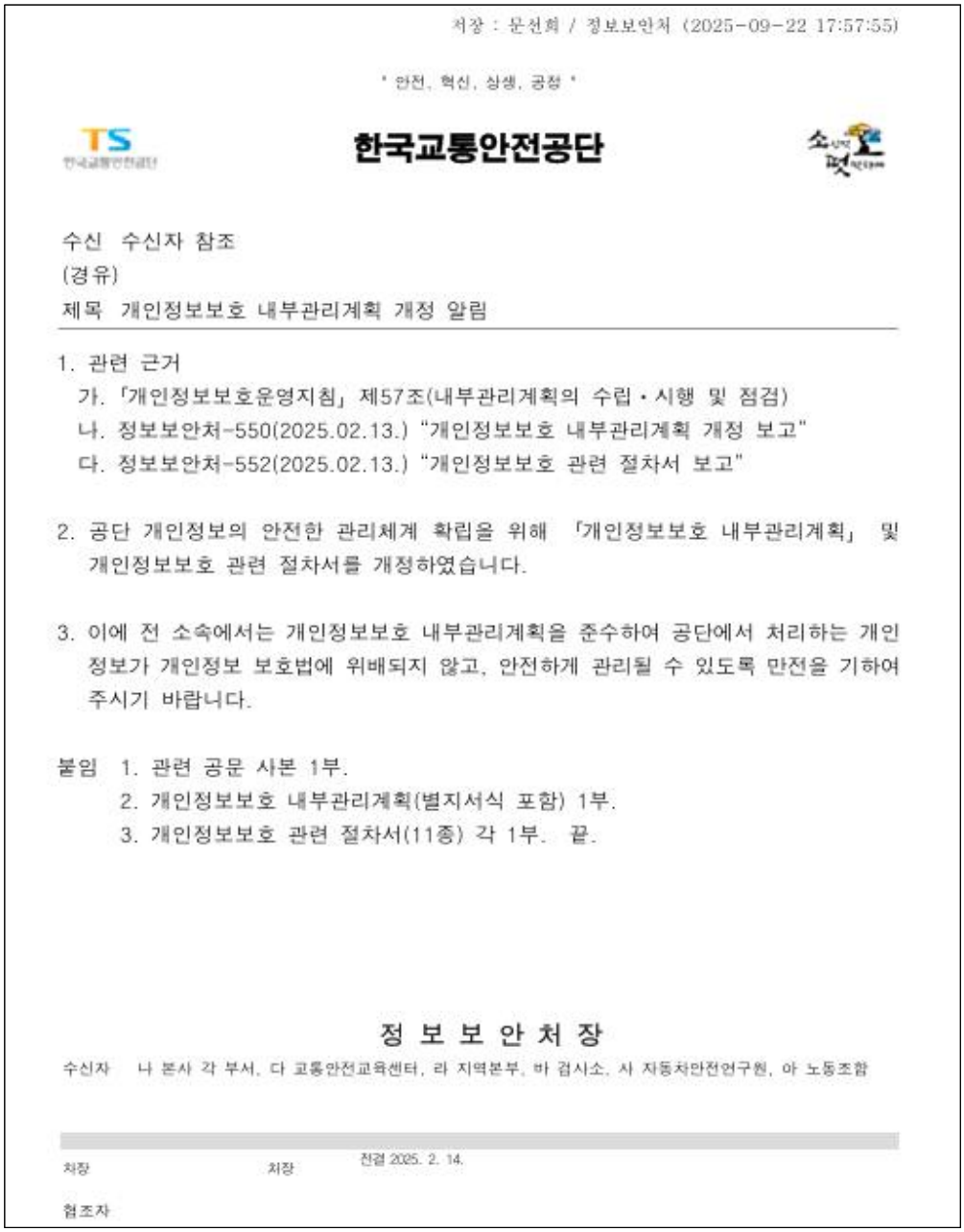
2025년 하반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등 지정 현황 보고

'25.07.28 기준

□ 공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27종)

순번	담당 부서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직급 및 성명	지정일	직급 및 성명	지정일	
공통	정보보안처	관리 2급 [redacted]	2025.01.01	행정 3급 [redacted] 행정 5급 [redacted]	2025.02.17 2025.07.28	-
1	대외협력실	관리 1급 [redacted]	2023.12.11	행정 4급 [redacted]	2025.02.20	대표 홈페이지시스템
2	디지털기획처	관리 2급 [redacted]	2024.10.28	행정 5급 [redacted]	2023.07.21	통합회원관리포털
3	운영지원처	관리 2급 [redacted]	2023.01.01	실무직 5급 [redacted]	2021.07.01	VOC(고객의소리)통합관리시스템
4	운영지원처	관리 2급 [redacted]	2023.01.01	행정 3급 [redacted]	2023.02.06	고객콜센터시스템
5	교통안전처	관리 2급 [redacted]	2025.07.28	행정 6급 [redacted]	2024.02.26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6	자격교육처	관리 2급 [redacted]	2025.01.01	연구교수 5급 [redacted]	2023.02.06	안전운전체험교육시스템
7	자격교육처	관리 2급 [redacted]	2025.01.01	행정 4급 [redacted]	2025.07.01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통합플랫폼 시스템
8	자격교육처	관리 2급 [redacted]	2024.07.01	행정 4급 [redacted]	2025.03.04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시스템
9	자격교육처	관리 2급 [redacted]	2024.07.01	행정 3급 [redacted]	2025.03.04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도로)
10	자격교육처	관리 2급 [redacted]	2024.07.01	행정 5급 [redacted]	2021.02.01	운전적성정밀검사시스템
11	기후탄소물류처	관리 2급 [redacted]	2024.07.01	행정 4급 [redacted]	2022.02.07	위험물질 운송안전 관리시스템
12	철도안전처	관리 2급 [redacted]	2025.01.01	기술 5급 [redacted]	2024.04.15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철도)
13	항공안전처	연구교수 3급 [redacted]	2025.01.01	행정 5급 [redacted]	2025.02.17	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
14	항공안전처	연구교수 3급 [redacted]	2025.01.01	행정 5급 [redacted]	2025.02.17	항공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15	항공자격처	관리 2급 [redacted]	2025.01.01	행정 5급 [redacted]	2025.07.18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항공)
16	드론관리처	관리 2급 [redacted]	2025.01.01	행정 5급 [redacted]	2025.02.17	드론 비행경력시스템(전자출결 포함)
17	드론관리처	관리 2급 [redacted]	2025.01.01	행정 5급 [redacted]	2025.02.17	드론 정보통합시스템
18	검사운영처	관리 2급 [redacted]	2025.01.01	기술 4급 [redacted]	2024.02.26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19	기술안전처	관리 2급 [redacted]	2024.01.02	기술 5급 [redacted]	2025.07.28	사이버검사소시스템
20	기술안전처	관리 2급 [redacted]	2023.07.03	기술 5급 [redacted]	2025.02.17	TS 튜닝 알리고
21	특수검사처	관리 2급 [redacted]	2023.01.01	기술 5급 [redacted]	2025.02.17	특수검사관리시스템
22	주차안전처	관리 2급 [redacted]	2025.01.01	기술 4급 [redacted]	2024.02.26	기계식주차장 정보시스템
23	모빌리티연구처	관리 2급 [redacted]	2025.01.01	연구교수 5급 [redacted]	2024.02.26	운전자격확인시스템
24	경합정책처	관리 2급 [redacted]	2025.07.28	연구교수 5급 [redacted]	2022.01.03	자동차제작결함시스템
25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사무국	연구교수 3급 [redacted]	2024.07.01	연구교수 6급 [redacted]	2014.02.17	자동차안전하자관리시스템
26	인재개발처	관리 2급 [redacted]	2024.10.28	행정 5급 [redacted]	2025.02.17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인사 보수)
27	재정회계처	관리 2급 [redacted]	2025.07.28	행정 5급 [redacted]	2024.09.12	통합경영관리시스템(회계 계약)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절차서 개정 알림



처장 : 문선희 / 정보보안처 (2025-09-22 17:57:55)

' 안전, 혁신, 상생, 공정 '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 알림

1.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57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나. 정보보안처-550(2025.02.13.)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 보고"
다. 정보보안처-552(2025.02.13.) "개인정보보호 관련 절차서 보고"

2. 공단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절차서를 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전 소속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하여 공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사본 1부.
2.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별지서식 포함) 1부.
3. 개인정보보호 관련 절차서(11종) 각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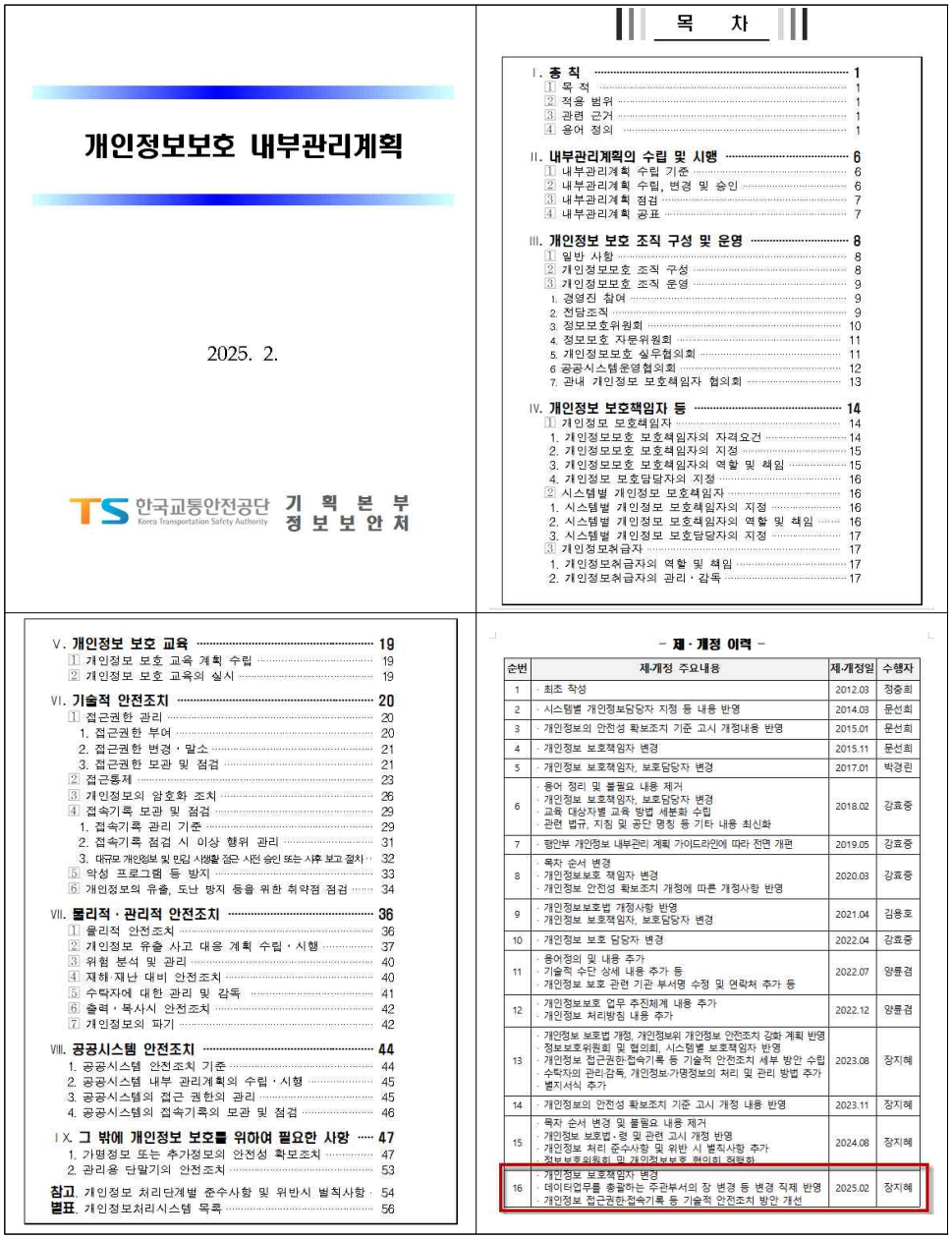
정 보 보 안 처 장

수신자 나 본사 각 부서, 다 교통안전교육센터, 라 지역본부, 바 검사소, 사 자동차안전연구원, 아 노동조합

처장 처장 전결 2025. 2. 14.

협조자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개정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2025. 2.

한국교통안전공단 기획본부 정보보안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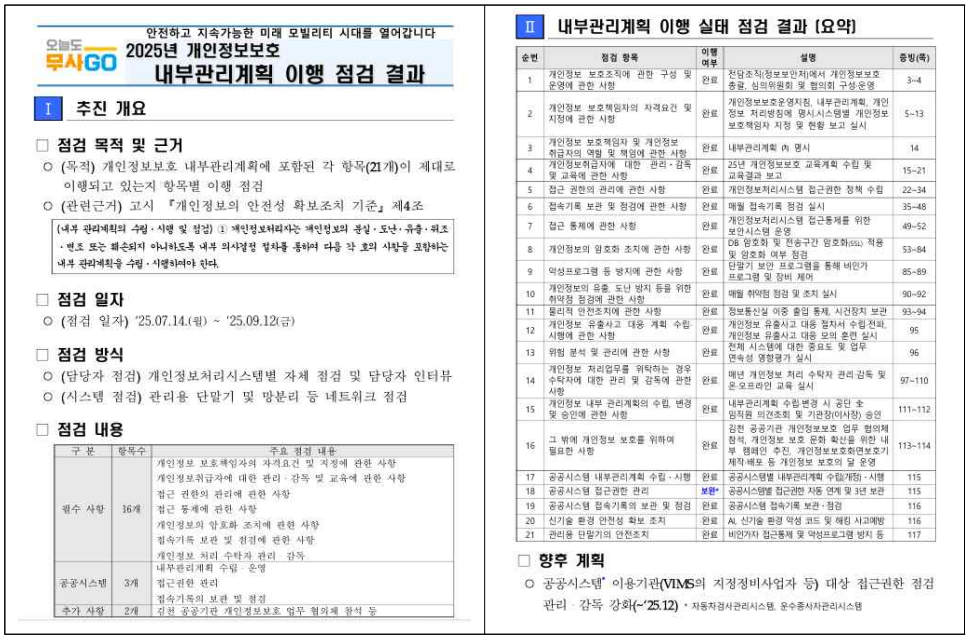
목 차

Ⅰ. 총 칙 ····· 1
1 목 적 ····· 1
2 적용 범위 ····· 1
3 관련 근거 ····· 1
4 용어 정의 ····· 1
Ⅱ.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1 내부관리계획 수립 기준 ····· 6
2 내부관리계획 수립, 변경 및 승인 ····· 6
3 내부관리계획 점검 ····· 7
4 내부관리계획 공표 ····· 7
Ⅲ. 개인정보 보호 조직 구성 및 운영 ····· 8
1 일반 사항 ····· 8
2 개인정보보호 조직 구성 ····· 8
3 개인정보보호 조직 운영 ····· 9
1. 경영진 참여 ····· 9
2. 전담조직 ····· 9
3. 정보보호위원회 ····· 10
4.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 11
5.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회 ····· 11
6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 ····· 12
7. 관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 13
Ⅳ.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 14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14
1. 개인정보보호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 14
2. 개인정보보호 보호책임자의 지정 ····· 15
3. 개인정보보호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 15
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 16
2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16
1.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16
2.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 16
3.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 17
3 개인정보취급자 ····· 17
1.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 17
2. 개인정보취급자의 관리·감독 ····· 17
Ⅴ. 개인정보 보호 교육 ····· 19
1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 19
2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실시 ····· 19
Ⅵ. 기술적 안전조치 ····· 20
1 접근권한 관리 ····· 20
1. 접근권한 부여 ····· 20
2. 접근권한 변경·말소 ····· 21
3. 접근권한 보관 및 점검 ····· 21
2 접근통제 ····· 23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 26
4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 29
1. 접속기록 관리 기준 ····· 29
2. 접속기록 점검 시 이상 행위 관리 ····· 31
3. 대규모 개인정보 및 민감 시생활 접근 시전 승인 또는 사후 보고 절차 ····· 32
5 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 ····· 33
6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 ····· 34
Ⅶ. 물리적·관리적 안전조치 ····· 36
1 물리적 안전조치 ····· 36
2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 ····· 37
3 위험 분석 및 관리 ····· 40
4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40
5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41
6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 42
7 개인정보의 파기 ····· 42
Ⅷ.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 44
1.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기준 ····· 44
2. 공공시스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45
3. 공공시스템의 접근 권한의 관리 ····· 45
4. 공공시스템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46
Ⅸ.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7
1.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47
2.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53
참고.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 54
별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목록 ····· 56

- 제·개정 이력 -

순번	제·개정 주요내용	제·개정일	수행자
1	· 최초 작성	2012.03	정중희
2	· 시스템별 개인정보담당자 지정 등 내용 반영	2014.03	문선희
3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내용 반영	2015.01	문선희
4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2015.11	문선희
5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보호담당자 변경	2017.01	박경린
6	· 용어 정리 및 불필요 내용 제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보호담당자 변경 · 교육 대상자별 교육 방법 세분화 수립 · 관련 법규, 지침 및 공단 명칭 등 기타 내용 최신화	2018.02	강효중
7	· 행안부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면 개편	2019.05	강효중
8	· 목차 순서 변경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변경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2020.03	강효중
9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반영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보호담당자 변경	2021.04	김용호
10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변경	2022.04	강효중
11	· 용어정의 및 내용 추가 · 기술적 수단 상세 내용 추가 등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 부서명 수정 및 연락처 추가 등	2022.07	양륜경
12	·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체계 내용 추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추가	2022.12	양륜경
13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계획 반영 · 정보보호위원회 및 협의회, 시스템별 보호책임자 반영 · 개인정보 접근권한·접속기록 등 기술적 안전조치 세부 방안 수립 · 수탁자의 관리감독, 개인정보·가명정보의 처리 및 관리 방법 추가 · 별지서식 추가	2023.08	장지혜
14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 내용 반영	2023.11	장지혜
15	· 목차 순서 변경 및 불필요 내용 제거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 개정 반영 · 개인정보 처리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추가 · 정보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협행화	2024.08	장지혜
16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 데이터업무를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장 변경 등 변경 직제 반영 · 개인정보 접근권한·접속기록 등 기술적 안전조치 방안 개선	2025.02	장지혜

- 2025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결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오늘도 무사GO

2025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 점검 결과

Ⅰ 추진 개요

□ **점검 목적 및 근거**

○ (목적)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포함된 각 항목(21개)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항목별 이행 점검

○ (관련근거)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점검 일자**

○ (점검 일자) '25.07.14.(월) ~ '25.09.12(금)

□ **점검 방식**

○ (담당자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자체 점검 및 담당자 인터뷰

○ (시스템 점검) 관리용 단말기 및 망분리 등 네트워크 점검

□ **점검 내용**

구 분	항목수	주요 점검 내용
필수 사항	16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 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관리 · 감독
공공시스템	3개	내부관리계획 수립 · 운영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추가 사항	2개	김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 협의체 참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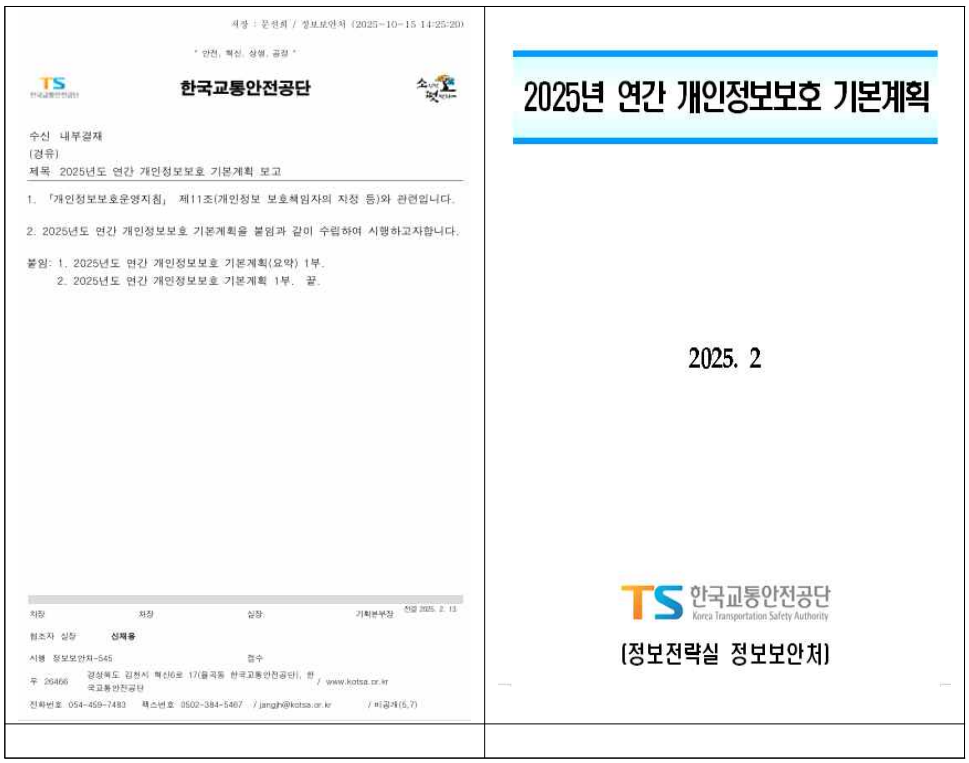
Ⅱ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 결과 (요약)

순번	점검 항목	이행 여부	설명	증빙(쪽)
1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완료	전담조직(정보보안처)에서 개인정보보호 총괄, 심의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	3~4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완료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현황 보고 실시	5~13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완료	내부관리계획 內 명시	14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 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완료	2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결과 보고	15~21
5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완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정책 수립	22~34
6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완료	매월 접속기록 점검 실시	35~48
7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완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를 위한 보안시스템 운영	49~52
8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완료	DB 암호화 및 전송구간 암호화(SSL) 적용 및 암호화 여부 점검	53~84
9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완료	단말기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바인가 프로그램 및 장비 제어	85~89
10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완료	매월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실시	90~92
11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완료	정보통신실 이중 출입 통제, 시건장치 보관	93~94
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완료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서 수립·전파,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모의 훈련 실시	95
13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완료	전체 시스템에 대한 중요도 및 업무 연속성 영향평가 실시	96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완료	매년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관리·감독 및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97~110
15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완료	내부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공단 全 임직원 의견조회 및 기관장(이사장) 승인	111~112
1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완료	김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 협의체 참석,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내부 캠페인 추진, 개인정보보호화면보호기 제작·배포 등 개인정보 보호의 날 운영	113~114
17	공공시스템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완료	공공시스템별 내부관리계획 수립(개정) · 시행	115
18	공공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보완*	공공시스템별 접근권한 자동 연계 및 3년 보관	115
19	공공시스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완료	공공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 점검	116
20	신기술 환경 안전성 확보 조치	완료	AI, 신기술 환경 악성 코드 및 해킹 사고예방	116
21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완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및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117

□ **향후 계획**

○ 공공시스템* 이용기관(VIMS의 지정정비사업자 등) 대상 접근권한 점검 관리 · 감독 강화(~'25.12)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 2025년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계획



최장 : 문선희 / 정보보안처 (2025-10-15 14:25:20)

" 안전, 혁신, 상생, 공정 "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5년도 연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보고

1.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와 관련입니다.

2. 2025년도 연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합니다.

붙임: 1. 2025년도 연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요약) 1부.
2. 2025년도 연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1부. 끝.

직장 처장 실장 기획부부장 전결 2025. 2. 13

협조자 실장 심재용

시행 정보보안처-545 접수

우 26466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 www.kots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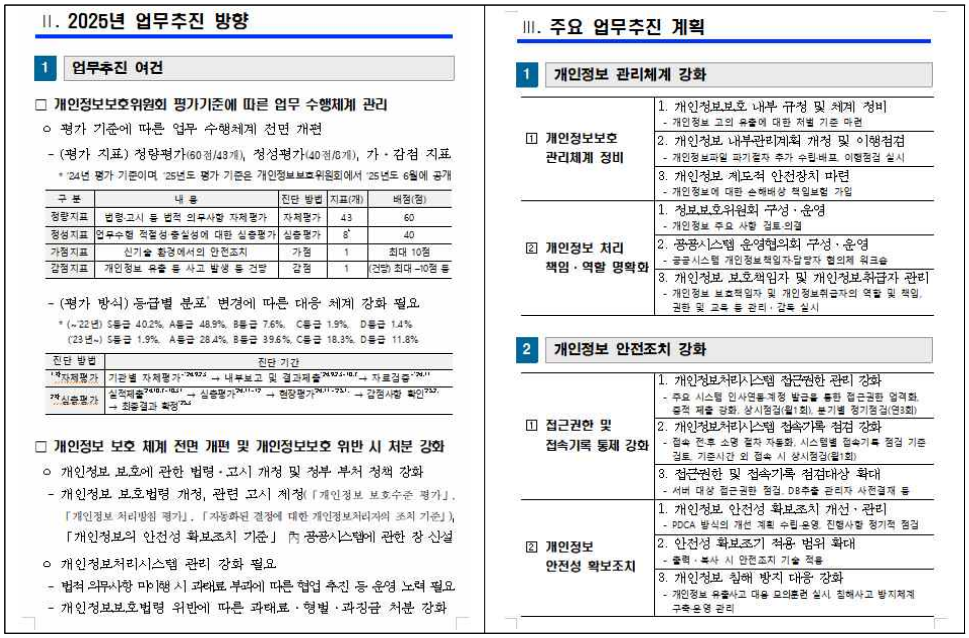
전화번호 054-459-7483 팩스번호 0502-384-5467 / jangjh@kotsa.or.kr / 비공개(6, 7)

2025년 연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2025. 2

한국교통안전공단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정보전략실 정보보안처)



Ⅱ. 2025년 업무추진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평가기준에 따른 업무 수행체계 관리

○ 평가 기준에 따른 업무 수행체계 전면 개편

- (평가 지표) 정량평가(60점/43개), 정성평가(40점/8개), 가·감점 지표

* '24년 평가 기준이며 '25년도 평가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5년도 6월에 공개

구 분	내 용	진단 방법	지표(개)	배점(점)
정량지표	법령고시 등 법적 의무사항 자체평가	자체평가	43	60
정성지표	업무수행 적절성 증빙실적에 대한 심층평가	심층평가	8	40
가점지표	신기술 환경에서의 안전조치	가점	1	최대 10점
감점지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등 건망	감점	1	(건별) 최대 -10점 등

- (평가 방식) 등급별 분포 변경에 따른 대응 체계 강화 필요

* (~22년) S등급 40.2%, A등급 48.9%, B등급 7.6%, C등급 1.9%, D등급 1.4%
(23년~) S등급 1.9%, A등급 28.4%, B등급 39.6%, C등급 18.3%, D등급 11.8%

진단 방법	진단 기간
1차 자체평가	기관별 자체평가 → 내부보고 및 결과제출 → 자료점검
2차 심층평가	심층제출 → 심층평가 → 현장평가 → 감점사항 확인 → 최종결과 확정

□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면 개편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 시 처분 강화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고시 개정 및 정부 부처 정책 강화

-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정, 관련 고시 제정(「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공공시스템에 관한 장 신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강화 필요

-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협업 추진 등 운영 노력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형벌·과징금 처분 강화

Ⅲ. 주요 업무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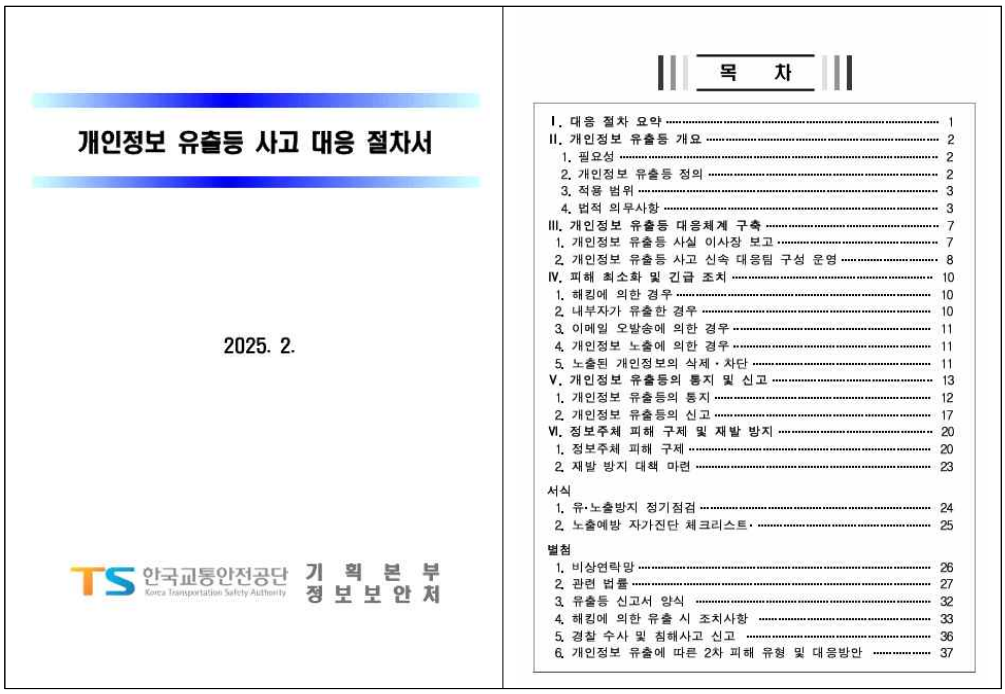
1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비	1. 개인정보보호 내부 규정 및 체계 정비 - 개인정보 고의 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
	2.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 및 이행점검 - 개인정보파일 파기절차 추가 수립·배포, 이행점검 실시
	3. 개인정보 체도적 안전장치 마련 - 개인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2 개인정보 처리 책임·역할 명확화	1. 정보보호위원회 구성·운영 - 개인정보 주요 사항 결표·의결
	2. 공공시스템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공공시스템 개인정보책임자담당자 협의체 워크숍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권한 및 교육 등 관리·감독 실시

2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1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통제 강화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강화 - 주요 시스템 인사연동계정 발급을 통한 접근권한 업격화, 결적 제출 강화, 상시점검(월1회), 분기별 정기점검(연8회)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강화 - 접속 전후 소명 절차 자동화, 시스템별 접속기록 점검 기준 절토, 기준시간 외 접속 시 상시점검(월1회)
	3.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점검대상 확대 - 서버 대상 접근권한 점검, DB추출 관리자 사전결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선·관리 - PDCA 방식의 개선 계획 수립·운영, 진행사항 정기적 점검
	2. 안전성 확보조치 적용 범위 확대 - 출력·복사 시 안전조치 기술 적용
	3. 개인정보 침해 방지 대응 강화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 침해사고 방지체계 구축운영 관리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서 개정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절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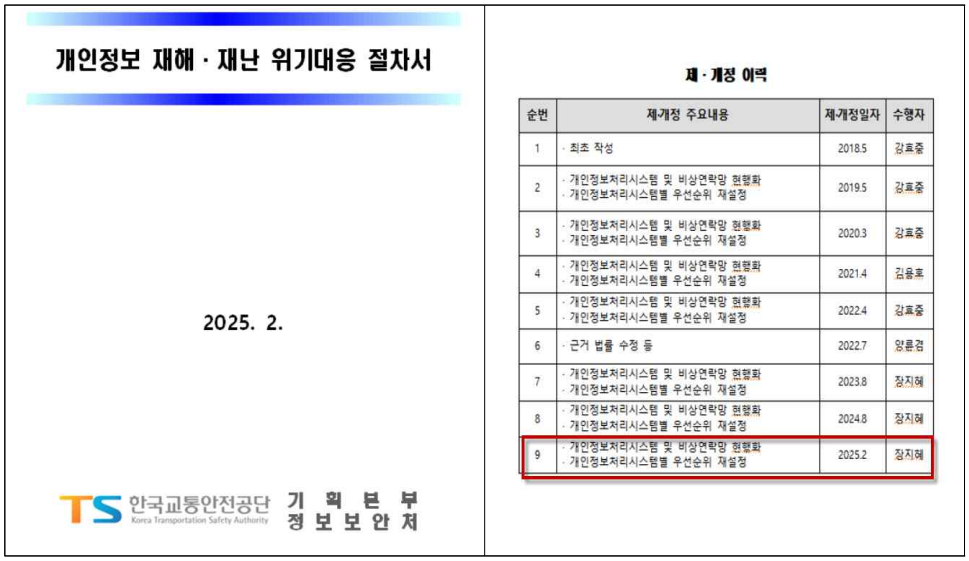
2025. 2.

TS 한국교통안전공단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기 획 본 부 정 보 보 안 처

목 차

Ⅰ. 대응 절차 요약 ····· 1
Ⅱ. 개인정보 유출등 개요 ····· 2
1. 필요성 ····· 2
2. 개인정보 유출등 정의 ····· 2
3. 적용 범위 ····· 3
4. 법적 의무사항 ····· 3
Ⅲ.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체계 구축 ····· 7
1. 개인정보 유출등 사실 이사장 보고 ····· 7
2.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신속 대응팀 구성 운영 ····· 8
Ⅳ. 피해 최소화 및 긴급 조치 ····· 10
1. 해킹에 의한 경우 ····· 10
2. 내부자가 유출한 경우 ····· 10
3. 이메일 오발송에 의한 경우 ····· 11
4.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경우 ····· 11
5.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 11
Ⅴ.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및 신고 ····· 13
1.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 12
2.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 17
Ⅵ. 정보주체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 20
1. 정보주체 피해 구제 ····· 20
2.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23
서식
1. 유·노출방지 정기점검 ····· 24
2. 노출예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25
별첨
1. 비상연락망 ····· 26
2. 관련 법률 ····· 27
3. 유출등 신고서 양식 ····· 32
4. 해킹에 의한 유출 시 조치사항 ····· 33
5. 경찰 수사 및 침해사고 신고 ····· 36
6.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유형 및 대응방안 ····· 37

- 개인정보 재해·재난 위기대응 절차서 개정



개인정보 재해·재난 위기대응 절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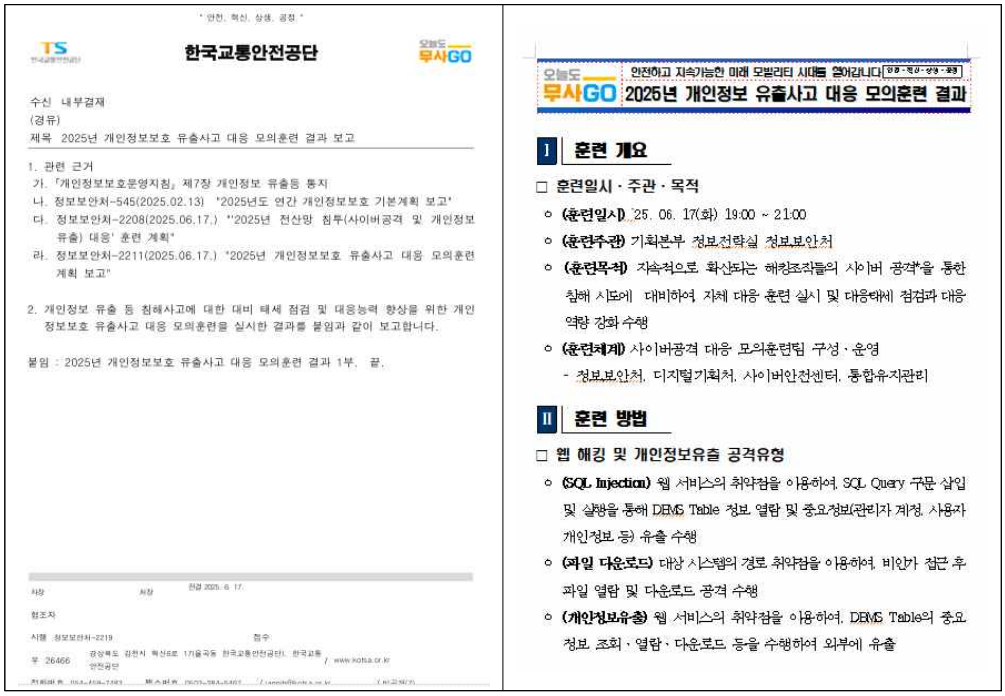
2025. 2.

한국교통안전공단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기 획 본 부 정 보 보 안 처

제·개정 이력

순번	제·개정 주요내용	제·개정일자	수행자
1	· 최초 작성	2018.5	강효중
2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우선순위 재설정	2019.5	강효중
3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우선순위 재설정	2020.3	강효중
4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우선순위 재설정	2021.4	김용호
5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우선순위 재설정	2022.4	강효중
6	· 근거 법률 수정 등	2022.7	양문검
7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우선순위 재설정	2023.8	장지혜
8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우선순위 재설정	2024.8	장지혜
9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우선순위 재설정	2025.2	장지혜

- 2025년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 결과 보고



" 안전, 혁신, 상생, 공정 "

한국교통안전공단

오늘도 무사GO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5년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 결과 보고

1.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7장 개인정보 유출등 통지
나. 정보보안처-545(2025.02.13) "2025년도 연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보고"
다. 정보보안처-2208(2025.06.17.) "'2025년 전산망 침투(사이버공격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훈련 계획"
라. 정보보안처-2211(2025.06.17.) "2025년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 계획 보고"

2.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비 태세 점검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2025년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 결과 1부. 끝.

오늘도 무사GO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안전·혁신·상생·공정

2025년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 결과

Ⅰ 훈련 개요

□ 훈련일시·주관·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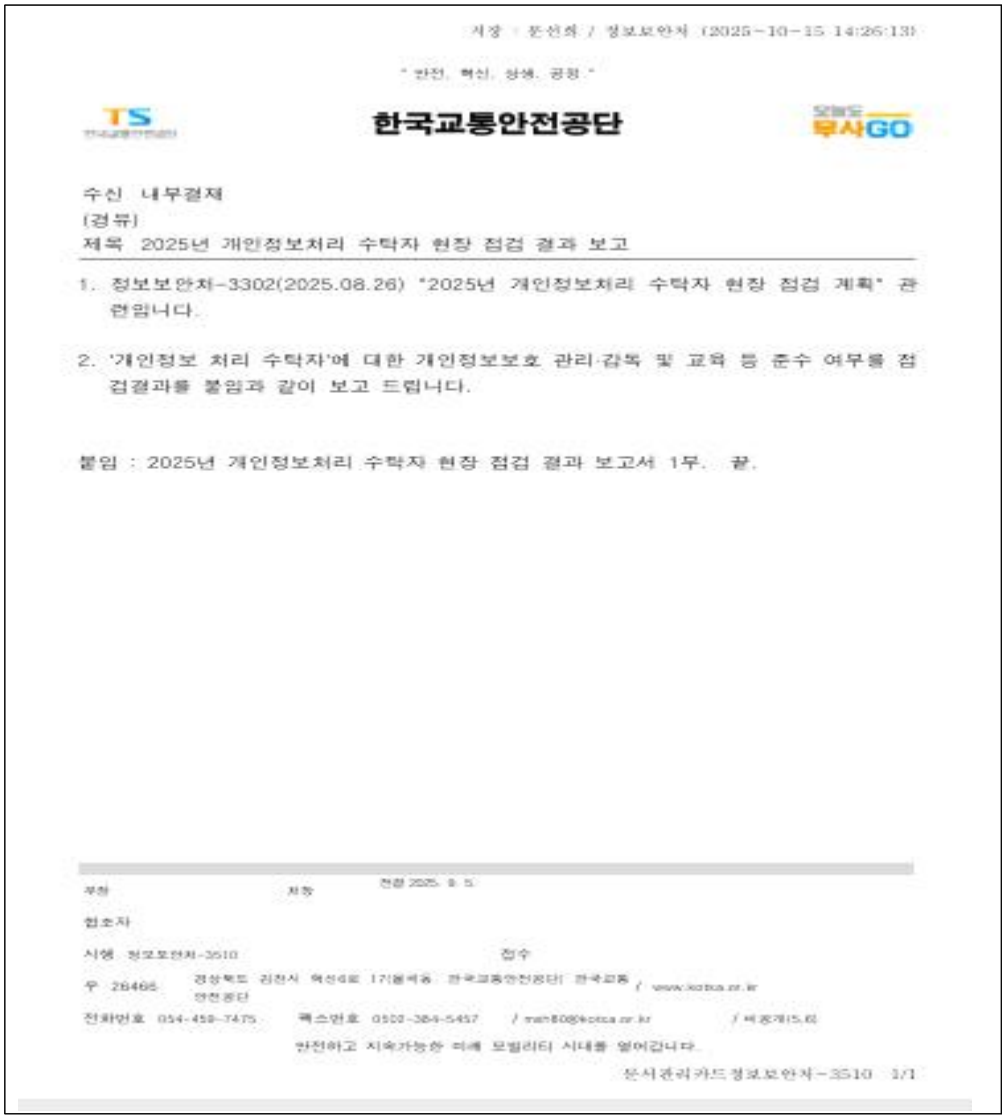
- **(훈련일시)** '25. 06. 17(화) 19:00 ~ 21:00
- **(훈련주관)** 기획본부 정보전략실 정보보안처
- **(훈련목적)**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해킹조직들의 사이버 공격*을 통한 침해 시도에 대비하여 자체 대응 훈련 실시 및 대응태세 점검과 대응역량 강화 수행
- **(훈련체계)**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팀 구성·운영
 - 정보보안처, 디지털기획처, 사이버안전센터, 통합유지관리

Ⅱ 훈련 방법

□ 웹 해킹 및 개인정보유출 공격유형

- **(SQL Injection)** 웹 서비스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SQL Query 구문 삽입 및 실행을 통해 DBMS Table 정보 열람 및 중요정보(관리자 계정, 사용자 개인정보 등) 유출 수행
- **(파일 다운로드)** 대상 시스템의 경로 취약점을 이용하여, 비인가 접근 후 파일 열람 및 다운로드 공격 수행
- **(개인정보유출)** 웹 서비스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DBMS Table의 중요정보 조회·열람·다운로드 등을 수행하여 외부에 유출

- 2025년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현장 점검 결과 보고



최종 : 문선희 / 정보보안처 (2025-10-15 14:26:13)

" 안전, 혁신, 상생, 공정 "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5년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현장 점검 결과 보고

1. 정보보안처-3302(2025.08.26) "2025년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현장 점검 계획" 관련입니다.

2.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및 교육 등 준수 여부를 점검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붙임 : 2025년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 1부. 끝.

부장 처장 전결 2025. 9. 5.

협조자

시행 정보보안처-3510 접수

우 28464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 www.kots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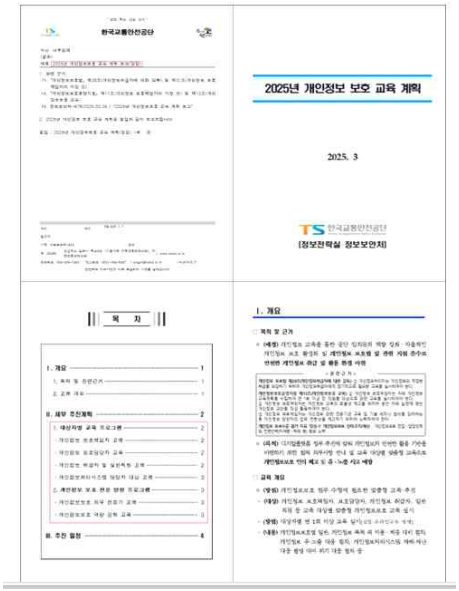
전화번호 054-459-7475 팩스번호 0503-384-5457 / man80@kotsa.or.kr / 비공개(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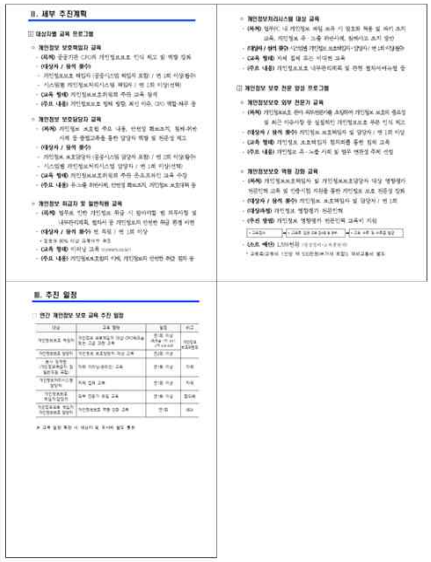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문서관리카드 정보보안처-3510 1/1

- 2025년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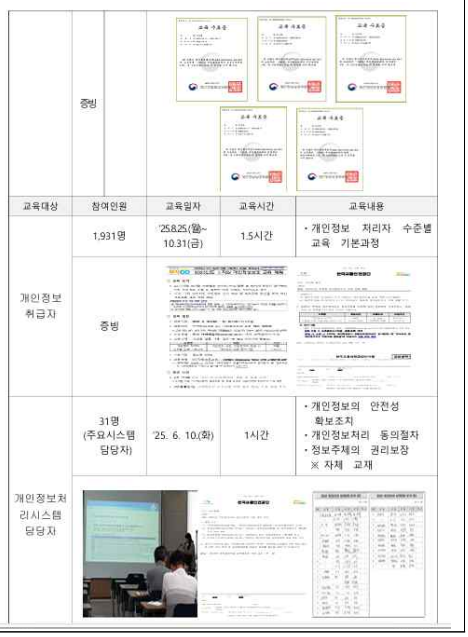
○ 202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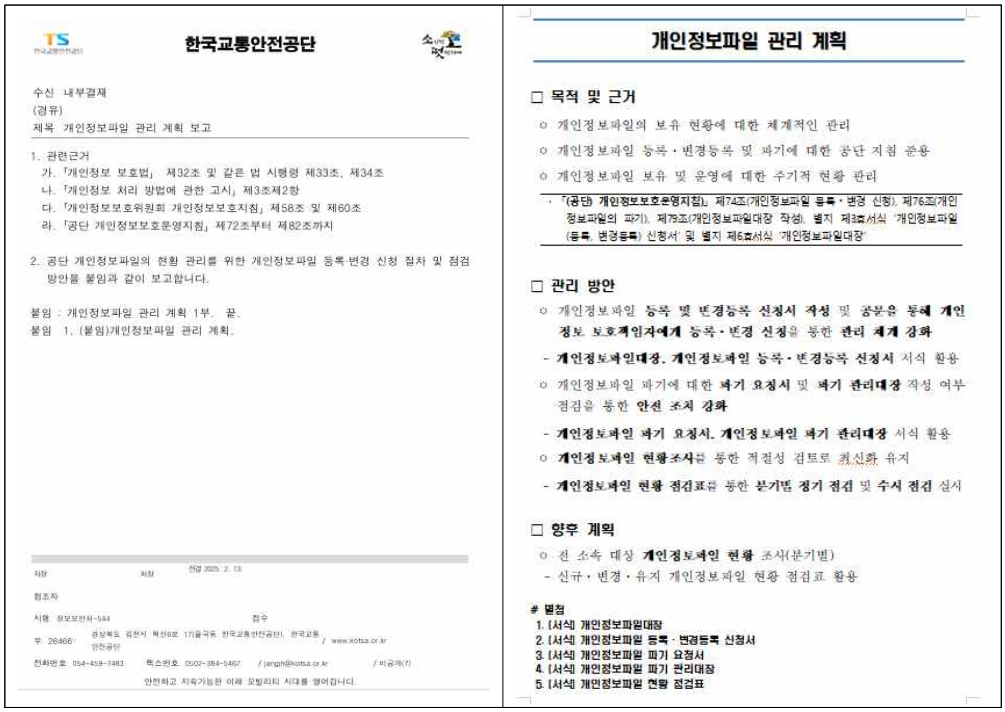


○ 202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적

교육대상	회차	성명	교육일자 및 시간	업무 수행기간	교육내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회차	최대진	'25. 2. 26.(수) [2시간]	'25.01 ~ 현재	• 개인정보처리 통합안내서
	2회차		'25. 3. 18.(수) [2시간]		•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3회차		'25. 4. 03.(목) [2시간]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심층논의
	4회차		'25. 4. 30.(수) [2시간]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전략
	5회차		'25. 5. 21.(수) [2.5시간]		• 인공지능 (AI) 시대의 정보주체 권리 강화전략
	6회차		'25.7.23~8.14 [26시간]		• 2025년 KISA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7회차		'25. 9. 3(수) [2시간]		• 2025년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전략 심층 논의
	증빙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1회차	문선희	'25.4.11.(금) [4시간]	'25.02 ~ 현재	• (2 5 년)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 과정
	2회차		'25.4.21.(월) [4시간]		• (2 5 년) 개인정보처리자 입문 과정
	3회차		'25.4.25.(금) [4시간]		• (2 5 년) 개인정보처리자 신기술과정



- 개인정보파일 관리 계획 보고

<table>
<tr><td></td><td>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정보파일 관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나.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8조 및 제60조
라. 「공단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72조부터 제82조까지

2. 공단 개인정보파일의 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 신청 절차 및 점검 방안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파일 관리 계획 1부. 끝.
붙임 1. (붙임)개인정보파일 관리 계획.

개인정보파일 관리 계획

□ 목적 및 근거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및 파기에 대한 공단 지침 준용
○ 개인정보파일 보유 및 운영에 대한 주기적 현황 관리
- 「(공단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74조(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 신청), 제76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제79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파일대장'

□ 관리 방안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및 공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등록·변경 신청을 통한 관리 체계 강화
- 개인정보파일대장,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서식 활용
○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대한 파기 요청서 및 파기 관리대장 작성 여부 점검을 통한 안전 조치 강화
-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서식 활용
○ 개인정보파일 현황조사를 통한 적절성 검토로 최신화 유지
- 개인정보파일 현황 점검표를 통한 분기별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 실시

□ 향후 계획
○ 전 소속 대상 개인정보파일 현황 조사(분기별)
- 신규·변경·유지 개인정보파일 현황 점검표 활용

별첨
1. [서식] 개인정보파일대장
2. [서식]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3.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4.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5. [서식] 개인정보파일 현황 점검표</td></tr>
<tr><td>항목 설명</td><td>●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등

[용어설명]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 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
❖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td></tr>
<tr><td>평가 예시</td><td>● 이행 : 업무분장표 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서 등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전부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가 문서로 정의되어 있거나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 중 일부만을 반영하거나, 업무는 수행하고 있으나 문서로 증명</td></tr>
</table>

	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영향평가 영역	1.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평가분야	1.2 개인정보 보호계획
평가 목적	● 평가대상 기관의 실정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여부를 점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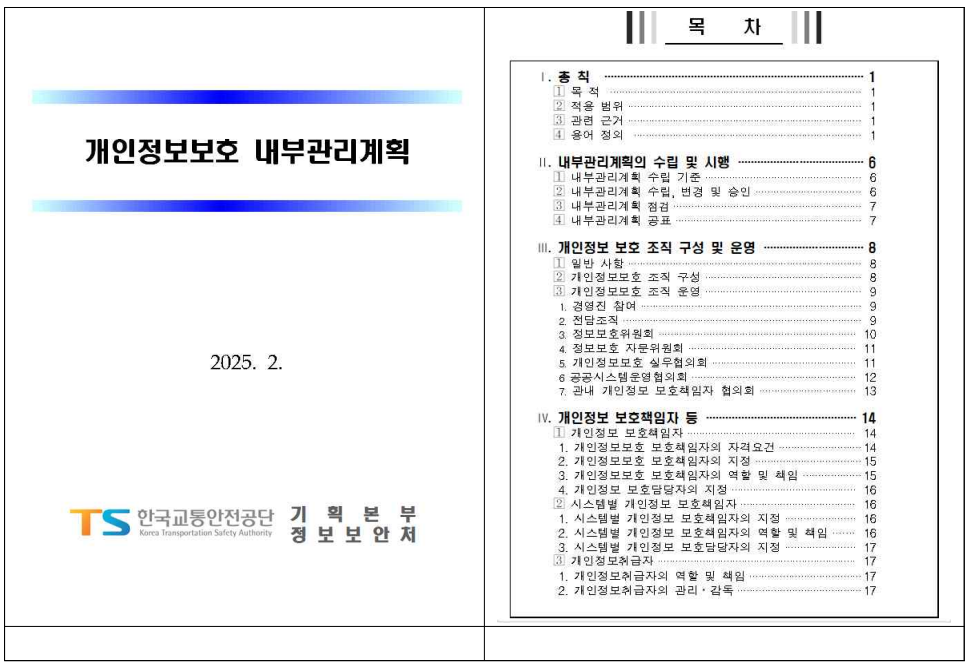
세부 분야	내부 관리계획 수립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1.2.1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필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공식적 시행 ②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명시된 모든 내용 포함(유형1, 2, 3 구분) ③ 변경사항 반영 및 수정 이력 관리 ④ 이해관계자에게 배포되고 공유				
평가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Ⅱ.1(내부관리계획 수립 기준)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Ⅱ.2(내부관리계획 수립, 변경 및 승인)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으로부터 내부결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력을 보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25년 2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개정하였음. ● 또한, 2025년 2월, 기관장의 공식 결재를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룹웨어를 통하여 전 직원에게 공표하였음.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내부 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반영 현황]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관련 조	포함여부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Ⅳ.2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Ⅳ.1~3	○

③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V.1~2	○
④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VI-1	○
⑤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VI-2	○
⑥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VI-3	○
⑦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VI-4	○
⑧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VI-5	○
⑨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Ⅶ-1	○
⑩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Ⅲ-2~3	○
⑪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Ⅶ-2	○
⑫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Ⅶ-3	○
⑬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Ⅶ-4	○
⑭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Ⅶ-5	○
⑮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Ⅸ-1~2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Ⅱ.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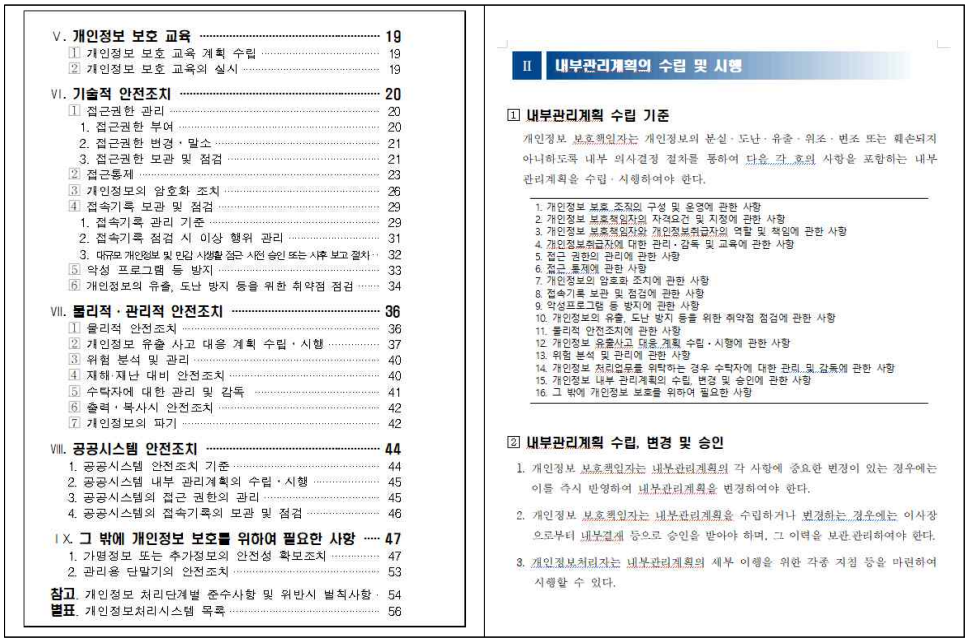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2025. 2.

한국교통안전공단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기 획 본 부 정 보 보 안 처

목 차

Ⅰ. 총 칙 ····· 1
1 목 적 ····· 1
2 적용 범위 ····· 1
3 관련 근거 ····· 1
4 용어 정의 ····· 1
Ⅱ.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1 내부관리계획 수립 기준 ····· 6
2 내부관리계획 수립, 변경 및 승인 ····· 6
3 내부관리계획 점검 ····· 7
4 내부관리계획 공표 ····· 7
Ⅲ. 개인정보 보호 조직 구성 및 운영 ····· 8
1 일반 사항 ····· 8
2 개인정보보호 조직 구성 ····· 8
3 개인정보보호 조직 운영 ····· 9
1. 경영진 참여 ····· 9
2. 전담조직 ····· 9
3. 정보보호위원회 ····· 10
4.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 11
5.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회 ····· 11
6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 ····· 12
7. 관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 13
Ⅳ.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 14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14
1. 개인정보보호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 14
2. 개인정보보호 보호책임자의 지정 ····· 15
3. 개인정보보호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 15
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 16
2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16
1.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16
2.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 16
3.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 17
3 개인정보취급자 ····· 17
1.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 17
2. 개인정보취급자의 관리·감독 ····· 17



Ⅴ. 개인정보 보호 교육 ····· 19
1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 19
2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실시 ····· 19
Ⅵ. 기술적 안전조치 ····· 20
1 접근권한 관리 ····· 20
1. 접근권한 부여 ····· 20
2. 접근권한 변경·말소 ····· 21
3. 접근권한 보관 및 점검 ····· 21
2 접근통제 ····· 23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 26
4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 29
1. 접속기록 관리 기준 ····· 29
2. 접속기록 점검 시 이상 행위 관리 ····· 31
3. 대규모 개인정보 및 민감 사생활 접근 사전 승인 또는 사후 보고 절차 ····· 32
5 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 ····· 33
6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 ····· 34
Ⅶ. 물리적·관리적 안전조치 ····· 36
1 물리적 안전조치 ····· 36
2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 ····· 37
3 위험 분석 및 관리 ····· 40
4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40
5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41
6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 42
7 개인정보의 파기 ····· 42
Ⅷ.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 44
1.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기준 ····· 44
2. 공공시스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45
3. 공공시스템의 접근 권한의 관리 ····· 45
4. 공공시스템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46
Ⅸ.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7
1.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47
2.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53
참고.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 54
별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목록 ····· 56

Ⅱ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내부관리계획 수립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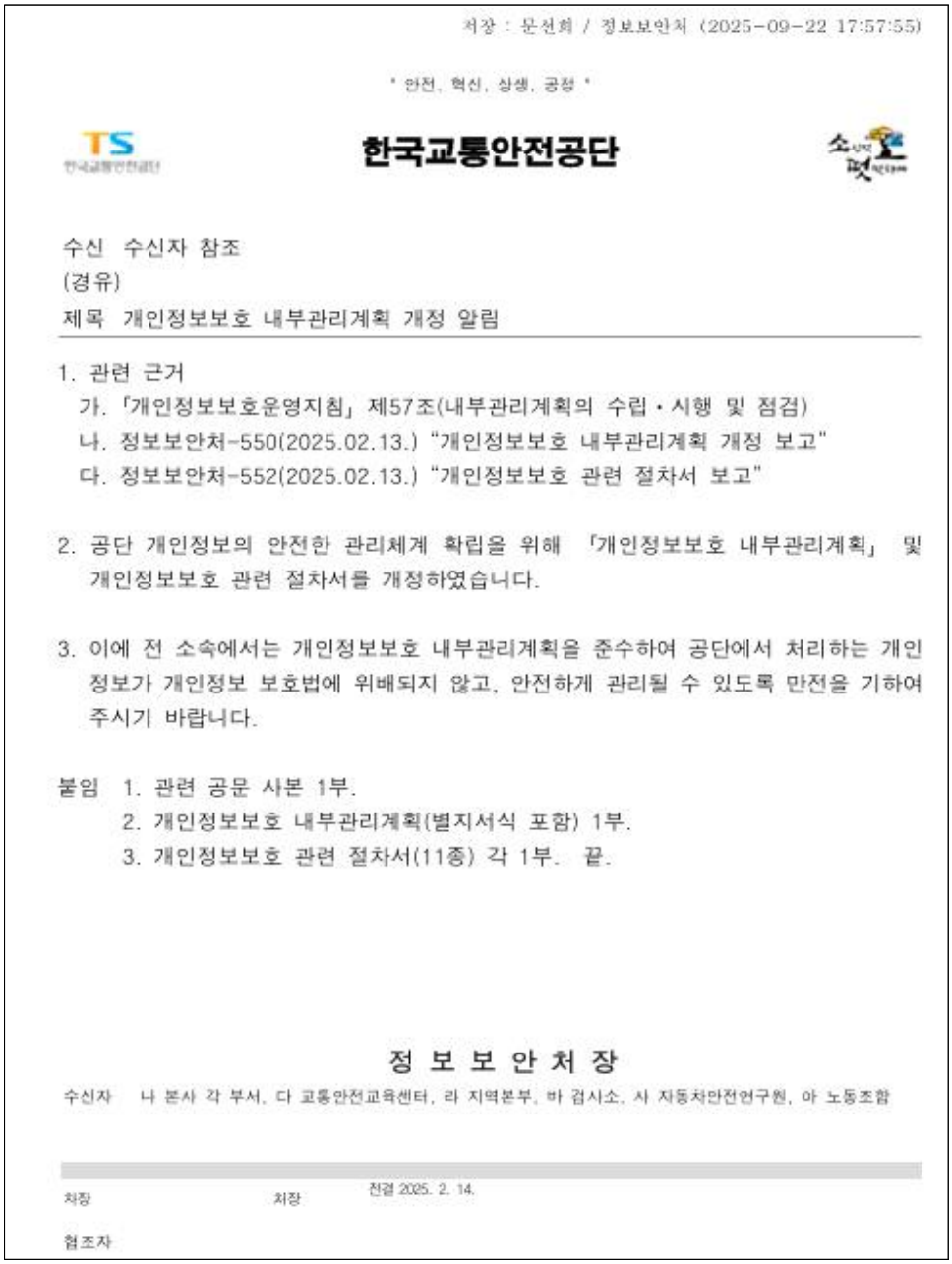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8.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11.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내부관리계획 수립, 변경 및 승인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관리계획의 각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으로부터 내부결재 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력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의 세부 이행을 위한 각종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 알림



저장 : 문선희 / 정보보안처 (2025-09-22 17:57:55)

" 안전, 혁신, 상생, 공정 "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 알림

1.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57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나. 정보보안처-550(2025.02.13.)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 보고"
 다. 정보보안처-552(2025.02.13.) "개인정보보호 관련 절차서 보고"

2. 공단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절차서를 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전 소속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하여 공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사본 1부.
2.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별지서식 포함) 1부.
3. 개인정보보호 관련 절차서(11종) 각 1부. 끝.

정 보 보 안 처 장

수신자 나 본사 각 부서, 다 교통안전교육센터, 라 지역본부, 바 검사소, 사 자동차안전연구원, 아 노동조합

처장	처장	전결 2025. 2. 14.
협조자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 재·개정 이력

<table>
<tr><td></td><td>



— 제 · 개정 이력 —

순번	제·개정 주요내용	제·개정일	수행자
1	· 최초 작성	2012.03	정충희
2	· 시스템별 개인정보담당자 지정 등 내용 반영	2014.03	문선희
3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내용 반영	2015.01	문선희
4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2015.11	문선희
5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보호담당자 변경	2017.01	박경린
6	· 용어 정리 및 불필요 내용 제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보호담당자 변경 · 교육 대상자별 교육 방법 세분화 수립 · 관련 법규, 지침 및 공단 명칭 등 기타 내용 최신화	2018.02	강효중
7	· 행안부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면 개편	2019.05	강효중
8	· 목차 순서 변경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변경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2020.03	강효중
9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반영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보호담당자 변경	2021.04	김용호
10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변경	2022.04	강효중
11	· 용어정의 및 내용 추가 · 기술적 수단 상세 내용 추가 등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 부서명 수정 및 연락처 추가 등	2022.07	양윤경
12	·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체계 내용 추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추가	2022.12	양윤경
13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계획 반영 · 정보보호위원회 및 협의회, 시스템별 보호책임자 반영 · 개인정보 접근권한·접속기록 등 기술적 안전조치 세부 방안 수립 · 수탁자의 관리·감독, 개인정보·가명정보의 처리 및 관리 방법 추가 · 별지서식 추가	2023.08	장지혜
14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 내용 반영	2023.11	장지혜
15	· 목차 순서 변경 및 불필요 내용 제거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 개정 반영 · 개인정보 처리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추가 · 정보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현행화	2024.08	장지혜
16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 데이터업무를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장 변경 등 변경 직제 반영 · 개인정보 접근권한·접속기록 등 기술적 안전조치 방안 개선	2025.02	장지혜

</td></tr>
<tr><td>항목 설명</td><td>

- 각 기관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기관의 상황에 알맞은 연간 개인정보보호계획(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td></tr>
<tr><td>평가 예시</td><td>

- 이행 : 연간 개인정보보호 계획서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결재(승인)내역이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매년 수립하지 않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도 문서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았거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 경우

</td></tr>
<tr><td>관련 법률 및 문서</td><td>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td></tr>
</table>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내부 관리계획 수립</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1.2.2</td><td>●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관리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내부 관리계획 이행 실태 연 1회 이상 점검
② 이행실태 점검 후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③ 접근권한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은 반드시 점검</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Ⅱ.3(내부관리계획 점검)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으로 내부관리계획에서 정한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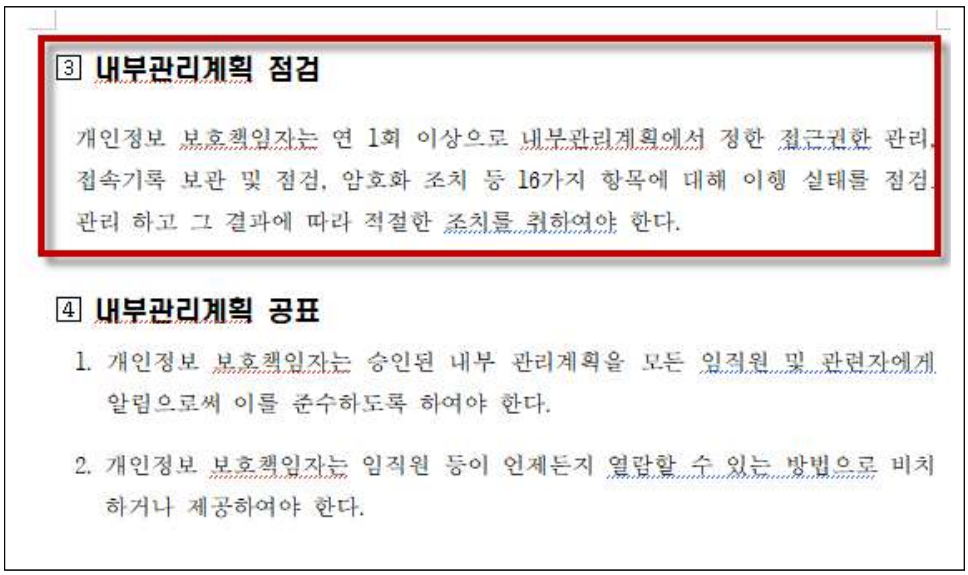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2025년 9월에『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를 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현황]
<table>
<tr><th>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항목</th><th>수행여부</th><th>적절성</th></tr>
<tr><td>1. 접근권한 관리(필수)</td><td>•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점검 결과 보고(매월)</td><td>○</td></tr>
<tr><td>2.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필수)</td><td>•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점검 결과 보고(매월)</td><td>○</td></tr>
<tr><td>3.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필수)</td><td>•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개인정보 암호화 점검 결과</td><td>○</td></tr>
<tr><td>4. 악성프로그램 방지</td><td>• 자동으로 V3 백신 설치 및 정책을 통해 매일 업데이트 실시</td><td>○</td></tr>
<tr><td>5. 취급자 교육</td><td>• 2025년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실적</td><td>○</td></tr>
<tr><td>6. 물리적 안전조치</td><td>•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 장소의 물리적 통제 절차 수립(통제구역)</td><td>○</td></tr>
</table></td></tr>
</table>

7. 수탁자 관리 감독	• 2025년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현장 점검 결과 보고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해당없음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Ⅱ.3 내부관리계획 점검



3 내부관리계획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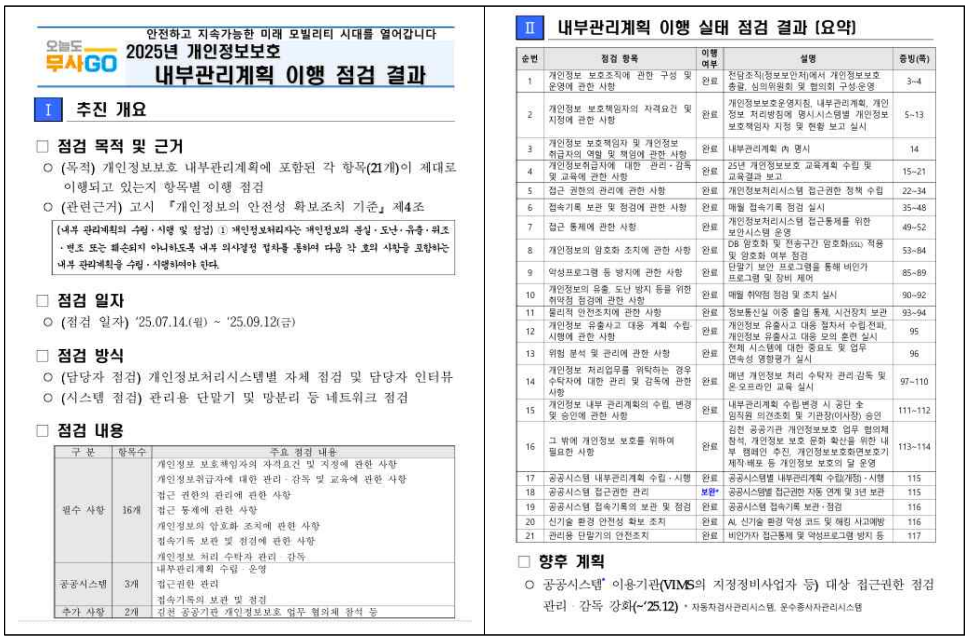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으로 내부관리계획에서 정한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내부관리계획 공표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승인된 내부 관리계획을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임직원 등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 2025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결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오늘도 무사GO 2025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 점검 결과

Ⅰ 추진 개요

□ 점검 목적 및 근거
○ (목적)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포함된 각 항목(21개)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항목별 이행 점검
○ (관련근거)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점검 일자
○ (점검 일자) '25.07.14.(월) ~ '25.09.12(금)

□ 점검 방식
○ (담당자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자체 점검 및 담당자 인터뷰
○ (시스템 점검) 관리용 단말기 및 망분리 등 네트워크 점검

□ 점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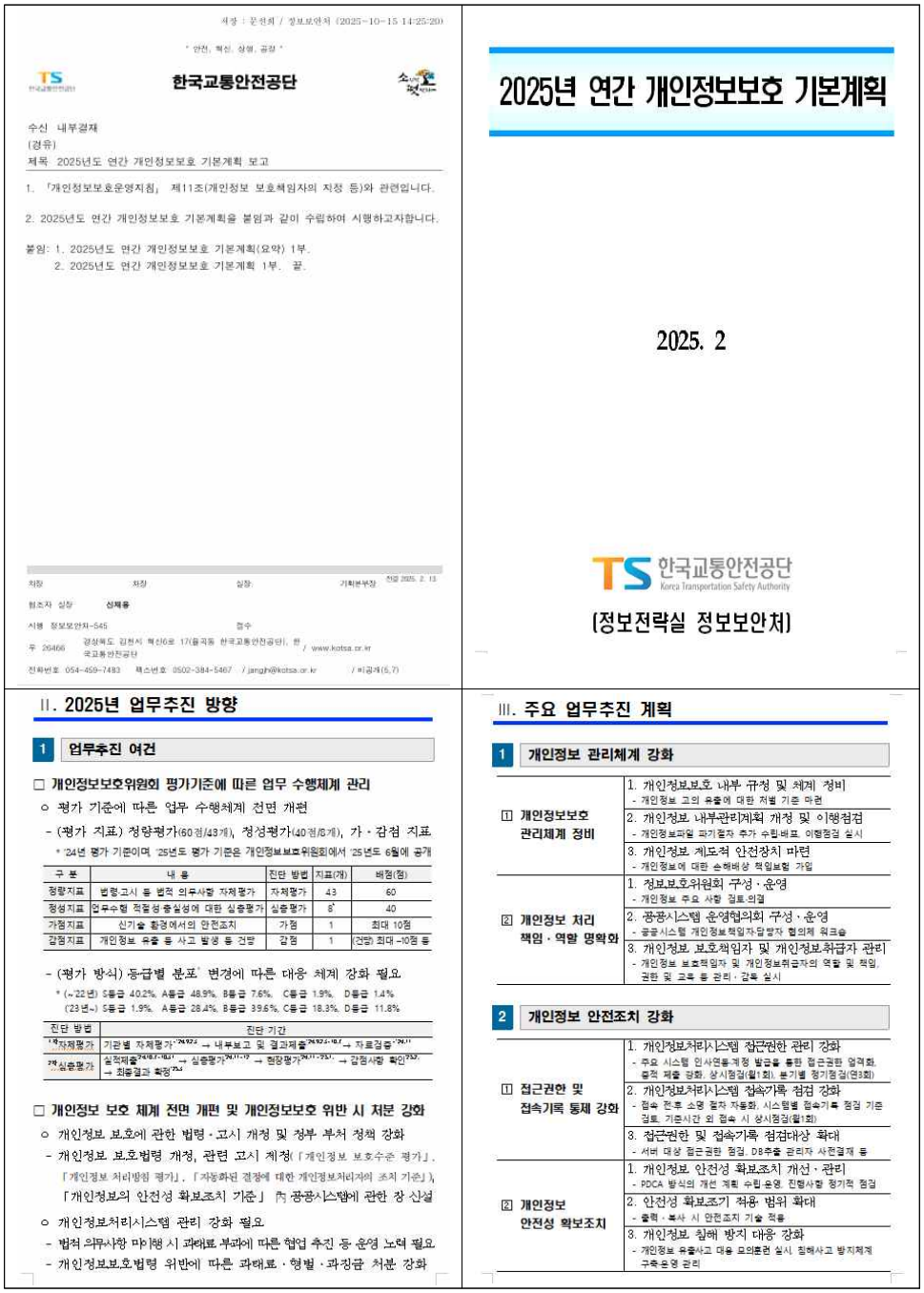
구 분	항목수	주요 점검 내용
필수 사항	16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관리·감독
공공시스템	3개	내부관리계획 수립·운영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추가 사항	2개	심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 협의체 참석 등

Ⅱ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 결과 (요약)

순번	점검 항목	이행 여부	설명	증빙(쪽)
1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완료	전담조직(정보보안처)에서 개인정보보호 총괄, 심의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	3~4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완료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현황 보고 실시	5~13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완료	내부관리계획 內 명시	14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완료	2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결과 보고	15~21
5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완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정책 수립	22~34
6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완료	매월 접속기록 점검 실시	35~48
7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완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를 위한 보안시스템 운영	49~52
8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완료	DB 암호화 및 전송구간 암호화(SSL) 적용 및 암호화 여부 점검	53~84
9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완료	단말기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비인가 프로그램 및 장비 제어	85~89
10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완료	매월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실시	90~92
11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완료	정보통신실 이중 출입 통제, 시건장치 보관	93~94
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완료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서 수립 전파,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모의 훈련 실시	95
13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완료	전체 시스템에 대한 중요도 및 업무 연속성 영향평가 실시	96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완료	매년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관리·감독 및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97~110
15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완료	내부관리계획 수립 변경 시 공단 全 임직원 의견조회 및 기관장(이사장) 승인	111~112
1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완료	심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 협의체 참석,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내부 캠페인 추진, 개인정보보호화면보호기 제작·배포 등 개인정보 보호의 달 운영	113~114
17	공공시스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완료	공공시스템별 내부관리계획 수립(개정)·시행	115
18	공공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보완*	공공시스템별 접근권한 자동 연계 및 3년 보관	115
19	공공시스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완료	공공시스템 접속기록 보관·점검	116
20	신기술 환경 안전성 확보 조치	완료	AI, 신기술 환경 악성 코드 및 해킹 사고예방	116
21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완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및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117

□ 향후 계획
○ 공공시스템* 이용기관(VIMS의 지정정비사업자 등) 대상 접근권한 점검 관리·감독 강화(~'25.12) * 자동차점사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 2025년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계획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5년도 연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보고

1.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와 관련입니다.

2. 2025년도 연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합니다.

붙임: 1. 2025년도 연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요약) 1부.
2. 2025년도 연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1부. 끝.

2025년 연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2025. 2

한국교통안전공단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정보전략실 정보보안처)

Ⅱ. 2025년 업무추진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평가기준에 따른 업무 수행체계 관리

○ 평가 기준에 따른 업무 수행체계 전면 개편

- (평가 지표) 정량평가(60점/43개), 정성평가(40점/8개), 가·감점 지표

* '24년 평가 기준이며, '25년도 평가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5년도 6월에 공개

구 분	내 용	진단 방법	지표(개)	배점(점)
정량지표	법령고시 등 법적 의무사항 자체평가	자체평가	43	60
정성지표	업무수행 적절성·충실성에 대한 심층평가	심층평가	8	40
가점지표	신기술 환경에서의 안전조치	가점	1	최대 10점
감점지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등 건당	감점	1	(건당) 최대 -10점 등

- (평가 방식) 등급별 분포 변경에 따른 대응 체계 강화 필요

* (~'22년) S등급 40.2%, A등급 48.9%, B등급 7.6%, C등급 1.9%, D등급 1.4%
('23년~) S등급 1.9%, A등급 28.4%, B등급 39.6%, C등급 18.3%, D등급 11.8%

진단 방법	진단 기간
1단계 자체평가	기관별 자체평가 → 내부보고 및 결과제출 → 자료검증
2단계 심층평가	실적제출 → 심층평가 → 현장평가 → 감점사항 확인 → 최종결과 확정

□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면 개편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 시 처분 강화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고시 개정 및 정부 부처 정책 강화

-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정, 관련 고시 체정(「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공공시스템에 관한 장 신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강화 필요

-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협업 추진 등 운영 노력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형벌·과징금 처분 강화

Ⅲ. 주요 업무추진 계획

1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비	1. 개인정보보호 내부 규정 및 체계 정비 - 개인정보 고의 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
	2.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 및 이행점검 - 개인정보파일 파기절차 추가 수립바프, 이행점검 실시
	3. 개인정보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개인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2 개인정보 처리 책임·역할 명확화	1. 정보보호위원회 구성·운영 - 개인정보 주요 사항 협의·의결
	2. 공공시스템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공공시스템 개인정보책임자·담당자 협의체 워크숍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권한 및 교육 등 관리·감독 실시

2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1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통제 강화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강화 - 주요 시스템 인사연동계정 발급을 통한 접근권한 업격화, 증적 제출 강화, 상시점검(월1회), 분기별 정기점검(연8회)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강화 - 접속 전후 소명 절차 자동화, 시스템별 접속기록 점검 기준 검토, 기준시간 외 접속 시 상시점검(월1회)
	3.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점검대상 확대 - 서버 대상 접근권한 점검, DB추출 관리자 사전결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선·관리 - PDCA 방식의 개선 계획 수립·운영, 진행사항 정기적 점검
	2. 안전성 확보조기 적용 범위 확대 - 출력·복사 시 안전조치 기술 적용
	3. 개인정보 침해 방지 대응 강화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 침해사고 방지체계 구축운영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점검 결과 보고(매월)



" 안전, 혁신, 상생, 공단 "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오늘도 무사GO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점검 실시 요청(2025년 7월)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제2023-6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나. 정보보안처-2898(2025.08.0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점검 결과 보고(2025년 6월 등)"

2. 각 부서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에 대해 **[붙임1] 자체 정기 점검(2025년 7월), [붙임2] 적정성 검토(2025년 하반기)를 실시하시어 그 결과를 2025. 8. 8.(금) 까지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정기점검(2025년 7월) 양식 1부
2.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적정성 검토(2025년 하반기) 양식 1부. 끝.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수신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대상 부서

시행 정보보안처-2898 접수
우 39660 (전송단) / www.kotsa.or.kr
전화번호 054-459-7479 팩스번호 0502-384-5457 / 비공개(5,6)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오늘도 무사GO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안전·혁신·상생·공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점검 결과('25년 8월)

Ⅰ 점검개요

□ 추진목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 오·남용 및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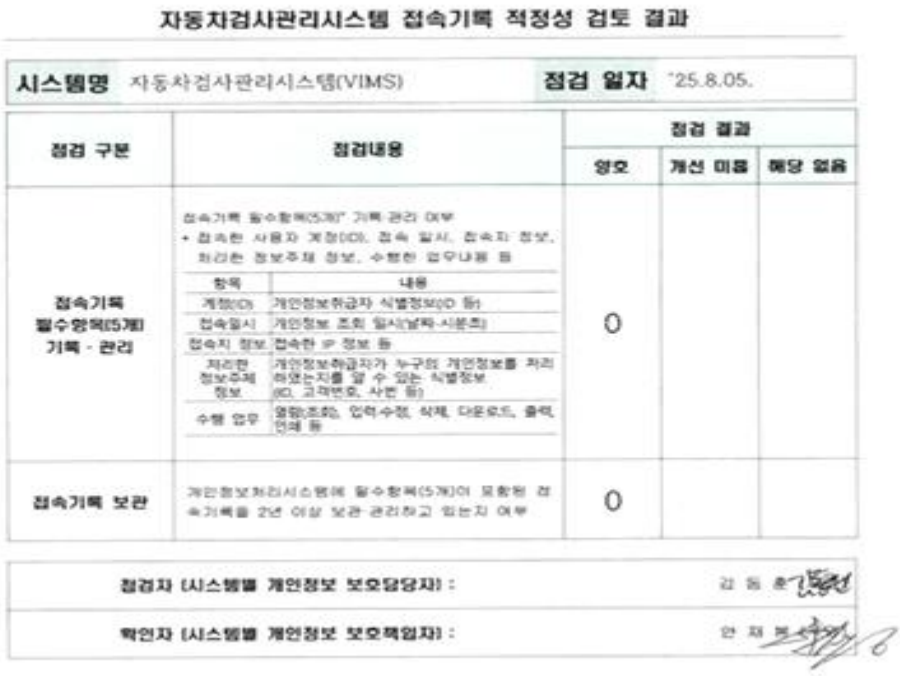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공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27식
○ 점검대상 기간 : '25. 06. 01. ~ '25. 08. 31.(7월분)
○ 점검내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현황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접속기록에 대한 비정상 행위점검

□ 행정사항
○ (공통)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정기 점검('25.9월분) 실시 및 결과 '25. 10. 15.(수) 공문 제출
○ (미제출 부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미제출 시(사유서 누락 시 포함) 정기 점검('25.8월분) 결과를 '25. 10. 15.(수)까지 공문 제출

Ⅱ 점검 결과 (보완 필요 : 1개 / 점검 필요 : 0개)

번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명	담당부서	점검 결과			
			점검일	접속기록		접근권한 처리유형
				결과	내용	
1	대표 홈페이지시스템	대외협력실	25.06.06	점검 완료	특이사항 없음	변동 없음
2	통합포털관리시템	디지털기획처	25.06.06	점검 완료	특이사항 없음	변동 없음
3	VOC고객의소리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원처	25.06.09	점검 완료	사유 확인 완료 - 다량 다운로드사유서	변동 없음
4	고객센터시스템	운영지원처	25.06.21	점검 완료	사유 확인 완료 - 다량 다운로드사유서 - 일일 접속한수 조과	변동 없음
5	운전자격관리시스템	모빌리티연구처	25.06.02	점검 완료	특이사항 없음	변동 없음
6	온수풀사업관리시스템	고객안전처	25.06.05	점검 완료	사유 확인 완료 - 다량 조회사유서 - 다량 다운로드사유서	신규변경필요 표현
7	안전운전체험교육시스템	자격교육처	25.06.01	점검 완료	사유 확인 완료 - 업무시간외 접속	신규변경
8	온라인 고용안전교육 통합 플랫폼시스템	자격교육처	25.06.02	점검 완료	사유 확인 완료 - 업무시간외 접속 - 일일 접속한수 조과	신규
9	안전기획종합관리시스템	자격교육처	25.06.02	점검 완료	특이사항 없음	신규필요
10	국가자격시험관리시스템(도로)	자격교육처	25.06.02	보완 필요	사유 확인 점검 - 다량 다운로드사유서	신규
11	운전학습통합장시스템	자격교육처	25.06.02	점검 완료	사유 확인 완료 - 일일 접속한수 조과	신규변경필요
12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기술진흥실무	25.06.04	점검 완료	사유 확인 완료 - 업무시간외 접속	필요
13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검사운영처	25.06.01	점검 완료	사유 확인 완료 - 업무시간외 접속 - 다량 다운로드사유서	신규변경필요 표현
14	TS 통합 업무고	기술안전처	25.06.02	점검 완료	특이사항 없음	변동 없음
15	시험장관리시스템	기술안전처	25.06.01	점검 완료	특이사항 없음	신규
16	통합검사관리시스템	통합검사처	25.06.03	점검 완료	특이사항 없음	신규변경필요
17	기계식주차장 정비시스템	하자관리처	25.06.01	점검 완료	사유 확인 완료 - 업무시간외 접속 - 일일 접속한수 조과	신규
18	항공고속훈련통합관리시스템	항공안전처	25.06.05	점검 완료	특이사항 없음	신규필요
19	항공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항공안전처	25.06.05	점검 완료	특이사항 없음	변동 없음
20	국가자격시험관리시스템(항공)	항공자격처	25.06.05	점검 완료	사유 확인 완료 - 다량 조회 - 일일 접속한수 조과	신규필요
21	드론비행관제시스템 (전자통합 포함)	드론관리처	25.06.06	점검 완료	사유 확인 완료 - 다량 다운로드사유서	신규
22	드론정보통합시스템	드론관리처	25.06.06	점검 완료	사유 확인 완료 - 다량 다운로드사유서	신규
23	국가자격시험관리시스템(철도)	철도안전처	25.06.01	점검 완료	특이사항 없음	신규필요
24	자동차하역설비시스템	설비관리처	25.06.06	점검 완료	특이사항 없음	신규
25	자동차안전연차관리시스템	자동차안전연구	25.06.04	점검 완료	특이사항 없음	신규
26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인사복무)	인재개발처	25.06.10	점검 완료	특이사항 없음	신규
27	통합경영관리시스템(회계계약)	재정회계처	25.06.05	점검 완료	특이사항 없음	신규필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결과 보고(VIMS시스템 예시)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접속기록 적정성 검토 결과

시스템명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점검 일자	'25.8.05.

점검 구분	점검내용	점검 결과		
		양호	개선 미흡	해당 없음
접속기록 필수항목(5개) 기록 · 관리	접속기록 필수항목(5개)* 기록 관리 여부 * 접속한 사용자 계정(ID), 접속 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한 업무내용 등 항목 / 내용 계정(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ID 등) 접속일시 / 개인정보 조회 일시(년월일 시분초) 접속지 정보 / 접속한 IP 정보 등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 (ID, 고객번호, 사번 등) 수행 업무 / 열람(조회), 입력·수정, 삭제, 다운로드, 출력, 인쇄 등	0		
접속기록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필수항목(5개)이 포함된 접속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0		

점검자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김 동 훈

확인자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안 재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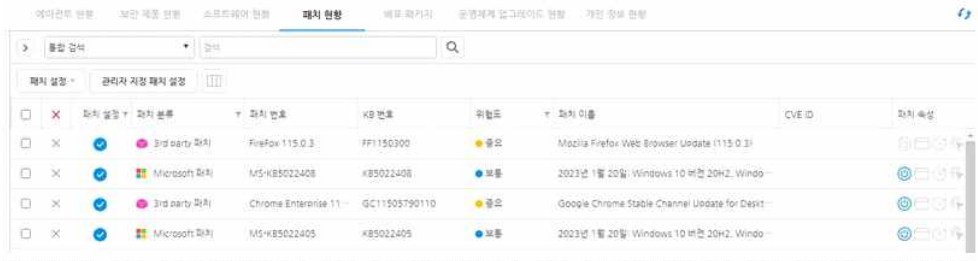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개인정보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를 위한 단말기 안전조치 점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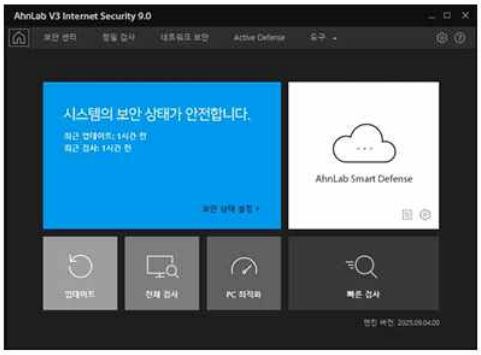
<시스템 및 단말기 보안 프로그램 등 구축·운영 현황>

번호	보안 프로그램 등	운영 여부
1	망 분리 구축 및 운영 현황	O
2	망연계(망간 스트리밍) (SBM)	O
3	네트워크 접근 제어 (NAC)	O
4	매체제어시스템 (UTMP)	O
5	엔드포인트 보안 (AhnLab EPP)	O
6	백신 (AhnLab V3)	O
7	내 PC 지키미 (GPI)	O
8	CMOS 암호 및 안전한 인증 수단 (OTP)	O

– 정책 설정 화면



- 사용자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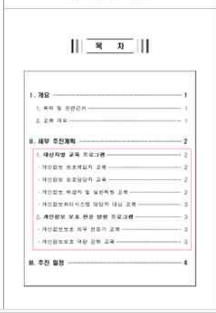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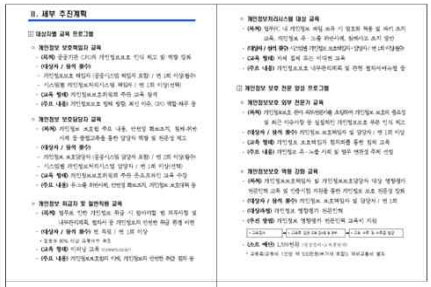


- 2025년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실적

○ 202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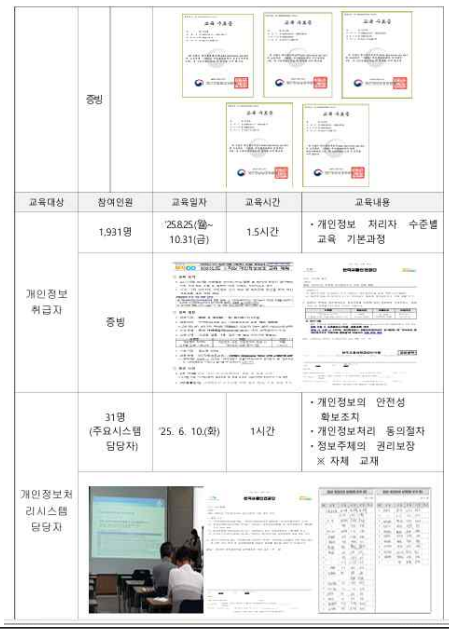






○ 202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적

교육대상	회차	성명	교육일자 및 시간	업무 수행기간	교육내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회차	최대진	'25. 2. 26.(수) [2시간]	'25.01 ~ 현재	• 개인정보처리 통합안내서
	2회차		'25. 3. 18.(수) [2시간]		•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3회차		'25. 4. 03.(목) [2시간]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심층논의
	4회차		'25. 4. 30.(수) [2시간]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전략
	5회차		'25. 5. 21.(수) [2.5시간]		• 인공지능 (AI) 시대의 정보주체 권리 강화전략
	6회차		'25.7.23~8.14 [26시간]		• 2025년 KISA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7회차		'25. 9. 3(수) [2시간]		• 2025년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전략 심층 논의
	증빙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1회차	문선희	'25.4.11.(금) [4시간]	'25.02 ~ 현재	• (2 5 년)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 과정
	2회차		'25.4.21.(월) [4시간]		• (2 5 년) 개인정보처리자 입문 과정
	3회차		'25.4.25.(금) [4시간]		• (2 5 년) 개인정보처리자 신기술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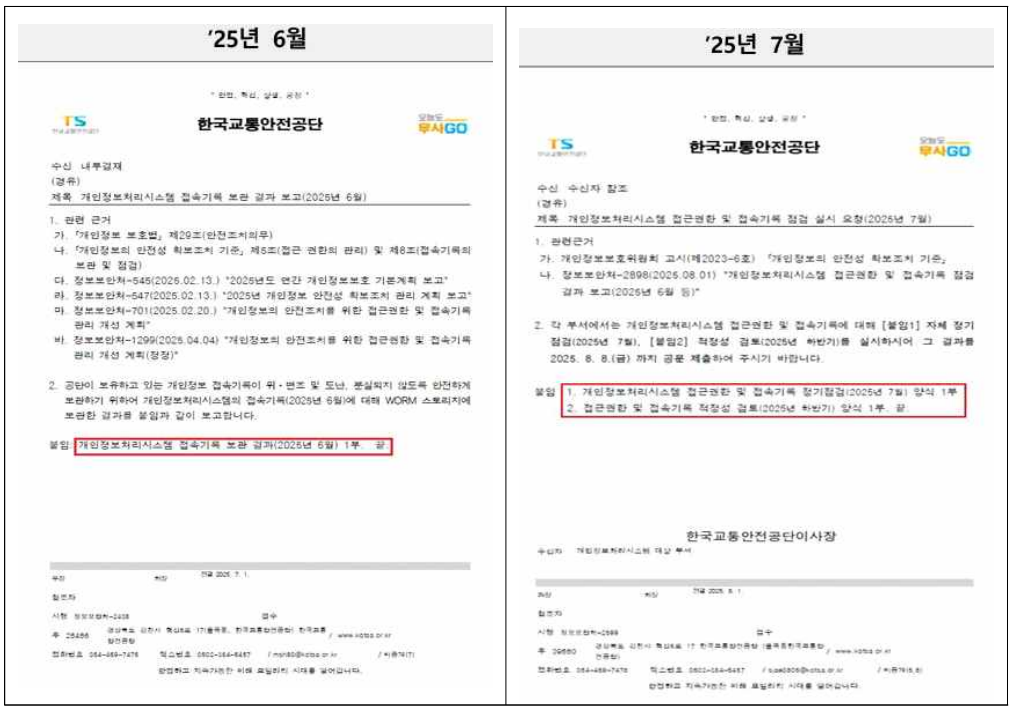


- 물리적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전산장비는 정보통신실 內 허가된 사용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키(지문·카드) 사용과 이중 출입 통제를 적용



- 매월 접속기록 및 다운로드에 관한사항 점검 결과



- 개인정보의 암호화 실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개인정보 암호화 점검 결과 제출

<2025년 개인정보 암호화 점검 계획 보고>



<2025년 개인정보 암호화 점검 결과 보고>



○ DB 內 암호화 저장 및 전송 구간(SSL) 암호 알고리즘 적용

- 개인정보 데이터 암호화하여 저장 및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

순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부서명	점검 결과	
			DB 내 암호화 저장	전송 구간 암호 알고리즘
1	대표 홈페이지시스템	대외협력실	O	O
2	VOC(고객의 소리) 통합관리 시스템	고객소통처	O	O
3	고객콜센터시스템	고객소통처	O	O
4	지역무관콜센터(채권관리)시스템	자동차정보처	O	O
5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교통안전처	O	O
6	안전운전체험교육시스템	교통안전교육처	O	O
7	온라인교통안전교육통합플랫폼	교통안전교육처	O	O

○ 개인정보 암호화 이행실적 화면

1. 대표 홈페이지시스템

1) 암호화 구성 및 정책

암호화 솔루션 명	암호 알고리즘	암호화 적용 항목
Thawte RSA CA(SSL)	SHA-256 RSA	전송구간

2) DB 내 암호화 적용 화면
- 대표 홈페이지시스템은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통합회원관리포탈을 통해 로그인

암호화 적용 항목	암호화 적용 화면
비밀번호	

3) 전송 구간 암호화 적용 화면



- 2025년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현장 점검 결과 보고/교육 실시



" 안전, 혁신, 상생, 공정 "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5년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현장 점검 결과 보고

1. 정보보안처-3302(2025.08.26) "2025년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현장 점검 계획" 관련입니다.

2.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및 교육 등 준수 여부를 점검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붙임 : 2025년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 1부. 끝.

협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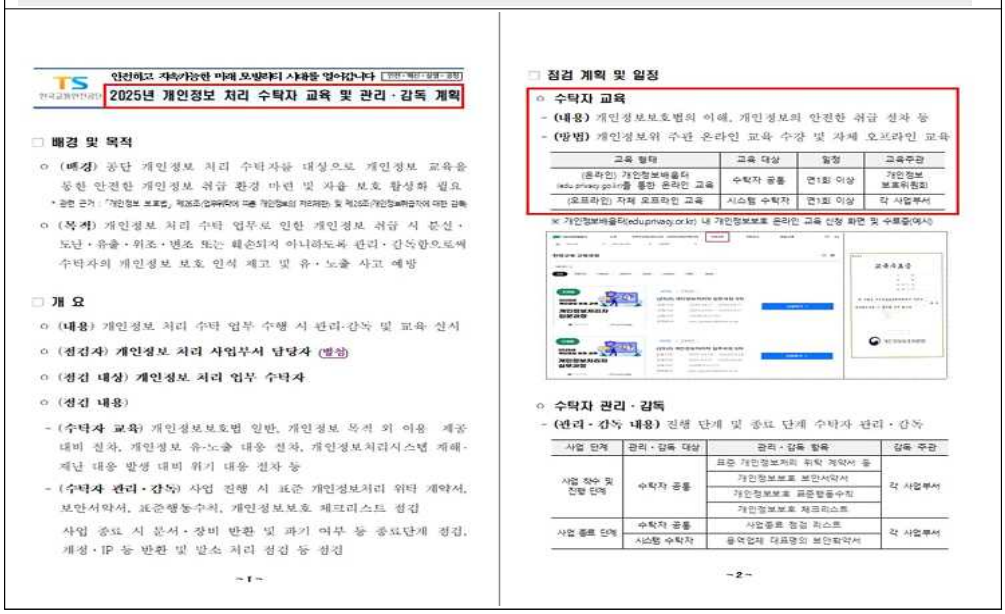
시행 정보보안처-3510 접수

우 28465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 www.kotsa.or.kr

전화번호 054-459-7475 팩스번호 0502-384-5457 / meh808@kotsa.or.kr / 비공개(5.6)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문서관리카드 정보보안처-3510 1/1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안전·혁신·상생·공정]

2025년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교육 및 관리·감독 계획

□ 배경 및 목적

○ (배경) 공단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통한 안전한 개인정보 취급 환경 마련 및 자율 보호 활성화 필요
*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및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목적) 개인정보 처리 수탁 업무로 인한 개인정보 취급 시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함으로써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및 유·노출 사고 예방

□ 개 요

○ (내용) 개인정보 처리 수탁 업무 수행 시 관리·감독 및 교육 실시

○ (점검자) 개인정보 처리 사업부서 담당자 (발췌)

○ (점검 대상)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탁자

○ (점검 내용)

- (수탁자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일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공 대비 실차,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 실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해·재난 대응 발생 대비 위기 대응 실차 등
- (수탁자 관리·감독) 사업 진행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보안서약서, 표준행동수칙,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 점검

사업 종료 시 문서·장비 반환 및 파기 여부 등 종료단계 점검, 계정·IP 등 반환 및 말소 처리 점검 등 점검

~1~

□ 점검 계획 및 일정

○ 수탁자 교육

-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 실차 등
- (방법) 개인정보위 주관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자체 오프라인 교육

교육 형태	교육 대상	일정	교육주관
(온라인) 개인정보바울터 (edu.privacy.go.kr)를 통한 온라인 교육	수탁자 공통	연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오프라인) 자체 오프라인 교육	시스템 수탁자	연1회 이상	각 사업부서

※ 개인정보바울터(edu.privacy.go.kr) 내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신청 화면 및 수료증(예시)

○ 수탁자 관리·감독

- (관리·감독 내용) 진행 단계 및 종료 단계 수탁자 관리·감독

사업 단계	관리·감독 대상	관리·감독 항목	감독 주관
사업 착수 및 진행 단계	수탁자 공통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등	각 사업부서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표준행동수칙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	
사업 종료 단계	수탁자 공통	사업종료 점검 리스트	각 사업부서
	시스템 수탁자	폐약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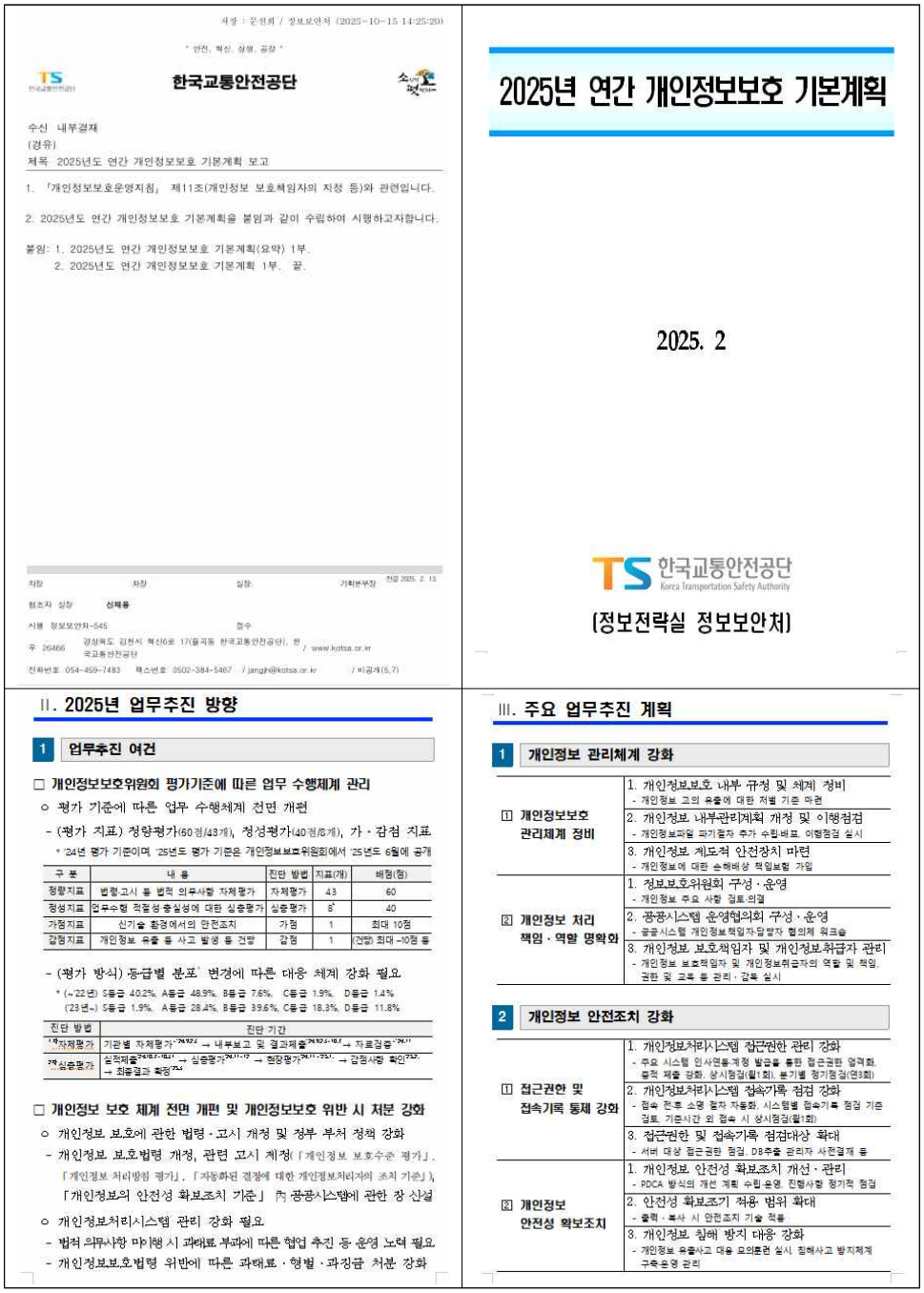
항목 설명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사항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

	는지에 대해 연 1회 이상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이행실태 점검은 조직 내부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환경 전반에 대하여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실태가 충실히 점검될 수 있도록 점검계획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 ●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결과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문제점으로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평가 예시	● 이행 : 내부 관리계획에 대한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는 경우 ● 미이행 :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내부 관리계획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1.2.3</td><td>●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태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연간 수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개인정보보호 연간 계획 수립 및 공식적 시행
② 연간 계획 포함사항[(조직/인력, 활동계획/예산, 실태점검, 교육(일정, 담당자, 취급자/일반직원 대상) 등 구체적 방안 포함]
③ 계획에 따른 활동 여부의 정기적 검토 및 CPO 보고</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교통안전공단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2025년 02월『2025년 연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시스템별) 지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개인정보 관련 절차서 개정, 개인정보파일 관리 계획 보고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연간 수행 활동을 시행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점검]
<table><tr><th>필수항목</th><th>관련 계획</th><th>적절성</th></tr><tr><td>1. 개인정보보호 조직, 인력</td><td>• 『2025년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계획』</td><td>○</td></tr><tr><td>2.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계획</td><td>• 『2025년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계획』</td><td>○</td></tr><tr><td>3. 개인정보보호 활동 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td><td>• 『2025년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계획』</td><td>○</td></tr><tr><td>4.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책임자, 담당자, 취급자/일반직원 대상) 등</td><td>• 『2025년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계획』
• 『202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td><td>○</td></tr><tr><td colspan="3">[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table>
[평가근거]

- 2025년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계획
<table><tr><td></td><td></td></tr></table></td></tr>
</table>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5년도 연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보고

1.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와 관련입니다.

2. 2025년도 연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합니다.

붙임: 1. 2025년도 연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요약) 1부.
2. 2025년도 연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1부. 끝.

2025년 연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2025. 2

한국교통안전공단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정보전략실 정보보안처]

Ⅱ. 2025년 업무추진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평가기준에 따른 업무 수행체계 관리

○ 평가 기준에 따른 업무 수행체계 전면 개편

- (평가 지표) 정량평가(60점/43개), 정성평가(40점/6개), 가·감점 지표

* '24년 평가 기준이며, '25년도 평가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5년도 6월에 공개

구 분	내 용	진단 방법	지표(개)	배점(점)
정량지표	법령고시 등 법적 의무사항 자체평가	자체평가	43	60
정성지표	업무수행 적절성·충실성에 대한 심층평가	심층평가	8	40
가점지표	신기술 환경에서의 안전조치	가점	1	최대 10점
감점지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등 건당	감점	1	(건당) 최대 -10점 등

- (평가 방식) 등급별 분포 변경에 따른 대응 체계 강화 필요

* (~'22년) S등급 40.2%, A등급 48.9%, B등급 7.6%, C등급 1.9%, D등급 1.4%
('23년~) S등급 1.9%, A등급 28.4%, B등급 39.6%, C등급 18.3%, D등급 11.8%

진단 방법	진단 기간
1단 자체평가	기관별 자체평가 → 내부보고 및 결과제출 → 자료검증
2단 심층평가	실적제출 → 심층평가 → 현장평가 → 감점사항 확인 → 최종결과 확정

□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면 개편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 시 처분 강화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고시 개정 및 정부 부처 정책 강화

-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정, 관련 고시 제정(「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공공시스템에 관한 장·신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강화 필요

-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협업 추진 등 운영 노력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형벌·과징금 처분 강화

Ⅲ. 주요 업무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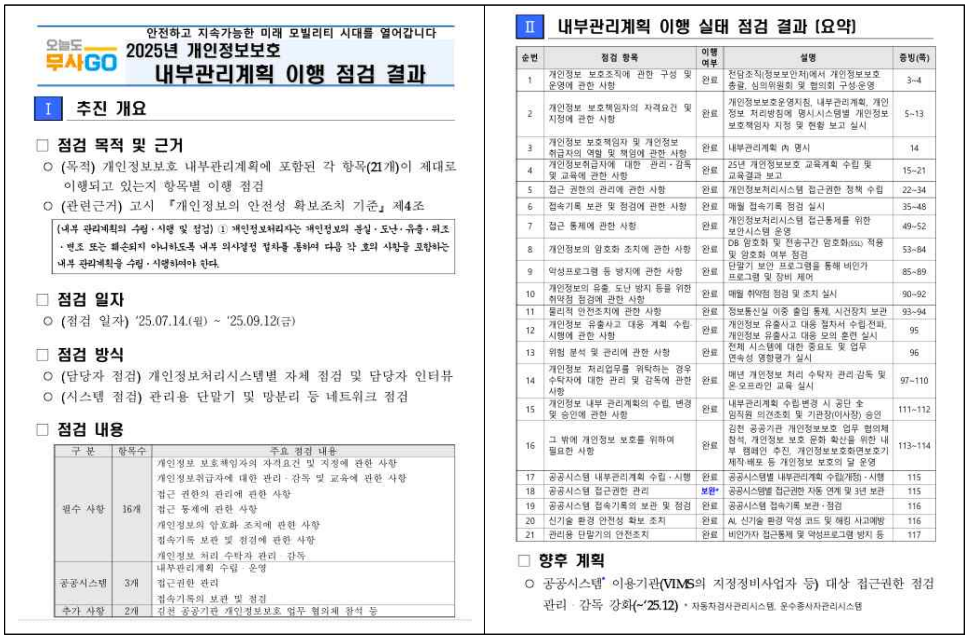
1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비	1. 개인정보보호 내부 규정 및 체계 정비 - 개인정보 고의 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
	2.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 및 이행점검 - 개인정보파일 과기점자 추가 수립바표, 이행점검 실시
	3. 개인정보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개인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2 개인정보 처리 책임·역할 명확화	1. 정보보호위원회 구성·운영 - 개인정보 주요 사항 점토·의결
	2. 공공시스템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공공시스템 개인정보책임자·담당자 협의체 워크숍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권한 및 교육 등 관리·감독 실시

2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1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통제 강화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강화 - 주요 시스템 인사연동계정 발급을 통한 접근권한 업격화, 증적 제출 강화, 상시점검(월1회), 분기별 정기점검(연3회)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강화 - 접속 전후 소명 절차 자동화, 시스템별 접속기록 점검 기준 점토, 기준시간 외 접속 시 상시점검(월1회)
	3.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점검대상 확대 - 서버 대상 접근권한 점검, DB추출 관리자 사전결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선·관리 - PDCA 방식의 개선 계획 수립·운영, 진행사항 정기적 점검
	2. 안전성 확보조기 적용 범위 확대 - 출력·복사 시 안전조치 기술 적용
	3. 개인정보 침해 방지 대응 강화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 침해사고 방지체계 구축운영 관리

- 2025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결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오늘도 무사GO 2025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 점검 결과

Ⅰ 추진 개요

□ 점검 목적 및 근거

○ (목적)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포함된 각 항목(21개)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항목별 이행 점검

○ (관련근거)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점검 일자

○ (점검 일자) '25.07.14.(월) ~ '25.09.12(금)

□ 점검 방식

○ (담당자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자체 점검 및 담당자 인터뷰

○ (시스템 점검) 관리용 단말기 및 망분리 등 네트워크 점검

□ 점검 내용

구 분	항목수	주요 점검 내용
필수 사항	16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 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관리 · 감독
공공시스템	3개	내부관리계획 수립 · 운영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추가 사항	2개	집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 협의체 참석 등

Ⅱ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 결과 (요약)

순번	점검 항목	이행 여부	설명	증빙(쪽)
1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완료	전담조직(정보보안처)에서 개인정보보호 총괄, 심의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	3~4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완료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현황 보고 실시	5~13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완료	내부관리계획 內 명시	14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 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완료	2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결과 보고	15~21
5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완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정책 수립	22~34
6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완료	매월 접속기록 점검 실시	35~48
7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완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를 위한 보안시스템 운영	49~52
8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완료	DB 암호화 및 전송구간 암호화(SSL) 적용 및 암호화 여부 점검	53~84
9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완료	단말기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비인가 프로그램 및 장비 제어	85~89
10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완료	매월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실시	90~92
11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완료	정보통신실 이중 출입 통제, 시건장치 보관	93~94
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완료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서 수립 전파,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모의 훈련 실시	95
13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완료	전체 시스템에 대한 중요도 및 업무 연속성 영향평가 실시	96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완료	매년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관리·감독 및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97~110
15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완료	내부관리계획 수립 변경 시 공단 全 임직원 의견조회 및 기관장(이사장) 승인	111~112
1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완료	집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 협의체 참석,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내부 캠페인 추진, 개인정보보호함면보호기 제작·배포 등 개인정보 보호의 달 운영	113~114
17	공공시스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완료	공공시스템별 내부관리계획 수립(7개) · 시행	115
18	공공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보완*	공공시스템별 접근권한 자동 연계 및 3년 보관	115
19	공공시스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완료	공공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 점검	116
20	신기술 환경 안전성 확보 조치	완료	AI, 신기술 환경 악성 코드 및 해킹 사고예방	116
21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완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및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117

□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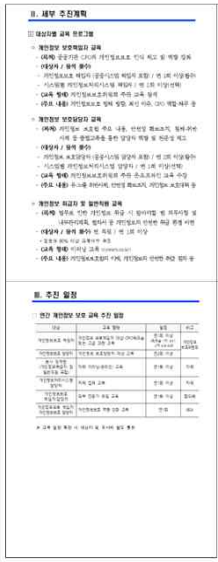
○ 공공시스템* 이용기관(VIMS의 지정정비사업자 등) 대상 접근권한 점검 관리 · 감독 강화(~'25.12) * 자동차점사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 2025년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교육 실적

○ 202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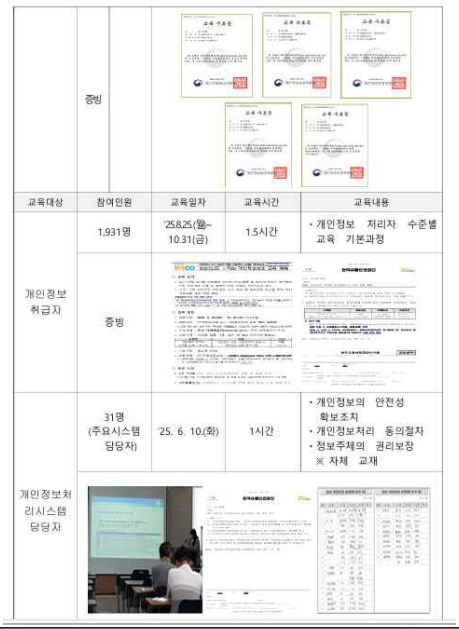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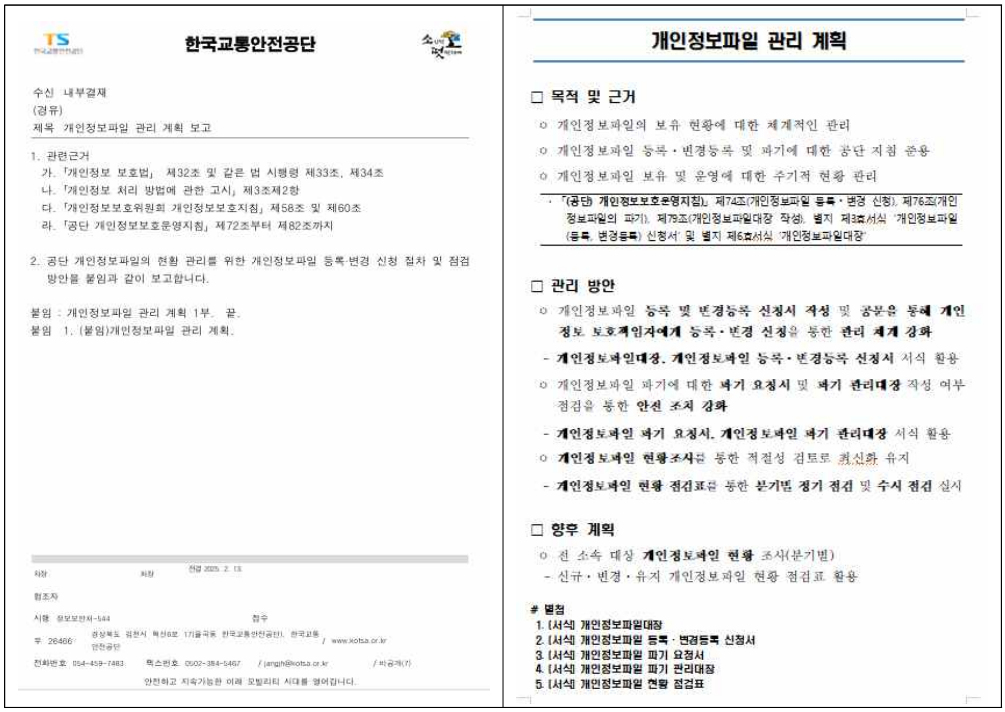


○ 202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적

교육대상	회차	성명	교육일자 및 시간	업무 수행기간	교육내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회차	최대진	'25. 2. 26.(수) [2시간]	'25.01 ~ 현재	• 개인정보처리 통합안내서
	2회차		'25. 3. 18.(수) [2시간]		•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3회차		'25. 4. 03.(목) [2시간]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심층논의
	4회차		'25. 4. 30.(수) [2시간]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전략
	5회차		'25. 5. 21.(수) [2.5시간]		• 인공지능 (AI) 시대의 정보주체 권리 강화전략
	6회차		'25.7.23~8.14 [26시간]		• 2025년 KISA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7회차		'25. 9. 3(수) [2시간]		• 2025년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전략 심층 논의
	증빙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1회차	문선희	'25.4.11.(금) [4시간]	'25.02 ~ 현재	• (2 5 년)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 과정
	2회차		'25.4.21.(월) [4시간]		• (2 5 년) 개인정보처리자 입문 과정
	3회차		'25.4.25.(금) [4시간]		• (2 5 년) 개인정보처리자 신기술과정



- 개인정보파일 관리 계획 보고

<table>
<tr><td></td><td>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정보파일 관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나.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8조 및 제60조
라. 「공단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72조부터 제82조까지

2. 공단 개인정보파일의 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 신청 절차 및 점검 방안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파일 관리 계획 1부. 끝.
붙임 1. (붙임)개인정보파일 관리 계획.

개인정보파일 관리 계획

□ 목적 및 근거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및 파기에 대한 공단 지침 준용
○ 개인정보파일 보유 및 운영에 대한 주기적 현황 관리
- 「(공단)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74조(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 신청), 제76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제79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파일대장'

□ 관리 방안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및 공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등록·변경 신청**을 통한 **관리 체계 강화**
- **개인정보파일대장,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서식 활용
○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대한 **파기 요청서** 및 **파기 관리대장** 작성 여부 점검을 통한 **안전 조치 강화**
-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서식 활용
○ **개인정보파일 현황조사**를 통한 적절성 검토로 **최신화** 유지
- **개인정보파일 현황 점검표**를 통한 **분기별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 실시

□ 향후 계획
○ 전 소속 대상 **개인정보파일 현황** 조사(분기별)
- 신규·변경·유지 개인정보파일 현황 점검표 활용

별첨
1. (서식) 개인정보파일대장
2. (서식)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3.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4.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5. (서식) 개인정보파일 현황 점검표</td></tr>
<tr><td>항목 설명</td><td>●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태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연간 수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조직 구성원에게 대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전달하고 보안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 교육계획에는 교육대상 및 목적, 교육내용, 일정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관한 일반적·전문적 내용을 포함한다.</td></tr>
<tr><td>평가 예시</td><td>● 이행 :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서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계획 등에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내부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 부분이행 :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경우</td></tr>
<tr><td>관련 법률 및 문서</td><td>●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td></tr>
</table>

영향평가 영역	1.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평가분야	1.3 개인정보 침해대응
평가 목적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고 처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성하는지를 점검합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취약점 점검 및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세부 분야	침해사고 신고방법 안내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1.3.1	●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할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안내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평가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절차서』VI.(정보주체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신고.접수, 상담.문의 등 각종 민원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표 홈페이지의『개인정보처리방침』제18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음. [평가근거]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VI.(정보주체 피해 구제 및 재발방지)				

Ⅵ 정보주체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개인정보가 유출등으로 인한 정보주체 피해구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1. 정보주체 피해 구제

○ (유출 여부 조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유출등여부 등을 확인가능하도록 별도의 홈페이지 등을 제공

- 본인확인 수단으로 핸드폰, 이메일 인증 등을 활용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는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
- 해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웹 취약점 제거, 전송구간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이행

○ (민원대응)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신고·접수, 상담·문의 등 각종 민원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

- 개인정보 유출등 문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 스크립트를 운영하고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등 사실,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
- 유출등 규모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민원대응을 위해 민원대응 전담부서 운영, 통신회선 증설 등이 필요

< 털린 내 정보 찾기(http://kidc.eprivacy.go.kr) >



-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표 홈페이지의『개인정보처리방침』제18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table>
<tr><td></td><td>

제18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ecrm.cyber.go.kr)

③「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td></tr>
<tr><td>항목 설명</td><td>● 정보주체(또는 대리인)가 침해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홈페이지, 관보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한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td></tr>
<tr><td>평가 예시</td><td>● 이행 : 개인정보 침해신고 절차를 수립하고 신고방법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안내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 침해신고 절차는 수립하였으나, 안내하고 있지 않은 경우</td></tr>
<tr><td>관련 법률 및 문서</td><td>●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사실의 신고 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59조(침해사실의 신고 등)
● 표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제19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기재사항)</td></tr>
</table>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유출사고 대응</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1.3.2</td><td>●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 절차, 긴급 연락체계, 사고 대응 조직 구성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 수립 및 공식적 시행
② 이해관계자 공유
③ 모의훈련(연 1회 이상 정기적 실시) - 권고</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Ⅶ.2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유출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개인정보처리 환경의 특징을 반영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였으며, 2025년 2월에 개정하여 기관장에 결재를 받아 그룹웨어 게시판에 공유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에는 법적 근거, 적용 범위 및 용어 정의, 유출 대응 업무수행 체계, 단계별 프로세스(업무 절차), 단계별 프로세스(업무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연락망 등 긴급 연락체계를 포함하고 있음.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점검]
<table>
<tr><th>필수항목</th><th>『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절차서』 관련조항</th><th>적절성</th></tr>
<tr><td>1.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및 통지 절차</td><td>V.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체계 구축</td><td>○</td></tr>
<tr><td>2. 비상연락망 등 긴급 연락체계</td><td>별첨 1. 비상연락망</td><td>○</td></tr>
<tr><td>3. 사고 대응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R&R)</td><td>Ⅲ. 개인정보 유출 등 대응체계 구축</td><td>○</td></tr>
<tr><td>4. 침해사고 유형별 조치 방법 및 절차</td><td>별첨 5.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유형 및 대응방안</td><td>○</td></tr>
<tr><td>5. 정보주체 피해구제 방법</td><td>Ⅵ 정보주체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td><td>○</td></tr>
<tr><td colspan="3">[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
</table>
[평가근거]</td></tr>
</table>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VI.9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

9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 수립 · 시행

1)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참고

3)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에는 긴급조치, 유출 통지·조회 및 신고 절차,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 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서』 개정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절차서

2025. 2.

TS 한국교통안전공단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기 획 본 부 정 보 보 안 처

제·개정 이력

순번	제·개정 주요내용	제·개정일자	수행자
1	· 최초 작성	2021.04.28	김용호
2	· 내용 현행화	2022.04	강효중
3	· 내용 현행화(담당자 반영 등)	2022.07	양준검
4	· 신고 내용 추가, 내용 현행화	2023.08	장지혜
5	· 법령 개정 반영, 대응 절차 및 내용 현행화	2023.11	장지혜
6	· 대응 절차 및 내용 현행화	2024.08	장지혜
7	· 접근 권한 관리대상 시스템 현행화	2025.02	장지혜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서』 본문

목 차

Ⅰ. 대응 절차 요약 ····· 1
Ⅱ. 개인정보 유출등 개요 ····· 2
1. 필요성 ····· 2
2. 개인정보 유출등 정의 ····· 2
3. 적용 범위 ····· 3
4. 법적 의무사항 ····· 3
Ⅲ.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체계 구축 ····· 7
1. 개인정보 유출등 사실 이사장 보고 ····· 7
2.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신속 대응팀 구성 운영 ····· 8
Ⅳ. 피해 최소화 및 긴급 조치 ····· 10
1. 해킹에 의한 경우 ····· 10
2. 내부자가 유출한 경우 ····· 10
3. 이메일 오발송에 의한 경우 ····· 11
4.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경우 ····· 11
5.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 차단 ····· 11
Ⅴ.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및 신고 ····· 13
1.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 12
2.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 17
Ⅵ. 정보주체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 20
1. 정보주체 피해 구제 ····· 20
2.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23

서식
1. 유·노출방지 정기점검 ····· 24
2. 노출예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25

별첨
1. 비상연락망 ····· 26
2. 관련 법률 ····· 27
3. 유출등 신고서 양식 ····· 32
4. 해킹에 의한 유출 시 조치사항 ····· 33
5. 경찰 수사 및 침해사고 신고 ····· 36
6.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유형 및 대응방안 ····· 37

Ⅰ 대응 절차 요약

1. 유출등 대응체계 구축

개인정보처리자 의사결정

개인정보유출등 사고신속대응팀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총괄 지휘,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신속대응팀 구성 운영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등 통지, 개인정보보위 또는 KISA에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 · **(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위 · KISA에 정확사고 신고, 사고경위 분석, 시스템 복구 등 침해대응 · **(고객지원 부서)** 정부, 언론사, 이용자 민원 대응, 이용자 피해구제 분쟁조정 기구 안내

2. 피해 최소화 및 긴급 조치

해킹	시스템 분리/차단 조치, 로그 등 증거자료 확보, 유출등 원인 분석,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 변경 등
내부자	유출등 경로 확인, 유출등에 활용된 컴퓨터/USB/이메일/출력물 등 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확인, 비정상 접근 경로 차단 등
이메일	발송 이메일 즉시 회수, 수신자에게 오발송 메일 삭제 요청, 대량망 메일서버 운영자에게 파일 삭제 요청, 파일 전송시 암호화 등
노출	· 검색엔진 :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요청, 로봇배제 규칙 적용 등 · 시스템 오류 : 소스 코드, 서버 설정 등 원인 파악 및 수정 등 · 홈페이지 게시 : 게시글 삭제, 정부패널에서 개인정보 마스킹 등

3. 유출등 통지 및 신고

근거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 등의 통지·신고)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법률간의 관계		일반법	특별법
적용 대상		개인정보처리자	신용정보회사등에서의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한정
적용 범위		개인정보 유출등 등	개인신용정보 누설
의무 사항		통지 및 신고	
벌칙 규정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출등 통지	규모	1명 이상	
	시점	72시간 이내	5일 이내
	방법	홈페이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	
	항목	유출등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 대응조치 및 피해	
유출등 신고	규모	1. 1천명 이상, 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유출등 등 3.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 등	1만명 이상
	시점	72시간 이내	5일 이내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4.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정보주체 피해 구제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유출등여부 조회 기능 제공 · 유출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 상담, 문의 등 각종 민원대응 방안 마련 · 유출등 대응 현장 혼란 최소화 방안 강구 ·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유의 사항 안내 · 피해 보상 계획 마련 및 관련 제도 안내 등
	· 개인정보 유출등 원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Ⅱ 개인정보 유출 개요

1. 개인정보 유출 정의

○ 개인정보의 유출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에 따라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 신용정보법 제39조의4에 따른 '누설'을 포함

2. 법률과의 관계 및 적용 범위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상거래기업 및 법인)은 「신용정보법」 제39조의4가 우선 적용됩니다.

항목 설명	● 침해사고 대응체계 수립 내용에는 침해사고 처리절차 수립, 침해사고 발생 시 연락체계 구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와의 공조여부, 처리내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통합보안관제를 통해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취약점 점검과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통보하고, 유출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의 유출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평가 예시	● 이행 : 침해사고 대응절차가 문서화 되어있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활동이 포함되어 문서로 정의되어 있고, 통합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실행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만 수립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활동이 문서화 또는 안내하지 않거나 실시하지도 않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사실의 신고 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 표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 ● 표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제26조(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 ● 표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제27조(유출 통지방법) ● 표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제28조(개인정보의 유출신고 등) ● 표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제29조(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등) ● 표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제30조(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

영향평가 영역	1.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평가분야	1.4 정보주체 권리보장
평가 목적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절차가 존재하며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지 점검합니다.

세부 분야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수립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1.4.1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수집출처 고지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정보주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수집출처 고지 등 요구 절차 수립 및 공식적 시행 ② 요구 처리절차 내용(유형별 대응 절차, 접수부서/담당자, 관리대장, 본인 확인 절차, 요구 거절 기준 및 절차 등) ③ 열람요구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 제공 ④ 권리보장 절차의 이해관계자 공유 ⑤ 법 제17조제1항1호(제3자 제공 동의)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경우 수집출처 고지 의무 준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평가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6장(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서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수집출처 고지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표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에서 정보주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불복 시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내용 및 요구 방법,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담당부서 및 담당자와 연락처를 게시하여 공개하고 있음. ● 대표 홈페이지의『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신청을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등의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필수항목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관련조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조항	적절성
1. 정보주체 요구 유형(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수집출처 요구)에 따른 대응 절차	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1절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제1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
2. 정보주체 요구 접수 부서 및		제17조 개인정보	○

담당자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및 담당자 연락처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절 권리행사의 절차	제1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
4. 정보주체 요구 거절 기준 및 이에 따른 절차 등	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1절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제1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해당없음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87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제87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③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88조제1항에 따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89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89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86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공단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삭제에 관한 요구 사항을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89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89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86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공단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삭제에 관한 요구 사항을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90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90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공단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2조 및 제74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표 홈페이지『개인정보처리방침』

<table>
<tr><td></td><td>

제1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의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내정보관리'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하거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마이페이지 >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민원·신고 > 상담문의'를 통해 자동화된 결정의 설명 및 거부 요구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 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 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td></tr>
<tr><td>항목 설명</td><td>

●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수집출처 고지 등의 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관련된 신청양식을 만들고 신청을 처리한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용어설명]

❖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

❖ 처리 정지 : 상기에 기술된 처리 관련 업무의 정지를 말함

</td></tr>
<tr><td>평가 예시</td><td>

● 이행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수집출처 고지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수집출처 고지에 대한 일부 절차만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 경우

</td></tr>
<tr><td>관련 법률 및 문서</td><td>

●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td></tr>
</table>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대상·방법·절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연기 및 거절)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 표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제9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 표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제31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 표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제32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표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제33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 표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제34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세부 분야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안내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1.4.2	●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개인정보 처리자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 마련 ② 처리결과 통지 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방법 안내				
평가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9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절차서』'VI. 정보주체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에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피해 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기술되어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표 홈페이지의『개인정보처리방침』권익침해 구제방법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음.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9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9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86조에 따른 열람, 제89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90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91조에 따른 거부·설명 등의 요구,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을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공단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제101조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금액을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절차서』 VI. 정보주체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Ⅵ 정보주체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개인정보가 유출등으로 인한 정보주체 피해구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1. 정보주체 피해 구제

○ (유출 여부 조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유출등여부 등을 확인가능하도록 별도의 홈페이지 등을 제공

- 본인확인 수단으로 핸드폰, 이메일 인증 등을 활용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는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
- 해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웹 취약점 제거, 전송구간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이행

○ (민원대응)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신고·접수, 상담·문의 등 각종 민원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

- 개인정보 유출등 문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 스크립트를 운영하고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등 사실,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
- 유출등 규모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민원대응을 위해 민원대응 전담부서 운영, 통신회선 증설 등이 필요

< 털린 내 정보 찾기(http://kidc.eprivacy.go.kr) >



- 대표 홈페이지의『개인정보처리방침』제1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table>
<tr><td></td><td>
제18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ecrm.cyber.go.kr)

③「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td></tr>
<tr><td>항목 설명</td><td>● 개인정보 처리자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에게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도록 한다.</td></tr>
<tr><td>평가 예시</td><td>● 이행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관보 등에 안내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를 일부만 수립하고 있거나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보 등에 안내하고 있지 않은 경우</td></tr>
<tr><td>관련 법률 및 문서</td><td>●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td></tr>
</table>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안내</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1.4.3</td><td>●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 통지하는 절차 수립 및 시행
②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 구현 및 통지</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의『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9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도록 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정보주체(내압용기 검사 대상자)의 수가 7만 여명으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는 해당 없음.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 통지 현황 점검]
<table><tr><th colspan="2">개인정보 처리업무</th><th>점검 결과</th><th>적절성</th></tr><tr><td>내압용기 온라인 예약 시스템</td><td>내압용기온라인예약관리</td><td>해당 없음</td><td>-</td></tr><tr><td colspan="4">[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table>
[평가근거]
- 업무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9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td></tr>
</table>

	제9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86조에 따른 열람, 제89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90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91조에 따른 거부·설명 등의 요구,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을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공단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제101조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금액을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항목 설명	●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정보주체의 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의무 대상이 된다. ①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②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통지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통지하고 있으나 일부 누락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2]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2.1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2.2 개인정보파일 관리	• 개인정보파일대장 관리 • 개인정보파일 등록
2.3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

영향평가 영역	2.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평가분야	2.1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평가 목적	●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하였는지를 점검합니다. ●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역할 및 책임 부여,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작성 등 관리·감독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세부 분야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2.1.1	●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최소한의 인원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마련 ② 개인정보취급자의 목록 관리(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포함)				

평가 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14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서 ① 부서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Ⅵ.1.1(접근 권한 관리)"에서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개별 부여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정책」 Ⅱ. 접근권한 관리체계 □ 접근권한 관리 기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행정정보 열람 등 모든 접근권한은 법령 또는 업무규정 등에 따라 허용된 자에 한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하여야 한다.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의 중요 개인정보는 업무 수행 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사업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부서의 담당자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여 권한 부여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개인정보 취급자의 지정 현황 점검]

세부 기준	점검 결과	적절성
① 최소한 범위 지정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58조(접근권한의	○

기준 마련		관리)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VI.1.1(접근 권한 관리)	
② 개인정보 취급자 목록 관리	업무 담당자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
	개발자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14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14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개별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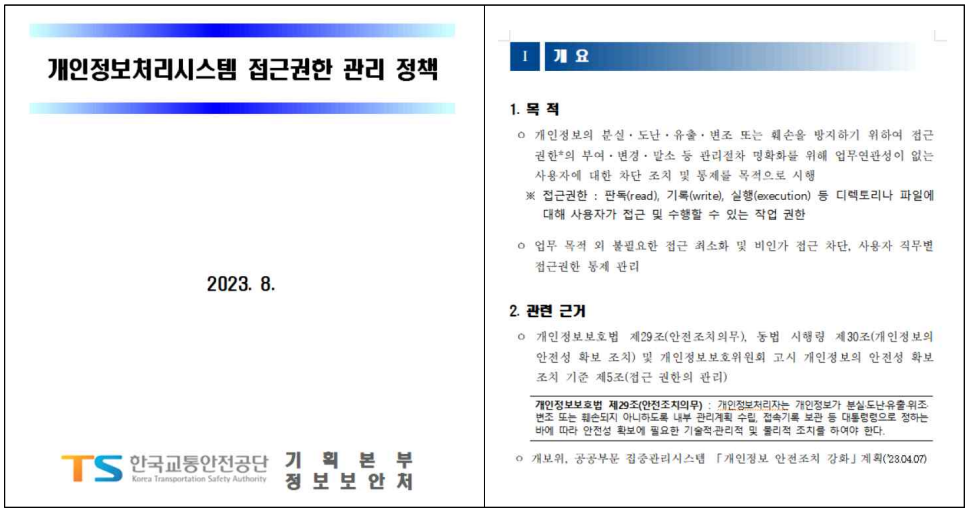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VI.1.1(접근 권한 관리)

1. 접근권한 관리

1)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개별 부여하여야 한다.

- 계정별 이용 권한은 업무 편의를 위해 권한을 대메뉴 단위로 부여하는 행위는 지양하고, 소메뉴 단위로 부여한다.
- 접근권한 관리담당자는 접근권한 신청자에게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계정은 취급자별 개별계정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정책」 II. 접근권한 관리체계 □ 접근권한 관리 기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정책

2023. 8.

한국교통안전공단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기 획 본 부 정 보 보 안 처

Ⅰ 개 요

1. 목 적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 관리절차 명확화를 위해 업무연관성이 없는 사용자에 대한 차단 조치 및 통제를 목적으로 시행

※ 접근권한 : 판독(read), 기록(write), 실행(execution) 등 디렉토리나 파일에 대해 사용자가 접근 및 수행할 수 있는 작업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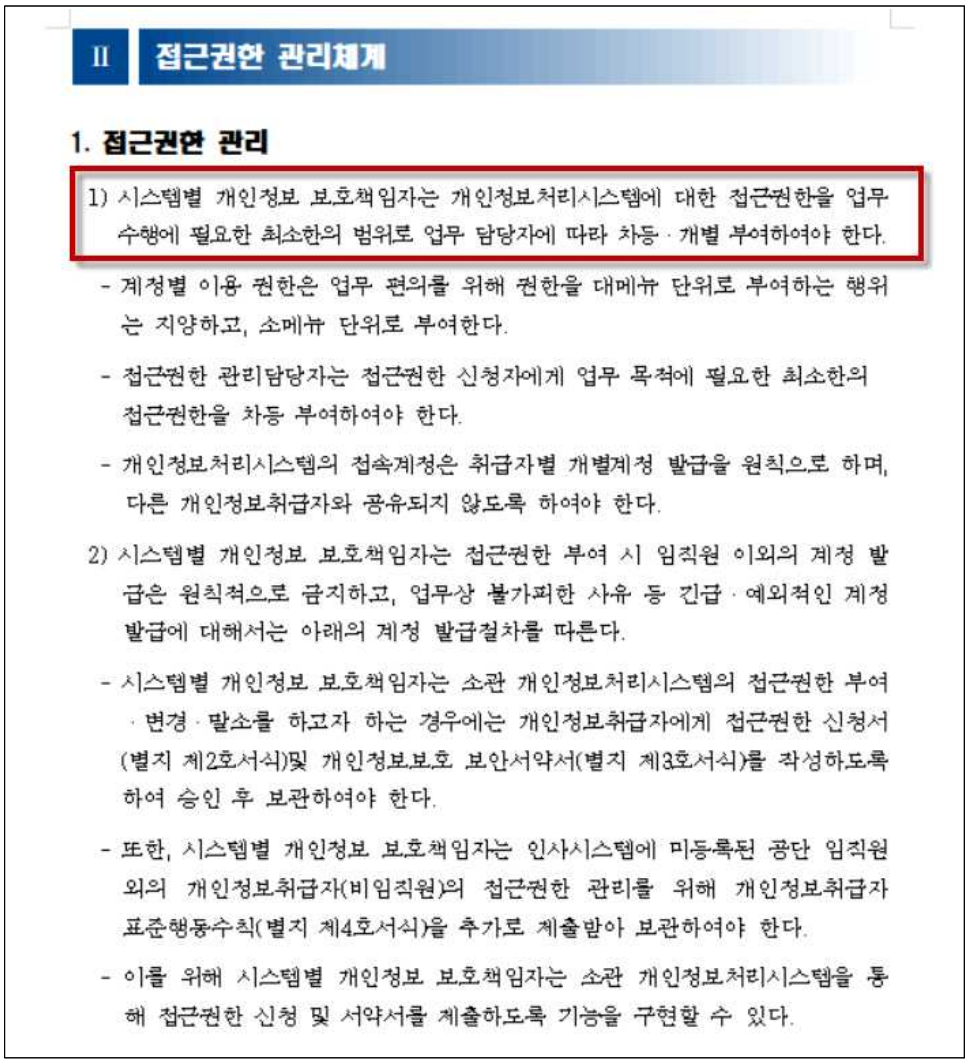
○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 최소화 및 비인가 접근 차단, 사용자 직무별 접근권한 통제 관리

2.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보위,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계획('23.04.07)



Ⅱ 접근권한 관리체계

1. 접근권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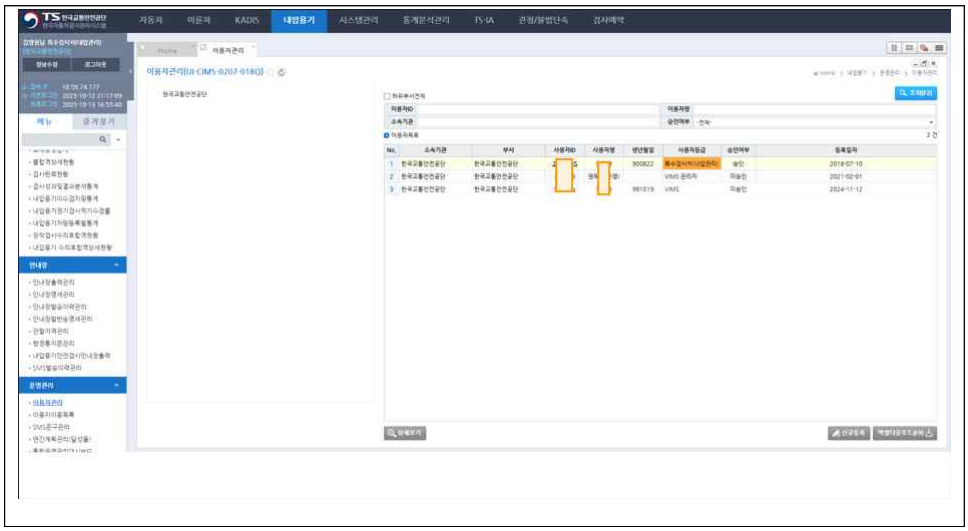
1)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개별 부여하여야 한다.

- 계정별 이용 권한은 업무 편의를 위해 권한을 대메뉴 단위로 부여하는 행위는 지양하고, 소메뉴 단위로 부여한다.
- 접근권한 관리담당자는 접근권한 신청자에게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계정은 취급자별 개별계정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부여 시 임직원 이외의 계정 발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 등 긴급·예외적인 계정 발급에 대해서는 아래의 계정 발급절차를 따른다.

-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접근권한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및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 승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 또한,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인사시스템에 미등록된 공단 임직원 외의 개인정보취급자(비임직원)의 접근권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 표준행동수칙(별지 제4호서식)을 추가로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접근권한 신청 및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2조(계정 관리)

	제72조(계정 관리) ① 부서장은 사용자에게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아이디)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별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접근권한 부여 2. 외부인에게 계정을 부여하지 아니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보안조치 후 필요한 업무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 접속 허용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 4. 비밀번호 등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은 사용 금지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 시스템 개인정보 취급자(사용자 관리) 
항목 설명	●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조직운영방침 등에 지정 요건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용어설명] ❖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시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과 관련된 문서, 지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담당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 취급자가 문서상 지정되어 있으나 개인정보 취급인원 일부만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되어 있거나 그 지정 사실을 모르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2.1.2</td><td>●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역할 및 책임 부여,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작성 등 관리·감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법률에서 규정된 업무(역할 및 책임)를 공식적으로 부여
②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행
③ 교육 이수자 목록 관리 및 미 이수자에 대한 조치방안
④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작성 관리
⑤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계획 수립 및 시행</td></tr>
<tr><td>평가 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Ⅲ.9. 개인정보 취급자'에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음.

● 또한『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14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서 ③ 부서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특수검사처는 개인정보취급자 및 수탁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교육 시행, 수탁사 보안서약서 징구 등 관리 감독을 하고 있음.

<table>
<tr><th>세부기준</th><th>점검 결과</th><th>적절성</th></tr>
<tr><td>① 법률에서 규정된 업무(역할 및 책임)를 공식적으로 부여</td><td>『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Ⅲ.9. 개인정보 취급자</td><td>○</td></tr>
<tr><td>②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행</td><td>2025년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하였음</td><td>○</td></tr>
<tr><td>③ 교육 이수자 목록 관리 및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방안</td><td>2025년 개인정보 보호 교육 결과 이수하였음</td><td>○</td></tr>
<tr><td>④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작성 관리</td><td>보안서약서 징구하고 있음</td><td>○</td></tr>
<tr><td>⑤ 정기적인 관리・감독 계획 수립 및 시행</td><td>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td><td>○</td></tr>
<tr><td colspan="3">[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
</table>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12조(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td></tr>
</table>

제12조(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유·처리 부서(팀)에 보직되었을 때 임명된 것으로 하며, 소관 부서(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소관 부서 또는 팀의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에서 파기 등 전(全)단계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PC·서버 등)에 대한 보안관리
3.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4.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5. 소관 부서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보유기간 지정 및 관리·감독
6.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7. 소관 부서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8. 소관 특수법인 및 협·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리·감독
9. 소관 부서에 요청된 개인정보파일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심사, 필요 시 위원회 상정
10.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시스템 등을 통해 타 기관(업체)에 제공시 연계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
11.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
12.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③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고 소관 부서 또는 팀의 효율적인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활동 및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14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14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개별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 및 보관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④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Ⅲ.6(개인정보 보호담당자)

6.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총괄부서 업무담당자를 지정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부서·직급·성명 : 정보보안처 행정4급 양륜겸, 장지혜
 - 이 메 일 : ryoon@kotsa.or.kr, jangjh@kotsa.or.kr
 - 전화번호 및 Fax : 054-459-7485, 054-459-7483, 0502-384-5467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 운영
- 개인정보 처리실태 관리 및 각종 자료 취합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
-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관리 및 同시스템과 他시스템 연계 시 업무 협의와 사후 관리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Ⅲ.9. 개인정보 취급자

9. 개인정보취급자

○ 행정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되며,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위탁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 업무에 참여하는 수탁사와 수탁사의 임직원을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지정 및 관리

○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며 접근권한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다.

○ 개인정보 취급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및 내부관리계획의 준수이행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이행
-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관리 등 이행
- 소속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
-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의 점검 및 보고

-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실적

○ 202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한국교통안전공단



2025년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2025. 3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전략실 정보보안처]



목 차

Ⅰ. 개요 ····· 1
1. 목적 및 추진근거 ····· 1
2. 교육 개요 ····· 1
Ⅱ. 세부 추진계획 ····· 2
1. 대상자별 교육 프로그램 ····· 2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 2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 ····· 2
- 개인정보 취급자 및 일반직원 교육 ····· 2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 대상 교육 ····· 3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프로그램 ····· 3
-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자 교육 ····· 3
-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 ····· 3
Ⅲ. 추진 일정 ····· 4



Ⅰ. 개요

□ 목적 및 근거

○ (배경) 개인정보 교육을 통한 공단 임직원의 역량 강화 ·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확산과 및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지침 준수로 안전한 개인정보 취급 및 활용 환경 마련

- 공단 규정 -

○ (목적)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에 맞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 지침서를 안내 및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유 · 노출 사고 예방

□ 교육 개요

○ (방법)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추진

- (대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일반 직원 등 교육 대상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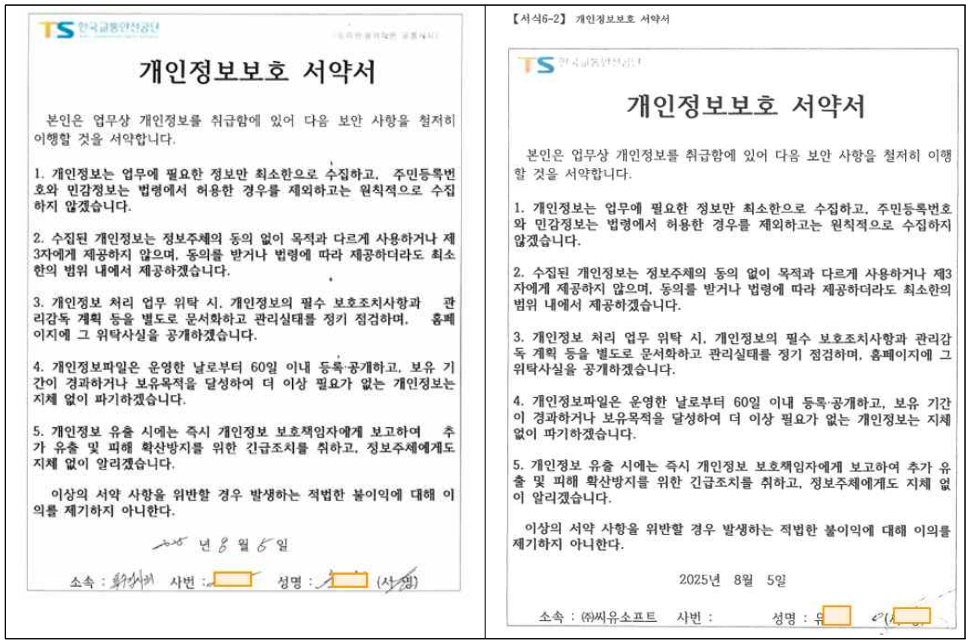
- (방법) 대상자별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일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 제공 대처 절차, 개인정보 주 · 노출 대응 절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차단 대응 방법 대처 위기 대응 절차 등

○ 202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적

교육대상	회차	성명	교육일자 및 시간	업무 수행기간	교육내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회차	최대진	'25. 2. 26.(수) [2시간]	'25.01 ~ 현재	• 개인정보처리 통합안내서
	2회차		'25. 3. 18.(수) [2시간]		•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3회차		'25. 4. 03.(목) [2시간]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심층논의
	4회차		'25. 4. 30.(수) [2시간]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전략
	5회차		'25. 5. 21.(수) [2.5시간]		• 인공지능(AI) 시대의 정보주체 권리 강화전략
	6회차		'25.7.23~8.14 [26시간]		• 2025년 KISA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7회차		'25. 9. 3(수) [2시간]		• 2025년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전략 심층 논의
	증빙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1회차	문선희	'25.4.11.(금) [4시간]	'25.02 ~ 현재	• (25년)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 과정
	2회차		'25.4.21.(월) [4시간]		• (25년) 개인정보처리자 입문 과정
	3회차		'25.4.25(금) [4시간]		• (25년) 개인정보처리자 신기술과정

-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는 업무에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겠습니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따라 제공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의 필수 보호조치사항과 관리감독 계획 등을 별도로 문서화하고 관리실태를 정기 점검하며, 홈페이지에 그 위탁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파일은 운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록·공개하고,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유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겠습니다.

5.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즉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추가 유출 및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정보주체에게도 지체 없이 알리겠습니다.

이상의 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적법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5년 8월 5일

소속 : ㈜씨유소프트 사번 : 성명 : (서명)

【서식6-2】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는 업무에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겠습니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따라 제공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의 필수 보호조치사항과 관리감독 계획 등을 별도로 문서화하고 관리실태를 정기 점검하며, 홈페이지에 그 위탁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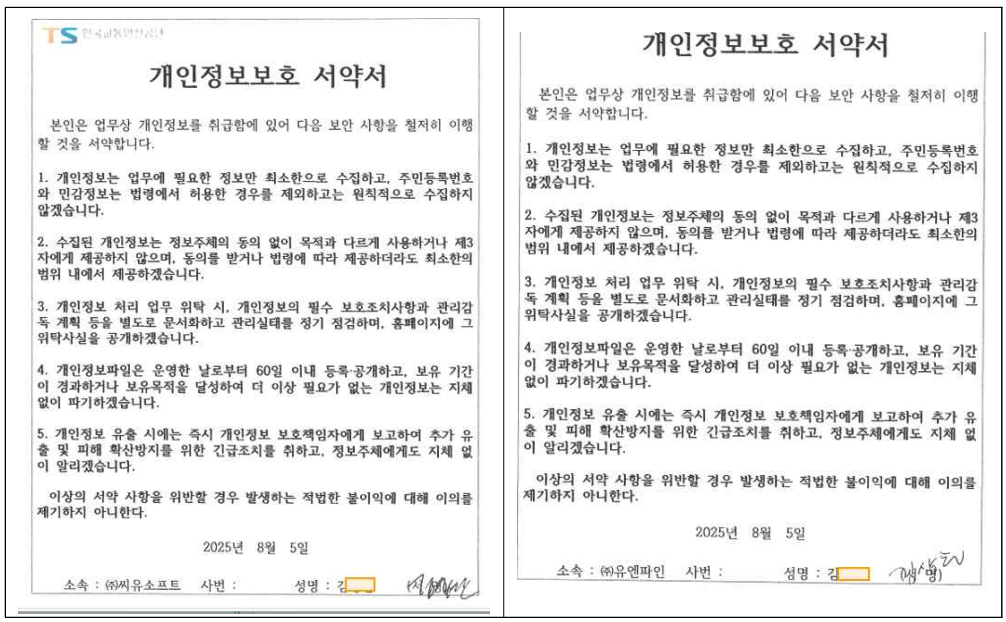
4. 개인정보파일은 운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록·공개하고,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유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겠습니다.

5.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즉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추가 유출 및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정보주체에게도 지체 없이 알리겠습니다.

이상의 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적법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5년 8월 5일

소속 : ㈜씨유소프트 사번 : 성명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는 업무에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겠습니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따라 제공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의 필수 보호조치사항과 관리감독 계획 등을 별도로 문서화하고 관리실태를 정기 점검하며, 홈페이지에 그 위탁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파일은 운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록·공개하고,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유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겠습니다.

5.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즉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추가 유출 및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정보주체에게도 지체 없이 알리겠습니다.

이상의 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적법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5년 8월 5일

소속 : ㈜씨유소프트 사번 : 성명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는 업무에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겠습니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따라 제공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의 필수 보호조치사항과 관리감독 계획 등을 별도로 문서화하고 관리실태를 정기 점검하며, 홈페이지에 그 위탁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파일은 운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록·공개하고,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유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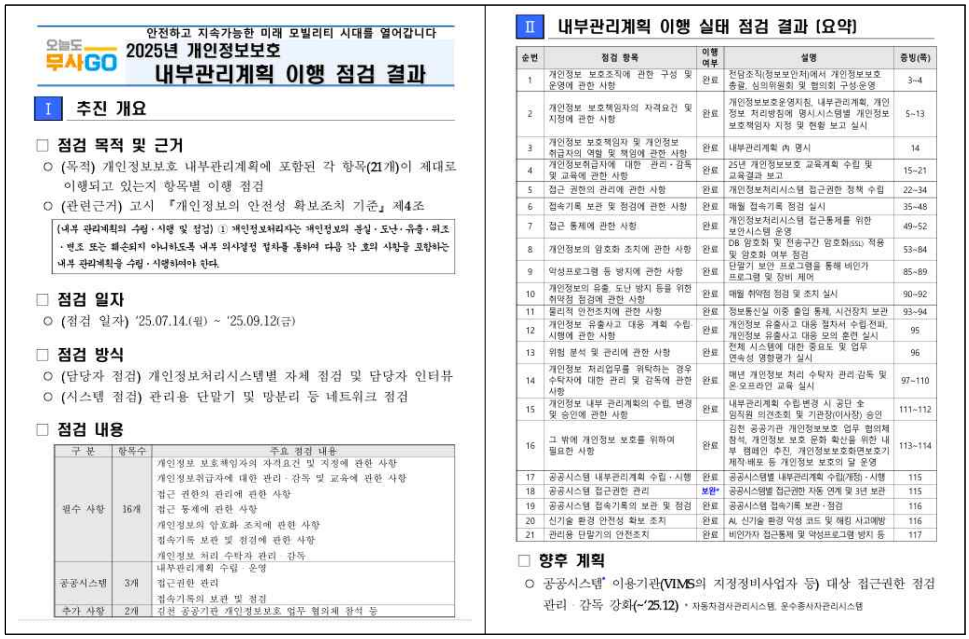
5.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즉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추가 유출 및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정보주체에게도 지체 없이 알리겠습니다.

이상의 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적법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5년 8월 5일

소속 : ㈜유엔파인 사번 : 성명 :

- 2025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결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오늘도 무사GO 2025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 점검 결과

Ⅰ 추진 개요

□ 점검 목적 및 근거

○ (목적)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포함된 각 항목(21개)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항목별 이행 점검

○ (관련근거)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점검 일자

○ (점검 일자) '25.07.14.(월) ~ '25.09.12(금)

□ 점검 방식

○ (담당자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자체 점검 및 담당자 인터뷰

○ (시스템 점검) 관리용 단말기 및 망분리 등 네트워크 점검

□ 점검 내용

구 분	항목수	주요 점검 내용
필수 사항	16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관리·감독
공공시스템	3개	내부관리계획 수립·운영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추가 사항	2개	집권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 협의체 참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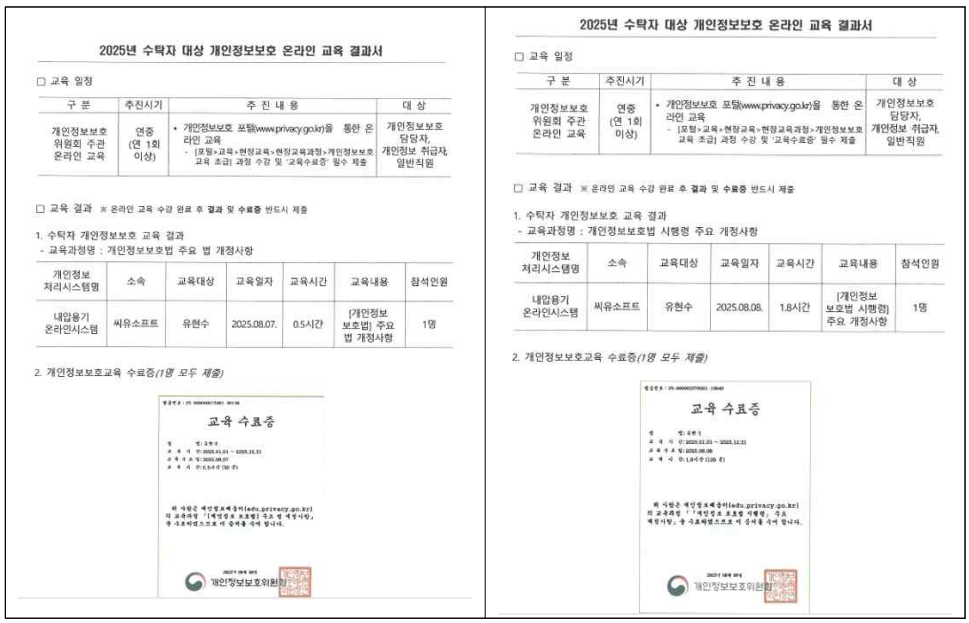
Ⅱ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 결과 (요약)

순번	점검 항목	이행 여부	설명	증빙(쪽)
1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완료	전담조직(정보보안처)에서 개인정보보호 총괄, 심의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	3~4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완료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현황 보고 실시	5~13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완료	내부관리계획 內 명시	14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완료	2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결과 보고	15~21
5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완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정책 수립	22~34
6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완료	매월 접속기록 점검 실시	35~48
7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완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를 위한 보안시스템 운영 DB 암호화 및 전송구간 암호화(SSL) 적용	49~52
8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완료	및 암호화 여부 점검	53~84
9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완료	단말기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가 프로그램 및 장비 제어	85~89
10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완료	매월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실시	90~92
11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완료	정보통신실 이중 출입 통제, 시건장치 보관	93~94
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완료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서 수립.전파,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모의 훈련 실시	95
13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완료	전체 시스템에 대한 중요도 및 업무 연속성 영향평가 실시	96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완료	해년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관리·감독 및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97~110
15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완료	내부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공단 全 임직원 의견조회 및 기관장(이사장) 승인	111~112
1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완료	집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 협의체 참석,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내부 캠페인 추진, 개인정보보호화면보호기 제작 배포 등 개인정보 보호의 달 운영	113~114
17	공공시스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완료	공공시스템별 내부관리계획 수립(개정)·시행	115
18	공공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보완*	공공시스템별 접근권한 자동 연계 및 3년 보관	115
19	공공시스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완료	공공시스템 접속기록 보관·점검	116
20	신기술 환경 안전성 확보 조치	완료	AI, 신기술 환경 악성 코드 및 해킹 사고예방	116
21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완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및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117

□ 향후 계획

○ 공공시스템* 이용기관(VIMS의 지정정비사업자 등) 대상 접근권한 점검 관리·감독 강화(~'25.12)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서



2025년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결과서

□ 교육 일정

구 분	추진시기	추 진 내 용	대 상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주관 온라인 교육	연중 (연 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온라인 교육 - [포털>교육>현장교육>현장교육과정>개인정보보호 교육 조회] 과정 수강 및 '교육수료증' 필수 제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일반직원

□ 교육 결과 ※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후 결과 및 수료증 반드시 제출

1.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
- 교육과정명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법 개정사항

개인정보 처리시스템명	소속	교육대상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참석인원
내압용기 온라인시스템	씨유소프트	유현수	2025.08.07.	0.5시간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법 개정사항	1명

2. 개인정보보호교육 수료증(1명 모두 제출)

교육 수료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년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결과서

□ 교육 일정

구 분	추진시기	추 진 내 용	대 상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주관 온라인 교육	연중 (연 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온라인 교육 - [포털>교육>현장교육>현장교육과정>개인정보보호 교육 조회] 과정 수강 및 '교육수료증' 필수 제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일반직원

□ 교육 결과 ※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후 결과 및 수료증 반드시 제출

1.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
- 교육과정명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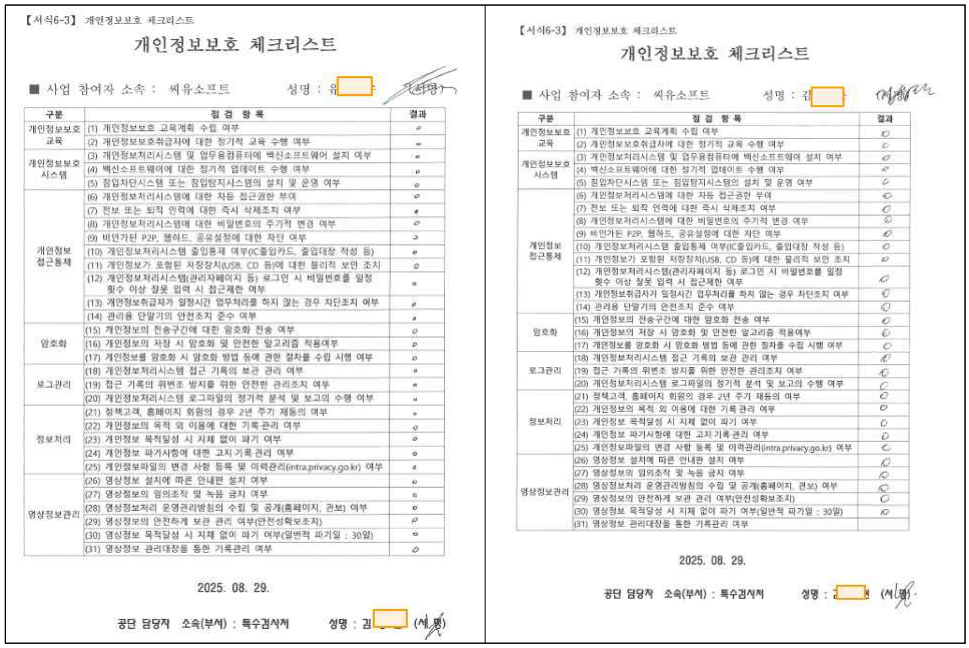
개인정보 처리시스템명	소속	교육대상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참석인원
내압용기 온라인시스템	씨유소프트	유현수	2025.08.08.	1.8시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1명

2. 개인정보보호교육 수료증(1명 모두 제출)

교육 수료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수탁사 대상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서식6-3】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

■ 사업 참여자 소속 : 씨유소프트 성명 : 원 (서명)

구분	점검 항목	결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1)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여부	
	(2) 개인정보보호취급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수행 여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컴퓨터에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4) 백신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 업데이트 수행 여부	
	(5) 침입차단시스템 또는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개인정보 접근통제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자동 접근권한 부여	
	(7) 전보 또는 퇴직 인력에 대한 즉시 삭제조치 여부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여부	
	(9) 비인가된 P2P, 웹하드, 공유설정에 대한 차단 여부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출입통제 여부(IC출입카드, 출입대장 작성 등)	
	(11) 개인정보가 포함된 저장장치(USB, CD 등)에 대한 물리적 보안 조치	
	(12)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페이지 등)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근제한 여부	
	(13)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단조치 여부	
	(14)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암호화	(15) 개인정보의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 전송 여부	
	(16) 개인정보의 저장 시 암호화 및 안전한 알고리즘 적용여부	
	(17) 개인정보를 암호화 시 암호화 방법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 시행 여부	
로그관리	(18)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기록의 보관 관리 여부	
	(19) 접근 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안전한 관리조치 여부	
	(20)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파일의 정기적 분석 및 보고의 수행 여부	
정보처리	(21)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의 경우 2년 주기 재동의 여부	
	(2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기록관리 여부	
	(23) 개인정보 목적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여부	
	(24) 개인정보 파기사항에 대한 고지 기록 관리 여부	
	(25) 개인정보파일의 변경 사항 등록 및 이력관리(intra.privacy.go.kr) 여부	
영상정보관리	(26) 영상정보 설치에 따른 안내판 설치 여부	
	(27) 영상정보의 임의조작 및 녹음 금지 여부	
	(28) 영상정보처리 운영관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홈페이지, 관보) 여부	
	(29) 영상정보의 안전하게 보관 관리 여부(안전성확보조치)	
	(30) 영상정보 목적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여부(일반적 파기일 : 30일)	
	(31)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통한 기록관리 여부	

2025. 08. 29.

공단 담당자 소속(부서) : 특수검사처 성명 : 김 (서명)

【서식6-3】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

■ 사업 참여자 소속 : 씨유소프트 성명 : 김

구분	점검 항목	결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1)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여부	
	(2) 개인정보보호취급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수행 여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컴퓨터에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4) 백신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 업데이트 수행 여부	
	(5) 침입차단시스템 또는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개인정보 접근통제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자동 접근권한 부여	
	(7) 전보 또는 퇴직 인력에 대한 즉시 삭제조치 여부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여부	
	(9) 비인가된 P2P, 웹하드, 공유설정에 대한 차단 여부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출입통제 여부(IC출입카드, 출입대장 작성 등)	
	(11) 개인정보가 포함된 저장장치(USB, CD 등)에 대한 물리적 보안 조치	
	(12)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페이지 등)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근제한 여부	
	(13)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단조치 여부	
	(14)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암호화	(15) 개인정보의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 전송 여부	
	(16) 개인정보의 저장 시 암호화 및 안전한 알고리즘 적용여부	
	(17) 개인정보를 암호화 시 암호화 방법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 시행 여부	
로그관리	(18)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기록의 보관 관리 여부	
	(19) 접근 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안전한 관리조치 여부	
	(20)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파일의 정기적 분석 및 보고의 수행 여부	
정보처리	(21)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의 경우 2년 주기 재동의 여부	
	(2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기록관리 여부	
	(23) 개인정보 목적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여부	
	(24) 개인정보 파기사항에 대한 고지 기록 관리 여부	
	(25) 개인정보파일의 변경 사항 등록 및 이력관리(intra.privacy.go.kr) 여부	
영상정보관리	(26) 영상정보 설치에 따른 안내판 설치 여부	
	(27) 영상정보의 임의조작 및 녹음 금지 여부	
	(28) 영상정보처리 운영관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홈페이지, 관보) 여부	
	(29) 영상정보의 안전하게 보관 관리 여부(안전성확보조치)	
	(30) 영상정보 목적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여부(일반적 파기일 : 30일)	
	(31)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통한 기록관리 여부	

2025. 08. 29.

공단 담당자 소속(부서) : 특수검사처 성명 : 김 (서명)

k항목 설명	● 개인정보 취급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 개인정보처리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 개인정보파일 파기 - 개인정보 파기 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 -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용어설명] ❖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시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
평가 예시	● 이행 : 업무분장표 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서 등에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 요건을 전부 반영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가 문서로 정의되어 있으나, 법률 요건 중 일부만 반영하였거나, 문서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2조(개인정보 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5조(개인정보 파일의 파기)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6조(개인정보 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영향평가 영역	2.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평가분야	2.2. 개인정보파일 관리
평가 목적	● 개인정보 파일대장을 작성하고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세부 분야	개인정보파일 대장 관리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2.2.1	●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파일을 신규로 보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개인정보파일 대장 작성(신규, 변경) ② 개인정보파일 대장의 내용 현행화 관리				

평가 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74조(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 신청)에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서'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5년도 개인정보파일 관리계획 보고를 통하여 공단 개인정보파일 현황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로 '내압용기 온라인 예약정보' 개인정보 파일대장은 현재 작성 중으로 개인정보 항목 중 성명, 생년월일은 보유기간을 '영구'로 휴대폰번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등은 보유기간을 정해서 기관장 결재를 득한 후, 시스템 OPEN 시 작성완료 하여 관리할 예정임.

[개인정보파일 대장 작성 현황]

평가업무	단위업무	개인정보파일	파일대장 관리여부	적절성
내압용기 온라인예약 시스템	내압용기 온라인 예약관리	• 내압용기 온라인 예약정보	• 관리대장 작성 예정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개인정보파일 대장 필수 포함사항 점검 현황]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 양식	적절성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74조(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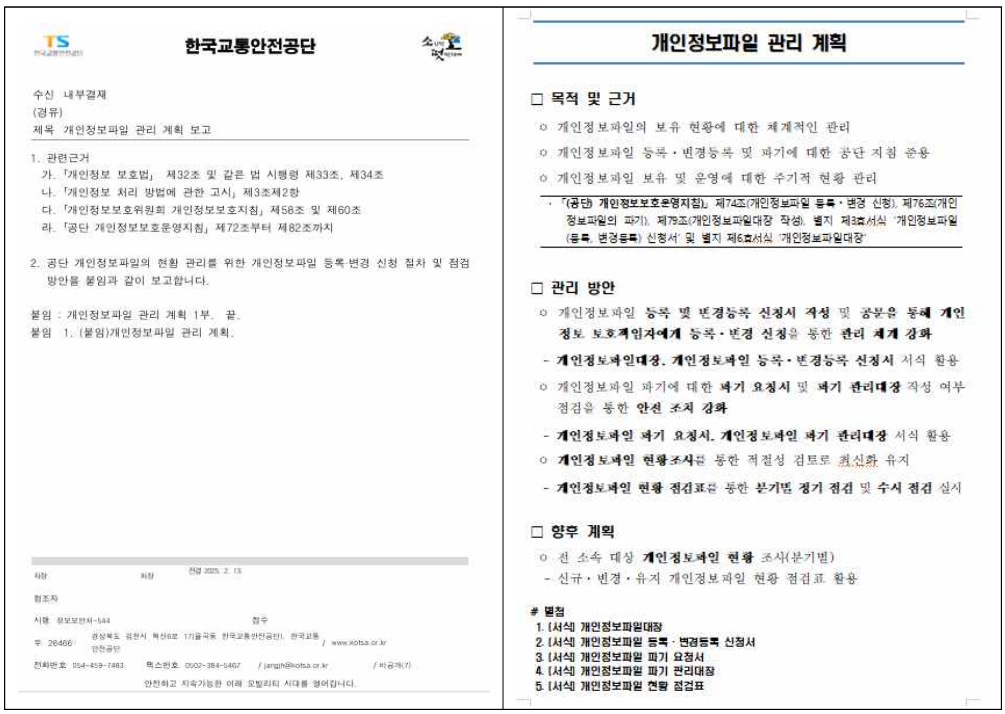
제74조(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 신청)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서'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제8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제8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변경 신청서'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2025년도『개인정보파일 관리 계획 보고』공문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정보파일 관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나.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8조 및 제60조
라. 「공단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72조부터 제82조까지

2. 공단 개인정보파일의 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 신청 절차 및 점검 방안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파일 관리 계획 1부. 끝.
붙임 1. (붙임)개인정보파일 관리 계획.

전결 2025. 2. 13.

협조자

시행 정보보안부-544 접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 www.kotsa.or.kr

전화번호 054-459-7483 팩스번호 0502-384-5467 / jangjh@kotsa.or.kr / 비공개(7)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이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개인정보파일 관리 계획

□ 목적 및 근거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및 파기에 대한 공단 지침 준용
- 개인정보파일 보유 및 운영에 대한 주기적 현황 관리

- 「공단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74조(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 신청), 제76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제79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파일(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파일대장'

□ 관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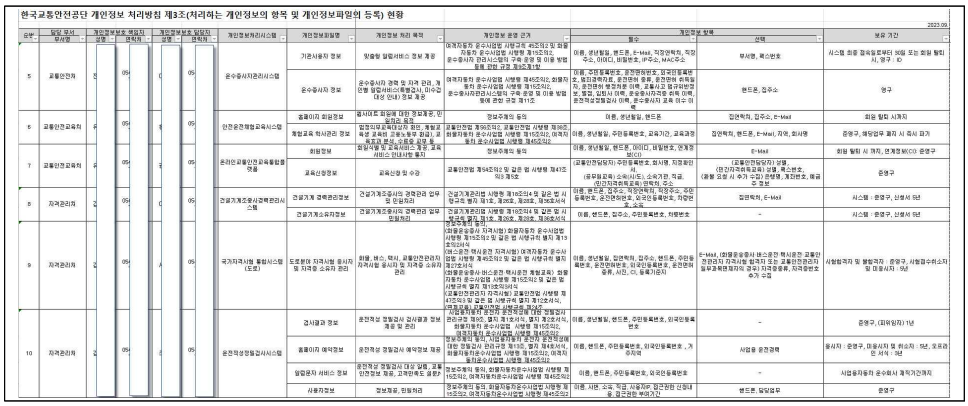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및 공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등록·변경 신청**을 통한 **관리 체계 강화**
 - **개인정보파일대장,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서식 활용
-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대한 **파기 요청서** 및 **파기 관리대장** 작성 여부 점검을 통한 **안전 조치 강화**
 -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서식 활용
- **개인정보파일 현황조사**를 통한 적절성 검토로 **최신화** 유지
 - **개인정보파일 현황 점검표**를 통한 **분기별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 실시

□ 향후 계획

- 전 소속 대상 **개인정보파일 현황** 조사(분기별)
 - 신규·변경·유지 개인정보파일 현황 점검표 활용

별첨
1. (서식) 개인정보파일대장
2. (서식)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3.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4.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5. (서식) 개인정보파일 현황 점검표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일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2023.09.

순번	담당 부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운영 근거	개인정보 항목		보유 기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필수	선택		
5	교통안전처		05		05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존사용자 정보	및 플랫폼 서비스 정보 제공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이메일, 비밀번호, IP주소, MAC주소	부서명, 팩스번호	시스템 회원 탈퇴일로부터 30일 또는 회원 탈퇴 시, 영구 : ID	
							운수종사자 정보	운수종사자 관리 및 자격 관리, 자격정보 플랫폼서비스(휴맵고시, 미수교대상 안내) 정보 제공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정보, 입국인등록번호, 입국관리번호, 주민등록 정보, 운전면허 취득일자, 운전면허 해당차종 이력, 교육시간 등 교육이수정보, 발급 업체 시 이력, 운송종사자자격 취득 이력, 운전적성정밀검사 이력, 운수종사자 교육 미수 이력	핸드폰, 집주소	영구	
6	교통안전교육처		05		05	안전운전체험교육시스템	출석이자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집연락처, 집주소, E-Mail	회원 탈퇴 시까지	
							체험교육 학사관리 정보	법정의무교육대상자 확인, 체험교육 수료 교육이 운전노동부 관심), 사업조합조합원 신청등 신청등	교통안전법 제55조의 2,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교육기간, 교육과정	집연락처, 핸드폰, E-Mail, 자격, 회사명	졸업구, 해당업무 폐지 시 즉시 파기
7	교통안전교육처		05		05	온라인교통안전교육통합플랫폼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이이디, 비밀번호, 연계정보(CI)	E-Mail	회원 탈퇴 시 까지, 연계정보(CI) 준영구	
							교육신청정보	법정의무 및 교육서비스 개선, 교육서비스 안내(개별 통지	교통안전법 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호	(교통안전담당자) 성명, (안간기자라학교육) 성별, 휴드폰번호, (종별 입문 시 추가 수집) 근무명, 계급번호, 재급주 정보	준영구	
8	자격관리처		05		05	건설기계조종실기평가관리시스템	건설기계 경력관리정보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업무 및 안정자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26호, 제28호, 제36호서식	집연락처, E-Mail	시스템 : 준영구, 신청서 5년	
							건설기계소유자정보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업무 및 안정자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26호, 제28호, 제36호서식	이름, 핸드폰, 집주소, 직장연락처, 직장보호	-	시스템 : 준영구, 신청서 5년
9	자격관리처		05		05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도로)	도로분야 자격시험 응시자 및 자격증 소유자 관리	회원, 버스, 택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 및 자격증 소유자 관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여객운송종사 버스운전 택시운전 특별교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1조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보호	E-Mail, (화물운송종사 버스운전 택시운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자 또는 교통안전관리자 필무교육면제대상 경우) 자격증등록, 자격증번호 추가 수집	시험합격자 및 불합격자 : 준영구, 시험접수취소자 및 미응시자 : 5년
10	자격관리처		05		05	운전적성정밀검사시스템	검사결과 정보	운전적성 정밀검사 검사결과 정보 제공 및 관리	시험합격증명 운전적성 정밀검사 결과 통지 및 관리(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따른 검사 항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준영구, (미응시자) 1년
							응시이자 예약정보	운전적성 정밀검사 예약정보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이름,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근무자직위	사업장 운전경력	응시자 : 준영구, 미응시자 및 취소자 : 5년, 오프라인 서식 : 5년
							입법예고 서비스 정보	운전적성 정밀검사 대상 입법, 교통안전정보 제공,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정보주체의 동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이름,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사업종료일로부터 준영구 개적건격자
							사용자정보	정보제공, 민원처리	정보주체의 동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이름, 사번, 소속, 직급, 사용기간, 업근한한 신청내용, 업근권한 부여기간	핸드폰, 담당업무	준영구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내압용기 온라인 예약 정보		
부서명(개인정보파일 운용 및 열람 등 요구처리 부서)	특수검사처	**담당자**	김영현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정보주체 동의		

<table>
<tr><td></td><td>
<table>
<tr><td colspan="2">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td><td>내압용기검사 고객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온라인 예약 서비스 제공</td></tr>
<tr><td colspan="2">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td><td>필수 : 성명, 생년월일, 자동차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선택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td></tr>
<tr><td colspan="2">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td><td>7만 여건</td></tr>
<tr><td colspan="2">개인정보의 처리방법</td><td>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td></tr>
<tr><td colspan="2">개인정보의 보유기간</td><td>성명, 생년월일, 자동차등록번호: 영구
휴대폰번호: 보유기간 정해서 기관장 결재 득 예정(개인정보 보유기간 검토중으로 장기 개선과제)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보유기간 정해서 기관장 결재 득 예정(개인정보 보유기간 검토중으로 장기 개선과제)</td></tr>
<tr><td colspan="2">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td><td>보험개발원</td></tr>
<tr><td rowspan="2">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td><td>개인정보의 범위</td><td>없음</td></tr>
<tr><td>사유</td><td></td></tr>
<tr><td colspan="2">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접수 부서(총괄)</td><td>정보보안처</td></tr>
<tr><td colspan="2">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 부서(총괄)</td><td>정보보안처</td></tr>
</table>
</td></tr>
<tr><td>항목 설명</td><td>

- 개인정보 파일을 신규 보유하게 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할 경우 개인정보 파일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한다.

<파일 등록시 포함 사항>

1.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 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td></tr>
</table>

	8.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용어설명]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
평가 예시	● 이행 : 신규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고 개인정보 파일대장에 기재한 경우 ● 부분 이행 : 신규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했으나 개인정보 파일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와 반대의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58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개인정보파일 등록</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2.2.2</td><td>●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파일을 신규로 보유하거나 기존파일을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 (신규, 변경)
② 개인정보 파일대장 포함 항목 점검 (누락 여부)</td></tr>
<tr><td>평가 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7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 확인 및 공개)에서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6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를 경유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파일을 신규로 보유하거나 기존 파일을 변경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파일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정보'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할 계획임.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록 계획 현황]
<table><tr><th>평가업무</th><th>단위업무</th><th>개인정보파일</th><th>개인정보보호 위원회 등록여부</th><th>적절성</th></tr><tr><td>내압용기 온라인 예약시스템</td><td>내압용기 예약관리</td><td>내압용기 온라인예약정보</td><td>• '내압용기 온라인예약 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 포털』에 등록예정임 (오픈예정: 2026년 이후)</td><td>○</td></tr><tr><td colspan="5">[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table>
[개인정보파일 대장 필수 포함사항 점검 현황]
<table><tr><th>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 양식</th><th>적절성</th></tr><tr><td>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td><td>○</td></tr><tr><td>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td><td>○</td></tr><tr><td>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td><td>○</td></tr></table></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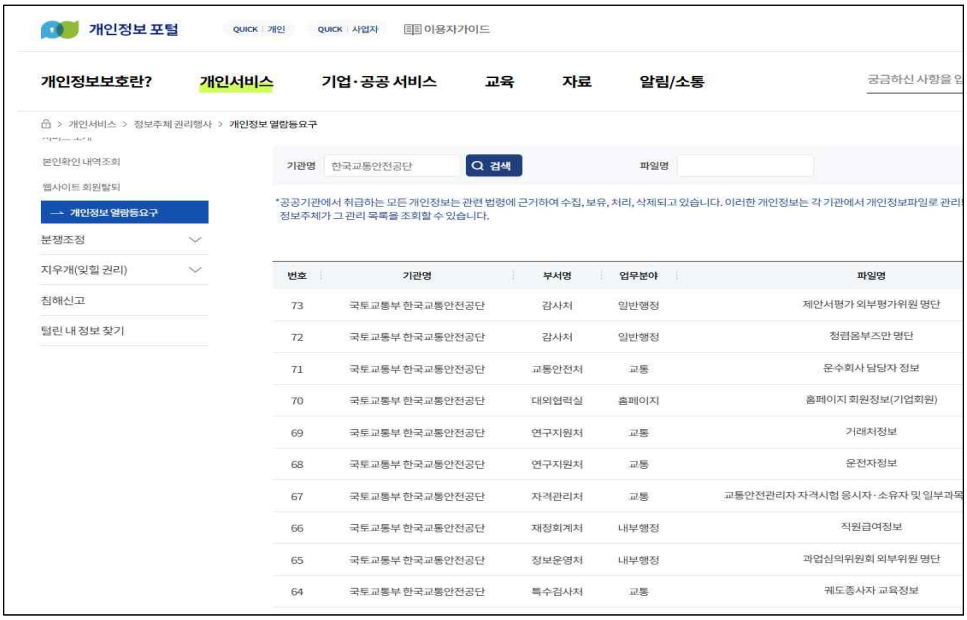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평가근거]

-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7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 확인 및 공개)

> **제75조(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 확인 및 공개)** 제74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6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를 경유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정보 파일(예정)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한국교통안전공단

<table>
<tr><td></td><td>
<table>
<tr><td colspan="2">개인정보파일의 명칭</td><td colspan="3">내압용기 온라인 예약 정보</td></tr>
<tr><td colspan="2">부서명(개인정보파일 운용 및 열람 등 요구처리 부서)</td><td>특수검사처</td><td>담당자</td><td>김영현</td></tr>
<tr><td colspan="2">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td><td colspan="3">정보주체 동의</td></tr>
<tr><td colspan="2">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td><td colspan="3">내압용기검사 고객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온라인 예약 서비스 제공</td></tr>
<tr><td colspan="2">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td><td colspan="3">필수 : 성명, 생년월일, 자동차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선택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td></tr>
<tr><td colspan="2">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td><td colspan="3">7만 여 건</td></tr>
<tr><td colspan="2">개인정보의 처리방법</td><td colspan="3">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td></tr>
<tr><td colspan="2">개인정보의 보유기간</td><td colspan="3">성명, 생년월일, 자동차등록번호: 영구
휴대폰번호: 보유기간 정해서 기관장 결재 득 예정(전체 시스템 보유기간 검토중으로 장기 개선과제)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보유기간 정해서 기관장 결재 득 예정(전체 시스템 보유기간 검토중으로 장기 개선과제)</td></tr>
<tr><td colspan="2">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td><td colspan="3">보험개발원</td></tr>
<tr><td rowspan="2">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td><td>개인정보의 범위</td><td colspan="3">없음</td></tr>
<tr><td>사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접수 부서(총괄)</td><td colspan="3">정보보안처</td></tr>
<tr><td colspan="2">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 부서(총괄)</td><td colspan="3">정보보안처</td></tr>
</table>
</td></tr>
<tr><td>항목 설명</td><td>●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등록하지 아</td></tr>
</table>

	니한다. <파일 등록 예외사유>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법 개정 2023. 3. 14.> <시행령 개정 2023. 9. 12>** •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용어설명]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
평가 예시	● 이행 : 변경된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고 개인정보 파일대장에 반영한 경우 ● 부분 이행 : 변경된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였으나 개인정보 파일대장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와 반대의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1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4조(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영향평가 영역	2.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평가분야	2.3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목적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방침 내 법적 요건을 포함하여 안내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세부 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2.3.1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관보 등에 안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 개제 ② '개인정보처리방침' 명칭 사용 및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되게 표시 ③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내용의 전·후 비교 공개 ④ 영업 양도합병 등에 따라 개인정보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				

평가 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52조(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홈페이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글자색을 다르게 하고 굵게 표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음.

● 또한,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5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해당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및 시행의 시기를 안내하고, 시행시기별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문서를 링크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여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고 있음.

세부기준	점검내역	적절성
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 게재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	○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 명칭 사용 및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되게 표시	구분되게 표시함	○
③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변경 내용의 전·후 비교 공개 준비	전·후 비교 공개	○
④ 영업 양도합병 등에 따라 개인정보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	N/A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52조(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제5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51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소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④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3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표시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5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5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항목 설명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기관의 처리방침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 등에 게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 -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등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관보에 안내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수립되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안

	내하고 있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

세부 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2.3.2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률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법률 등(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등)에서 규정한 내용 모두 포함 ②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된 내용은 오류 및 누락사항이 없어야 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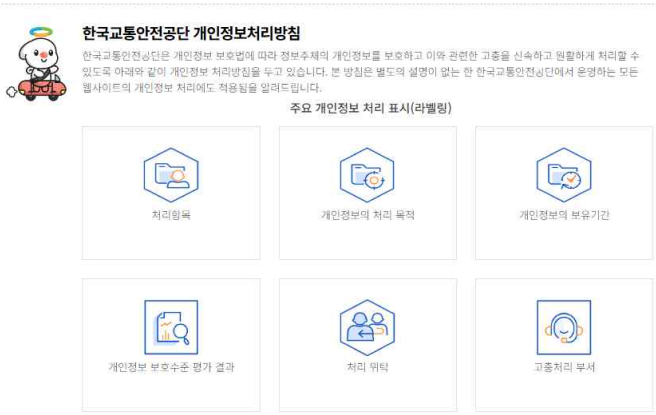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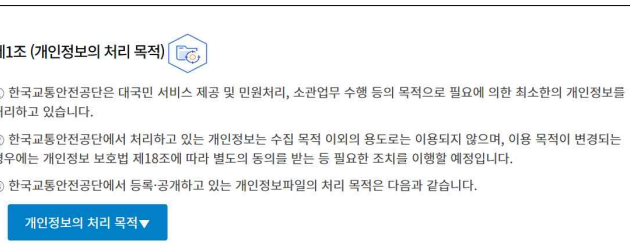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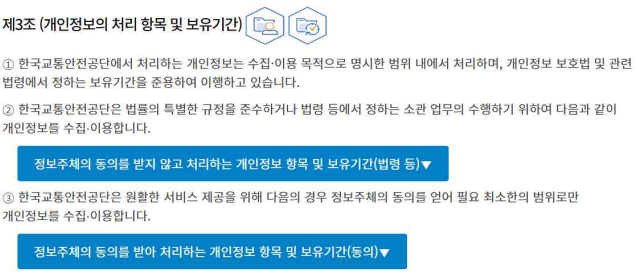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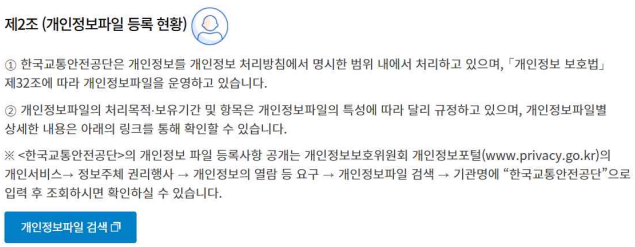
평가 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표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등 법적 필수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반영하고 있음.

세부 기준		구분	점검결과	적절성
① 법률 등에서 규정한 내용 모두 포함	1. 제목 및 서문	의무	작성	○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의무	제1조	○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의무	제3조	○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의무	제3조	○
	5.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해당시)	의무	제2조	○
	6.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해당시)	권장	제5조	○
	7.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시)	의무	제7조	○
	8.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시)	의무	제9조	○
	9.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의무	제6조	○
	10.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의무	제15조	○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의무	제10조	○
	12. 개인정보 자동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거부(해당시)	의무	제13조	○
	13.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해당시)	의무	제12조	-
	1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의무	제17조	○
	15.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의무	제16조	○
	16.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의무	제18조	○
	17.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권장	제19조	○
	1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해당시)	권장	제20조	○
	1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의무	제22조	○
	20.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해당시)	의무	제11조	○
	21.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 (해당시)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권장	제21조	-
② 공개된 내용은 오류 및 누락 없어야 히며, 정보주체가 알기쉽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		적정함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평가근거]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개인정보처리방침』

항목	관련 내용
1. 제목 및 서문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 기간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등록현황	
5.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table>
<tr><td></td><td></td><td>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td></tr>
<tr><td>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td><td>제1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의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내정보관리'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하거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마이페이지 >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민원·신고 > 상담문의'를 통해 자동화된 결정의 설명 및 거부 요구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 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 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 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정지 등 요구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 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 또는 동의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 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또는 동의철회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서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td></tr>
<tr><td>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td><td></td></tr>
</table>

<table>
<tr><td></td><td></td><td>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 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 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td></tr>
<tr><td>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 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및 담당자 연락처</td><td>제1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및 담당자 연락처)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안처장 최대진
- 이메일 : djchoi@kotsa.or.kr
- 전화번호 : 054-459-7480

※ 개인정보보호 및 고충처리 담당자 : 정보보안처 문선희
- 이메일 : msh80@kotsa.or.kr
- 전화번호 : 054-459-7485
- Fax : 팩스번호 0502-384-5457
- 주소 : 우)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td></tr>
<tr><td>9.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td><td>제16조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청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또는 개인정보파일별 운영담당자를 통한 신청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 부서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처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 담당자 : 정보보안처 문선희
- 연락처 : 054-459-7485
- 팩스번호 : 0502-384-5457
- 이메일 : msh80@kotsa.or.kr
※ 개인정보파일별 운영담당자
개인정보파일별 운영담당자▼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본인인증 필요)</td></tr>
<tr><td>10.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td><td></td></tr>
</table>

	제18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ecrm.cyber.go.kr) ③「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11.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해당시)	**제11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일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정보주체의 민감정보를 법령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 목적 이외에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1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시)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준수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령 등)▼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집·이용 및 제공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상세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main.kotsa.or.kr)의 이용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게시판에서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13.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시)	**제9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 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③「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 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해당시)	

	제13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행태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및 혜택,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쿠키들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고, 행태정보를 수집 ·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상, 신념, 학력 · 병력 등 개인의 권리 · 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행태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15.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제8조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의 판단기준)** 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여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집, 이용중인 개인정보파일중에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사항은 없습니다. ②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의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처리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6.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해당시)	**제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17.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 결과	**제19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안(개인정보 암호화 등)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상세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영상정보처기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관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main.kotsa.or.kr)의 이용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기기기 운영·관리 방침 게시판에서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table>
<tr><td></td><td>
<table>
<tr><td></td><td>
</td></tr>
<tr><td>20. 자율적 사항 (해당시)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td><td>- N/A</td></tr>
</table>
</td></tr>
<tr><td>항목 설명</td><td>
●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이 법적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법령 등(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등)에 따라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목 및 서문 - 처리방침 작성지침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법 30조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법 30조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영 31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표준지침 61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 법 30조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 법 30조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포함) - 법 30조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법 30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명 31조

-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 법 30조

- 가명정보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 법 30조 <법 개정 2023, 3. 14>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법 30조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표준지침 19조
</td></tr>
</table>

	-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표준지침 19조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제공의 기준(해당하는 경우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 영 14조의2 <시행령 개정 2023. 9. 12>** **-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하는 경우) - 법 30조 <법 개정 2023. 3. 14>**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 30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처리방침 작성지침 -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처리방침 작성지침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관한사항- 법 25조 법 25조의2 <법 개정/신설 2023. 3. 14>** - 그밖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 처리방침 작성지침 **-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법적 근거 (해당하는 경우), 다만,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제외 - 법 22조 <법 개정 2023. 3. 14>**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문서로 존재하고 법적 요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문서로 존재하나, 법적 요건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조(개인정보 보호원칙)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2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9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1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침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3.1 수집	•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 동의 받는 방법의 적절성
3.2 보유	• 보유기간 산정
3.3 이용·제공	•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제공시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고지
3.4 위탁	• 위탁사실 공개 • 위탁 계약 • 수탁사 관리·감독
3.5 파기	• 파기 계획 수립 • 분리보관 계획 수립 • 파기대장 작성

영향평가 영역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평가분야	3.1 수집
평가 목적	● 개인정보 수집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지를 점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사실에 대한 안내와 정보주체의 동의획득 여부를 점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시 암호화 조치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해 점검합니다.

세부 분야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3.1.1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개인정보의 수집시 적법한 근거에 의한 수집 ② 동의에 의한 수집시 관련 사항 고지(목적, 항목, 기간, 동의거부) ③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록 ④ 공개된 매체에서 수집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용				
평가 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서 "①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단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와 관련된 내압용기 검사 예약자는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예약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개인정보 처리업무 처리근거 현황]				

세부기준	수집 근거	적절성
적법한 근거에 의한 수집	정보주체 동의	O
동의에 의한 수집 시 관련 사항 고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을 필수, 선택 등으로 구분하여 동의 내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O
동의 여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록	시스템내 동의 여부 기록함	O
공개된 매체 수집시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용	N/A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개인정보 수집 현황]

평가 업무명		수집 항목	수집목적	적절성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내압용기 예약관리	[예약자] (필수) 자동차등록번호, 예약자명, 예약자생년월일, 예약자휴대폰번호 (선택) 예금주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내압용기 검사예약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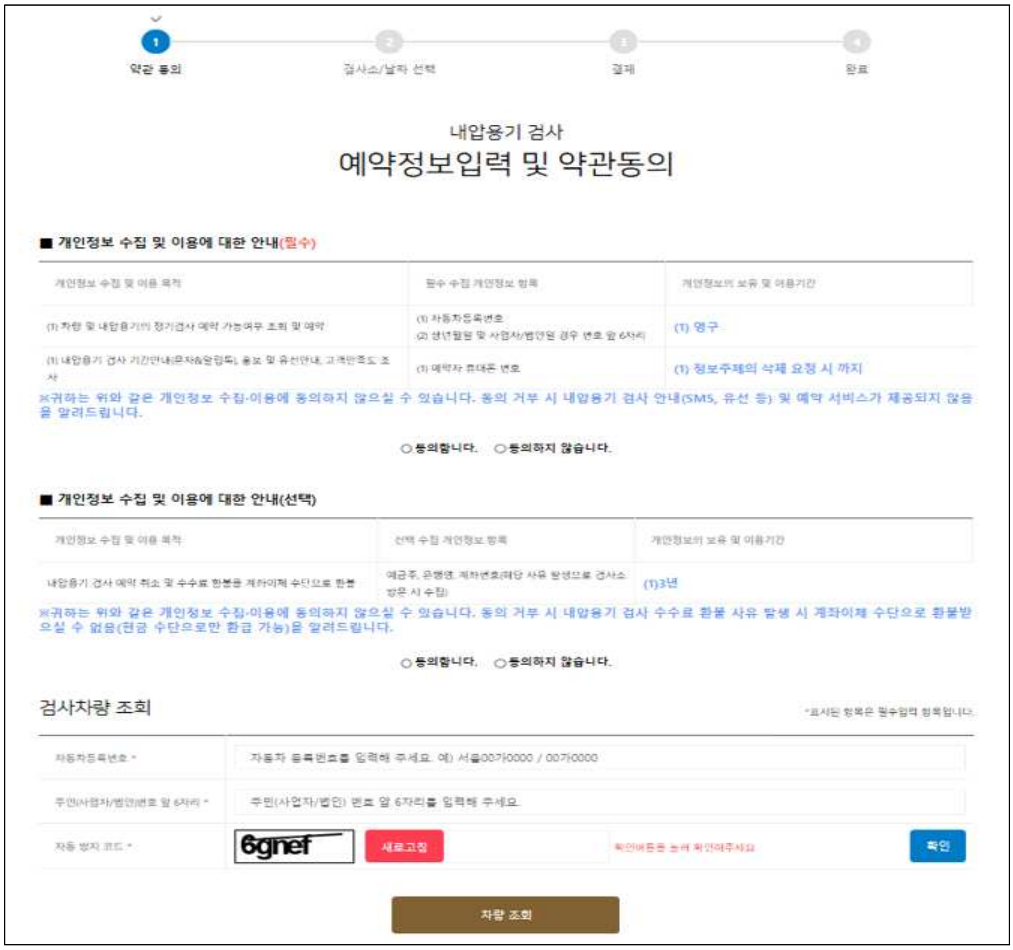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단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공단이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등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화면

<table>
<tr><td></td><td>
</td></tr>
<tr><td>항목 설명</td><td>●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개정 2023. 3. 14>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개정 2023. 3. 14.>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법 신설 2023. 3. 14.>
●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모두 알려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서명날인, 전자서명 등의 방법을 이용해 정보주체의</td></tr>
</table>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있으나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3.1.2</td><td>●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수집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② 필수 수집 항목의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입증 근거 제시</td></tr>
<tr><td>평가 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의 내압용기 예약관리 업무에서 수집 목적에 따른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개인정보 수집 현황]
<table><tr><th colspan="2">평가 업무명</th><th>수집 항목</th><th>수집목적</th><th>적절성</th></tr><tr><td>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td><td>내압용기 예약관리</td><td>[예약자]
(필수) 자동차등록번호, 예약자명, 예약자생년월일, 예약자휴대폰번호

(선택) 예금주성명, 은행명, 계좌번호</td><td>내압용기 검사예약</td><td>○</td></tr><tr><td colspan="5">[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table>
[평가근거]
- 업무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td></tr>
</table>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주요 개인정보 처리현황]

개인정보 수집업무		수집항목	필수/선택	수집목적	비고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내압용기 예약관리	(필수) 자동차등록번호, 예약자명, 예약자생년월일, 예약자휴대폰번호	필수	내압용기 검사 예약관리	
		(선택) 예금주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선택	예약 취소 시 환불처리	

항목 설명	● 수집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집하도록 하며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범위와 근거를 명시한 문서(계획)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범위와 근거를 명시한 문서(계획)가 있으나 범위와 다르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보호 원칙) ●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3.1.3</td><td>●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거나,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민감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민감정보의 수집 및 처리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
② 민감정보의 수집·처리가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
-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td></tr>
<tr><td>평가 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30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서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9조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사업은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아 해당 없음.

[민감정보 처리 현황]
<table><tr><th>개인정보 수집업무</th><th>민감정보 처리 현황</th><th>구분 동의 여부</th><th>적절성</th></tr><tr><td>내압용기 온라인예약 시스템</td><td>-</td><td>-</td><td>-</td></tr><tr><td colspan="4">[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table>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30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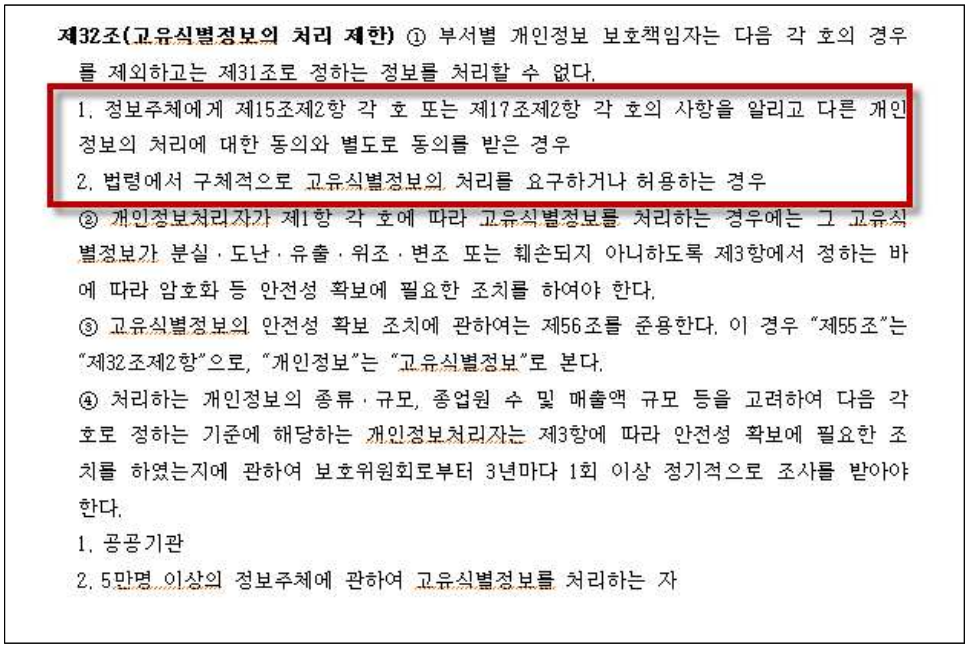
	제30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9조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56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항목 설명	● 본 지표에서는 개인정보 흐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업무 중에 민감정보의 처리가 존재하는 경우 별도 동의 등 적법하게 수집하는 지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 ●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어 있으며,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민감정보의 수집·처리가 가능하지만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수집 및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민감정보는 공공기관이 다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로 보지 않는다.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분리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평가 예시	● 이행 : ● 부분 이행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에 대해 다른 개인정보 항목과 일괄로 동의를 받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동의받는 방법의 적절성</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3.1.4</td><td>●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거나,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처리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
②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의 수집·처리가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
-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td></tr>
<tr><td>평가 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32조(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에서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1조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규정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아 본 질의문은 해당 없음.

[고유식별정보 처리 현황]
<table><tr><th>개인정보 수집업무</th><th>고유식별정보 처리 현황</th><th>구분 동의 여부</th><th>적절성</th></tr><tr><td>내압용기 온라인예약 시스템</td><td>-</td><td>-</td><td>-</td></tr><tr><td colspan="4">[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table>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32조(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td></tr>
</table>

<table>
<tr><td></td><td>
</td></tr>
<tr><td>항목 설명</td><td>● 본 지표에서는 개인정보 흐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업무 중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존재하는 경우 별도 동의 등 적법하게 수집하는 지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
●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어 있으며,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처리가 가능하지만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수집 및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이에 해당된다.
● 고유식별정보도 민감정보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와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에 한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 시행령 등에 근거가 없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의 수립 및 처리는 금지된다.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분리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td></tr>
<tr><td>평가 예시</td><td>● 이행 :
● 부분 이행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해 다른 개인정보 항목과 일괄로 동의를 받고 있는 경우</td></tr>
</table>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3.1.5</td><td>●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법적 근거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의 사항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제공</td></tr>
<tr><td>평가 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없어 해당 없음.

[주민등록번호 처리 현황]
<table><tr><th>평가업무</th><th>단위업무</th><th>주민등록번호 처리여부</th><th>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th><th>적절성</th></tr><tr><td>내압용기 온라인 예약 시스템</td><td>내압용기 예약관리</td><td>-</td><td>-</td><td>-</td></tr><tr><td colspan="5">[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table>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33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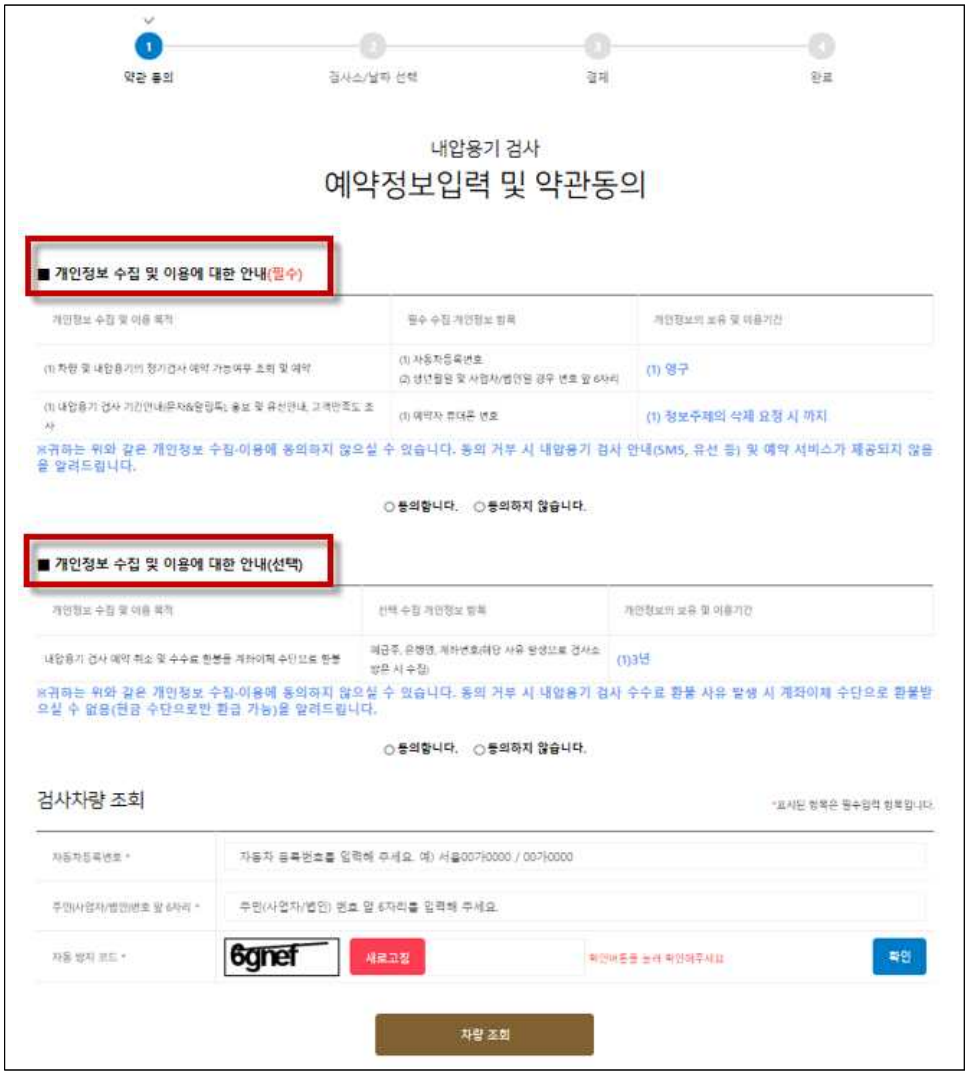
	제33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7년 1월 1일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8년 1월 1일 ③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항목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용어설명] ❖ 공공 I-PIN(Governmen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 공공기관에서 사 용하는 PIN으로, PIN은 대면 확인이 어려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하는 기술
평가 예시	● 이행 : 법령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설계서 등의 설계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법령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설계서 등의 설계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회원가입 화면 등에서 안내하고 있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세부 분야	동의받는 방법의 적절성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3.1.6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분리하고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하여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여 동의 ② 필수 항목인 경우 필수 정보임을 명백히 입증 ③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 ④ 선택적 동의 사항 미동의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거부 금지 ⑤ 동의 양식의 '동의함'에 Default 체크 금지 ⑥ 동의 사실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록				
평가 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24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6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하고 있으며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분리하여 동의받고 있음. [평가근거] -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24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6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9조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 수집/동의 화면



항목 설명	● 개인정보 수집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분리하여 동의를 받도록 한다. ●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한다.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 수집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분리하여 동의를 받으며 선택적 동의사항을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화면설계서 등의 설계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 수집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분리하여 동의를 받거나 화면설계서 등의 설계문서에서 선택적으로 동의한 사항에 대해 일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세부 분야	동의받는 방법의 적절성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3.1.7	●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③ 법정대리인 동의 거부나 일정기간 의사 미확인시 관련 개인정보 파기 ① 동의 사실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록				
평가 근거 및 의견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서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정보를 직접 수집할 계획이 없어 본 질의문은 해당없음. [평가근거] - 업무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항목 설명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법 신설 2023 3. 14>**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 <시행령 개정 2023. 9. 12>** **-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동의를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 휴대전화 SMS로 말리는 방법** **-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동의서를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동의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항**				

	목 설명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전화로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에 관한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법 신설 2023. 3. 14>** ●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시행령 신설 2023. 9. 12>** ●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 신설 2023. 3. 14>** [용어설명] ❖ 법정대리인 - 1차(친권자) :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 부모가 의견충돌이 생기면 가정법원이 판단 - 2차(후견인) :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친권행사를 할 수 없을 때 지정
평가 예시	● 이행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내용을 화면설계서 등의 설계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내용을 화면설계서 등의 설계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일부 법정대리인 만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할 수 있으나 후견인의 동의를 할 수 없도록 구현되어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3조(법정대리인의 동의)

세부 분야	동의받는 방법의 적절성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3.1.8	●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등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구분 동의사항 준수여부 ☞ 개별 동의사항 :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민감정보 처리,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마케팅 이용,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제공, 법정대리인 동의 ② 동의서 서식규정 준수 여부 ☞ 적용항목 : 홍보 등을 위한 연락 가능,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제외), 보유 및 이용기간(제공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기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적용규정 : 9포인트 이상, 다른 내용보다 20% 크게, 색깔/굵기/밑줄 처리,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 표시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				
평가 근거 및 의견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24조(동의를 받는 방법)에서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6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에서 제24조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제24조 제3항의 중요한 내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서면 동의는 없으며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동의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하고 있으며 VIMS를				

통해서 보험개발원으로 제공할 예정임.

[평가근거]
- 업무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제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3. 3. 14.>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7. 7. 26., 2020. 2. 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2023. 3. 14.>

④ 삭제 <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 2023. 3. 14.>

⑥ 삭제 <2023. 3. 14.>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2023. 3. 14.>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24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정보주체(제26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
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9조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있는 경우

②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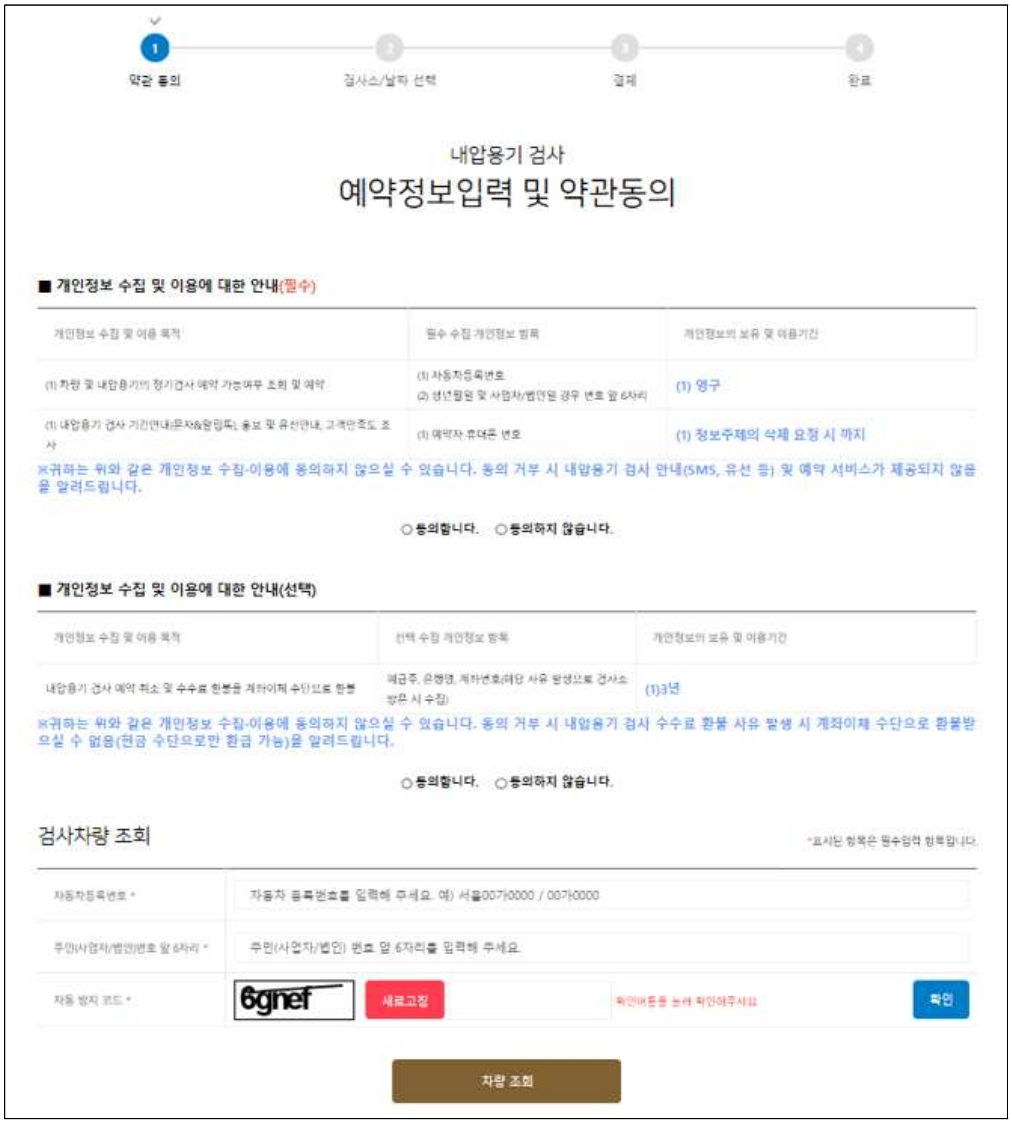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25조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제25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제24조제1항의 동의를 서면(종이 인쇄물, 컴퓨터 표시화면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제24조제4항의 중요한 내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1.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2.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 개인정보 수집/동의 화면



항목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개정 2023. 3. 14> <개별 등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대한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등의 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KOREA 4.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MS 5.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6.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 및 판매 권유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시행령 조항 없음> ● **동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충족 요건>** **- <시행령 신설 2023. 9. 12>** **-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 **서면 동의 시 동의서 서식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조 개인정보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동의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법 개정 2023, 3. 14> <시행령 개정 2023. 9. 12>**
평가 예시	● 이행 : 각각 동의사항에 대하여 구분하여 각각의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서식을 준수한 경우 ● 부분 이행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홍보·마케팅 이용 등의 일부만 각각의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서식 일부 미준수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 표시방법)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세부 분야	동의받는 방법의 적절성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3.1.9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평가 근거 및 의견	●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10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 예약시스템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없어 해당 없음. [평가근거] -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22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22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9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
항목 설명	●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 고지 대상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 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고지 대상이된다. ✓ 고지 대상이 되면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고지를 계획·수립하는 경우 ● 부분이행 : 내부관리계획에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고지를 계획·수립하고 있으나 실태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동의받는 방법의 적절성</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3.1.10</td><td>●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될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td></tr>
<tr><td>평가 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정보주체로 부터 동의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민감정보는 처리하지 않아 해당 없음.

[민감정보 처리 현황]
<table><tr><th>세부기준</th><th>점검내용</th><th>적절성</th></tr><tr><td>① 민감정보의 수집 및 처리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td><td>N/A</td><td>-</td></tr><tr><td>② 별도 동의 또는 법령에 근거</td><td>N/A</td><td>-</td></tr><tr><td colspan="3">[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table>
[평가근거]
- 업무담당자 인터뷰</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5">●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어 있으며,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처리가 가능하다.
● 결국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민감정보의 수집·처리가 가능 하지만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수집 및 처</td></tr>
</table>

	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법 신설 2023. 3. 14.>** ● 고유식별정보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와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다만 주민등록번호에 한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 시행령 등에 근거가 없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의 수립 및 처리는 금지된다.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분리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평가 예시	● 이행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화면설계서 등의 설계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화면설계서 등의 설계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동의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영향평가 영역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평가분야	3.2 보유
평가 목적	● 개인정보 보유 시 보유기간 및 법령기준에 대해 점검합니다.

세부 분야	보유기간 산정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3.2.1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법령 기준 및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한의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보유기간은 관련 법령기준 및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 기간으로 산정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 및 내부 결재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				

평가 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81조(개인정보 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에서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2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 예약시스템은 필수항목(자동차등록번호, 차량소유자명, 생년월일 등은 보유기간이 영구이며 핸드폰 번호와 선택항목(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협의 및 내부결재 계획 수립 중임.

[개인정보 보유기간 현황]

평가업무	단위업무	개인정보 파일	보유기간	비고
내압용기 온라인예약 시스템	내압용기 예약관리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 정보	협의 및 기관장 결제 예정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81조(개인정보 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제81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2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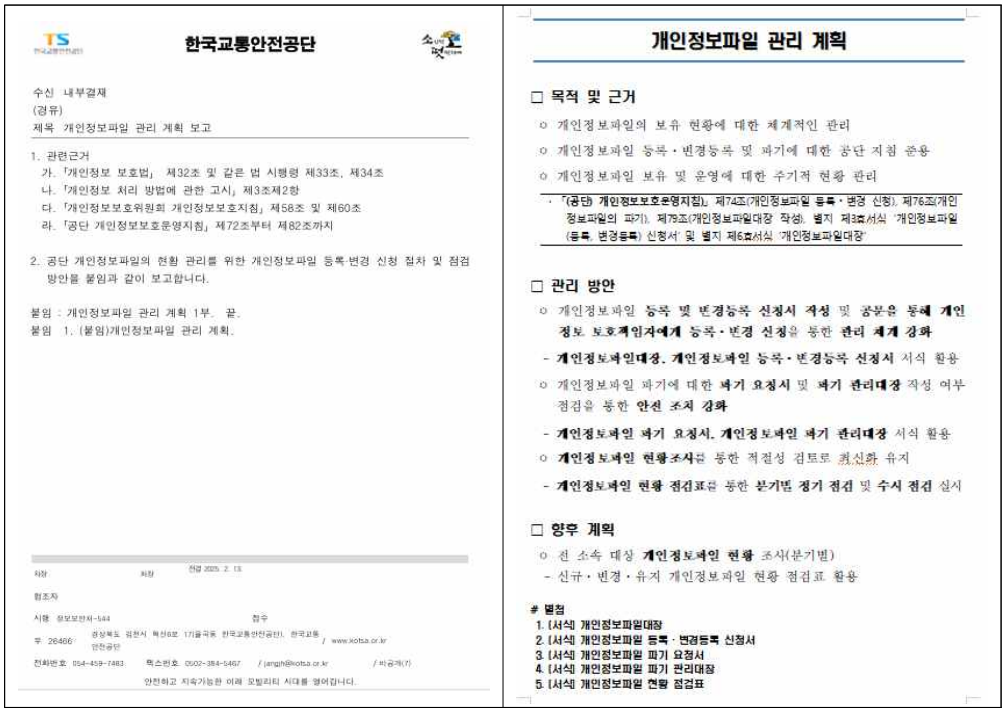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81조(개인정보 파일 보유기간의 산정)별표2

■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별표 2] (제81조 관련)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파일 관리 계획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정보파일 관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나.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8조 및 제60조
라. 「공단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72조부터 제82조까지

2. 공단 개인정보파일의 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 신청 절차 및 점검 방안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파일 관리 계획 1부. 끝.
붙임 1. (붙임)개인정보파일 관리 계획.

개인정보파일 관리 계획

□ 목적 및 근거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및 파기에 대한 공단 지침 준용
○ 개인정보파일 보유 및 운영에 대한 주기적 현황 관리
- 「(공단)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74조(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 신청), 제76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제79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파일대장'

□ 관리 방안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및 공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등록·변경 신청**을 통한 **관리 체계 강화**
- **개인정보파일대장,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서식 활용
○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대한 **파기 요청서** 및 **파기 관리대장** 작성 여부 점검을 통한 **안전 조치 강화**
-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서식 활용
○ **개인정보파일 현황조사**를 통한 적절성 검토로 **최신화** 유지
- **개인정보파일 현황 점검표**를 통한 **분기별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 실시

□ 향후 계획
○ 전 소속 대상 **개인정보파일 현황** 조사(분기별)
- 신규·변경·유지 개인정보파일 현황 점검표 활용

별첨
1. (서식) 개인정보파일대장
2. (서식)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3.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4.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5. (서식) 개인정보파일 현황 점검표

항목 설명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법령 기준 및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한의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법령 기준 및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한의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일부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영향평가 영역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평가분야	3.3 이용・제공
평가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목적에 따른 적법한 범위 내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해 점검합니다. ● 개인정보 파일을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제공 및 안전성 조치 여부에 대해 점검합니다. ● 개인정보파일 사용자 권한관리, 처리시스템, 네트워크 접근통제 등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점검합니다.

세부 분야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3.3.1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적접한 근거에 의한 제3자 제공 ② 동의에 의한 제공시 필수사항 고지(받는자, 목적, 항목, 기간, 동의거부) ③ 국외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 동의, 개보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계약 체결 금지 ④ 동의 사실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록				
평가 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서 ③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8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VIMS를 통해서 보험개발원으로 제3자 제공 예정으로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에서 직접 제 3자 제공은 없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적절성 여부]

개인정보 처리업무	제3자 제공구분	제공근거	적절성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	-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절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등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알려야 한다.

④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표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제11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11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목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연계・공유 포함)할 수 있다. <법 개정 2023. 3. 14>**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모두 알려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서명날인, 전자서명 등의 방법을 이용해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다** **<고려 사항>**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위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판단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 2023. 9. 12>**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연계.제공할 경우 동의를 받거나 법률근거를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연계.제공할 경우 동의를 받거나 법률 근거를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일부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 해외 제공 포함

세부 분야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3.3.2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제공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항목만 제공				

평가 근거 및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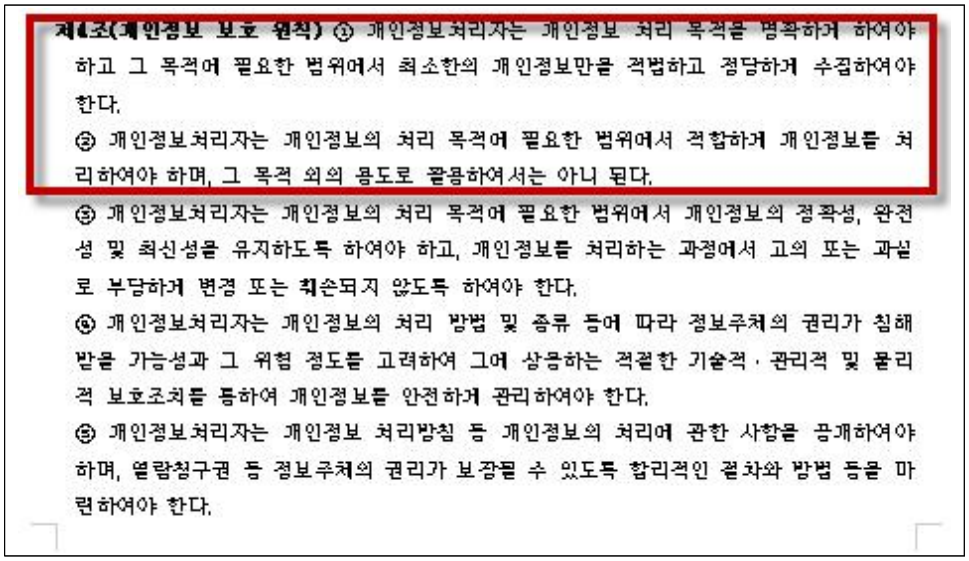
● 한국교통안전공단『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VIMS를 통해서 보험개발원으로 제3자 제공 예정으로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에서 직접 제 3자 제공은 없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최소 항목의 적절성 여부]

개인정보 처리업무	제3자 제공여부	제공항목	제공목적	적절성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	-	-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평가근거]
- 업무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4조(개인정보 보호원칙)

<table>
<tr><td></td><td>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개인정보 제3자 제공)예정

제11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td></tr>
<tr><td>항목 설명</td><td>● 기관에 개인정보파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을 제공한다.
※ 제3자 제공시 최소한의 항목만 제공하라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음 (법의 취지나 맥락으로 볼때 법적 필수로 볼 수도 있겠음)</td></tr>
<tr><td>평가 예시</td><td>● 이행 :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연계.제공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경우</td></tr>
<tr><td>관련 법률 및 문서</td><td>●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td></tr>
</table>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3.3.3</td><td>●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률에 근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별도의 동의나 법률에 근거한 목적외 이용・제공
② 동의에 의한 이용・제공시 필수사항 고지(받는자, 목적, 항목, 기간, 동의거부)
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 제공시 비식별화 조치</td></tr>
<tr><td>평가 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서』2. 목적 외 이용·제공 기준 2.2 개인정보 제공기준 O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법 제18조)에서 ①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목적 외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해당없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적절성 검토 결과]
<table>
<tr><th>개인정보 처리업무</th><th>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구분</th><th>이용 및 제공근거</th><th>분석내용</th><th>적절성</th></tr>
<tr><td>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
</table>
[평가근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서』 2.2 개인정보 제공기준</td></tr>
</table>

<table>
<tr>
<td></td>
<td>

2.2 개인정보 제공기준

o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법 제17조)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 제3호 · 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 ·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o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법 제18조)

①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삭제>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td>
</tr>
<tr>
<td>항목 설명</td>
<td>

- **보유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또는 국외 이전할 경우 이에 대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개정 2023. 3. 14>**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개정 2023. 3. 14>**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공공기관 한정)**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 한정)**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 한정)**

</td>
</tr>
</table>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 한정)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한정)**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법 신설 2023. 3. 14>**
평가 예시	● 이행 : 보유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법률근거를 확보하거나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보유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법률근거를 확보하거나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일부 개인정보 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3.3.4</td><td>●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목적외 이용・제공시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td></tr>
<tr><td>평가 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한국교통안전공단『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서』3. 목적 외 이용·제공 업무 절차 3,1 제공여부 업무처리 기준 O 자료제공 항목판단에서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항목만 제공(근거 법령에서 제공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한해 제공).등을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므로 본 항목은 해당없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최소 항목의 적절성 여부]
<table>
<tr><th>개인정보 처리업무</th><th>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구분</th><th>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항목</th><th>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목적</th><th>적절성</th></tr>
<tr><td>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
</table>
[평가근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서』3. 목적 외 이용·제공 업무 절차 3,1 제공여부 업무처리 기준
<table>
<tr><td>o 자료제공 항목 판단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직접 수집・생산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
②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항목만 제공
(근거 법령에서 제공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한해 제공)
③ 위탁받은 업무인 경우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 불가</td></tr>
</table></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5">●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한다.
※ 제3자 제공시 최소한의 항목만 제공하라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음 (법의 취지나 맥락으로 볼때 법적 필수로 볼 수도 있겠음)</td></tr>
</table>

	[용어설명]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목적 외 이용을 할 수 있음. (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제외 함)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대한 항목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정의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의 보호원칙)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3.3.5</td><td>●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② 제공 요청서, 결재 문서 등 관련 증적을 보관하고 관리</td></tr>
<tr><td>평가 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에서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서』 3. 목적 외 이용·제공 업무 절차 3.3 관리대장 기록·관리 방안 및 사실의 공개에서 '① 개인정보 처리부서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모든 업무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목적외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본 질의문은 해당없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기록·관리 여부]
<table><tr><th>개인정보 처리업무</th><th>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구분</th><th>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기록·관리 여부</th><th>적절성</th></tr><tr><td>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td><td>-</td><td>-</td><td>-</td></tr><tr><td colspan="4">[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table>
[평가근거]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서』 3. 목적 외 이용·제공 업무 절차 3.3 관리대장 기록·관리 방안 및 사실의 공개</td></tr>
</table>

3.3 관리대장 기록·관리 방안 및 사실의 공개

① 개인정보 처리부서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② 목적 외 용도로 외부기관에 제공한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10일 이상 게시해야함

o 공고기간 :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10일 이상 계속 게시

o 공고방법 : 대표홈페이지 또는 해당 홈페이지 게재

o 공고 필수 항목

가. 목적 외 이용등을 한 날짜
나. 목적 외 이용등의 법적 근거
다. 목적 외 이용등의 목적
라 목적 외 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양식

[붙임 3]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별지 제7호서식](제15조 관련)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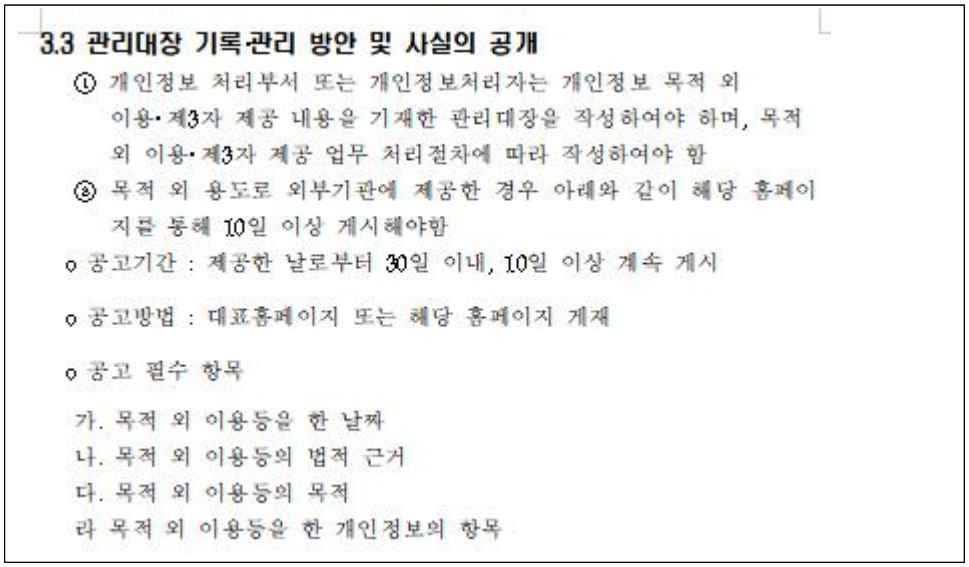
항목 설명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으로 기록.관리한다.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사용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을 작성하나 지속적인 갱신이 이뤄지지 않거나 내용의 누락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59조(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관리)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3.3.6</td><td>●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목적외 이용・제공의 근거, 목적,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동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제외)</td></tr>
<tr><td>평가 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서』3. 목적 외 이용·제공 업무 절차 3.3 관리대장 기록·관리 방안 및 사실의 공개에서 ② 목적 외 용도로 외부기관에 제공한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1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공고기간 :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10일 이상 계속 게시
o 공고방법 : 대표홈페이지 또는 해당 홈페이지 게재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모든 업무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목적외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해당없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개 여부]
<table><tr><th>개인정보 처리업무</th><th>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구분</th><th>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개 여부</th><th>적절성</th></tr><tr><td>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td><td>-</td><td>-</td><td>-</td></tr><tr><td colspan="4">[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table>
[평가근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서』3. 목적 외 이용·제공 업무 절차 3.3 관리대장 기록·관리 방안 및 사실의 공개</td></tr>
</table>

<table>
<tr><td></td><td>
</td></tr>
<tr><td>항목 설명</td><td>● 대상시스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관보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한다.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용 공개 시 게재 사항
-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
- 목적 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 목적 외 이용 등의 목적
-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td></tr>
<tr><td>평가 예시</td><td>● 이행 : 대상시스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계획하고 있거나 공개하고 있는 경우
● 부분이행 : 대상시스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관련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고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은 경우</td></tr>
<tr><td>관련 법률
및 문서</td><td>●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td></tr>
</table>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제공시 안전성 확보</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3.3.7</td><td>● 개인정보를 제3자(목적 외 제공, 위탁 포함)에게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경우 암호화 조치, 보유기간 지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
② 사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록 보존
③ 안전한 전송 수단(전용선, VPN 등), 암호화, 접근제어 등 조치 적용</td></tr>
<tr><td>평가 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2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서 '④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VIMS를 통해서 보험개발원으로 제3자 제공 예정으로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에서 직접 제 3자 제공은 없으나 제공하게 될 경우 제공 시 암호화 통신(SSL)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조치 마련 공식적 요청할 예정임.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검토]
<table><tr><th>세부 점검 기준</th><th>점검 내용</th><th>적절성</th></tr><tr><td>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 공식적 요청</td><td>추후 제3자 제공 경우, 공문으로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요청사항을 포함할 예정
-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보관 시 암호화 조치</td><td>○</td></tr><tr><td>② 사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록 보존</td><td>제공한 내역을 보관 예정</td><td>○</td></tr><tr><td>③ 안전한 전송 수단, 암호화, 접근제어 등 조치 적용</td><td>암호화 통신(SSL)으로 전송 계획</td><td>○</td></tr><tr><td colspan="3">[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table>
[개인정보 제3자(목적 외 제공, 위탁 포함) 제공·연계 현황]</td></tr>
</table>

업무	제공·연계 받는 자	제공·연계 구분	제공·연계 항목	제공·연계 방법
내압용기 온라인 예약시스템	-	-	-	SSL (제공 경우)

[평가근거]
- 업무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2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알려야 한다.

- 암호화 통신(HTTPS) 계획

```
try {
    sc = SSLContext.getInstance("TLSv1.2");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Gpki.Log("[Log Output_Issus] : sendAndRecv_요청전문_sc 오류", logFilePathS);
}

HostnameVerifier hv = new HostnameVerifier() {
    @Override
    public boolean verify(String hostname, SSLSession session) {
        return true;
    }
};

try {
    sc.init(null, trustAllCerts, new SecureRandom());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Gpki.Log("[Log Output_Issus] : sendAndRecv_요청전문_sc 설정오류", logFilePathS);
}

HttpsURLConnection.setDefaultSSLSocketFactory(sc.getSocketFactory());
HttpsURLConnection.setDefaultHostnameVerifier(hv);

URL wsdlLocation = new URL(url);
HttpsURLConnection urlConnection = (HttpsURLConnection) wsdlLocation.openConnection();
InputStream in = null;

urlConnection.setConnectTimeout(CONNECT_TIMEOUT);
urlConnection.setReadTimeout(READ_TIMEOUT);

urlConnection.setRequestMethod("POST");
urlConnection.setRequestProperty("Accept-Charset", "UTF-8");
```

항목 설명	● 개인정보를 제3자(목적외 제공, 위탁 포함)에게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경우 암호화 조치, 보유기간 지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한다. [용어설명] ❖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의 제공범위, 데이터의 가공여부, 제공하는 파일의 형태 및 특성에 따른 보안방법, 접근통제, 인증, 제공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와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확인에 있어서의 안전조치 및 제공기관이 제공

	기관장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재 제공을 금지하는 것 등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를 제3자에 연계.제공할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암호화 조치, 보유기간 지정 등)에 대해 화면설계서 등의 설계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를 제3자에 연계.제공할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암호화 조치, 보유기간 지정 등)에 대해 화면설계서 등의 설계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보안상 충분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영향평가 영역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평가분야	3.4 위탁
평가 목적	●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기관 외부에 위탁.제공하는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세부 분야	위탁사실 공개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3.4.1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 위탁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 등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공개 또는 통지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위탁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지속적 공개(위탁 업무의 내용, 수탁자, 재수탁자)** **② 홍보, 판매 등을 위한 위탁 시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고지**				
평가 근거 및 의견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에서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39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서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CUSOFT컨소시엄이 개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위탁업무, 수탁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표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있지 않음.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및 공개 방법]				

위탁업무명칭	수탁자	업무내용	위탁기간	공개방법	적절성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 용역	CUSOFT컨소시엄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	2025.08.05.~ 2025.12.19	미공개	X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해당없음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39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제39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위탁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7.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8. 가명정보의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한 재식별 시도 금지 및 재식별 위험 발생 시 위탁자 통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제2조제25호에 따른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2. 관보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순번	부서명	위탁받는 자		위탁 업무
		수탁자	재수탁자	
1	한국교통안전공단 디지털기획처	대신정보통신	씨유소프트	2024~2025 한국교통안전공단 유지보수 시스템의 운영
			㈜아이웨이브	
		㈜엠티데이타	유니디아	
			㈜아이웨이브	
2	한국교통안전공단 감사처	주식회사 오토콜		제안서 등 평가위원 섭외
3	한국교통안전공단 감사처	(사)지식콘텐츠기업협회		청렴도 조사 업무
4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경성문화사		TS매거진 제작 용역
5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재개발처	㈜커리어넷		채용 업무 대행 용역
6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재개발처	㈜현대경제연구원		사이버연수원 위탁운영
7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처	㈜싸이버원		공단 정보시스템 웹취약점 점검
8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지원처	주식회사 현대이지웰		선택적 복리후생 컨설팅 및 서비스협약서
9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지원처	㈜브리지텍		고객콜센터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통합용역
10	한국교통안전공단 ESG경영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11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운영처	㈜스마트솔루션		모바일공인전자 안내(자동차검사 사전안내 전자문서)
		㈜카카오		
12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운영처	(사)대한문화체육교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우편) 제작 용역
13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운영처	KG이니시스		자동차 검사 수수료 결재
14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정회계처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수수료 수납
15	한국교통안전공단 기후탄소물류처	주식회사 이웃		2025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6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연구처	주식회사 이웃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관리
17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	주식회사 포드림		드론 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8	한국교통안전공단 주차안전처	주식회사 유엔파인		2025년 기계식주차장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19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정책처	주식회사 제이엠		2025년 자동차제작 결함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항목 설명	● 대상시스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위탁(재위탁하는 경우 포함)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 목적, 위탁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위탁사실 및 위탁기간,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법 개정 2023. 3. 14> ●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
평가 예시	● 이행 : 위탁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계획하고 있거나 공개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위탁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도록 계획 또는 기재하고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시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세부 분야	위탁 계약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3.4.2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책임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문서에 의한 위탁 (표준위탁계약서)				
평가 근거 및 의견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에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39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서 ① 위탁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개발를 ㈜CUSOFT컨소시엄에 위탁하여 구축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 및『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모든 내용을 포함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음.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위수탁 문서에 포함여부 점검 현황]				

세부 기준		점검 결과	적절성
문서에 의한 위탁			
포함내용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제3조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제7조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	제8조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6조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제6조	○
	재위탁제한	제5조	○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	제11조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해당없음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현황]

위탁업무명칭	수탁자	업무내용	위탁기간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 용역	CUSOFT컨소시엄	내압용기 검사 온라인예약/처리	2025.08.05.~2025.12.19

세부 기준		점검 결과
수탁사		CUSOFT컨소시엄
① 문서에 의한 위탁		○
포함 내용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4. 재위탁 제한	○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	○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39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9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위탁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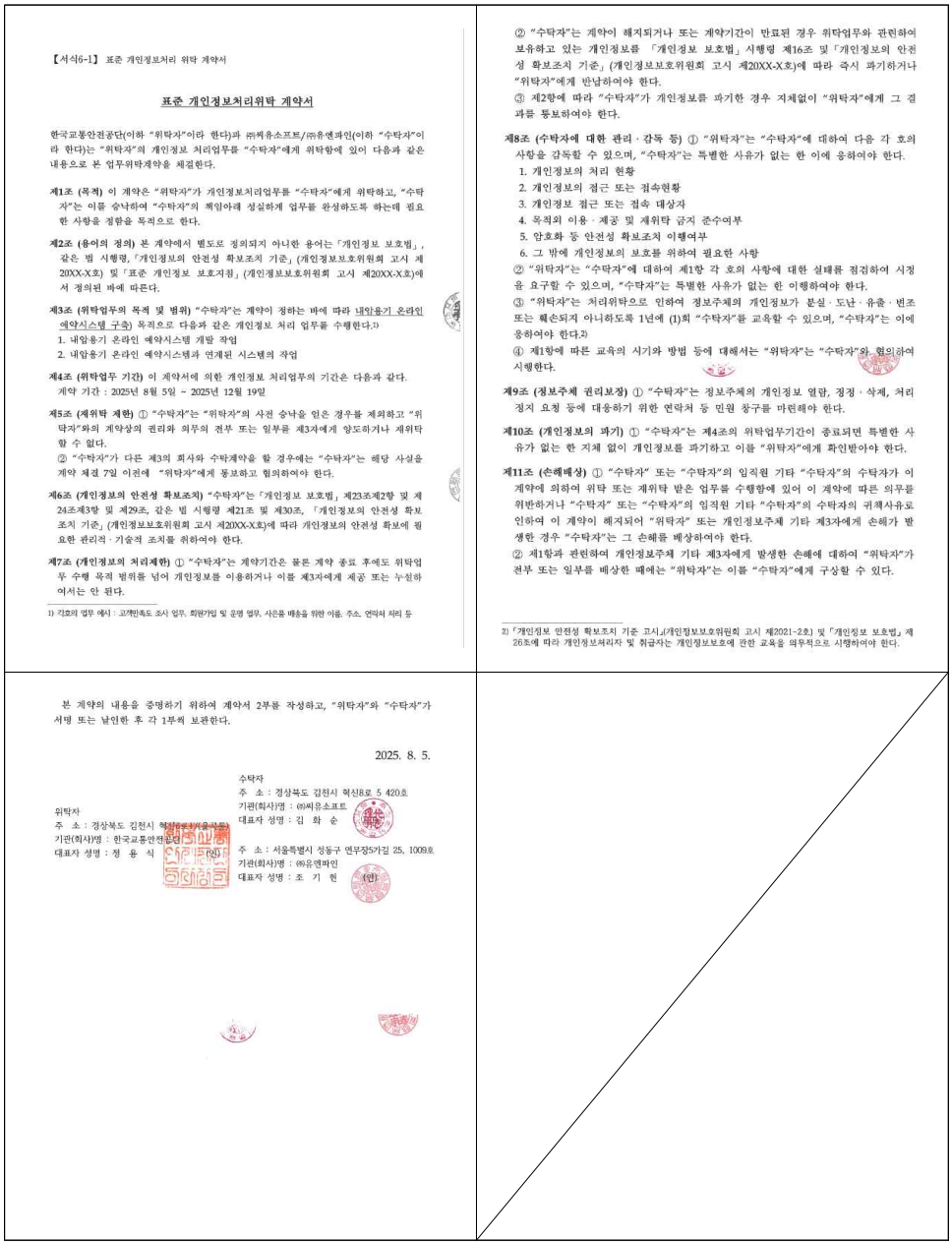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8. 가명정보의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한 재식별 시도 금지 및 재식별 위험 발생 시 위탁자 통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제2조제25호에 따른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 사업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서식6-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씨유소프트/㈜유엔파인(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XX-X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XX-X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압용기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내압용기 온라인 예약시스템 개발 작업
2. 내압용기 온라인 예약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의 작업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5년 8월 5일 ~ 2025년 12월 19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XX-X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XX-X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8. 5.

위탁자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5 420호
기관(회사)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표자 성명 : 정 용 식 (인)

수탁자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5 420호
기관(회사)명 : ㈜씨유소프트
대표자 성명 : 김 화 순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1009호
기관(회사)명 : ㈜유엔파인
대표자 성명 : 조 기 현 (인)

항목 설명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무 위탁시 다음 사항을 반영한 위탁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법 개정 2023. 3. 14>**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재위탁 시 위탁자 동의 필요) <법 개정 2023. 3. 14>**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평가 예시	● 이행 : 업무위탁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책임사항이 위탁계약서에 일부만 포함되거나 일부 위탁기관에 대해서만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6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7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수탁사 관리・감독</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3.4.3</td><td>●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③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td></tr>
<tr><td>평가 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39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서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재위탁이 없어 해당 없음.

[개인정보 처리업무 재위탁 현황 및 동의 여부]
<table><tr><th>수탁자
(수탁업무)</th><th>재위탁 여부</th><th>위탁사 동의여부</th><th>적절성</th></tr><tr><td>CUSOFT컨소시엄
내압용기
온라인예약
시스템</td><td>-</td><td>-</td><td>-</td></tr><tr><td colspan="4">[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table>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39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⑥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5">● 위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의 위탁에 따른 내용을 계약체결 시 재위탁 수행 시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함을 수탁자에게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td></tr>
</table>

	- 필요 시 위탁자는 재위탁 시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서식을 계약서 내 배포하도록 함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평가 예시	● 이행 : ● 부분 이행 : ● 미이행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면서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세부 분야	수탁사 관리・감독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3.4.4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처리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수탁자 관리감독 계획 수립 및 활동 수행 (서약서, 교육, 실태점검 등)				

평가 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38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에서 ③ 위탁자와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계약 시 제39조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서⑥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15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개발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CUSOFT컨소시엄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징구하고, 2025년 5월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였음.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현황]

위탁업무명칭	수탁자	업무내용	위탁기간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 용역	CUSOFT컨소시엄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	2025.08.05.~2025.12.19

세부 기준		점검 결과	적절성
		CUSOFT컨소시엄	
① 수탁자 관리감독 계획 수립 및 활동	1.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징구	○
	2.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3. 개인정보 실태점검	실태점검 실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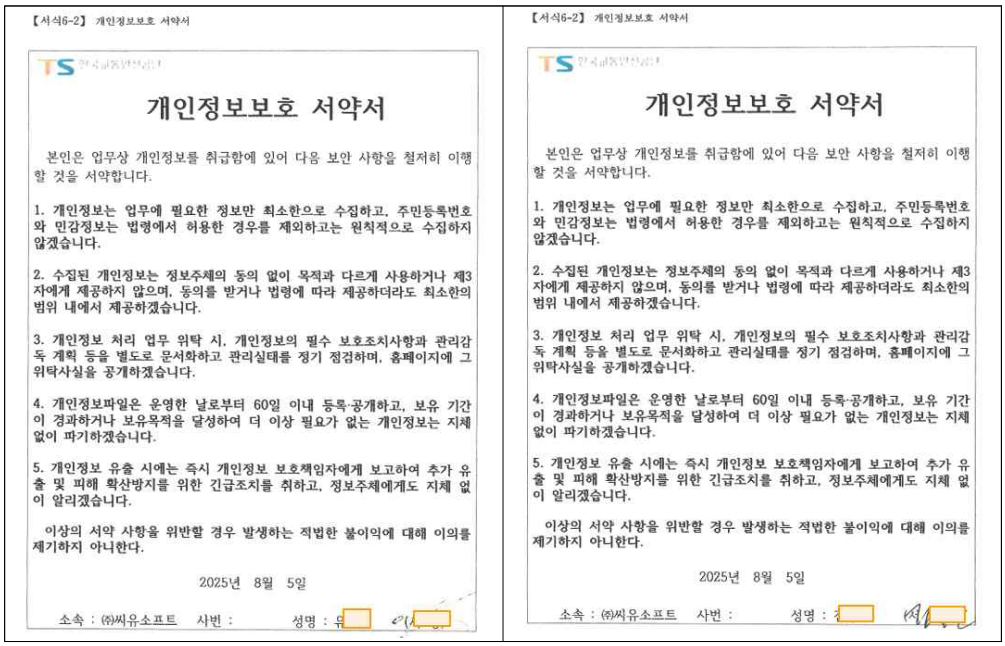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평가근거]

-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38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 **제38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위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와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계약 시 제39조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보안서약서(수탁사)



【서식6-2】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는 업무에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겠습니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따라 제공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의 필수 보호조치사항과 관리감독 계획 등을 별도로 문서화하고 관리실태를 정기 점검하며, 홈페이지에 그 위탁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파일은 운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록·공개하고,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유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겠습니다.
5.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즉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추가 유출 및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정보주체에게도 지체 없이 알리겠습니다.

이상의 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적법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5년 8월 5일

소속 : ㈜씨유소프트 사번 : 성명 :

【서식6-2】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는 업무에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겠습니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따라 제공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의 필수 보호조치사항과 관리감독 계획 등을 별도로 문서화하고 관리실태를 정기 점검하며, 홈페이지에 그 위탁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파일은 운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록·공개하고,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유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겠습니다.
5.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즉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추가 유출 및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정보주체에게도 지체 없이 알리겠습니다.

이상의 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적법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5년 8월 5일

소속 : ㈜씨유소프트 사번 : 성명 :

- 수탁사 개인정보보호 교육결과



2025년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결과서

□ 교육 일정

구 분	추진시기	추 진 내 용	대 상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주관 온라인 교육	연중 (연 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온라인 교육 - [포털>교육>현장교육>현장교육과정>개인정보보호 교육 초급] 과정 수강 및 '교육수료증' 필수 제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일반직원

□ 교육 결과 ※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후 결과 및 수료증 반드시 제출

1.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
- 교육과정명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개인정보 처리시스템명	소속	교육대상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참석인원
내압용기 온라인시스템	씨유소프트	우[redacted]	2025.08.08.	1.8시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1명

교육 수료증

성 명: 우[redacted]
교 육 기 간: 2025.01.01 ~ 2025.12.31
교 육 수 료 일: 2025.08.08
교 육 시 간: 1.8시간 (105 분)

위 사람은 개인정보보호포털(edu.privacy.go.kr)의 교육과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 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년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결과서

□ 교육 일정

구 분	추진시기	추 진 내 용	대 상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주관 온라인 교육	연중 (연 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온라인 교육 - [포털>교육>현장교육>현장교육과정>개인정보보호 교육 초급] 과정 수강 및 '교육수료증' 필수 제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일반직원

□ 교육 결과 ※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후 결과 및 수료증 반드시 제출

1.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
- 교육과정명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법 개정사항

개인정보 처리시스템명	소속	교육대상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참석인원
내압용기 온라인시스템	씨유소프트	김[redacted]	2025.08.07.	0.5시간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법 개정사항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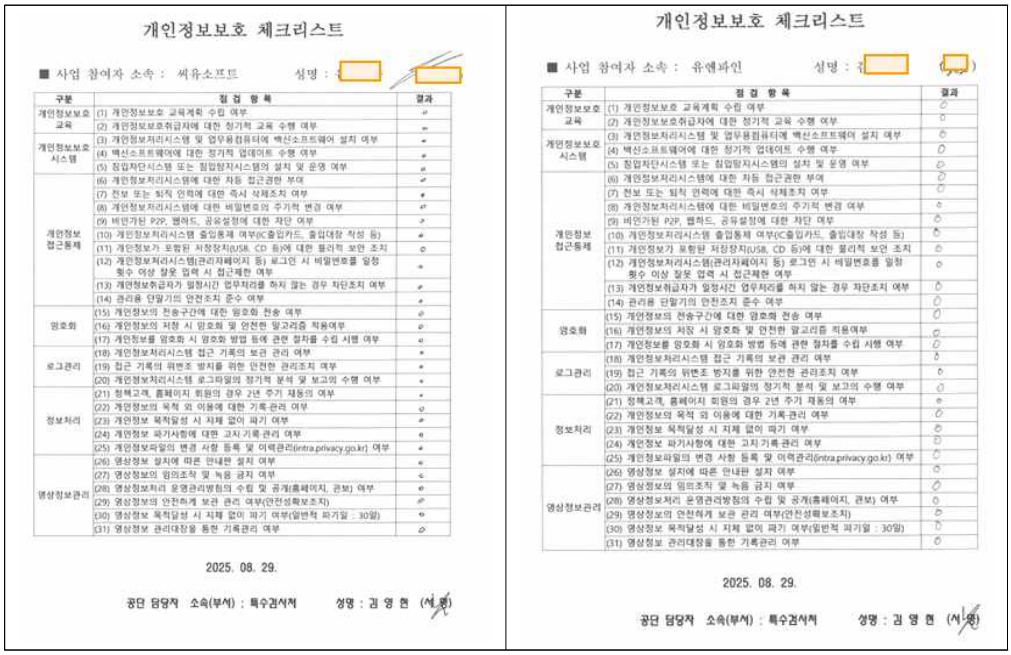
교육 수료증

성 명: 김[redacted]
교 육 기 간: 2025.01.01 ~ 2025.12.31
교 육 수 료 일: 2025.08.07
교 육 시 간: 0.5시간 (30 분)

위 사람은 개인정보보호포털(edu.privacy.go.kr)의 교육과정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법 개정사항」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 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수탁사 대상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

■ 사업 참여자 소속 : 써유소프트 성명 :

구분	점검 항목	결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1)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여부	
	(2) 개인정보보호취급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수행 여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컴퓨터에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4) 백신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 업데이트 수행 여부	
	(5) 침입차단시스템 또는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개인정보 접근통제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차등 접근권한 부여	
	(7) 전보 또는 퇴직 인력에 대한 즉시 삭제조치 여부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여부	
	(9) 비인가된 P2P, 웹하드, 공유설정에 대한 차단 여부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출입통제 여부(IC출입카드, 출입대장 작성 등)	
	(11) 개인정보가 포함된 저장장치(USB, CD 등)에 대한 물리적 보안 조치	
	(12)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페이지 등)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근제한 여부	
	(13)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차단조치 여부	
	(14)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암호화	(15) 개인정보의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 전송 여부	
	(16) 개인정보의 저장 시 암호화 및 안전한 알고리즘 적용여부	
	(17) 개인정보를 암호화 시 암호화 방법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 시행 여부	
로그관리	(18)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기록의 보관 관리 여부	
	(19) 접근 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안전한 관리조치 여부	
	(20)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파일의 정기적 분석 및 보고의 수행 여부	
정보처리	(21)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의 경우 2년 주기 재동의 여부	
	(2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기록관리 여부	
	(23) 개인정보 목적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여부	
	(24) 개인정보 파기사항에 대한 고지 기록관리 여부	
	(25) 개인정보파일의 변경 사항 등록 및 이력관리(intra.privacy.go.kr) 여부	
영상정보관리	(26) 영상정보 설치에 따른 안내판 설치 여부	
	(27) 영상정보의 임의조작 및 녹음 금지 여부	
	(28) 영상정보처리 운영관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홈페이지, 관보) 여부	
	(29) 영상정보의 안전하게 보관 관리 여부(안전성확보조치)	
	(30) 영상정보 목적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여부(일반적 파기일 : 30일)	
	(31)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통한 기록관리 여부	

2025. 08. 29.

공단 담당자 소속(부서) : 특수검사처 성명 : 김 영 현 (서명)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

■ 사업 참여자 소속 : 유앤바인 성명 :

구분	점검 항목	결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1)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여부	
	(2) 개인정보보호취급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수행 여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컴퓨터에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4) 백신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 업데이트 수행 여부	
	(5) 침입차단시스템 또는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개인정보 접근통제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차등 접근권한 부여	
	(7) 전보 또는 퇴직 인력에 대한 즉시 삭제조치 여부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여부	
	(9) 비인가된 P2P, 웹하드, 공유설정에 대한 차단 여부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출입통제 여부(IC출입카드, 출입대장 작성 등)	
	(11) 개인정보가 포함된 저장장치(USB, CD 등)에 대한 물리적 보안 조치	
	(12)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페이지 등)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근제한 여부	
	(13)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차단조치 여부	
	(14)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암호화	(15) 개인정보의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 전송 여부	
	(16) 개인정보의 저장 시 암호화 및 안전한 알고리즘 적용여부	
	(17) 개인정보를 암호화 시 암호화 방법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 시행 여부	
로그관리	(18)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기록의 보관 관리 여부	
	(19) 접근 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안전한 관리조치 여부	
	(20)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파일의 정기적 분석 및 보고의 수행 여부	
정보처리	(21)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의 경우 2년 주기 재동의 여부	
	(2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기록관리 여부	
	(23) 개인정보 목적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여부	
	(24) 개인정보 파기사항에 대한 고지 기록관리 여부	
	(25) 개인정보파일의 변경 사항 등록 및 이력관리(intra.privacy.go.kr) 여부	
영상정보관리	(26) 영상정보 설치에 따른 안내판 설치 여부	
	(27) 영상정보의 임의조작 및 녹음 금지 여부	
	(28) 영상정보처리 운영관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홈페이지, 관보) 여부	
	(29) 영상정보의 안전하게 보관 관리 여부(안전성확보조치)	
	(30) 영상정보 목적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여부(일반적 파기일 : 30일)	
	(31)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통한 기록관리 여부	

2025. 08. 29.

공단 담당자 소속(부서) : 특수검사처 성명 : 김 영 현 (서명)

항목 설명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법 신설 2023. 3. 14>**
평가 예시	● 이행 : 수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처리 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 활동을 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수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처리 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 활동을 한 문서를 일부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6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7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영향평가 영역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평가 분야	3.5 파기
평가 목적	● 개인정보 파일의 파기기준 및 절차의 적합성을 점검한다.

세부 분야	파기 계획 수립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3.5.1	● 개인정보의 보유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유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지체없이 파기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기간 경과 등)**				

평가 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34조(개인정보의 파기)에서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계획이나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정보 파일은 보유기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서 내부 협의 및 기관장 결재 예정으로 미확정 상태로 현재시점에서 해당 없음.

[개인정보파일 현황]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기간	개인정보 파일 파기 여부	적절성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정보	협의 및 결재준비	-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평가근거]
- 업무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34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35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제35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③ 제2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절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된다. ⑥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 파기 방법 및 절차에 관련하여 제76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6항의 파기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항목 설명	● 보유기간 산정은 기관과 관련이 있는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
평가 예시	● 이행 : 대상시스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을 산정한 법률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대상시스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을 산정한 법률 근거를 확인할 수 있으나 산정이 일부 잘못된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1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분리보관 계획 수립</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3.5.2</td><td>●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할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분리하여 저장·관리
②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적용(접근권한 분리, 접속기록 보관, 접근 통제 등)</td></tr>
<tr><td>평가 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36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에서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모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존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본 질의문은 해당없음.

[개인정보파일 현황]

<table>
<tr><th>개인정보 파일명</th><th>보유기간</th><th>분리보관 여부</th><th>분리보관 근거</th><th>적절성</th></tr>
<tr><td>내압용기
온라인예약정보</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
</table>

[평가근거]
- 업무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table>
<tr><td>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td></tr>
</table>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36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td></tr>
</table>

	제36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목 설명	●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 물리적, 논리적으로 분리된 시스템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평가 예시	● 이행 : 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일부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파기대장 작성</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3.5.3</td><td>●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 결과 등을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시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작성 관리</td></tr>
<tr><td>평가 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76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에서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2025년 12월에 개발 완료 예정이며, 현재까지 파기는 없음.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예정이며 해당 담당자가 개인정보 파일 보유기간 도래 시 삭제한 후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할 예정임.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점검]
<table><tr><th>개인정보 파일</th><th>개인정보 파일</th><th>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작성 여부</th><th>적절성</th></tr><tr><td>내압용기 온라인예약정보</td><td>보유기간 도래 시 파기 예정</td><td>파기 관리대장 준비</td><td>○</td></tr><tr><td colspan="4">[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table>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76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td></tr>
</table>

제76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및 파기 관리대장(양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파기일	파기건수	파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항목 설명	●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하는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파기일자, 파기사유 등에 대해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을 문서로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내용을 갱신하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을 문서로 관리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내용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55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56조(개인정보파일 등록사실의 삭제)

[4]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4.1 접근권한 관리	• 계정 관리 • 인증 관리 • 권한 관리
4.2 접근통제	• 접근통제 조치 •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조치 • 업무용 모바일기기 보호조치
4.3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저장시 암호화 • 전송시 암호화
4.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 보관 • 접속기록 점검 •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4.5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백신 설치 및 운영 • 보안업데이트 적용
4.6 물리적 접근방지	• 출입통제 절차 수립 • 반출·입 통제 절차 수립
4.7 개인정보의 파기	• 안전한 파기
4.8 기타 기술적 보호 조치	• 개발 환경 통제 •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 출력시 보호조치
4.9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	• 보호구역지정

영향평가 영역	4.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평가분야	4.1 접근권한 관리
평가 목적	● 개인정보파일 사용자 접근 권한관리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점검합니다.

세부 분야	계정 관리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4.1.1	● 개인정보취급자별로 책임추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별 계정을 부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고유한 사용자 계정 발급(응용, 서버, DBMS) ②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계정 공유 금지				

평가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제58조(접근 권한 관리)에서 ④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을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은 VIMS(검사관리시스템) 내 메뉴를 추가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개발 중인 시스템이며, 개별 계정은 VIMS(검사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계정을 그대로 사용함으로 계정 관련 개발은 금번 사업에 관련 없어 해당 없음.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의 서버 및 DB의 계정은 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계정 부여는 본 개발시스템에 해당 없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별 계정 부여현황 점검]

세부 기준		점검 결과	적절성
① 개인정보취급자별 고유 계정 발급	응용	VIMS에서 관리	-
	서버	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	-
	DBMS		-
② 계정 공유 금지	응용	VIMS에서 관리	-
	서버	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	-
	DBMS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평가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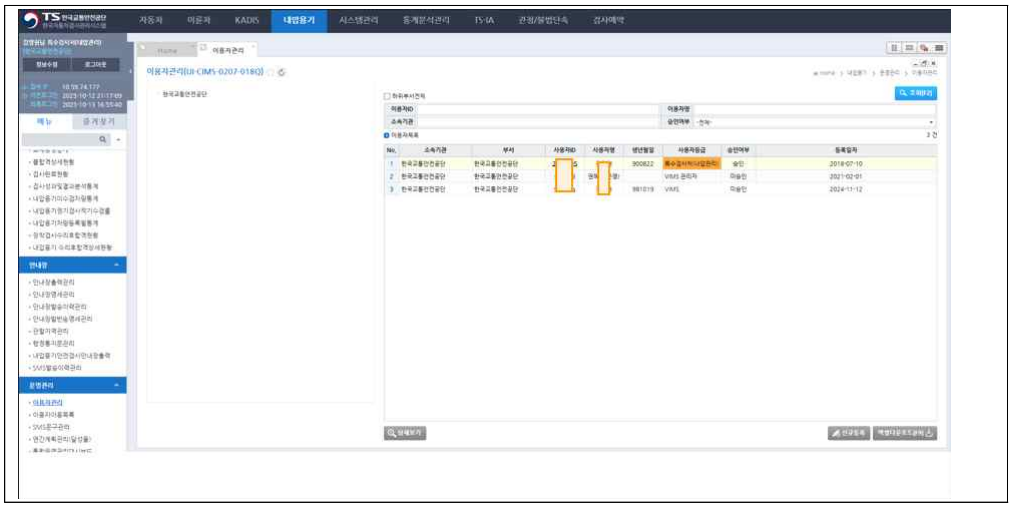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58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58조(접근 권한의 관리) ①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개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VIMS(검사관리시스템) 사용자 관리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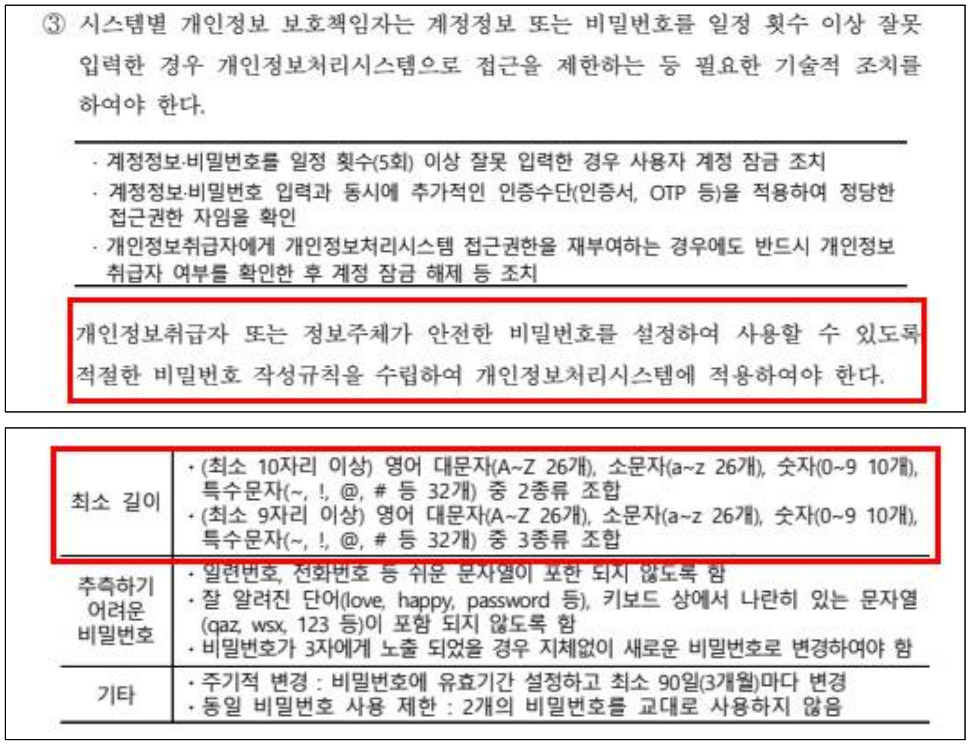
항목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개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2023. 9. 22>**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 취급자 별로 1인 1개 ID를 부여한 ID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인증 관리</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4.1.2</td><td>●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안전한 인증 수단 적용
②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자율적 기준)</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VI. 기술적 안전조치 1. 접근권한 관리에서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응용프로그램(홈페이지)의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는 VIMS(검사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금번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없음.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 점검]
<table><tr><th colspan="2">세부 기준</th><th>점검 결과</th><th>적절성</th></tr><tr><td rowspan="3">①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td><td>응용</td><td>VIMS에서 관리</td><td>-</td></tr><tr><td>서버</td><td rowspan="2">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td><td>-</td></tr><tr><td>DBMS</td><td>-</td></tr><tr><td rowspan="3">① 비밀번호 적용규칙 (최소길이, 변경주기, 비밀번호재사용재한, 추측하기 쉬운 단어 등)</td><td>응용</td><td>VIMS에서 관리</td><td>-</td></tr><tr><td>서버</td><td rowspan="2">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td><td>-</td></tr><tr><td>DBMS</td><td>-</td></tr><tr><td colspan="4">[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table>
[평가근거]
- 업무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VI. 기술적 안전조치 1. 접근 권한 관리(비밀번호 작성규칙)</td></tr>
</table>



③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정정보·비밀번호를 일정 횟수(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사용자 계정 잠금 조치
- 계정정보·비밀번호 입력과 동시에 추가적인 인증수단(인증서, OTP 등)을 적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자임을 확인
-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재부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개인정보취급자 여부를 확인한 후 계정 잠금 해제 등 조치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최소 길이	· (최소 10자리 이상) 영어 대문자(A~Z 26개), 소문자(a~z 26개), 숫자(0~9 10개), 특수문자(~, !, @, # 등 32개) 중 2종류 조합 · (최소 9자리 이상) 영어 대문자(A~Z 26개), 소문자(a~z 26개), 숫자(0~9 10개), 특수문자(~, !, @, # 등 32개) 중 3종류 조합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 일련번호, 전화번호 등 쉬운 문자열이 포함 되지 않도록 함 · 잘 알려진 단어(love, happy, password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az, wsx, 123 등)이 포함 되지 않도록 함 · 비밀번호가 3자에게 노출 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하여야 함
기타	· 주기적 변경 : 비밀번호에 유효기간 설정하고 최소 90일(3개월)마다 변경 · 동일 비밀번호 사용 제한 : 2개의 비밀번호를 교대로 사용하지 않음

항목 설명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2023. 9. 22>** ● 비밀번호 조합 및 최소 문자 수 설정시 다음 항목의 문자 종류 중 2개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개 이상 종류를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하도록 함 - 영문 대문자(26개), 영문 소문자(26개), 숫자(10개), 특수문자(32개)
평가 예시	● 이행 : 비밀번호 규칙(문자 조합, 최저 문자 수 설정, 유효기간 설정, 추측이 쉬운 번호 사용제한)을 화면설계서 등의 설계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비밀번호 규칙(문자 조합, 최저 문자 수 설정, 유효기간 설정, 추측이 쉬운 번호 사용제한)을 화면설계서 등의 설계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비밀번호 조합규칙 중 일부만 적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5조(접근권한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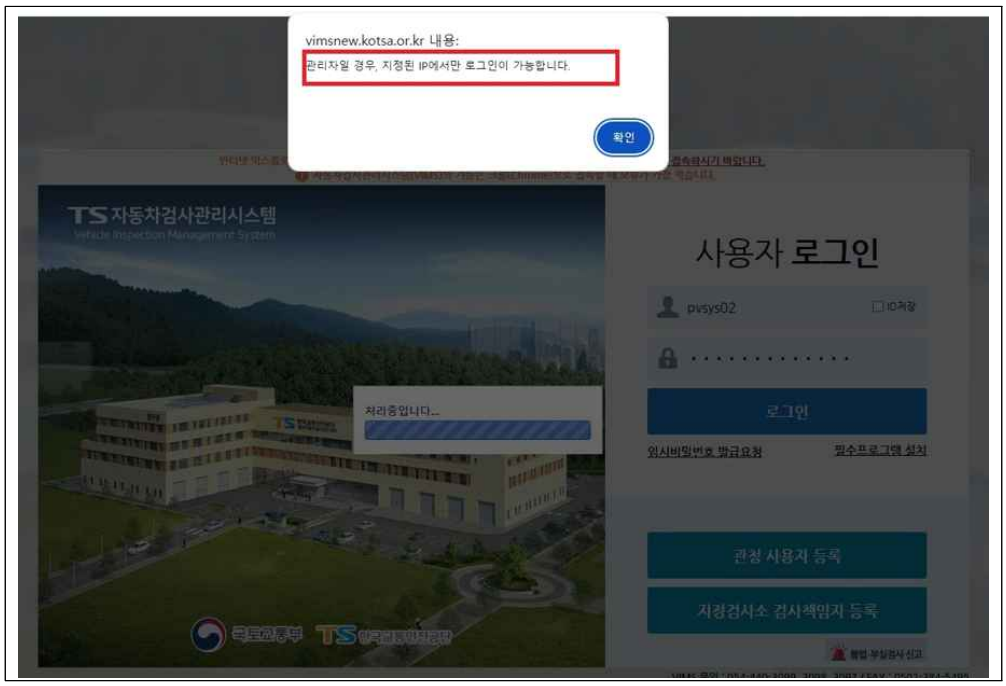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인증 관리</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4.1.3</td><td>● 정보주체가 비밀번호 변경 등 중요 정보 접근 시 비밀번호 재확인 등 추가적인 인증이 적용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정보 주체가 중요 정보 접근 시 추가적인 인증절차 적용(비밀번호 변경 등)</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정보주체가 비밀번호 변경 등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어 해당 없음.

[중요 개인정보 접근 시 추가적인 인증 적용 점검]
<table><tr><th>세부 기준</th><th>점검 결과</th><th>적절성</th></tr><tr><td>① 정보주체 중요정보 접근시 추가인증</td><td>N/A</td><td>-</td></tr><tr><td colspan="3">[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table>
[평가근거]
- 담당자 인터뷰</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5">● 중요 정보의 접근 시에는 비밀번호를 재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인증이 적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td></tr>
<tr><td>평가 예시</td><td colspan="5">● 이행 : 중요 정보 접근 시 비밀번호 재확인 등 추가적인 인증을 화면설계서 등의 설계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중요 정보 접근 시 비밀번호 재확인 등 추가적인 인증을 화면설계서 등의 설계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일부 중요 정보만 적용하고 있는 경우</td></tr>
<tr><td>관련 법률
및 문서</td><td colspan="5">● 본 항목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한 기술적 보호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권장사항임</td></tr>
</table>

세부 분야	인증 관리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4.1.4	● 대량의 개인정보 또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 및 관리자는 강화된 인증방식이 적용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대량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강화된 인증방식 적용(인증서, OTP 등)				
평가근거 및 의견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은 VIMS(검사관리시스템)에서 계정을 관리하며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서버 및 DB는 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하여 해당 없음.				

세부 기준		점검 결과	적절성
① 대량 개인정보 취급자 강화된 인증방식 적용	응용	VIMS에서 관리	-
	서버	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	-
	DBMS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평가근거]
- VIMS의 강화된 인증방식



항목 설명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시 전자서명 인증방식(GPKI, NPKI) 또는 I-PIN을 이용하도록 한다. [용어설명] ❖ GPKI(Government Public Infrastructure) :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행정전자서명 인증서) ❖ EPKI(Education Public Key Infrastructure) : 교육부 전자서명 인증체계 ❖ NPKI(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 : 국가에서 인증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민간인증체계(공인인증서) ❖ I-PIN :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하는 수단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시 공인인증서, I-PIN 등의 안전한 인증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본 항목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한 기술적 보호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권장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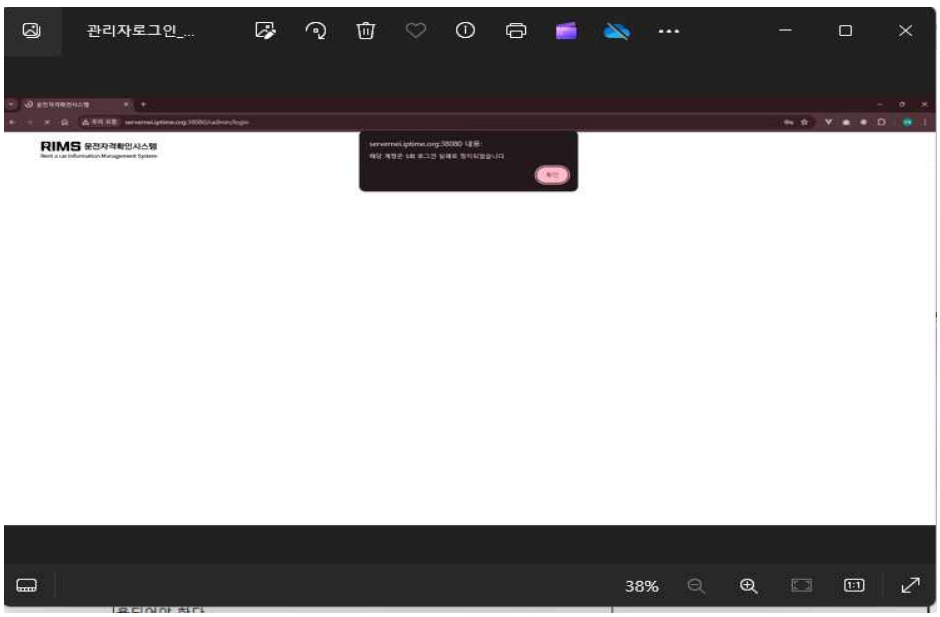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인증 관리</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4.1.5</td><td>●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인증 시도 실패 횟수 제한 (일정 횟수 이상 실패 시 잠금 등)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정보주체에 관한 개정 규정-일반대상)</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VI. 기술적 안전조치 1. 접근권한 관리'에서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VIMS 통하여 인증받고 있으며 사업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없음.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의 서버 및 DB는 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하며, 센터 운영 정책 기준에 따라 운영함.

[로그인 시도 실패 횟수 제한 적용 점검]
<table>
<tr><th colspan="2">세부 기준</th><th>점검 결과</th><th>적절성</th></tr>
<tr><td rowspan="3">① 인증 시도 실패 횟수 제한</td><td>응용</td><td>VIMS에서 관리</td><td>-</td></tr>
<tr><td>서버</td><td rowspan="2">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td><td>-</td></tr>
<tr><td>DBMS</td><td>-</td></tr>
<tr><td colspan="4">[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
</table>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VI. 기술적 안전조치 1. 접근 권한의 관리</td></tr>
</table>

	③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정정보·비밀번호를 일정 횟수(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사용자 계정 잠금 조치 - 계정정보·비밀번호 입력과 동시에 추가적인 인증수단(인증서, OTP 등)을 적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자임을 확인 -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재부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개인정보취급자 여부를 확인한 후 계정 잠금 해제 등 조치 - VIMS에서 로그인 제한 관리자 로그인 경고 사례 
항목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2023. 9. 22>**
평가 예시	● 이행 : 일정 횟수 이상 비밀번호 입력 오류에 대하여 인증시도를 차단하는 경우 ● 부분 이행 : 일정 횟수 이상 비밀번호 입력 오류에 따른 경고 메시지는 있으나 차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음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인증 관리</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4.1.6</td><td>●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최대 접속시간 제한 (세션타임 아웃, 접속 가능 시간제한 등)</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VI. 기술적 안전조치 2. 접근 통제에서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 예약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은 VIMS에서 개인정보취급자 및 관리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세션타임아웃(30분)을 적용하고 있으며 30분 동안 업무 처리를 하지 않으면 로그인하지 않은 관리자 페이지 메인화면으로 되돌아가도록 적용하고 있어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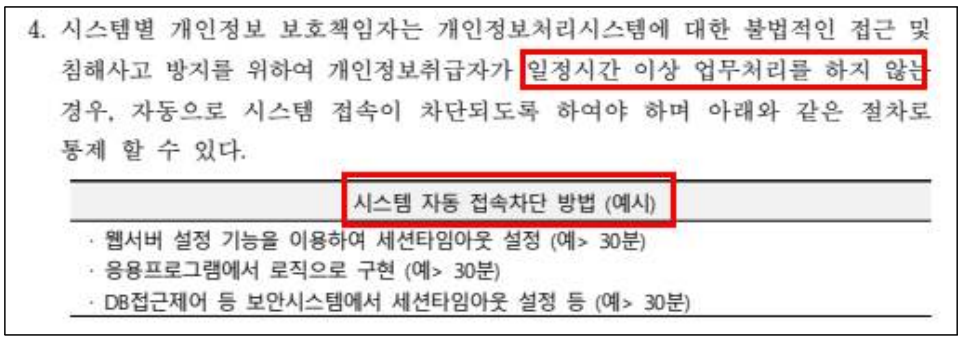
- 장시간 미사용 (30분) 자동 로그아웃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의 서버 및 DB는 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하며, 센터 관리 정책기준에 따라 운영함.

[일정시간 이상 업무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 접속 차단 적용 점검]
<table>
<tr><th colspan="2">세부 기준</th><th>점검 결과</th><th>적절성</th></tr>
<tr><td rowspan="3">① 최대 접속 시간 제한</td><td>응용</td><td>VIMS에서 세션타임아웃 30분으로 설정</td><td>-</td></tr>
<tr><td>서버</td><td rowspan="2">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td><td>-</td></tr>
<tr><td>DBMS</td><td>-</td></tr>
<tr><td colspan="4">[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
</table>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VI. 기술적 안전조치 2. 접근 통제
</td></tr>
</table>

<table>
<tr>
<td></td>
<td>

4.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통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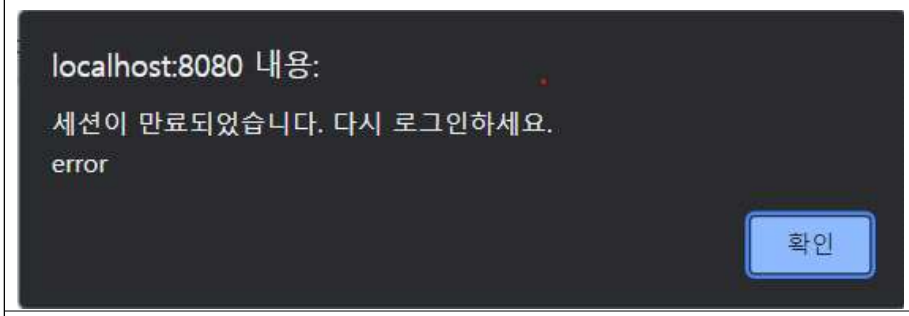
시스템 자동 접속차단 방법 (예시)

· 웹서버 설정 기능을 이용하여 세션타임아웃 설정 (예> 30분)

· 응용프로그램에서 로직으로 구현 (예> 30분)

· DB접근제어 등 보안시스템에서 세션타임아웃 설정 등 (예> 30분)

- 세션 타임아웃 적용(30분) 코드



세션 타임아웃 설정 스크립트(30분)



</td>
</tr>
<tr>
<td>항목 설명</td>
<td>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2023. 9. 22>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이용 시 사용자 공석 등으로 인해 일정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세션아웃 되어 개인정보처리자 외 다른 사용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td>
</tr>
<tr>
<td>평가 예시</td>
<td>
● 이행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기능 설계 및 구현된 경우

● 부분 이행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된다는 경우경고 메시지는 있으나 차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음
</td>
</tr>
</table>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인증 관리</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4.1.7</td><td>●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 미 접속시 계정 잠금, 동시 접속 제한, 관리자 로그인 알림 등 보호 대책이 적용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일정기간 미접속 시 계정 잠금
② 동일 계정에 대한 동시 접속 제한
③ 관리자 등 특수권한 로그인 시 알림 기능</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응용프로그램(포털)은 VIMS에서 계정관리를 하고 있고 금번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없음.

● 서버 및 DBMS 접근 시에는 대구통합전산센터의 접근제어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접근 관리하고 있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비정상적인 접근 방지 적용 점검]
<table>
<tr><th colspan="2">세부 기준</th><th>점검 결과</th><th>적절성</th></tr>
<tr><td rowspan="3">① 업무시간 외 접속기능 제한</td><td>응용</td><td>VIMS에서 관리</td><td>-</td></tr>
<tr><td>서버</td><td rowspan="2">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td><td>-</td></tr>
<tr><td>DBMS</td><td>-</td></tr>
<tr><td rowspan="3">② 일정기간 미접속 시 계정 잠금</td><td>응용</td><td>VIMS에서 관리</td><td>-</td></tr>
<tr><td>서버</td><td rowspan="2">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td><td>-</td></tr>
<tr><td>DBMS</td><td>-</td></tr>
<tr><td rowspan="3">③ 동일 계정 동시 접속 제한</td><td>응용</td><td>VIMS에서 관리</td><td>-</td></tr>
<tr><td>서버</td><td rowspan="2">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td><td>-</td></tr>
<tr><td>DBMS</td><td>-</td></tr>
<tr><td rowspan="3">④ 특수권한 로그인 시 알림 기능</td><td>응용</td><td>VIMS에서 관리</td><td>-</td></tr>
<tr><td>서버</td><td rowspan="2">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td><td>-</td></tr>
<tr><td>DBMS</td><td>-</td></tr>
<tr><td colspan="4">[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
</table>
[평가근거]
- 업무담당자 인터뷰</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td></tr>
</table>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이용 시간을 설정하여 업무시간 등 허가된 시간 외에는 이용을 못하도록 한다.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이용시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다. -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시 관리자에게 자동 고지함으로써 관리자 계정의 노출 및 오용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이 시스템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을 위해 동시 접속 제한 기능 등 일부만 설계되어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본 항목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한 기술적 보호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권장사항임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권한 관리</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4.1.8</td><td>● 개인정보취급자가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절차 마련
②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업무 변경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말소</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VI. 기술적 안전조치 1. 접근 권한 관리'에서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 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등 접근 권한을 현행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 예약시스템의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응용프로그램(포털)은 VIMS에서 권한관리를 하고 있고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서버, DBMS의 경우 접근권한 관리는 대구통합전산센터의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필요시에는 센터에 '서버 계정신청서' 및 'DB접근권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권한을 신청하고 서버접근제어솔루션(Acra Point) 및 DB접근제어솔루션(SEAgent)을 통하여 접근권한을 생성・변경・말소하고 있음.

[접근권한 변경 즉시 반영 점검]
<table><tr><th colspan="2">세부 기준</th><th>점검 결과</th><th>적절성</th></tr><tr><td colspan="2">①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절차</td><td>『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정책』수립 운용</td><td>O</td></tr><tr><td rowspan="3">② 개인정보취급자, 업무 변경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말소</td><td>응용</td><td>VIMS에서 권한관리</td><td>-</td></tr><tr><td>서버</td><td rowspan="2">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td><td>-</td></tr><tr><td>DBMS</td><td>-</td></tr><tr><td colspan="4">[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table>
[평가근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VI.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접근권한의 관리</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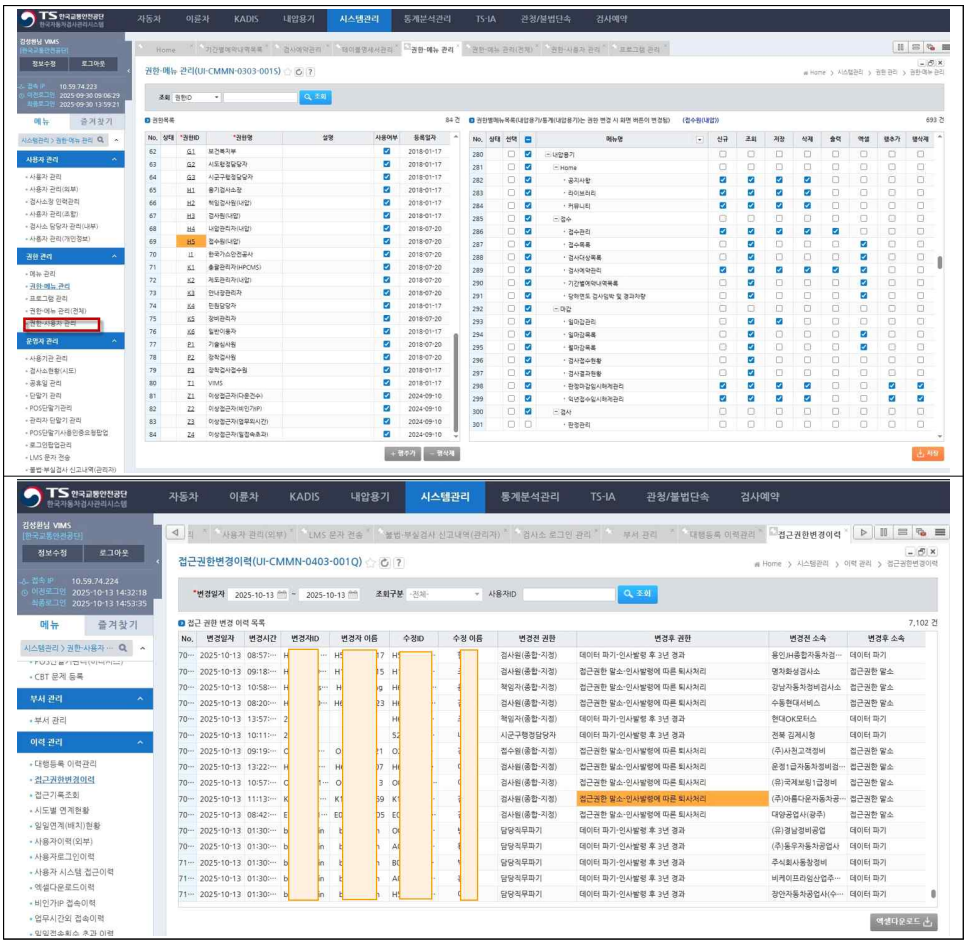
/1. 접근권한 관리

6)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인사이동(전보, 퇴직 등) 발생 시 지체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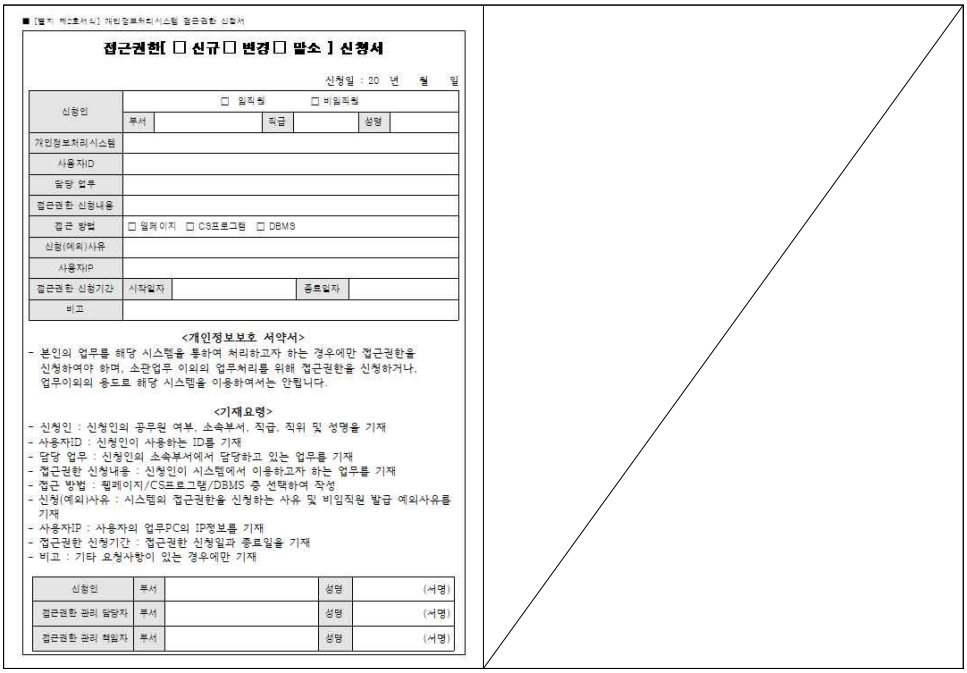
-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등 접근권한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의 정보(부서, 담당업무 등)가 인사시스템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개인정보취급자의 계정에 대해 접근 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 접근권한 변경 및 말소 화면/VIMS 접근 변경 이력



- 접근권한 (신규/변경신청/말소) 신청서

<table>
<tr><td></td><td>

■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신청서

접근권한[□ 신규 □ 변경 □ 말소] 신청서

신청일 : 20 년 월 일

<table>
<tr><td rowspan="2">신청인</td><td colspan="5">□ 임직원 □ 비임직원</td></tr>
<tr><td>부서</td><td></td><td>직급</td><td></td><td>성명</td><td></td></tr>
<tr><td>개인정보처리시스템</td><td colspan="5"></td></tr>
<tr><td>사용자ID</td><td colspan="5"></td></tr>
<tr><td>담당 업무</td><td colspan="5"></td></tr>
<tr><td>접근권한 신청내용</td><td colspan="5"></td></tr>
<tr><td>접근 방법</td><td colspan="5">□ 웹페이지 □ CS프로그램 □ DBMS</td></tr>
<tr><td>신청(예외)사유</td><td colspan="5"></td></tr>
<tr><td>사용자IP</td><td colspan="5"></td></tr>
<tr><td>접근권한 신청기간</td><td>시작일자</td><td></td><td>종료일자</td><td colspan="2"></td></tr>
<tr><td>비고</td><td colspan="5"></td></tr>
</table>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본인의 업무를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접근권한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처리를 위해 접근권한을 신청하거나, 업무이외의 용도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기재요령>

- 신청인 : 신청인의 공무원 여부, 소속부서, 직급, 직위 및 성명을 기재

- 사용자ID : 신청인이 사용하는 ID를 기재

- 담당 업무 : 신청인의 소속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기재

- 접근권한 신청내용 : 신청인이 시스템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업무를 기재

- 접근 방법 : 웹페이지/CS프로그램/DBMS 중 선택하여 작성

- 신청(예외)사유 :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신청하는 사유 및 비임직원 발급 예외사유를 기재

- 사용자IP : 사용자의 업무PC의 IP정보를 기재

- 접근권한 신청기간 : 접근권한 신청일과 종료일을 기재

- 비고 : 기타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table>
<tr><td>신청인</td><td>부서</td><td></td><td>성명</td><td>(서명)</td></tr>
<tr><td>접근권한 관리 담당자</td><td>부서</td><td></td><td>성명</td><td>(서명)</td></tr>
<tr><td>접근권한 관리 책임자</td><td>부서</td><td></td><td>성명</td><td>(서명)</td></tr>
</table>
</td></tr>
<tr><td>항목 설명</td><td>● 개인정보처리자는 <u>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u>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2023. 9. 22></td></tr>
<tr><td>평가 예시</td><td>● 이행 : 개인정보 취급자 변경 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제거되도록 설계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 취급자 변경 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제거되도록 설계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절차가 미흡한 경우</td></tr>
<tr><td>관련 법률 및 문서</td><td>●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td></tr>
</table>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권한 관리</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4.1.9</td><td>●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 변경 또는 말소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접근권한 내역 기록(대상자, 부여자, 일시, 권한명 등)
② 접근권한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③ 접근권한 기록 검토방안 마련</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VI. 기술적 안전조치 1. 접근 권한 관리'에서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말소 내역을 최소 3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 예약시스템의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포털)은 VIMS에서 접근권한을 관리하며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 사유가 발생하면 접근권한을 처리하고 접근 기록을 3년간 남기도록 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의 서버 및 DB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를 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하고 있으며 서버의 접근권한 변경이력은 서버 접근제어솔루션(Acra Point)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기록·관리하고 DB의 경우 'DB접근권한 관리 대장'에 수기로 기록·관리하여 각각 3년 이상 보관하고 있음.

[접근권한 변경이력 관리 점검]
<table>
<tr><th colspan="2">세부 기준</th><th>점검 결과</th><th>적절성</th></tr>
<tr><td rowspan="3">① 접근권한 기록</td><td>응용</td><td>VIMS에서 관리</td><td>-</td></tr>
<tr><td>서버</td><td rowspan="2">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td><td>-</td></tr>
<tr><td>DBMS</td><td>-</td></tr>
<tr><td rowspan="3">② 접근권한 최소 3년간 보관</td><td>응용</td><td>VIMS에서 관리</td><td>-</td></tr>
<tr><td>서버</td><td rowspan="2">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td><td>-</td></tr>
<tr><td>DBMS</td><td>-</td></tr>
<tr><td rowspan="3">③ 접근권한 기록 검토 방안</td><td>응용</td><td>VIMS에서 관리</td><td>-</td></tr>
<tr><td>서버</td><td rowspan="2">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td><td>-</td></tr>
<tr><td>DBMS</td><td>-</td></tr>
<tr><td colspan="4">[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
</table>
[평가근거]</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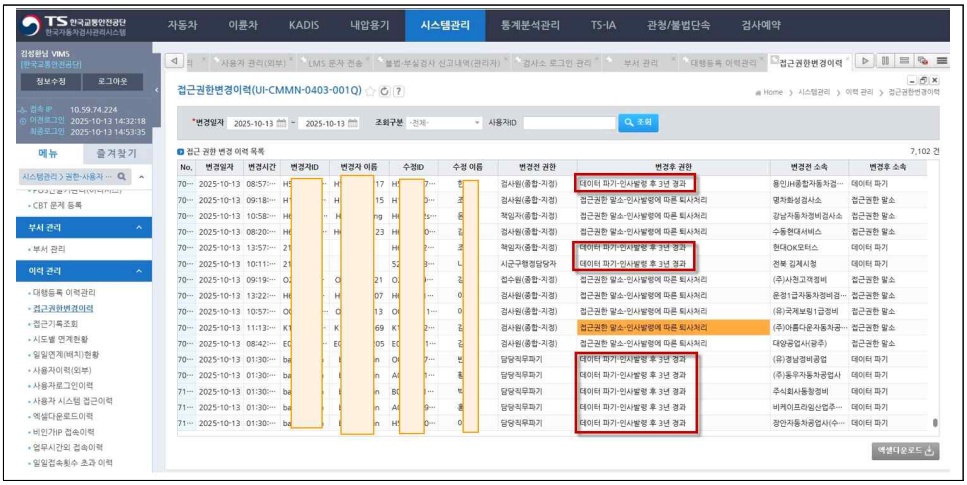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VI. 기술적 안전조치 1. 접근권한 관리

3. 접근권한 보관 및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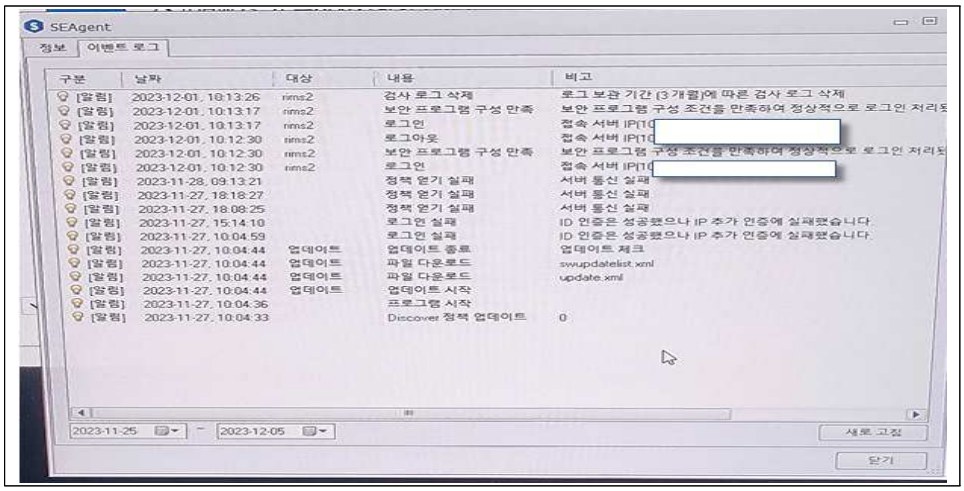
①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말소 내역을 최소 3년 이상 보관**한다.

가.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신청, 공문 신청 등) 및 오프라인(접근 권한 신청서식)으로 요청받은 웹·CS·DBMS에 대한 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포함한다.

- 응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내역(최소 3년 보관)



- DB 접근권한 관리 조회(대구 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



항목 설명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 변경 또는 말소한 내역을 기록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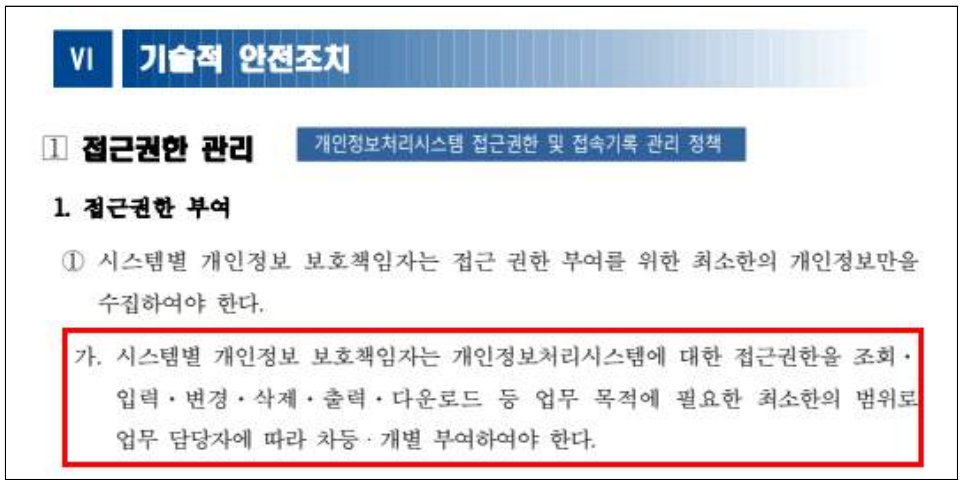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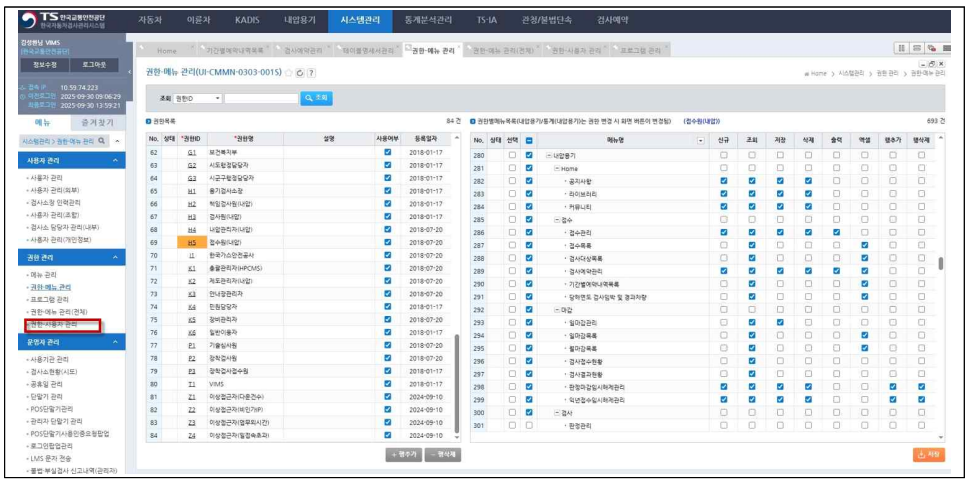
	※ 3년 이상 보관 포함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 취급업무에 대한 승인 요청내역을 6하 원칙에 따라 온라인 전자결재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설계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 취급업무에 대한 승인 요청내역을 6하 원칙에 따라 온라인 전자결재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설계하고 있으나 일부 사항만 기록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권한 관리</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4.1.10</td><td>●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을 조회, 입력, 변경,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 그 역할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접근권한 차등 부여
② 업무담당자에 따라 상세하게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권한 부여 대상 : 개인별, 그룹별, 조직별, 역할별 등
- 권한 유형 : 조회, 입력, 변경,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
③ 서버,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은 운영자 및 관리자에 한정</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VI. 기술적 안전조치 1. 접근 권한 관리'에서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조회· 입력·변경·삭제·출력·다운로드 등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개별 부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포털)은 권한관리를 VIMS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어 해당 없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서버, DB의 경우 접근권한 관리는 대구통합전산센터의 접근제어프로그램 사용하고 권한 신청 관리하며 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함.

[접근 권한 차등 부여 여부 점검]
<table>
<tr><th colspan="2">세부 기준</th><th>점검 결과</th><th>적절성</th></tr>
<tr><td rowspan="3">①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접근권한 차등 부여</td><td>응용</td><td>내압용기 검사담당자 최소한 접근권한 부여 예정</td><td>-</td></tr>
<tr><td>서버</td><td rowspan="2">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td><td>-</td></tr>
<tr><td>DBMS</td><td>-</td></tr>
<tr><td rowspan="3">② 업무담당자에 따라 상세하게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td><td>응용</td><td>내압용기 검사담당자 최소한 접근권한 부여 예정</td><td>-</td></tr>
<tr><td>서버</td><td rowspan="2">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td><td>-</td></tr>
<tr><td>DBMS</td><td>-</td></tr>
<tr><td rowspan="2">③ 서버, DBMS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은 운영자 및 관리자에 한정</td><td>서버</td><td rowspan="2">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td><td>-</td></tr>
<tr><td>DBMS</td><td>-</td></tr>
<tr><td colspan="4">[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
</table></td></tr>
</table>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VI. 기술적 안전조치 1. 접근권한 관리  VI 기술적 안전조치 1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정책 1. 접근권한 부여 ①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 권한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조회·입력·변경·삭제·출력·다운로드 등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개별 부여하여야 한다. - 응용프로그램(포털) VIMS를 통한 접근권한 역할별 부여 
항목 설명	●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을 조회, 입력, 변경,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 그 역할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2023. 9. 22>**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별, 그룹별로 권한관리를 하도록 설계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별, 그룹별로 권한관리를 하도록 설계하고 있으나 일부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와 다르게 권한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영향평가 영역	4.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평가분야	4.2 접근통제
평가 목적	● 개인정보파일 네트워크 접근통제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점검합니다.

세부 분야	접근통제 조치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4.2.1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제한 및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대응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접근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 ② 접근통제시스템에 아래와 같은 기능 모두 포함. -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 제한 -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평가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VI. 기술적 안전조치 2. 접근 통제'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등을 설치.운영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및 접속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도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영 중인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방화벽, WAF, ESM, DDoS 방어(Sniper DDX),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Hi-Ware), DB 접근제어 솔루션(Petra) 등 다양한 접근통제 시스템이 설치・운영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VIMS와 같은 인프라환경이며 변경 없이 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하고 운영정책에 따라 운영예정이므로 해당 없음.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VI. 기술적 안전조치 2. 접근통제				

2 접근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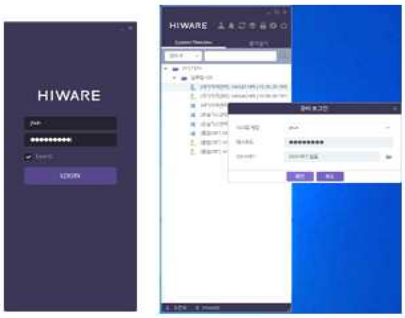
1.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인가되지 않은 내·외부자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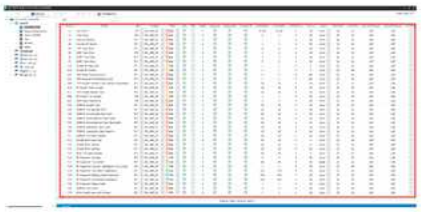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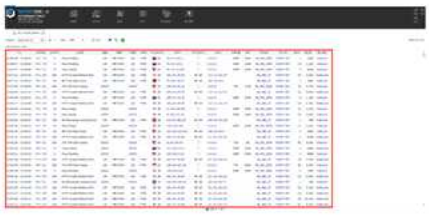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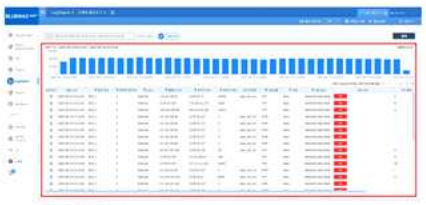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현황

번호	접근통제 시스템명
1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 (Hi-Ware)
2	DB 접근제어 솔루션 (Petra)
3	DDoS 공격 방어 장비 (Sniper One-d)
4	방화벽 (BLUEMAX NGF)
5	웹방화벽 (WEBFRONT-K)
6	유해사이트 차단(eWalker SWG)
7	침입방지시스템(IPS) (Sniper ONE-i)
8	지능형 지속공격(APT) 차단시스템(AhnLab MDS)
9	무선침입방지시스템(WIPS) (DeepTrust Air)
10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Code-Ray XG)

- 정보보호시스템(접근제어솔루션, DDOS, 방화벽 등)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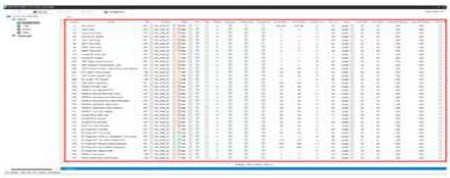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 (HI-WARE)	DB 접근제어 솔루션 (Petra)
	

DDoS 공격 방어 장비 (Sniper One-d)	방화벽 (BLUEMAX NGF)
<정책 설정 화면>  <차단 내역 화면> 	<정책 설정 화면>  <차단 내역 화면> 

웹방화벽 (WebFront-K)	유해사이트 차단 (eWalker SWG)
<정책 설정 화면>  <차단 내역 화면> 	<정책 설정 화면>  <차단 내역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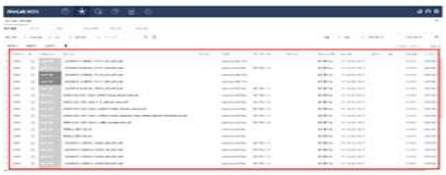
<table>
<tr><td></td><td>- 정보보호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 지능형 지속공격 차단시스템, 무선침입방지시스템 등) 적용

<table>
<tr><td>침입방지시스템(IPS) DMZ망 (Sniper ON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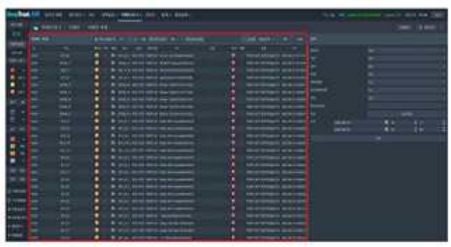
<정책 설정 화면>


<차단 내역 화면>
</td><td>지능형 지속공격 차단시스템 (Ahnlap M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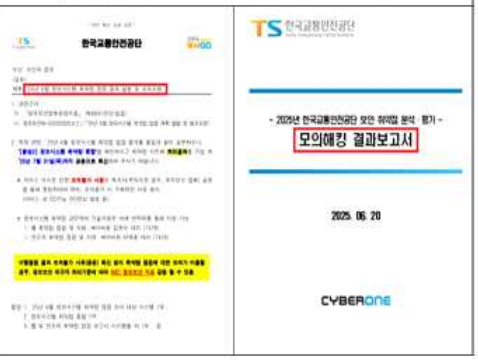
<정책 설정 화면>


<차단 내역 화면>
</td></tr>
<tr><td>무선침입방지시스템 (WIPS) (DeepTrust Air)

<정책 설정 화면>


<차단 내역 화면>
</td><td>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Code-Ray XG)

<정책 설정 화면>


웹취약점 점검 결과 및 조치 요청 공문
</td></tr>
</table>
</td></tr>
<tr><td>항목 설명</td><td>● 각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기능을 포함한 장비 설치·운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침입차단 기능)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침입탐지 기능)</td></tr>
</table>

평가 예시	● 이행 :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으나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6조(접근통제)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접근통제 조치</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4.2.2</td><td>●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외부에서 접속하려는 경우 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 적용
② 외부에서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VI. 기술적 안전조치 2. 접근 통제'에서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거나 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외부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가 없어 해당 없음.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VI. 기술적 안전조치 2. 접근 통제

2.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인터넷구간 등 외부로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은 원칙적으로 차단하여야하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특성 또는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취급자가 노트북,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으로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table><tr><th>구분</th><th>기준 (예시)</th></tr><tr><td>안전한 접속수단</td><td>가상사설망(VPN), 전용선 등</td></tr><tr><td>안전한 인증수단</td><td>인증서(PKI),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td></tr></table></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5">●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td></tr>
</table>

	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2023. 9. 22> ※ 해설에 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관리자 웹페이지, 관리콘솔 등)을 외부에 오픈되지 않도록 접근통제하는 내용을 포함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원격지에서 처리할 때 GVPN, VPN 등을 이용하여 암호화하도록 설계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원격지에서 처리할 때 GVPN, VPN 등을 이용하여 암호화 하도록 설계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6조(접근통제)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접근통제 조치</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4.2.3</td><td>●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 PC, 모바일기기 등에 보호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잘 알려진 웹 취약점 항목들을 포함한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② 인터넷 홈페이지 중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는 사이트 또는 URL에 대한 삭제 또는 차단 조치
③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노출 차단 등의 보호조치
④ P2P, 웹 하드, 공유설정 차단 조치(단,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호대책 마련 후 허용)
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필요시 해당 IP 및 Port만 허용)
⑥ 공개된 무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암호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술 적용
⑦ 기타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조치 (웹 쉘 탐지, 첨부파일 개인정보 노출 탐지 등)</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VI. 기술적 안전조치 2. 접근 통제'에서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 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평가일 현재 개발 중인 시스템으로 개발 완료 시 공단에서 매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계획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VIMS의 일부 메뉴로 운영될 예정으로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는 사이트 또는 URL 삭제 및 차단은 해당 없음.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적용 점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h>적절성</th></tr>
<tr><td>사용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는 사이트 또는 URL에 대한 삭제 또는 차단 조치</td><td>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는 사이트 또는 URL은 해당 없음</td><td>-</td></tr>
<tr><td>P2P, 웹 하드, 공유설정 차단</td><td>내 PC 지키미 등을 통하여 사용자 PC의 백신 설치 및 업데이트,</td><td>O</td></tr>
</table>
</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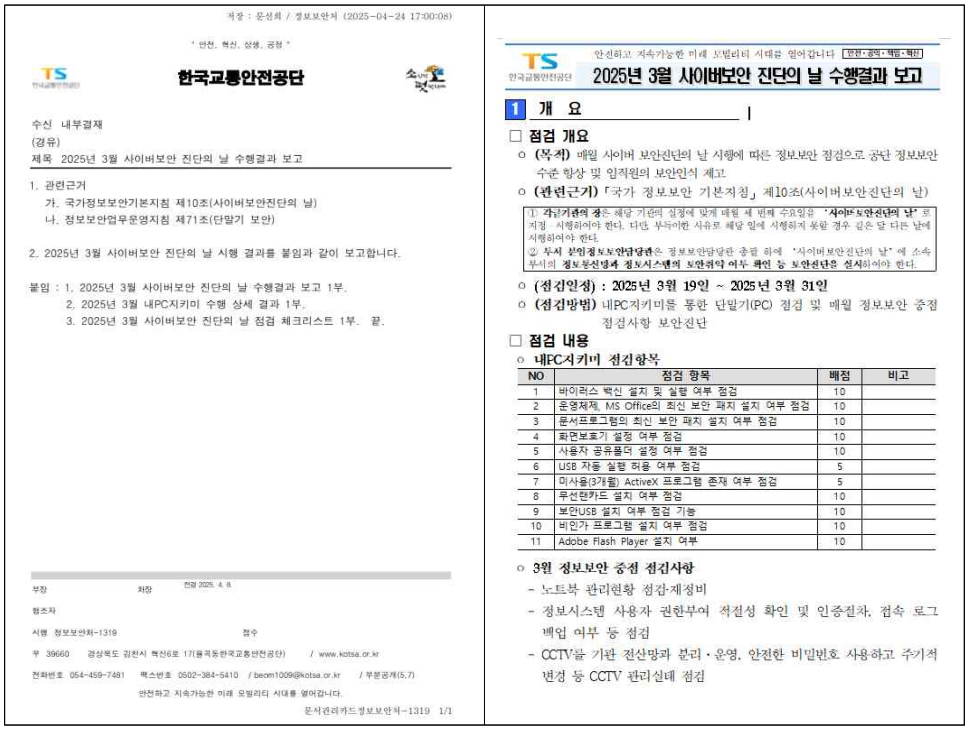
	패스워드 안전성 검사, 공유폴더 차단 등을 운영하고 있음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노출 차단	접속권한을 IP주소로 제한하여 차단	O
공개된 무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암호화 등 개인정보 유출방지 기술 적용	공개된 무선망 차단 솔루션(WIPS)을 이용하여 무선망을 차단하고 있음.	O
기타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조치	AhnLab EPP Privacy Management를 통하여 파일 등을 통해 노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암호화 파일로 변환하고 있음	O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평가근거]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VI. 기술적 안전조치 2. 접근 통제

3.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매월)실시 및 수행결과보고



저장 : 문선희 / 정보보안처 (2025-04-24 17:00:08)

" 안전, 혁신, 상생, 공정 "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5년 3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수행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나.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제71조(단말기 보안)

2. 2025년 3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1. 2025년 3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수행결과 보고 1부.
2. 2025년 3월 내PC지키미 수행 상세 결과 1부.
3. 2025년 3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부장 처장 전결 2025. 4. 8.

협조자

시행 정보보안처-1319 접수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한국교통안전공단) / www.kotsa.or.kr

전화번호 054-459-7481 팩스번호 0502-384-5410 / beom1009@kotsa.or.kr / 부분공개(5.7)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문서관리카드정보보안처-1319 1/1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안전·공익·책임·혁신]

2025년 3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수행결과 보고

1 개 요

□ **점검 개요**

○ **(목적)** 매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시행에 따른 정보보안 점검으로 공단 정보보안 수준 향상 및 임직원의 보안인식 제고

○ **(관련근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투자 분야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 부서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 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점검일정) : 2025년 3월 19일 ~ 2025년 3월 31일**

○ **(점검방법)** 내PC지키미를 통한 단말기(PC) 점검 및 매월 정보보안 중점 점검사항 보안진단

□ **점검 내용**

○ **내PC지키미 점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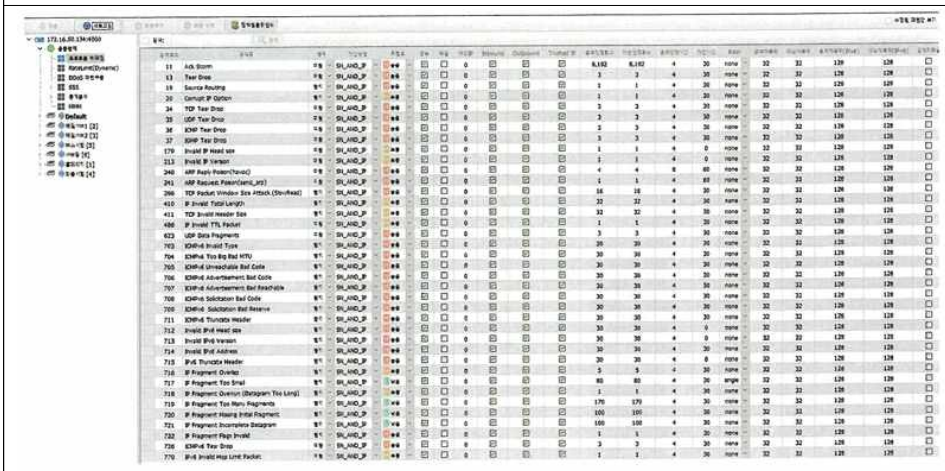
NO	점검 항목	배점	비고
1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실행 여부 점검	10	
2	운영체제, MS Office의 최신 보안 패치 설치 여부 점검	10	
3	문서프로그램의 최신 보안 패치 설치 여부 점검	10	
4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점검	10	
5	사용자 공유폴더 설정 여부 점검	10	
6	USB 자동 실행 허용 여부 점검	5	
7	미사용(3개월) ActiveX 프로그램 존재 여부 점검	5	
8	무선랜카드 설치 여부 점검	10	
9	보안USB 설치 여부 점검 기능	10	
10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여부 점검	10	
11	Adobe Flash Player 설치 여부	10	

○ **3월 정보보안 중점 점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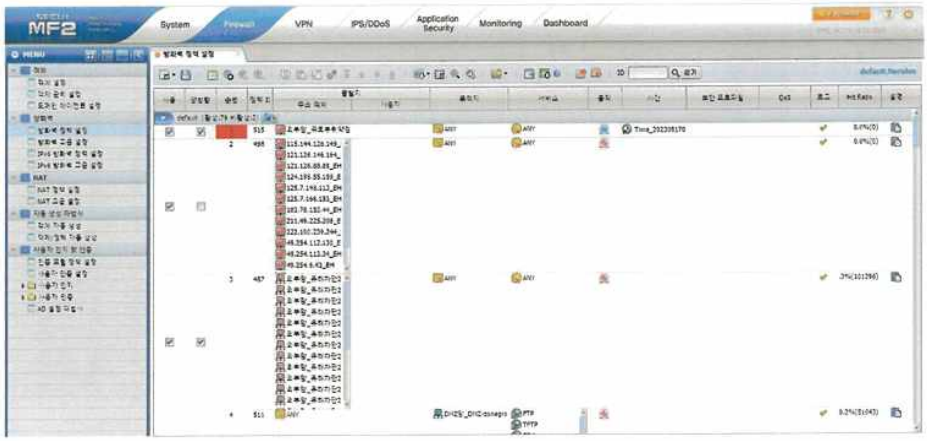
- 노트북 관리현황 점검·제정비
- 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부여 적절성 확인 및 인증절차, 접속 로그 백업 여부 등 점검
- CCTV를 기관 전산망과 분리·운영,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하고 주기적 변경 등 CCTV 관리실태 점검

- 한국교통안전공단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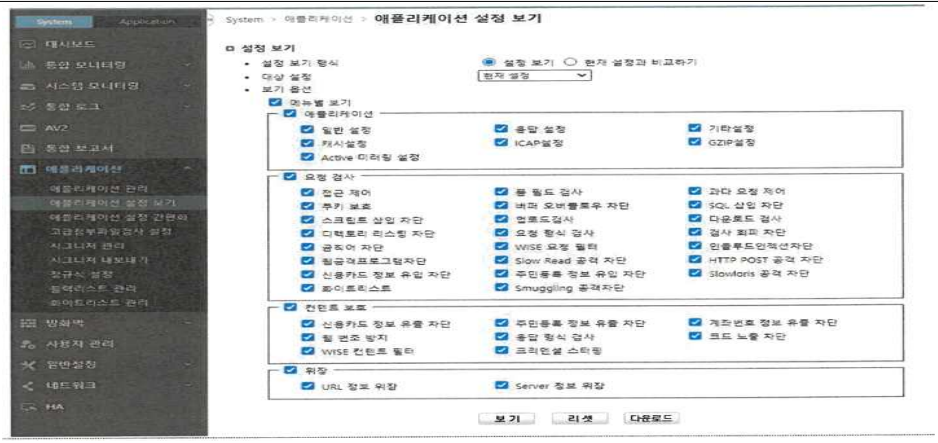
DDoS 탐지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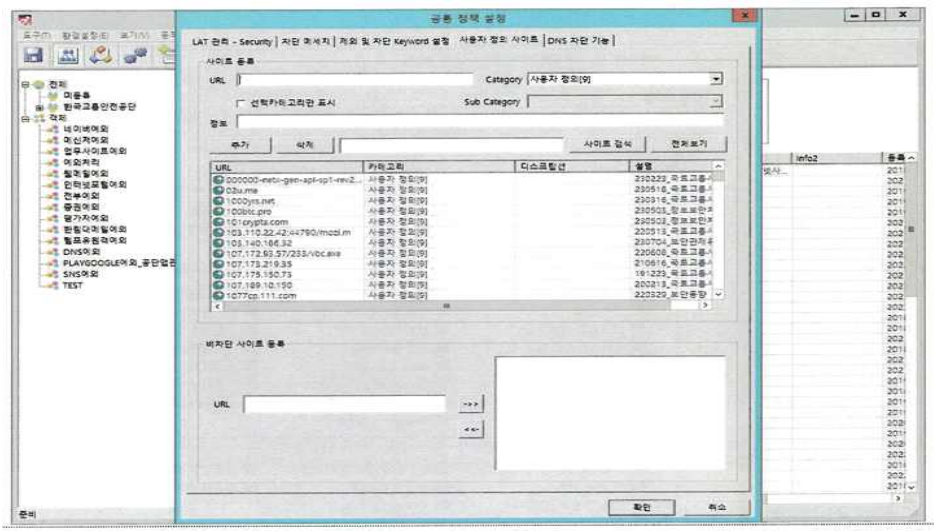
방화벽 정책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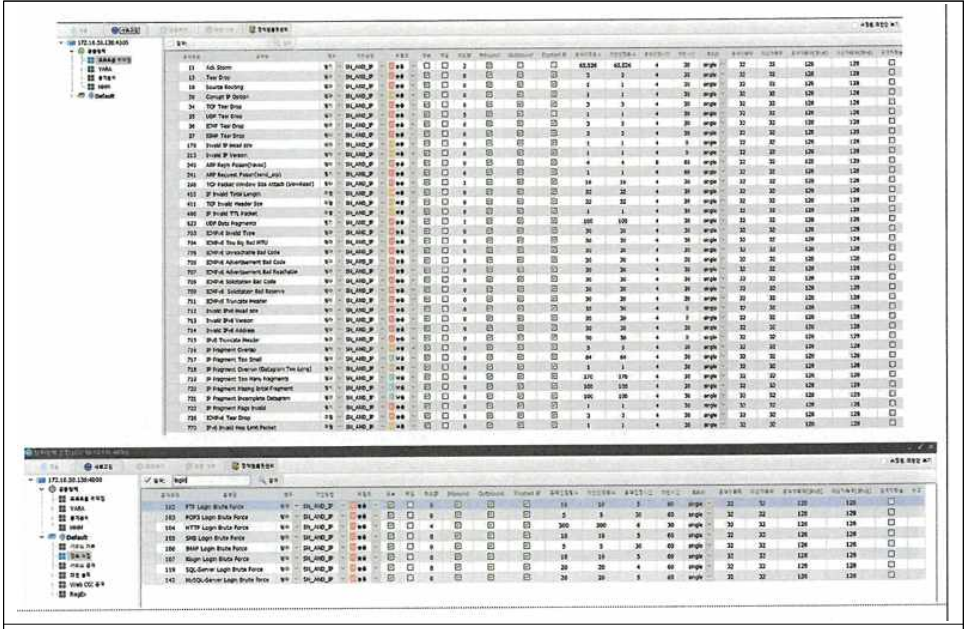
웹 방화벽 정책설정 화면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정책설정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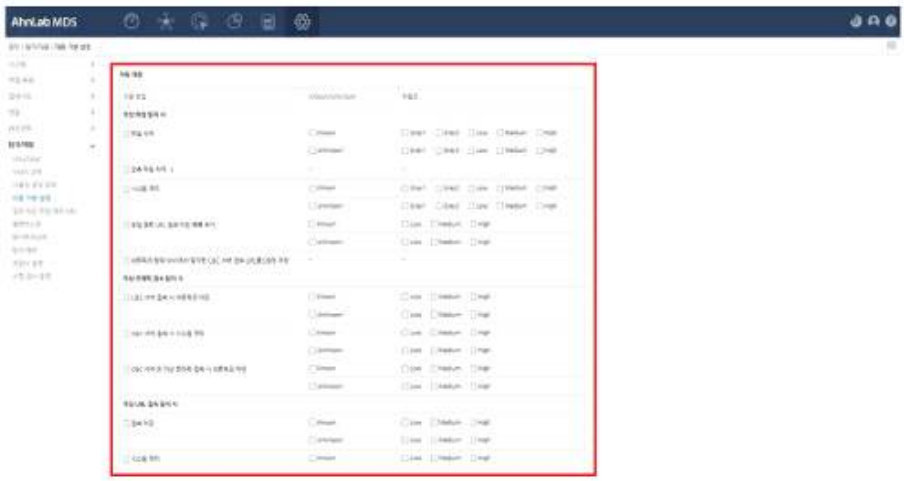


침입 차단 시스템(IPS) 시스템 정책설정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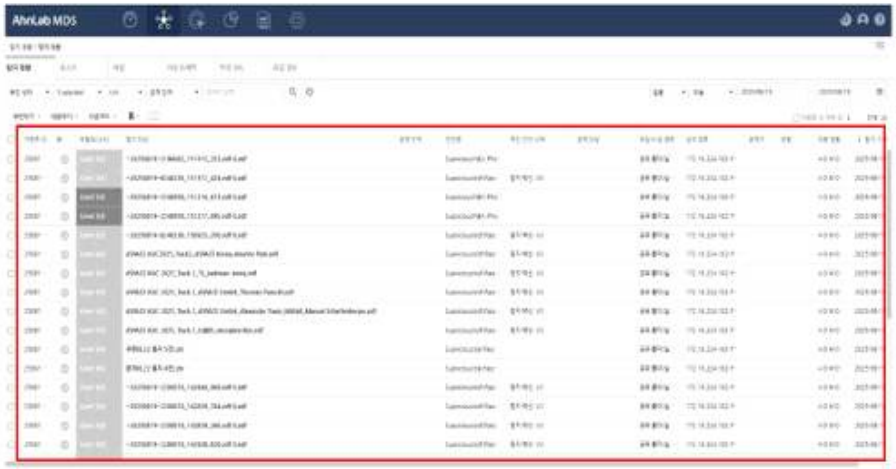


APT(지능형 지속 공격) 차단시스템 정책설정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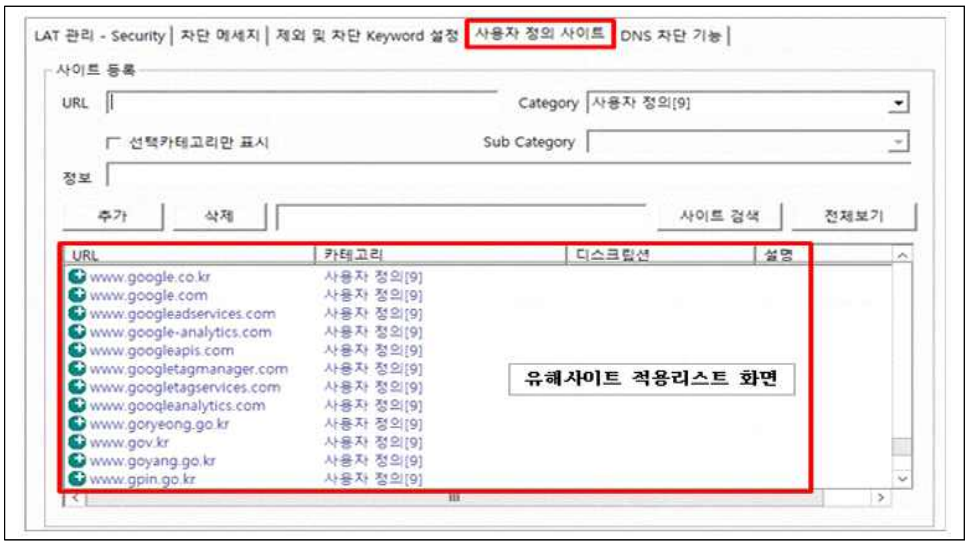
<정책 설정 화면>



<차단 내역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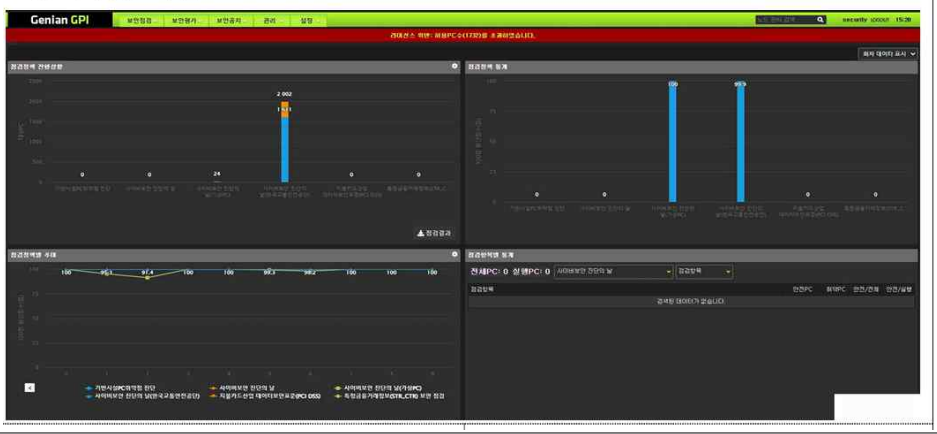


-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통해 P2P 불필요한 사이트 차단



- 내 PC 지키미

– 정책 설정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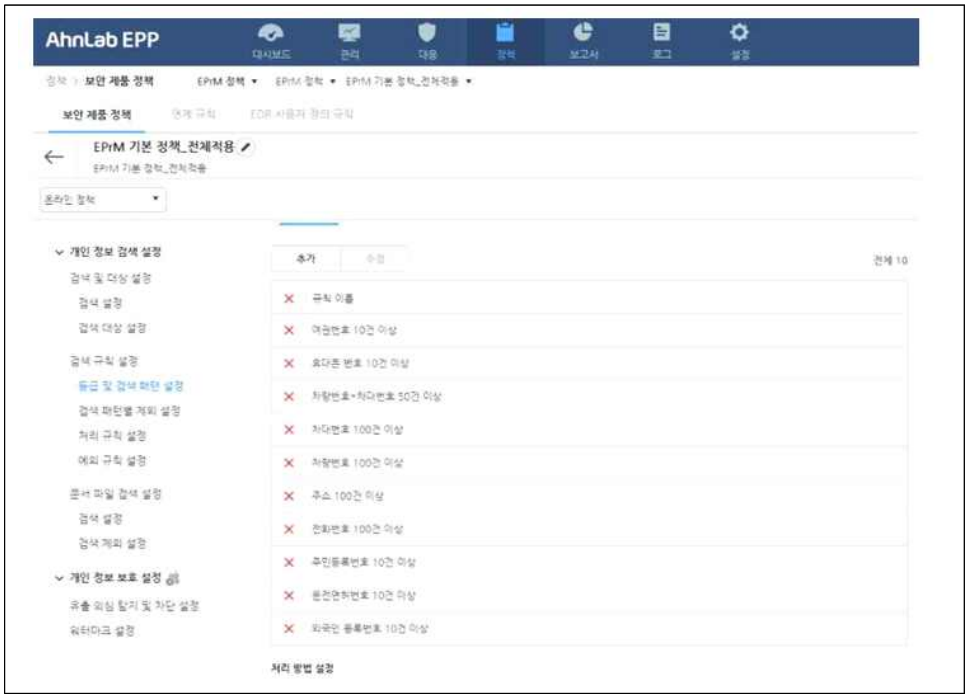
- 사용자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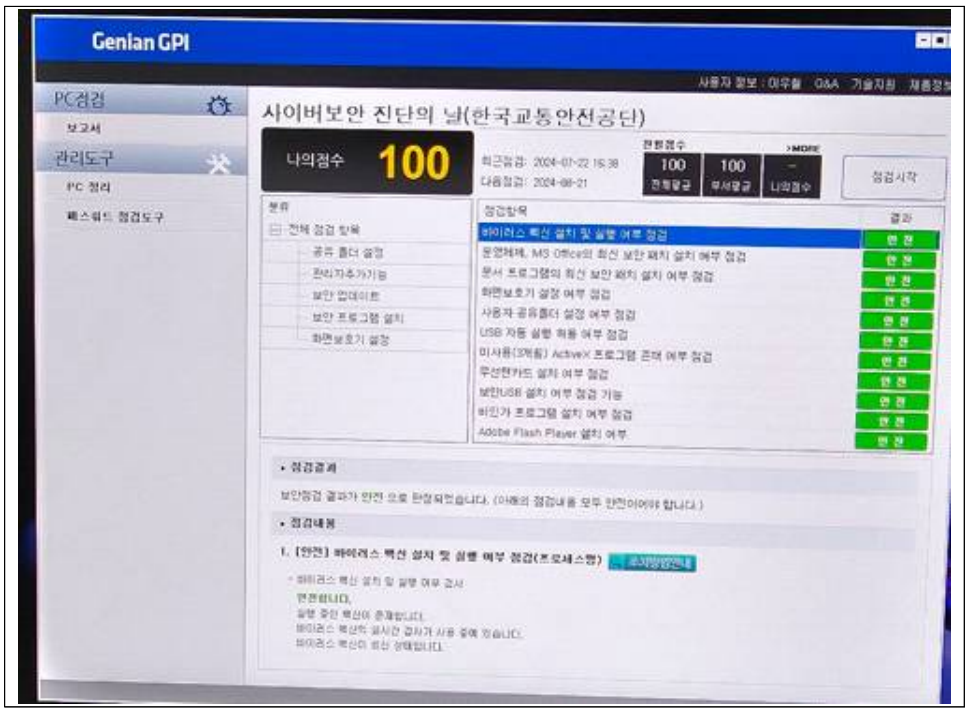
- 인가받지 않은 자의 접근 및 임의조작 금지

CMOS 암호	OTP 로그인
	

- 개인정보 노출 차단(AhnLab E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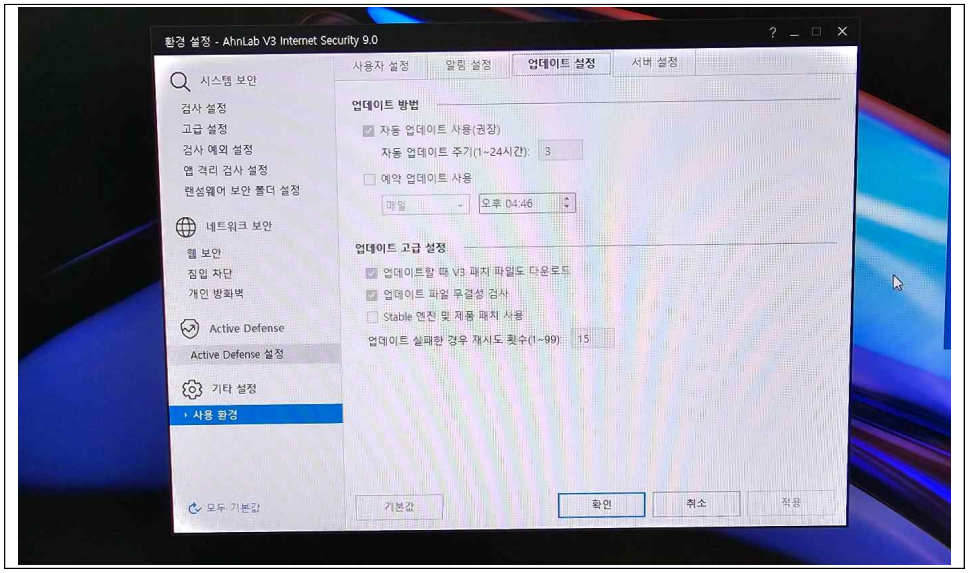
- 내 PC 지키미



- 백신 최신 업데이트 화면



- 백신 자동업데이트 설정 화면



- NAC을 통한 공유폴더 설정 금지

	
항목 설명	●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모바일기기 등에 보호 조치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2023.9. 22>**
평가 예시	● 이행 :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 유출차단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 유출차단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하고 있으나 일부 프로토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6조(접근통제)

세부 분야	접근통제 조치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4.2.4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적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의 관리용 단말기 접근 및 조작 금지 조치 ②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③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평가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IX.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관리용 단말기에서 개인정보 공유 등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외부메일 사이트 및 공유폴더를 차단하고, 주기적인 내PC 지키미를 수행하여 악성프로그램 감염방지 등 보안조치를 적용하고 있음.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IX.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2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특정 직원 등에 한하여 접근을 허용하는 등 업무관련자 이외의 인가 받지 않는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접근 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관리용 단말기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용 단말기를 통한 개인정보의 공유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의 최신상태 유지, 보안 업데이트 실시, 발견된 악성프로그램의 삭제 등 대응 조치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 백신 설치				

– 정책 설정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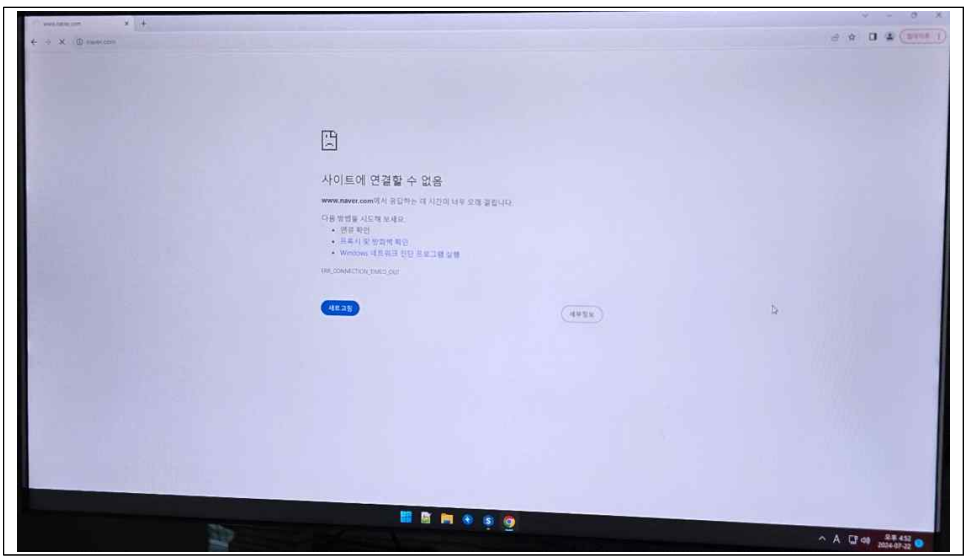


- 사용자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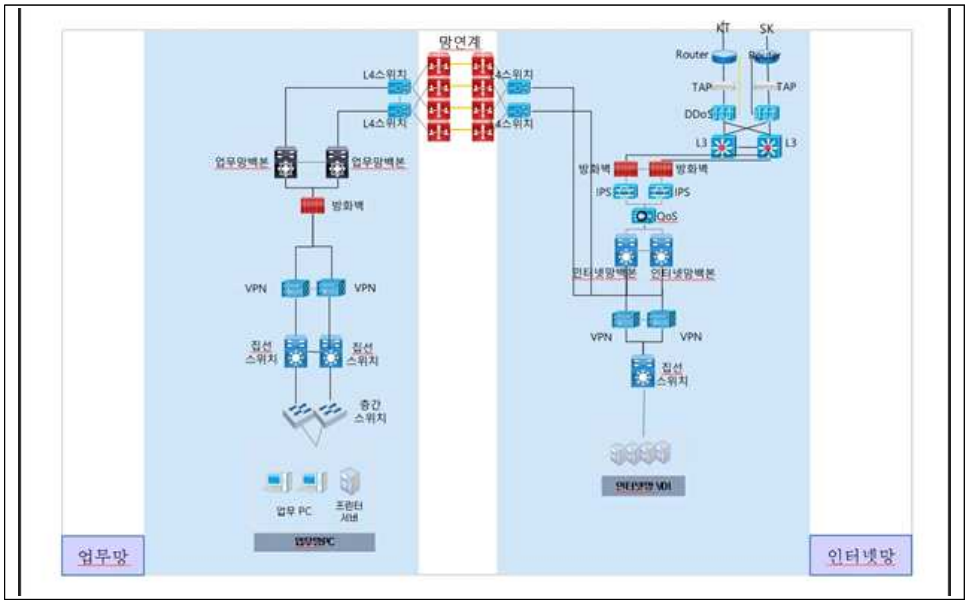




- 관리용 단말기 인터넷 사용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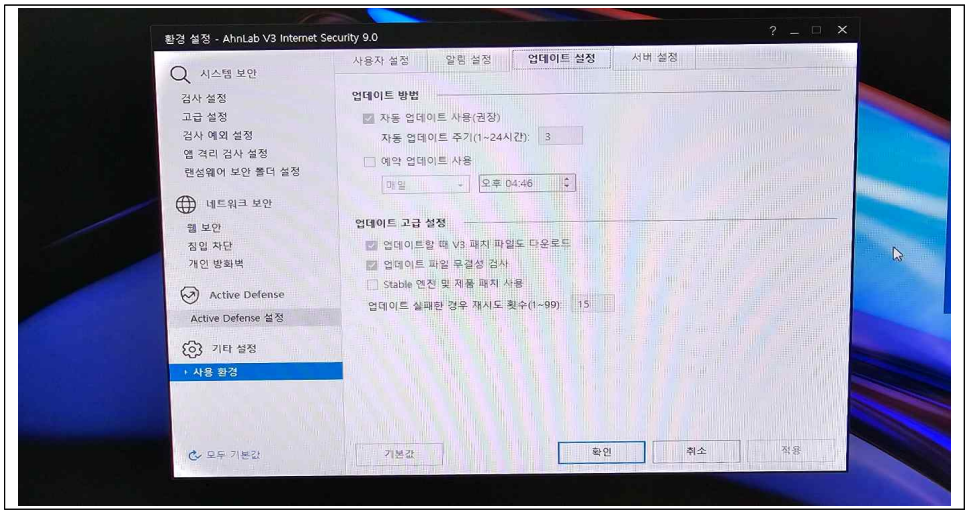
- 네트워크 구성도(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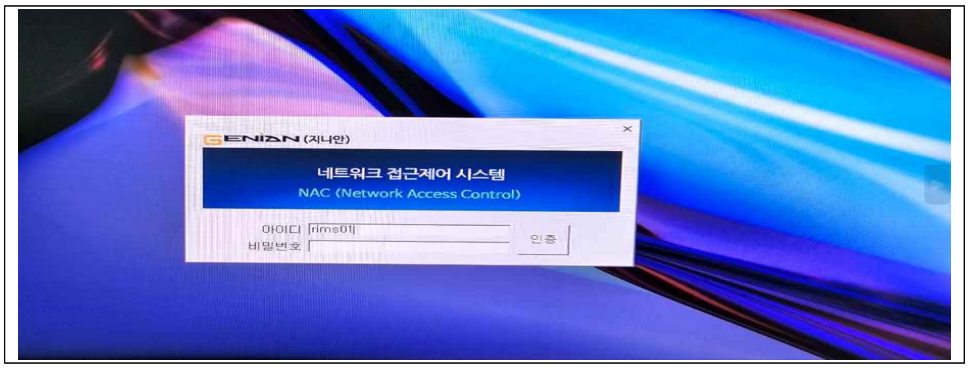
-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통해 P2P 불필요한 사이트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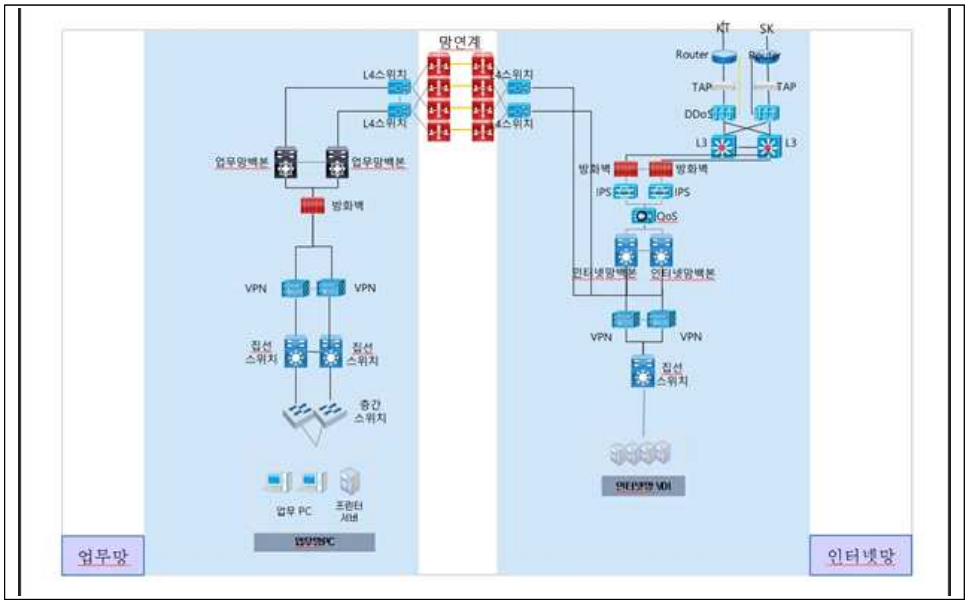
- 백신 자동업데이트 설정 화면

<table>
<tr><td></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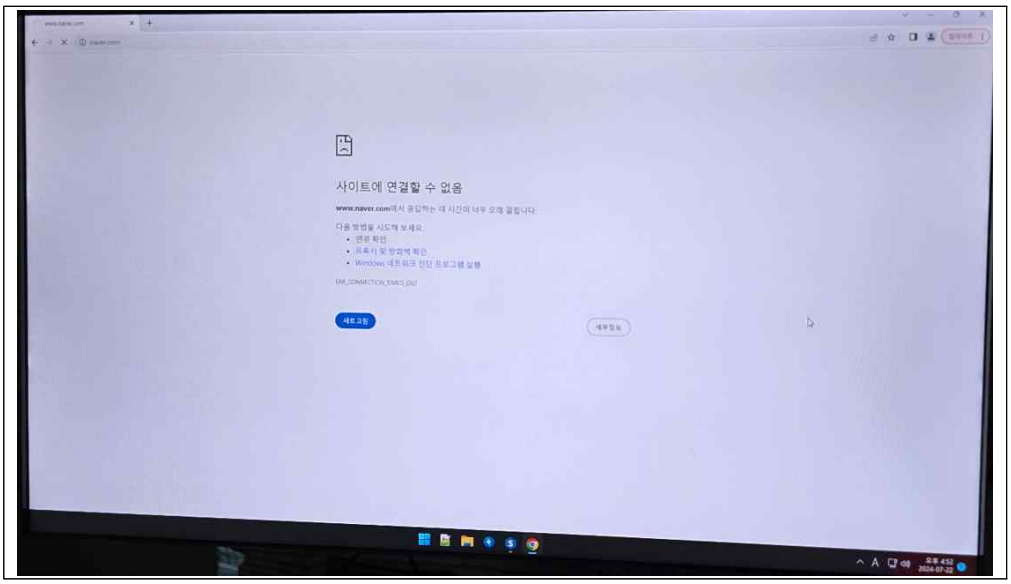
- 관리용 단말기 보호조치 (네트워크 통제 설정 :NAC)


</td></tr>
<tr><td>항목 설명</td><td>●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특정 직원 등에 한하여 접근을 허용하는 등 업무관련자 이외의 인가 받지 않는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접근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리용 단말기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사용 하여야 하며, 관리용 단말기를 통한 개인정보의 공유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리용 단말기에 대하여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의 최신상태 유지, 보안 업데이트 실시, 발견된 악성프로그램의 삭제 등 대응 조치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td></tr>
<tr><td>평가 예시</td><td>● 이행 : 관리용 단말기를 별도로 운영하여 인터넷 차단 등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 부분 이행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기준을 일부만 적용하고 있는 경우</td></tr>
<tr><td>관련 법률
및 문서</td><td>● 본 항목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한 기술적 보호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권장사항임</td></tr>
</table>

세부 분야	접근통제 조치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4.2.5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해당 ※ 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외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 적용 필요				
평가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VI 기술적 안전조치 [2] 접근통제'에서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 예약시스템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하여 운영할 예정임. [평가근거] - 업무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VI 기술적 안전조치 [2]접근통제 **[2] 접근통제** 7.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외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구성도(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 개인정보 취급자의 인터넷망 차단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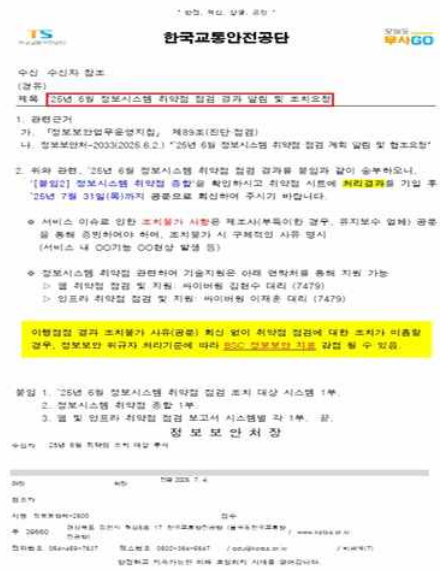
항목 설명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다수일 때에는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용자'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만 인터넷망 차단조치 의무가 부과됨 ● 다만,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접속 외에 다른 인터

	넷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의 3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해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 ● 인터넷망 차단 조치는 물리적 방법 또는 논리적인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물리적 인터넷망 차단 조치 : 통신망, 장비 등을 물리적으로 이원화하여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컴퓨터와 인터넷 접속만 가능한 컴퓨터로 분리하는 방식 - 논리적 인터넷망 차단 조치 : 물리적으로 하나의 통신망, 장비 등을 사용하지만, VDI 등가상화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내부 업무영역과 인터넷 접속영역을 분리하는 방식
평가 예시	● 이행 : ● 부분 이행 : 인터넷망 차단조치 적용 의무대상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자 중 일부를 인터넷망 차단 조치 적용 대상에서 누락한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6조(접근통제)

세부 분야	접근통제 조치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4.2.6	● 인터넷 홈페이지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웹서버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대응조치를 수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개발 시] 시큐어 코딩, 취약점 점검 등의 개발보안 조치 적용 (SW보안약점 점검) ② [운영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정기 취약점 진단 계획 수립 및 이행 (고유식별정보 처리하는 기관은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실시) ③ 취약점 점검 대상은 홈페이지와 관련된 정보자산(응용프로그램, 웹서버 등)모두 포함 ④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조치				
평가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VI. 기술적 안전조치 ⑥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도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웹서비스에 대해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점검일 현재 개발 진행중인 시스템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월 주요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 포함)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도 포함하여 점검할 계획임.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VI 기술적 안전조치 ⑥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 **⑥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도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웹서비스에 대해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 항목에는 개인정보 노출 방지, 충분한 인증, XSS, 파일 업·다운로드, 인젝션, 악성 콘텐츠, 세션 및 쿠키 변조 등이 있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취약점 점검에 대한 결과를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그 결과에 대해 보완 조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취약점 점검 결과의 조치 내역에 대한 소스·화면 등 증적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매월 주요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 포함) 취약점 점검 및 조치

'25년 6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5년 6월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 알림 및 조치요청

1. 관련근거
가.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제89조(진단·점검)
나. 정보보안처-2033(2025.6.2.) "25년 6월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계획 알림 및 협조요청"

2. 위와 관련, '25년 6월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붙임2] 정보시스템 취약점 종합'을 확인하시고 취약점 시트에 처리결과를 기입 후 '25년 7월 31일(목)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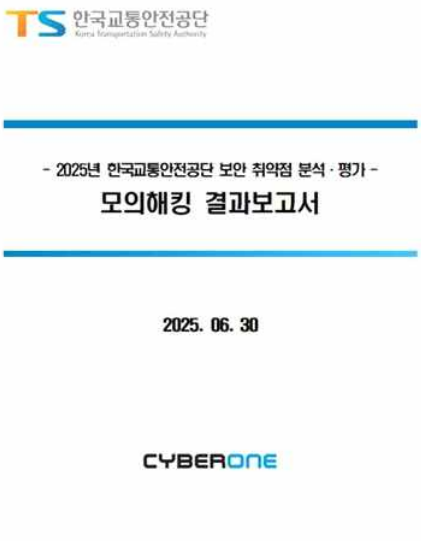
※ 서비스 이슈로 인한 조치불가 사항은 제조사(부득이한 경우, 유지보수 업체) 공문을 통해 증빙하여야 하며, 조치불가 시 구체적인 사유 명시
(서비스 내 OO기능 OO현상 발생 등)

※ 정보시스템 취약점 관련하여 기술지원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지원 가능
▷ 웹 취약점 점검 및 지원: 싸이버원 김현수 대리 (7479)
▷ 인프라 취약점 점검 및 지원: 싸이버원 이재준 대리 (7479)

이행점검 결과 조치불가 사유(공문) 회신 없이 취약점 점검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에 따라 RSC 정보보안 지표 감점 될 수 있음.

붙임 1. '25년 6월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조치 대상 시스템 1부.
2. 정보시스템 취약점 종합 1부.
3. 웹 및 인프라 취약점 점검 보고서 시스템별 각 1부. 끝.

정 보 보 안 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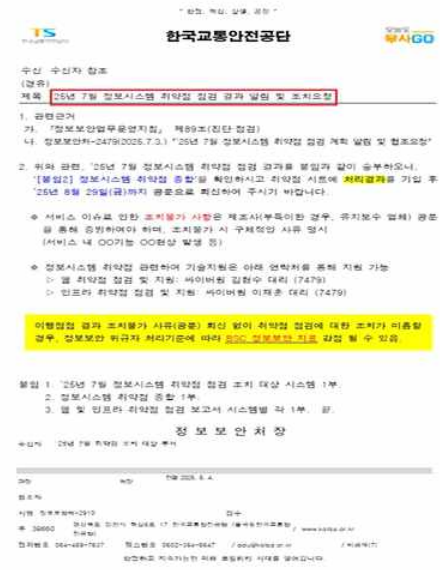
- 2025년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

모의해킹 결과보고서

2025. 06. 30

CYBERONE

'25년 7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5년 7월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 알림 및 조치요청

1. 관련근거
가.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제89조(진단·점검)
나. 정보보안처-2479(2025.7.3.) "25년 7월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계획 알림 및 협조요청"

2. 위와 관련, '25년 7월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붙임2] 정보시스템 취약점 종합'을 확인하시고 취약점 시트에 처리결과를 기입 후 '25년 8월 29일(금)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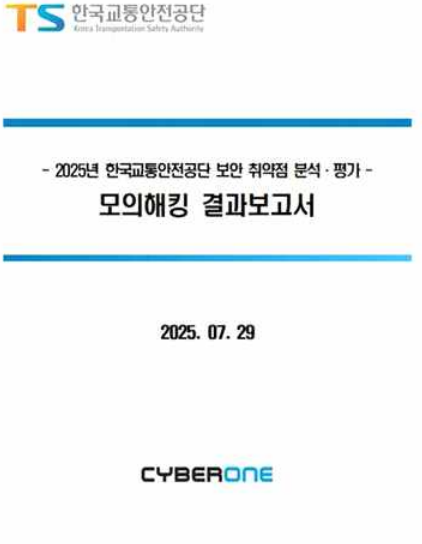
※ 서비스 이슈로 인한 조치불가 사항은 제조사(부득이한 경우, 유지보수 업체) 공문을 통해 증빙하여야 하며, 조치불가 시 구체적인 사유 명시
(서비스 내 OO기능 OO현상 발생 등)

※ 정보시스템 취약점 관련하여 기술지원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지원 가능
▷ 웹 취약점 점검 및 지원: 싸이버원 김현수 대리 (7479)
▷ 인프라 취약점 점검 및 지원: 싸이버원 이재준 대리 (7479)

이행점검 결과 조치불가 사유(공문) 회신 없이 취약점 점검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에 따라 RSC 정보보안 지표 감점 될 수 있음.

붙임 1. '25년 7월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조치 대상 시스템 1부.
2. 정보시스템 취약점 종합 1부.
3. 웹 및 인프라 취약점 점검 보고서 시스템별 각 1부. 끝.

정 보 보 안 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

- 2025년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

모의해킹 결과보고서

2025. 07. 29

CYBERONE

항목 설명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그에 따른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용어설명] ❖ OWASP Top 10 : OWASP(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는 국제 웹보안 표준 기구로 주로 웹에 관한 정보노출, 악성 파일 및 스크립트, 보안 취약점 등을 연구하며, 10대 웹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 (OWASP TOP 10)을 발표하고 있음
평가 예시	● 이행 : 공표된 중요 최신 취약점에 대한 보안사항을 고려하여 구현되어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공표된 중요 최신 취약점에 대한 보안사항을 고려하여 구현되어 있으나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업무용 모바일기기 보호조치</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4.2.7</td><td>●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업무용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 적용
② 강화된 보호조치 적용(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처리 업무용 모바일 기기) - 데이터 암호화, 원격 잠금, 원격 데이터 삭제, 기기인증, 루팅 통제 등</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VI. 기술적 안전조치 2접근통제'에서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용 모바일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 예약시스템은 점검일 현재 개발 구축 중인 시스템이며, 업무용 모바일기기를 사용하지 않아 해당 없음.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VI. 기술적 안전조치 2접근통제
7.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외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5">● 모바일 기기에서는 불필요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통제, 인입 포트 차단 등의 접근통제 기능을 제공하는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보다 확장된 접근통제 기능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근통제 기능을 제공하는 별도의 방화벽 등의 어플리케이션(App)을 설치·운영이 필요 할 수 있다.</td></tr>
<tr><td>평가 예시</td><td colspan="5">● 이행 : 업무용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 보호조치를 구현되어 있는 경</td></tr>
</table>

	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6조(접근통제)

영향평가 영역	4.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평가분야	4.3 개인정보의 암호화
평가 목적	● 개인정보파일 암호화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점검합니다.

세부 분야	저장시 암호화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4.3.1	● 인증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안전한 방식으로 암호화 저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② 주민등록번호, 바이오정보는 저장위치 상관없이 암호화 ③ 고유식별정보 인터넷 구간 및 DMZ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④ 고유식별정보 내부망에 저장 경우 암호화 또는 위험도 분석에 따라 암호화 ⑤ 안전한 방식으로 암호화 적용 - 안전한 알고리즘 사용, 안전한 키 관리, 일방향 암호화 시 Salt값 적용 등 ⑥ PC, 모바일 기기에 암호화 대상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저장				

평가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VI. 기술적 안전조치/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서 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화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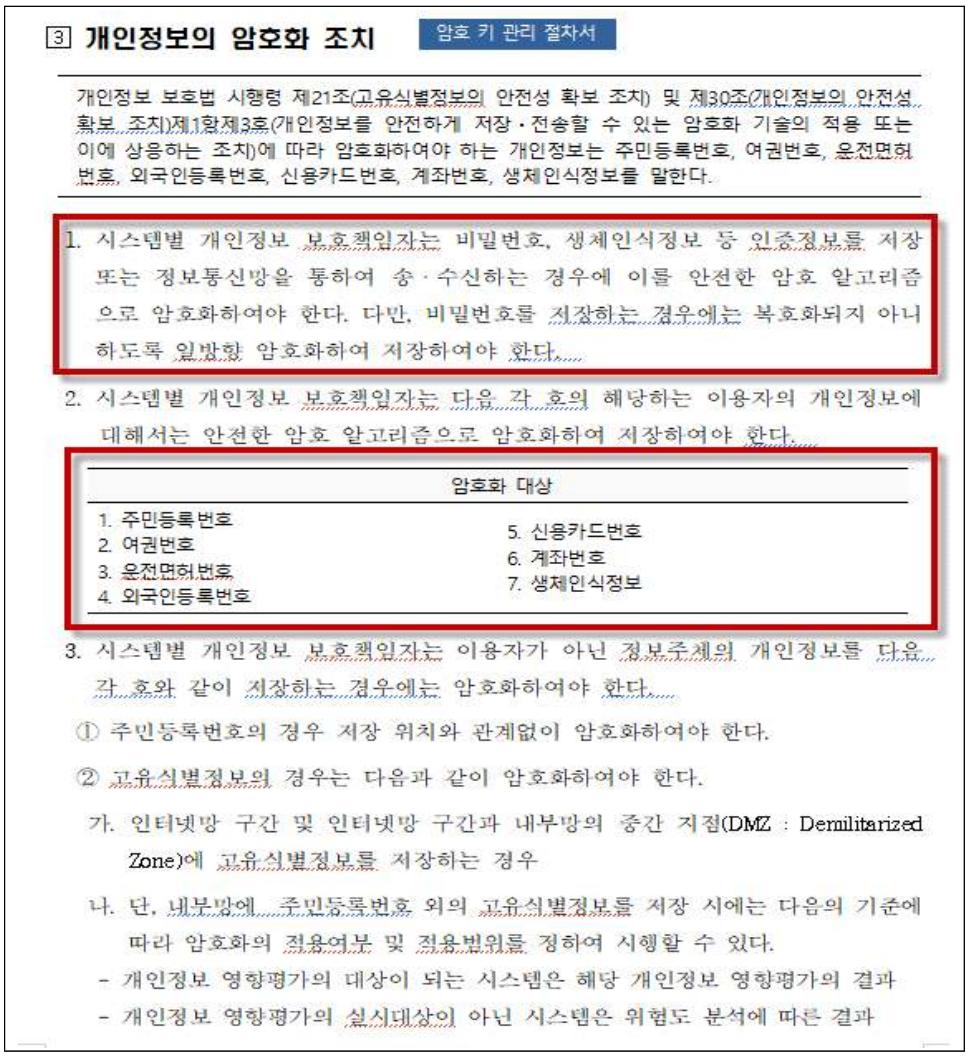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계좌번호는 양방향 암호화(AES-256), 결제정보는 일방향 암호화(SHA-512) 알고리즘을 적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세부 기준		점검 결과	적절성
① 인증정보 암호화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응용	해당 없음	-
	서버	해당 없음	-
	DBMS	해당 없음	-
②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	응용	계좌번호, 결제정보 수집	○
③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DMZ 구간에 저장시 암호화	응용	해당 없음	-
④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를 내부망에 저장시 암호화	응용	해당 없음	-
⑤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응용		-

등록번호를 내부망에 저장시 영향평가 결과, 위험도분석 결과에 따라 암호화		해당 없음	
⑥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시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	해당 없음	-
	모바일 기기	해당 없음	-
	보조저장 매체	해당 없음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평가근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VI. 기술적 안전조치/ 3 개인정보의 암호화'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암호 키 관리 절차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1항제3호(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를 말한다.

1.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암호화 대상	
1. 주민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2. 여권번호	6. 계좌번호
3. 운전면허번호	7. 생체인식정보
4. 외국인등록번호	

3.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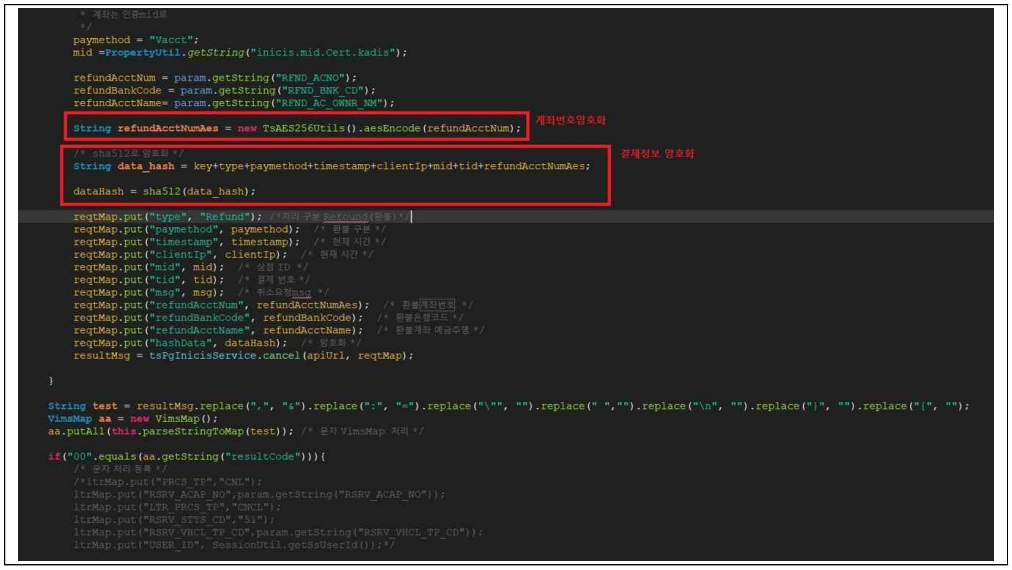
①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저장 위치와 관계없이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 고유식별정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암호화하여야 한다.

가. 인터넷망 구간 및 인터넷망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나. 단,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저장 시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은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대상이 아닌 시스템은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 계좌번호는 양방향 암호화(AES-256), 결제정보는 일방향 암호화(SHA-512) 
항목 설명	● DB암호화는 서비스 실행에 많은 부하를 줄 수도 있으나 중요 개인정보의 경우 데이터 암호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최대한 방지 하도록 한다. ● 패스워드 저장 시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평문으로 저장되어서는 안되며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복호화하지 못하도록 일방향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한다. [용어설명] ❖ 고유식별정보 범위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범위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 등 법률에서 정한 민감정보와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평가 예시	● 이행 : 중요 개인정보가 암호화되도록 화면설계서 등의 설계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중요 개인정보가 암호화 되도록 화면설계서 등의 설계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일부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저장시 암호화</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4.3.2</td><td>●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저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VI. 기술적 안전조치/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서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암호화한 후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table>
<tr><th>구분</th><th>암호화 방식 (예시)</th></tr>
<tr><td>보조저장매체
저장·전달</td><td>·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저장매체 이용(보안 USB 등)
· 해당 정보를 암호화 한 후 보조저장매체에 저장 등</td></tr>
<tr><td>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저장</td><td><안전한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활용 방식>
·문서 작성도구(한글, MS오피스 등) 자체 암호화
·문서보안 솔루션(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이용한 암호화
·암호 유틸리티(Ahnlap EPP 등)를 이용한 암호화
·디스크 암호화(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할 때 자동으로 암호화) 등</td></tr>
</table>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스템은 업무용PC 정보유출방지를 위하여 AhnLab EPP Privacy Management를 운영하여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관리하고 있으며 업무용 모바일기기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

[평가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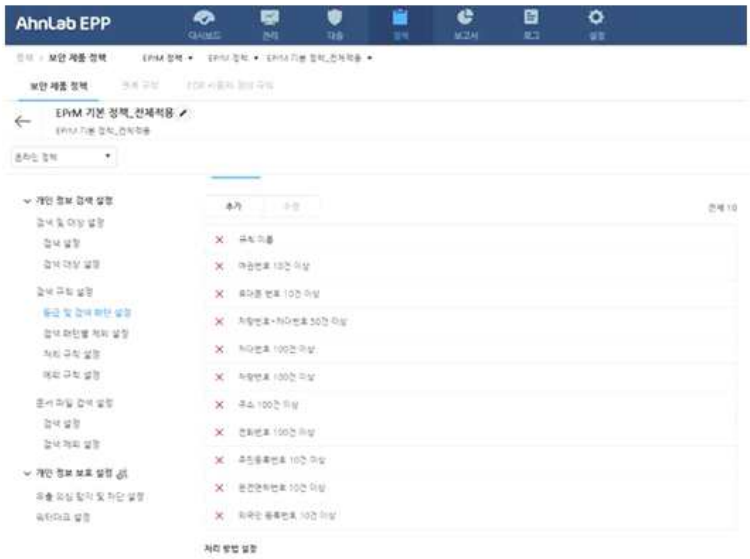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VI. 기술적 안전조치/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td></tr>
</table>

5.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구분	암호화 방식 (예시)
보조저장매체 저장·전달	·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저장매체 이용(보안 USB 등) · 해당 정보를 암호화 한 후 보조저장매체에 저장 등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저장	<안전한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활용 방식> ·문서 작성도구(한글, MS오피스 등) 자체 암호화 ·문서보안 솔루션(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이용한 암호화 ·암호 유틸리티(Ahnlap EPP 등)를 이용한 암호화 ·디스크 암호화(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할 때 자동으로 암호화) 등

- 엔드포인트 보안(AhnLab EPP)

– 정책 설정 화면



항목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 "이용자"란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서비스의 이용 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에 저장 시에는 문서도구 자체 암호화, 암호 유틸리티를 이용한 암호화, DRM(Digital Right Management), 디스크 암호화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바일 기기에 저장할 때에는 파일 암호화 또는 디바이스 암호화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할 때에는 파일 암호화 또는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USB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평가 예시	● 이행 : ● 부분 이행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에 저장하면서 고유식별정보만 암호화하고, 그 외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등)에 대해서는 암호화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저장시 암호화</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4.3.3</td><td>●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암호키 관리절차서 수립 및 공식적 시행
- 10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 100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기업·단체
② 이해관계자 공유</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VI. 기술적 안전조치/ 3 개인정보의 암호화조치'에서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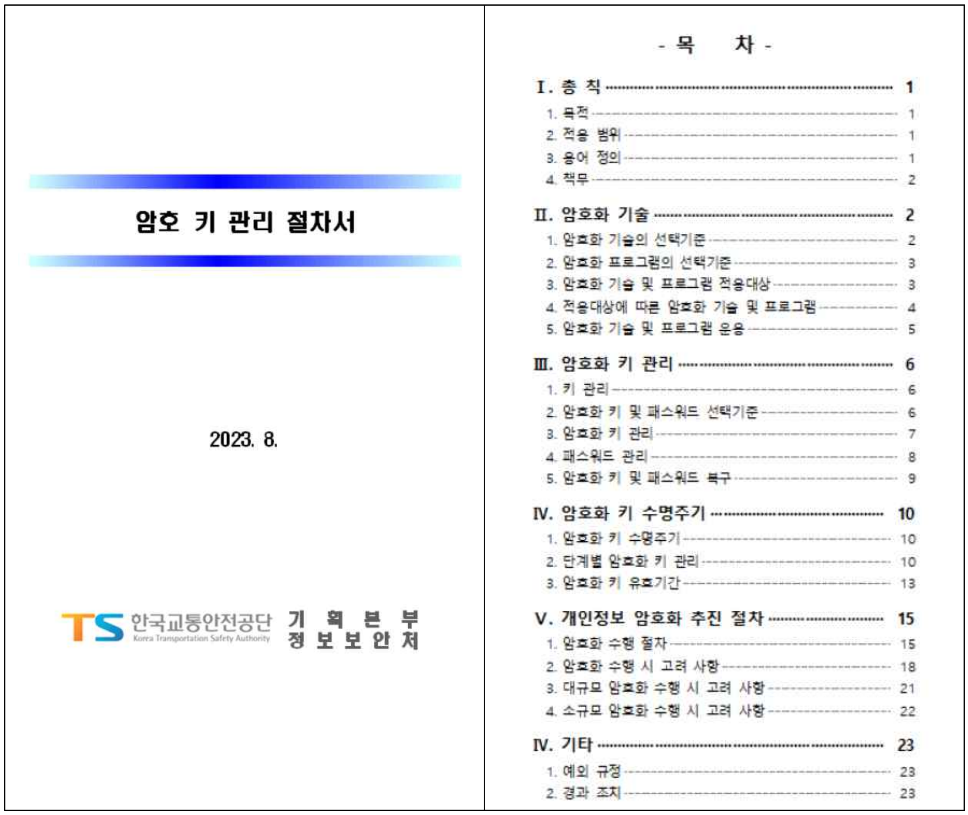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3년 08월『암호 키 관리 절차서』를 수립하여 암호 키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암호화 및 키 관리의 라이프사이클 단계별 관련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음.

[암호화 키 관리절차서 수립 확인]
<table><tr><th>세부 기준</th><th>점검 결과</th><th>적절성</th></tr><tr><td>① 암호키 관리절차서 수립 및 공식적 시행</td><td>『암호 키 관리 절차서』수립</td><td>O</td></tr><tr><td colspan="3">[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table>
[평가근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VI. 기술적 안전조치/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암호 키 관리 절차서』</td></tr>
</table>



암호 키 관리 절차서

2023. 8.

한국교통안전공단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기 획 본 부 정 보 보 안 처

- 목 차 -

Ⅰ. 총 칙 ····· 1
1. 목적 ····· 1
2. 적용 범위 ····· 1
3. 용어 정의 ····· 1
4. 책무 ····· 2
Ⅱ. 암호화 기술 ····· 2
1. 암호화 기술의 선택기준 ····· 2
2. 암호화 프로그램의 선택기준 ····· 3
3. 암호화 기술 및 프로그램 적용대상 ····· 3
4. 적용대상에 따른 암호화 기술 및 프로그램 ····· 4
5. 암호화 기술 및 프로그램 운용 ····· 5
Ⅲ. 암호화 키 관리 ····· 6
1. 키 관리 ····· 6
2. 암호화 키 및 패스워드 선택기준 ····· 6
3. 암호화 키 관리 ····· 7
4. 패스워드 관리 ····· 8
5. 암호화 키 및 패스워드 복구 ····· 9
Ⅳ. 암호화 키 수명주기 ····· 10
1. 암호화 키 수명주기 ····· 10
2. 단계별 암호화 키 관리 ····· 10
3. 암호화 키 유효기간 ····· 13
Ⅴ. 개인정보 암호화 추진 절차 ····· 15
1. 암호화 수행 절차 ····· 15
2. 암호화 수행 시 고려 사항 ····· 18
3. 대규모 암호화 수행 시 고려 사항 ····· 21
4. 소규모 암호화 수행 시 고려 사항 ····· 22
Ⅳ. 기타 ····· 23
1. 예외 규정 ····· 23
2. 경과 조치 ····· 23

항목 설명	● 암호 키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 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암호키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라이프사이클 단계별 암호키 관리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평가 예시	● 이행 : 암호키 관리 절차서가 문서화되어 있고, 관련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절차서 내용대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암호키 관련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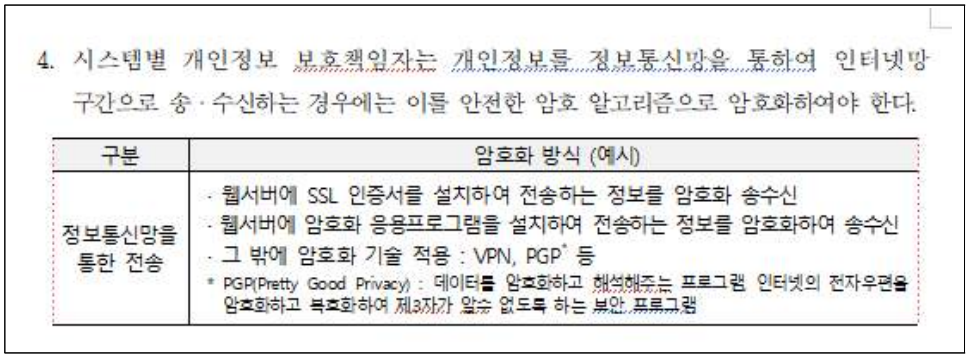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전송시 암호화</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4.3.4</td><td>● 인증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인증정보(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②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 비밀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 암호화
③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 암호화(권고)</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VI. 기술적 안전조치/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서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모든 홈페이지에서 SSL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도 정보주체와 홈페이지(Web) 간, SSL을 적용하여 암호화 송수신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개인정보의 전송구간 암호화 현황 점검]
<table><tr><th>세부 기준</th><th>점검 결과</th><th>적절성</th></tr><tr><td>① 인터넷 망 구간으로 송・수신</td><td>SSL(암호화 통신)</td><td>O</td></tr><tr><td colspan="3">[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table>
[평가근거]

- 업무담당자 인터뷰

- VI. 기술적 안전조치/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td></tr>
</table>

<table>
<tr>
<td></td>
<td>

4.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table>
<tr><th>구분</th><th>암호화 방식 (예시)</th></tr>
<tr><td>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td><td>· 웹서버에 SSL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 송수신
·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
· 그 밖에 암호화 기술 적용 : VPN, PGP* 등
* PGP(Pretty Good Privacy) :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해석해주는 프로그램 인터넷의 전자우편을 암호화하고 복호화하여 제3자가 알수 없도록 하는 보안 프로그램</td></tr>
</table>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포털 SSL 인증서
<table>
<tr><th>포털 인증서(SSL적용)</th></tr>
<tr><td>
</td></tr>
</table>
</td>
</tr>
<tr>
<td>항목 설명</td>
<td>
●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2023. 9. 22>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 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2023. 9. 22>

● 암호화 송수신 예시

-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

-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
</td>
</tr>
<tr>
<td>평가 예시</td>
<td>
● 이행 :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 암호화하도록 구현되어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
</td>
</tr>
</table>

	해 전달하는 경우 암호화하도록 구현되어 있으나 특정 단말기나 부분적인 전송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영향평가 영역	4.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평가분야	4.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평가 목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점검합니다.

세부 분야	접속기록 보관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4.4.1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록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 (응용프로그램, DBMS, 서버 등) ② 5 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 ③ 개인정보 접속기록 포함사항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자의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평가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VI. 기술적 안전조치/ ④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1. 접속기록 관리 기준'에서 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점검일 현재 개발 중이며, 접속기록은 VIMS에서 관리하여 해당 없으며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다운로드 사유를 입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서버 및 DB의 경우 대구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하며, 서버/DB접근제어 프로그램으로 관리함.				

[접속기록 포함사항 점검 현황]

세부 기준		점검 결과	적절성
① 접속기록 포함사항	응용	VIMS에서 관리하여 해당 없으며 개인정보 다운 로드 시 사유를 등록할 수 있도록 설계함	○
	서버	대구통합전산센터 접근제어프로그램 사용으로 DB 접근 제어 프로그램으로 관리	-
	DBMS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평가근거]

- VI. 기술적 안전조치/④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1. 접속기록 관리 기준

④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정책

1. 접속기록 관리 기준

①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하면 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리자용 화면(메뉴 또는 기능)에는 아래 예시에 준하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접속기록 항목]

기록 항목		설 명
필수 (5가지)	식별자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계정, ID 등)
	접속일시	개인정보 조회 일시(날짜 및 시분초까지 기록)
	접속지 정보	접속한 IP 정보 등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사번 등)
	수행 업무	열람(조회), 입력·수정, 삭제, 다운로드, 출력, 인쇄 등
이상행위 (해당시)	개인정보 다운로드 건수	개인정보취급자가 다운로드 행위를 하였을 때, **다운로드한 사유** 기재와 개인정보 건수, **다운로드 후속조치(파기·삭제)**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개인정보 대량 조회 사유	개인정보 대량 조회한 사유
	업무시간외 접속 사유	업무시간 외에 접속한 사유
	비인가 IP 접속 사유	비인가 IP 에서 접속한 사유
선택	계정(ID) 사용자 이름	계정(ID) 사용자 이름, 소속 등
	수행 화면 명	개인정보를 처리한 수행 화면명(URL 주소)

※ 관리자용 화면 예시

[접속기록 관리 메뉴]

조회년월 20XX.01. 조회 | 점기점검 대상기간 20XX.01.01.~20XX.01.31. | 접속기록 점검일자 20XX.0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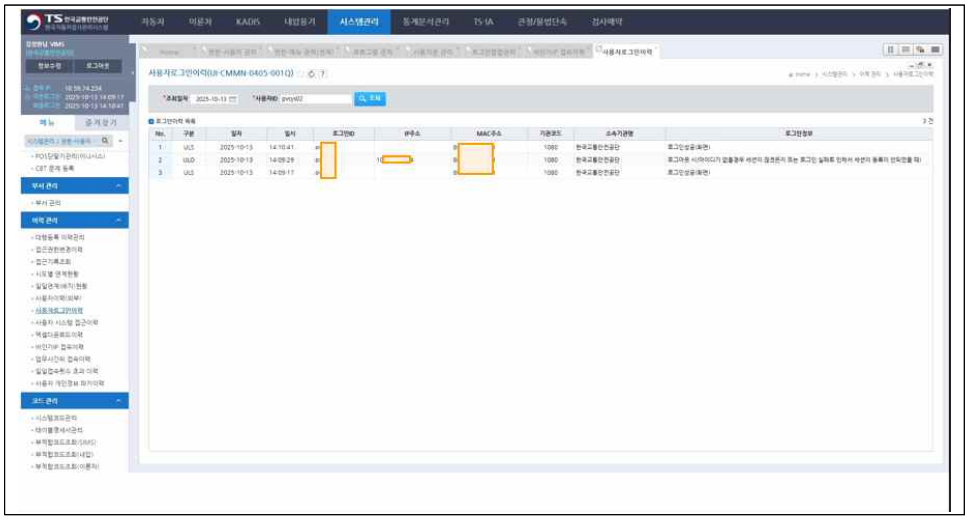
취급자 수 (단위: 명)	기관별 구분 (단위: 명)					권한별 구분 (단위: 명)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 (단위: 명)					
	공단	국토부	지자체	수탁사	민간	관리자	일반사용자	신규부여	변경		말소		
									업무변경	장기미접속	인사이동	퇴직	장기미접속
...	...	...	...	...	...	...	...	...	...	...	...	...	...

◎ 접속기록 점검 결과

비인가IP 접속			업무시간 외 조회		대량 다운로드		대량 조회인쇄·삭제		일정 횟수 초과 접속	
순번	사용자ID	사용자명	접속일시	접속지(IP)	수행 업무		처리한 정보주체	이상행위 사유	접속화면	
...	...	...	20XX.01.02. 09:58:38	...	검색/열람/조회/입력/수정/삭제/출력/다운로드 등		열람(조회) 대상 (없을 경우 없음 O)	...사용자가 입력한 사유	...메뉴 경로	

* 시스템 기능 구현이 원칙이나, 기능 구현 전에는 공문 또는 접근권한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또는 개별 법령 서식) 등으로 관리해야 함

- VIMS 접속기록

<table>
<tr><td></td><td>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 등록 창


</td></tr>
<tr><td>항목 설명</td><td>● 개인정보시스템 접속기록은 <u>개인정보 취급자 등의 계정</u>, 접속일시, 접속자를 알 수 있는 정보, <u>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u>, 수행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단,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td></tr>
<tr><td>평가 예시</td><td>● 이행 : 개인정보시스템 접속기록에 필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시스템 접속 기록에 필요 정보가 포함되도록 계획 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 기록 되는 경우</td></tr>
<tr><td>관련 법률 및 문서</td><td>●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2조(정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td></tr>
</table>

세부 분야	접속기록 점검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4.4.2	●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 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점검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접속기록 점검계획 수립 및 월 1회 이상 점검 ※ 점검계획에 점검방법, 점검 기준, 점검 주기/시점, 담당자, 비정상 행위 발견 시 대응 절차, 보고 절차 등 포함 필요 ② 접속기록 점검 시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된 경우 내부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사유 확인				
평가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VI. 기술적 안전조치/④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1. 접속기록 관리 기준'에서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평가일 현재 개발중인 시스템으로 접속기록을 점검은 할수 없으며, 시스템 OPEN시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접속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서버 및 DB의 경우에도 대상시스템이 평가일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시스템으로 접속기록을 점검은 없으나 시스템 OPEN 후,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같은 방법으로 접속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평가근거] - 업무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VI. 기술적 안전조치/④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1. 접속기록 관리 기준				

③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별지 제8호서식)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 1명(Root, Admin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경우, 전자적 로그를 남기지 않고, 접속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여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도 가능하다.

[접속기록 점검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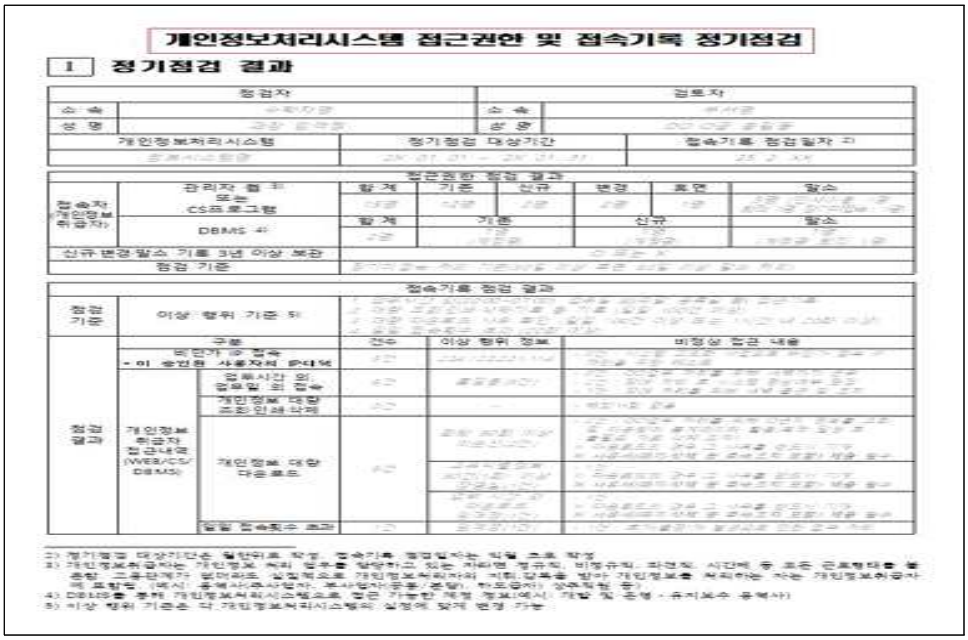
기록 항목		설 명	기준 (예시)
접속 기록	대량 다운로드 건수	개인정보취급자가 다운로드 행위를 하였을 때, 다운로드한 사유 기재와 개인정보 건수, 다운로드 후속조치(파기·삭제)	일일/일회 몇 건 이상
	대량 다운로드 사유		
	대량 조회 건수	개인정보 대량 조회 사유	일일/일회 몇 건 이상
	업무시간 외 접속 사유	업무시간 외에 접속한 사유	업무시간 외(예: 시작~종료시간) 업무일 외(주말, 공휴일)
	비인가 IP 접속 사유	비인가 IP 에서 접속한 사유	접근 신청·허용 IP
	일일 접속횟수 초과 사유	일일 접속가능 횟수를 초과한 사유	일일 몇 회 이상

④ 시스템별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다운로드 사유를 작성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부서별 개인정보 책임자는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다운로드한 문서의 파기·삭제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운로드에 대한 사유 확인은 전자문서 또는 서식으로 한다.)

[다운로드 사유 확인 기준]

행위	설 명	기준 (예시)
정보주체 수	부서별 개인정보 책임자는 '행위기준'을 초과하는 다운로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운로드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후속조치(파기·삭제) 확인 *행위기준 : 각 업무별 개인처리 현황에 맞게 설정	고유식별정보 몇건(몇회) 이상
		일반 개인정보 몇건(몇회) 이상
다운로드 횟수	단시간에 수차례 다운로드(몇 시간 내 몇 건 이상 등), 같은 개인정보를 다수(몇 회) 이상 다운로드, 소량의 개인정보를 여러 번(몇 회) 이상 다운로드 등	몇 시간 내 몇 건 이상
다운로드 시간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업무시간 외 (시작시간~종료시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정기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정기점검

1 정기점검 결과

점검자		검토자	
소 속		소 속	
성 명		성 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정기점검 대상기간	접속기록 점검일자 2)

접근권한 점검 결과

		합 계	기존	신규	변경	회면	말소
접속자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자 웹 또는 CS프로그램						
	DBMS 4)	합 계	기존		신규		말소
신규·변경·말소 기록 3년 이상 보관							
점검 기준							

접속기록 점검 결과

점검 기준	이상 행위 기준 5)				
점검 결과	구분		건수	이상 행위 정보	비정상 접근 내용
	비인가 IP 접속 - 이 송업원 사용자의 IP대역				
	개인정보 취급자 접근내역 (WEB/CS/DBMS)	업무시간 외 업무일 외 접속			
		개인정보 대량 조회(임계 이하)			
		개인정보 대량 다운로드			
	접속 접속횟수 초과				

2) 정기점검 대상기간은 월단위로 작성, 접속기록 점검일자는 익월 초로 작성
3)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써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시간제 등 모든 근로형태를 불문함. 다만단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포함됨 (예시: 콜센터/AS사원자, 보사업자(운용/운영), 하도급자) (상주직원 등)
4) DBMS를 통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접근 가능한 계정 정보(예시: 개발 및 운영 - 유지보수 유형사)
5) 이상 행위 기준은 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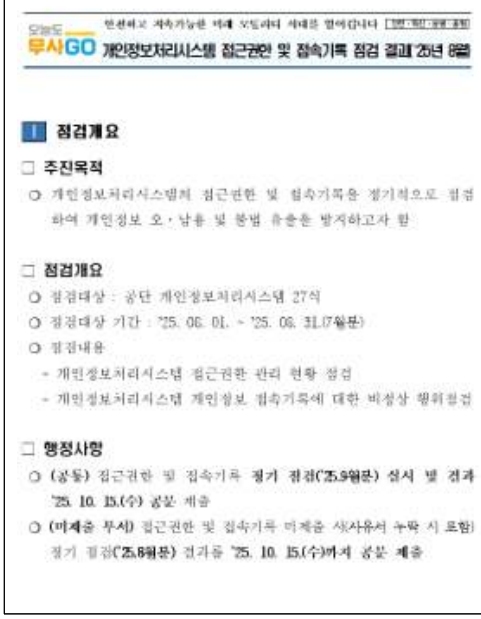
- 접속기록 점검결과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결과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늘도 무사G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점검 결과 '25년 8월

Ⅰ 점검개요

□ 주진목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 오·남용 및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공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27식

○ 점검대상 기간 : '25. 06. 01. ~ '25. 08. 31.(7월분)

○ 점검내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현황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접속기록에 대한 비정상 행위점검

□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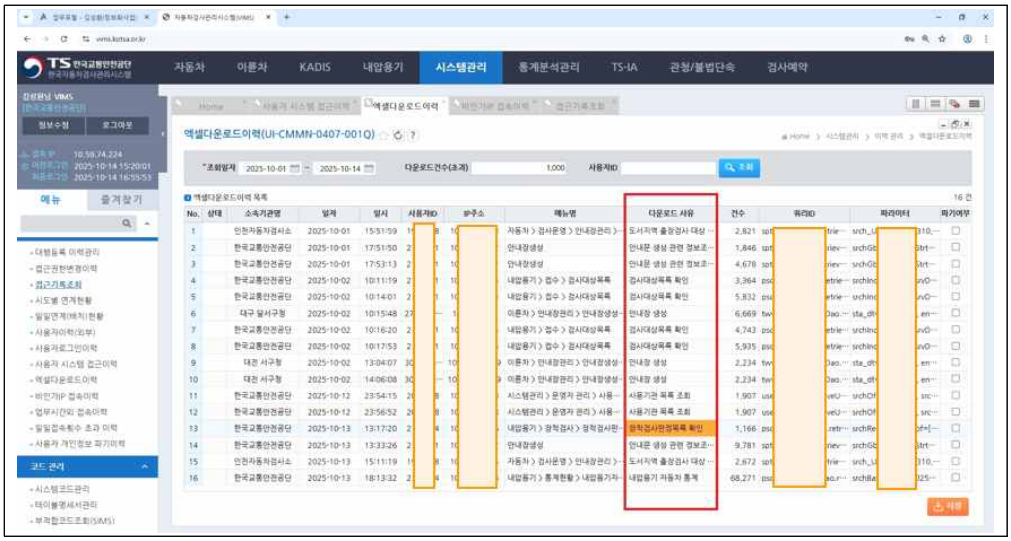
○ (공통)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정기 점검('25.9월분) 실시 및 결과 '25. 10. 15.(수) 공문 제출

○ (미제출 부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미제출 사사유서 누락 시 포함)
정기 점검('25.8월분) 결과를 '25. 10. 15.(수)까지 공문 제출

Ⅱ 점검 결과 [보완 필요 : 1개 / 점검 필요 : 0개]



- 엑셀다운로드 사유리스트

	
항목 설명	● 개인정보의 유출・변조・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 접속기록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 (과도한 조회, 접근 실패, 대량 다운로드 등) ● 접속기록 점검 시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 내부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2023. 9. 22>**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 처리내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 처리내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으나 수동으로 처리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4.4.3</td><td>●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최소 1년 또는 2년 이상 보관하고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접속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
②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보관
③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정기적 백업, 덮어쓰기 방지 매체 사용)</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VI. 기술적 안전조치/④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1. 접속기록 관리 기준'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 예약시스템은 점검일 현재 개발 및 구축 중인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접속기록을 보관하고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 등에 백업 보관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서버 및 DB도 정상 운영 시에는 접속기록을 내부관리계획에 따라서 별도 백업 및 보관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접속기록 별도 보관 점검 현황]
<table>
<tr><th colspan="2">세부 기준</th><th>점검 결과</th><th>적절성</th></tr>
<tr><td rowspan="3">①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td><td>응용</td><td>개발 및 구축 진행중이며,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 계획하고 있음.</td><td>○</td></tr>
<tr><td>서버</td><td rowspan="2">접속기록은 대구통합전산센터에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 계획하고 있음.</td><td>-</td></tr>
<tr><td>DBMS</td><td>-</td></tr>
<tr><td rowspan="3">②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td><td>응용</td><td>개발 및 구축 진행중이며,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 계획하고 있음.</td><td>○</td></tr>
<tr><td>서버</td><td rowspan="2">접속기록은 대구통합전산센터에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 계획하고 있음.</td><td>-</td></tr>
<tr><td>DBMS</td><td>-</td></tr>
<tr><td colspan="4">[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
</table>
[평가근거]

- VI. 기술적 안전조치/④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1. 접속기록 관리 기준</td></tr>
</table>

※ 개인정보처리 담당부서에서 다운로드 사유 확인 기준을 별도 수립한 경우 담당부서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⑤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가. 정기적으로 접속기록 백업을 수행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별도의 보조저장매체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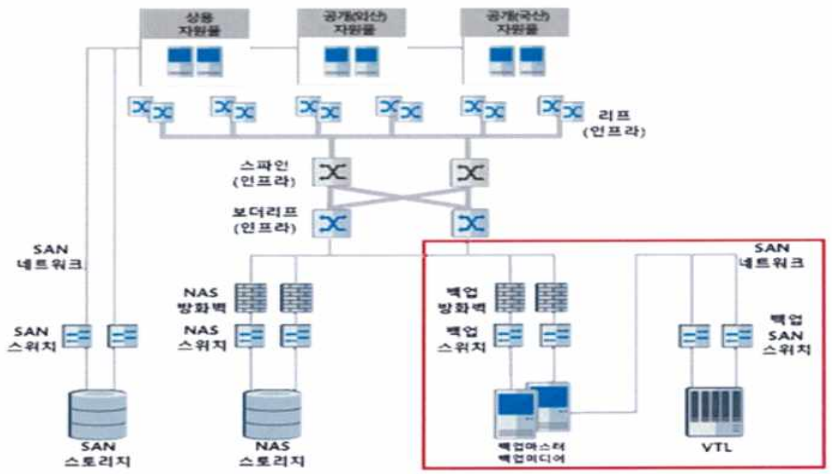
나. 접속기록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CD-ROM 등과 같은 덮어쓰기 방지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접속기록을 수정 가능한 매체(하드디스크, 자기 테이프 등)에 백업하는 경우에는 무결성 보장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별도의 장비에 보관·관리할 수 있다.

※ 접속기록을 HDD에 보관하고,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MAC 값, 전자서명 값 등)는 별도의 HDD 또는 관리대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접속기록 백업현황-(대구 통합전산소 관리사항)

-대구통합전산소 백업 구성도



항목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2023. 9. 22>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개인정보처리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신고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2023. 9. 22>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 DB 접근 및 이용로그를 분리된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 DB 접근 및 이용로그를 분리된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접근내역 분리나 별도 저장장치 백업 등에 대해 일부사항만을 준수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영향평가 영역	4.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평가분야	4.5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평가 목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주변장치의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점검합니다.

세부 분야	백신 설치 및 운영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4.5.1	● 악성프로그램 등을 점검, 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업데이트 및 악성프로그램의 주기적 점검 등 대응조치를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백신소프트웨어 등의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② 자동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평가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VI. 기술적 안전조치/5 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위.변조, 유출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업무용 PC에 V3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감시, 예약검사 및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활성화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음.

[백신프로그램 설치·운영 현황 점검]

세부 기준		점검 결과	적절성
① 백신 등의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PC	V3	O
	서버	-	-
② 백신 최신의 상태로 유지	PC	자동 업데이트	O
	서버	-	-
③ 발견된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	PC	자동 치료 (삭제 등)	O
	서버	-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평가근거]

- 'VI. 기술적 안전조치/ 5 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

5 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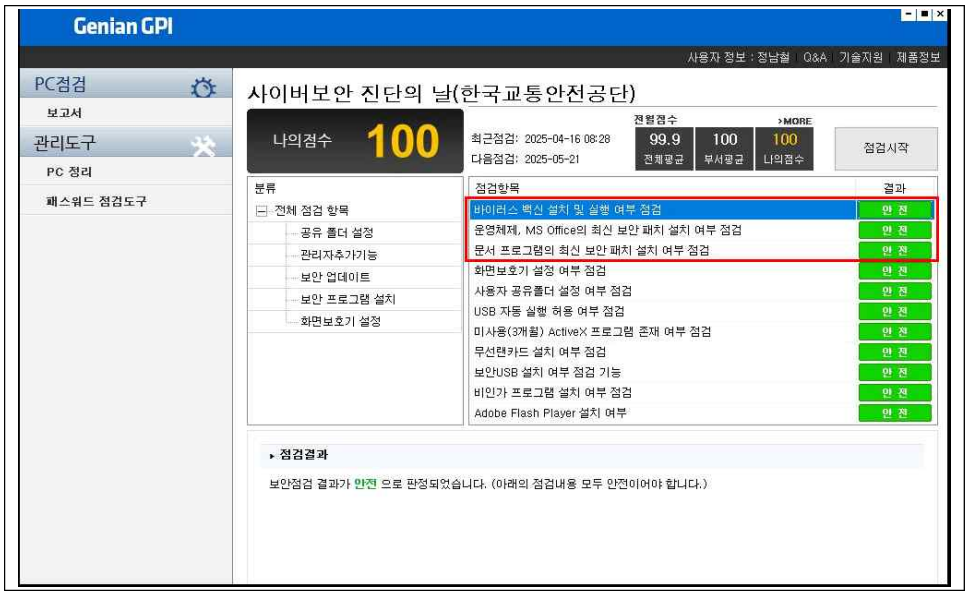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위·변조, 유출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①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 프로그램은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은 실시간 감시 등을 위해 항상 실행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③ 특히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한 정보 등 중요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키보드, 화면, 메모리해킹 등 신종 악성 프로그램에 대해 대응 할 수 있도록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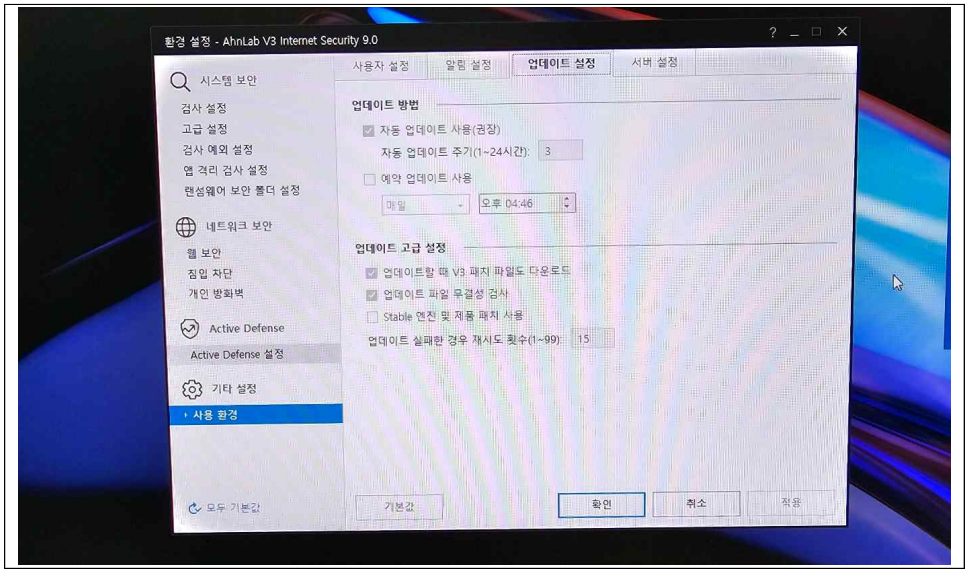
- 내 PC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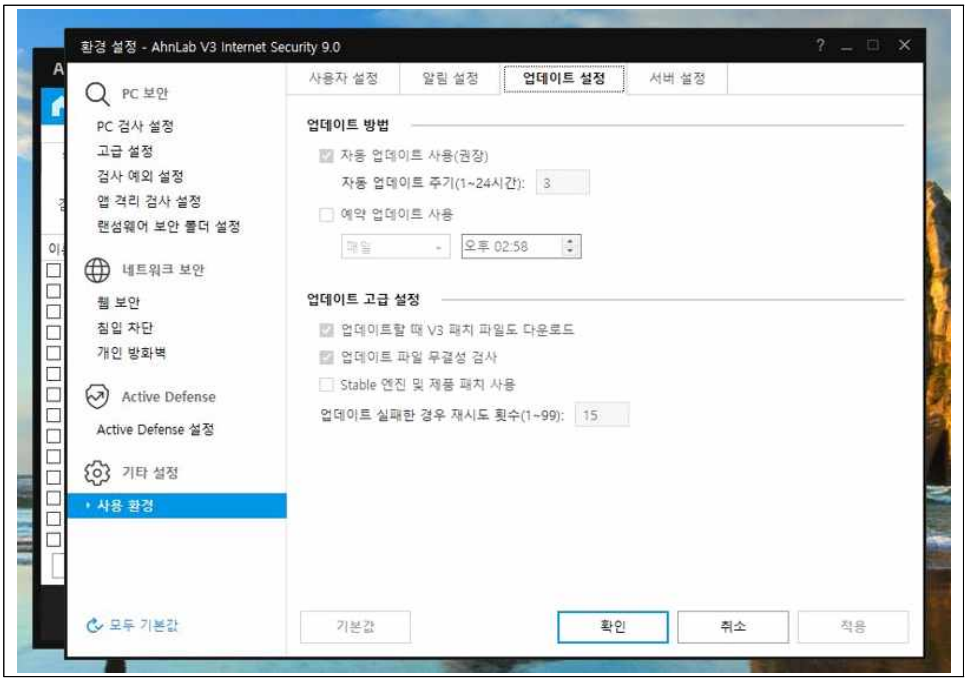
- 백신 최신 업데이트 화면



- 백신 자동업데이트 설정 화면



-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설정

	
항목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개정 2023. 9. 22>**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단말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업데이트가 적용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단말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일부 단말기에서 누락된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보안업데이트 적용</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4.5.2</td><td>●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업데이트가 지체 없이 실시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 보안 업데이트 공지 시 즉각적인 업데이트 실시
② 기술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는 업그레이드 계획을 수립·이행
③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안 업데이트 적용이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보완대책 적용</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VI. 기술적 안전조치/5 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악성 프로그램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응용 프로그램, 운영체제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감염 및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업데이트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영체제, MS오피스, 한컴오피스, PDF프로그램 등의 최신 보안패치 설치 여부를 점검 및 업데이트 방법을 안내하고 업무용 PC에 내PC지키미(Genian GPI)를 설치하여 매월 PC 점검 및 취약점 개선조치를 하고 있으며, 취약점 발견 시 즉시 업데이트 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업데이트 점검]
<table>
<tr><th>구분</th><th>점검항목</th><th>내용</th><th>적절성</th></tr>
<tr><td>업무용 PC</td><td>OS, 응용프로그램</td><td>최신 보안 업데이트 점검 및 보안패치 설치</td><td>○</td></tr>
<tr><td>서버</td><td>OS, 응용프로그램</td><td>해당 없음</td><td>-</td></tr>
<tr><td colspan="4">[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
</table>
[평가근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VI.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5 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td></tr>
</table>

5 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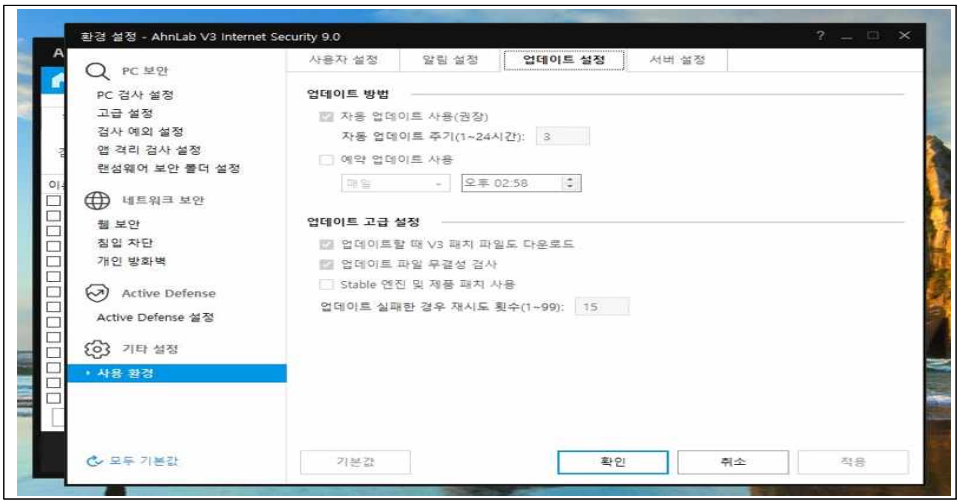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위·변조, 유출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은 실시간 감시 등을 위해 항상 실행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 프로그램은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특히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한 정보 등 중요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키보드, 화면, 메모리해킹 등 신종 악성 프로그램에 대해 대응 할 수 있도록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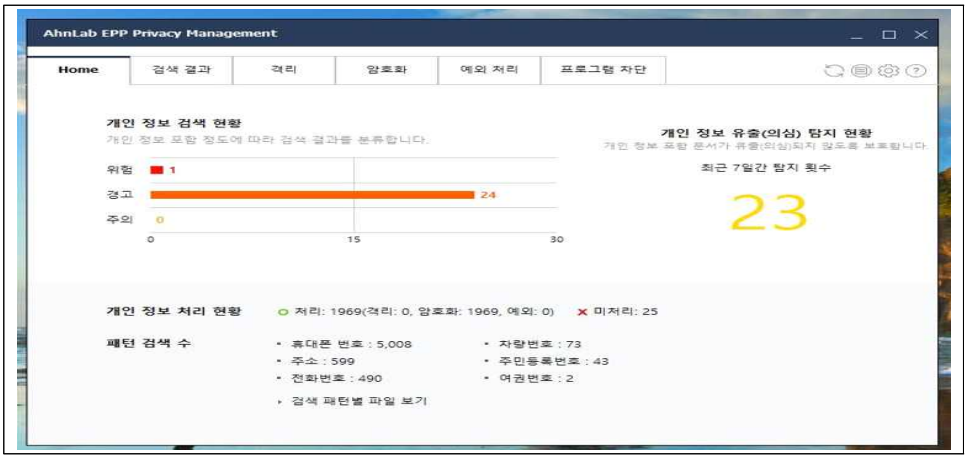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운영체제나 응용 프로그램 보안 업데이트 시 현재 운영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업무 연속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한 자동으로 보안 업데이트가 설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적용 사항, 적용 일자 등 설치·변경·제거 사항을 기록하는 등 형상관리를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설정



- 악성프로그램 탐지/관련 경보

	
항목 설명	● **악성 프로그램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응용프로그램, 운영체제(OS)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2023. 9. 22>**
평가 예시	● 이행 :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되거나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최신업데이트가 즉시 적용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되거나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최신업데이트가 즉시 적용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일부 단말기에서 누락된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영향평가 영역	4.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평가 분야	4.6 물리적 접근방지
평가 목적	●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는지 점검합니다.

세부 분야	출입통제 절차 수립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4.6.1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물리적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 출입통제 절차 수립(출입자 등록・삭제, 출입권한 검토, 출입기록 검토, 방문자 관리 등) -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출입통제 장치 설치(비밀번호 기반, 카드기반, 생체정보 기반 등) - 출입내역을 전자적 매체 또는 수기문서 대장에 기록 등				
평가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Ⅶ. 물리적·관리적 안전조치/1 물리적 안전조치'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대구통합전산센터에 위탁운영할 계획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있는 정보통신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보통신실은 관리용 단말기 보안을 위해 비인가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보통신실 출입관리 기준」에 따라 통제되며, 상황실 등의 출입은 CCTV로 모니터링하고 출입대장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출입통제는 출입관리 기준을 이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평가근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Ⅶ. 물리적·관리적 안전조치/1 물리적 안전조치				

Ⅶ 물리적 · 관리적 안전조치

1 물리적 안전조치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① 전산실 자료보관실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물리적 접근통제 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대한 출입 내역을 전자적인 매체 또는 수기문서 대장(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하는 방법 등이 있다.

<물리적 접근 방지를 위한 장치 (예시)>
. 비밀번호 기반 출입통제 장치,
. 스마트 카드 기반 출입 통제장치
. 지문 등 바이오정보 기반 출입통제 장치 등

② 출입통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운영한다.

가. 모든 외부출입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출입 승인을 받는다.

나. 외부출입자는 통제구역출입대장에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다. 외부출입자는 내부출입 인가자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한다.

라. 통제구역 출입 시 사전 승인된 목적 이외의 물품(노트북, 카메라, 보조기억매체 등)은 반입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근무자는 해당물품을 압수하고 출입자를 통제구역 밖으로 퇴실 시켜야 한다.

- 정보통신실 출입통제 및 모니터링





- 정보통신실 통제구역 출입 출입관리대장

	
항목 설명	● 개인정보 처리구역 내 물리적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자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 처리구역 내 출입통제를 위한 물리적 보안장치 (CCTV, 출입통제장치)가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 처리구역 중 일부에만 물리적 보안장치(CCTV, 출입통제장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11조(물리적 접근 방지)

세부 분야	반출・입 통제 절차 수립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4.6.2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잠금 상태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②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 보조저장매체 현황 관리 /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절차 및 대장 관리 등				
평가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Ⅶ 물리적.관리적 안전조치 1 물리적 안전조치'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특수검사처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를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에 보관하고, 반출·입 통제를 계획하고 있음. [평가근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Ⅶ 물리적.관리적 안전조치 1 물리적 안전조치 Ⅶ 물리적・관리적 안전조치 1 물리적 안전조치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플로피디스켓,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SSD, CD, DVD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넷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문서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캐비넷에 보관 
항목 설명	● 개인정보 처리구역 내 물리적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자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 처리구역 내 출입통제를 위한 물리적 보안장치 (CCTV, 출입통제장치)가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 처리구역 중 일부에만 물리적 보안장치(CCTV, 출입통제장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10조(물리적 접근 방지)

영향평가 영역	4.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평가분야	4.7 개인정보의 파기
평가 목적	● 개인정보 파기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점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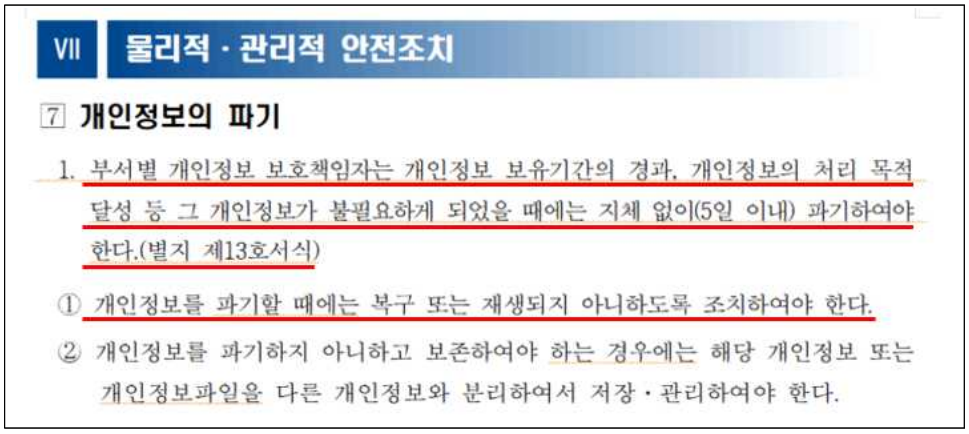
세부 분야	안전한 파기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4.7.1	●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파기 (소각/파쇄, 전용소자장비, 완전삭제프로그램) ② 개인정보 일부만 파기하는 경우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 적용 (전자적 파일: 삭제 후 복구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기록물/인쇄물: 해당부부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③ 기술적 특성으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익명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평가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VII 물리적.관리적 안전조치 ⑦ 개인정보의 파기'에서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5일 이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 예약시스템은 업무목적 완료나 보유기간 경과 등으로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 하도록 파기를 계획하고 있음.				

[파기대책 확인]

세부 기준	점검 결과	적절성
① 개인정보 완전한 파기	완전삭제 또는 시스템 자동파기	O
② 개인정보 일부 파기	n/a	-
③ 익명정보로 처리	-	-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평가근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VII 물리적.관리적 안전조치 ⑦ 개인정보의 파기

<table>
<tr><td></td><td>


- 자료 인수 및 반납 후 폐기


</td></tr>
<tr><td>항목 설명</td><td>●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시 복원하거나 재생할 수 없는 형태로 완벽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 컴퓨터 등 자기매체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개인정보는 다시 재생시킬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해당 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모두 삭제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기매체를 파괴하여 다시 복구할 수 없도록 함
- 종이와 같이 출력물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완전히 파기함.</td></tr>
<tr><td>평가 예시</td><td>● 이행 : 보유기간이 종료된 개인정보 파일을 복구 및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보유기간이 종료된 개인정보 파일을 복구 및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확인절차가 미흡한 경우</td></tr>
<tr><td>관련 법률 및 문서</td><td>●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td></tr>
</table>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5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영향평가 영역	4.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평가분야	4.8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평가 목적	● 개발 환경, 출력 환경, 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화면 등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 점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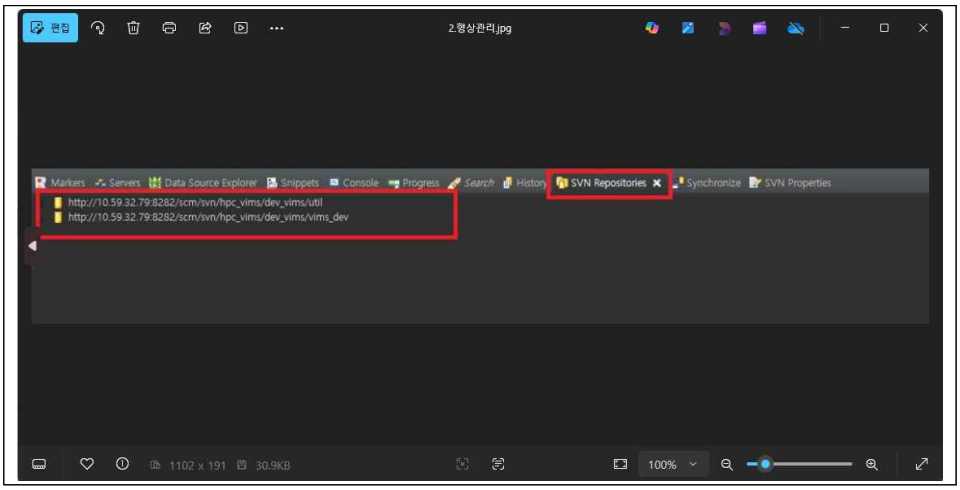
세부 분야	개발 환경 통제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4.8.1	● 개발환경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스트 데이터 생성, 이용, 파기 및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관한 대책을 적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테스트 데이터는 운용되는 개인정보가 아닌 가공된 정보로 변환하여 사용 ②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의 사용범위 제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조치 적용.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 파기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환경과 개발환경은 원칙적으로 분리. 개발환경에서 운영환경으로의 접속 및 이관은 통제된 절차에 따라 수행 ④ 소스프로그램에 대한 악의적인 변경 및 유출에 대한 보호대책 적용				
평가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개발환경과 운영환경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소스프로그램 변경 이력은 형상관리 소프트웨어인 SVN을 이용하여 수행하고 있음. ● 또한 테스트 데이터는 가공하여 사용하며 테스트 완료 후 즉시 파기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개발환경을 통한 유출방치 대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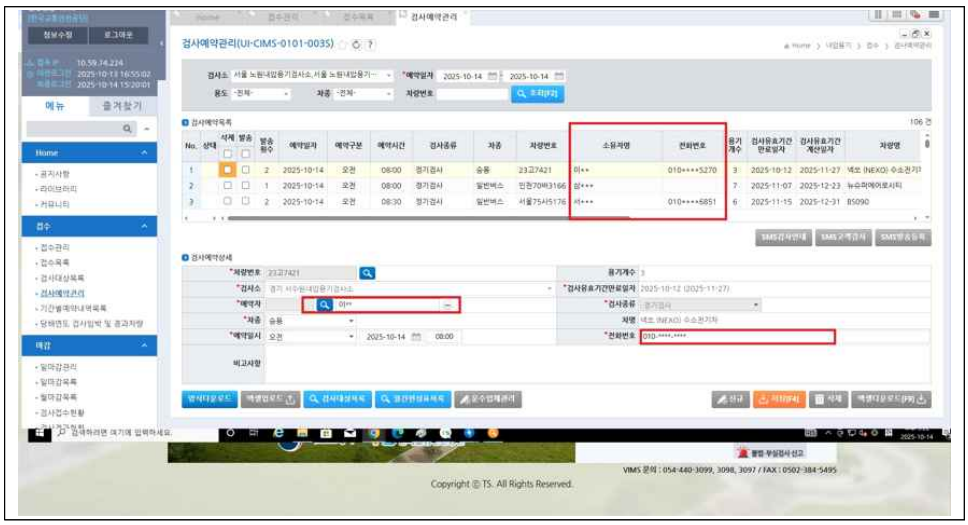
구분	적용 내용	적절성
소스 프로그램 변경이력 관리	• SVN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변경 이력을 관리하고 있음	O
실데이터의 비식별된 데이터 사용	• 개발 시 비식별된 정보를 사용하여 개발하고 있음	O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 분리	• 물리적으로 개발환경과 운영환경을 분리하여 개발하고 있음	O
테스트 종료 후 파기	• 테스트 완료 후 테스트 데이터는 즉시 파기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O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평가근거]

- 업무담당자 인터뷰
- 변경 이력 관리(SVN)



- 업무용도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항목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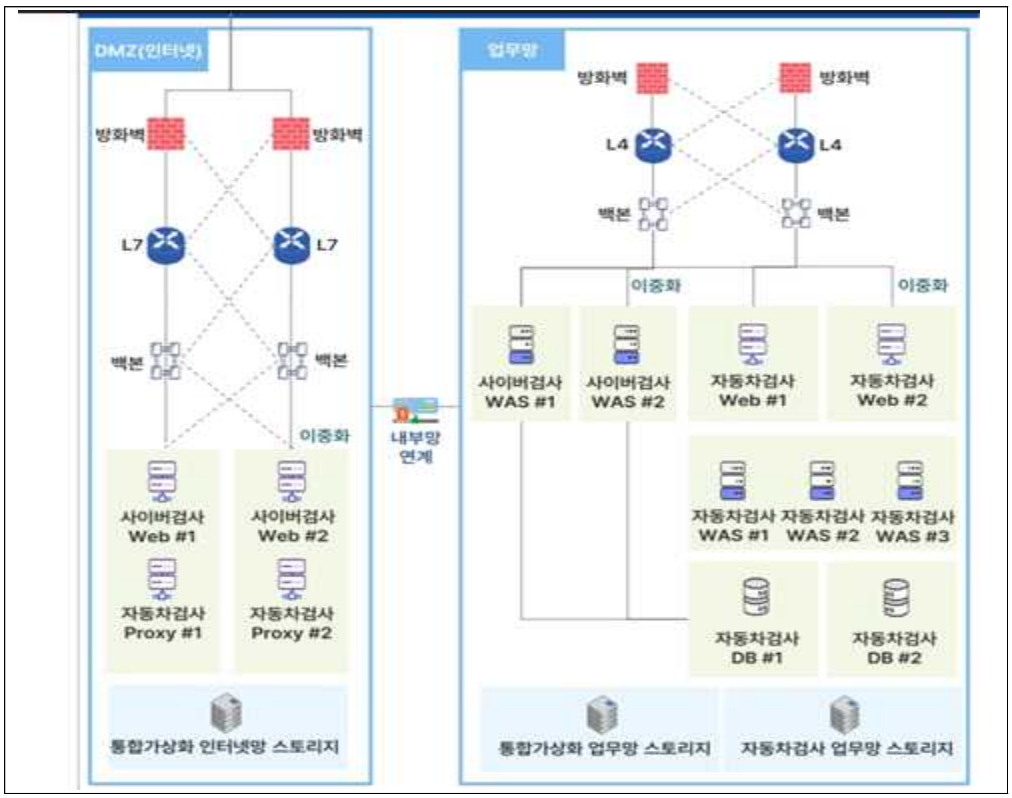


- 물리적으로 개발환경과 운영환경을 분리

<table>
<tr><td></td><td>
운영환경 / 개발환경



- 네트워크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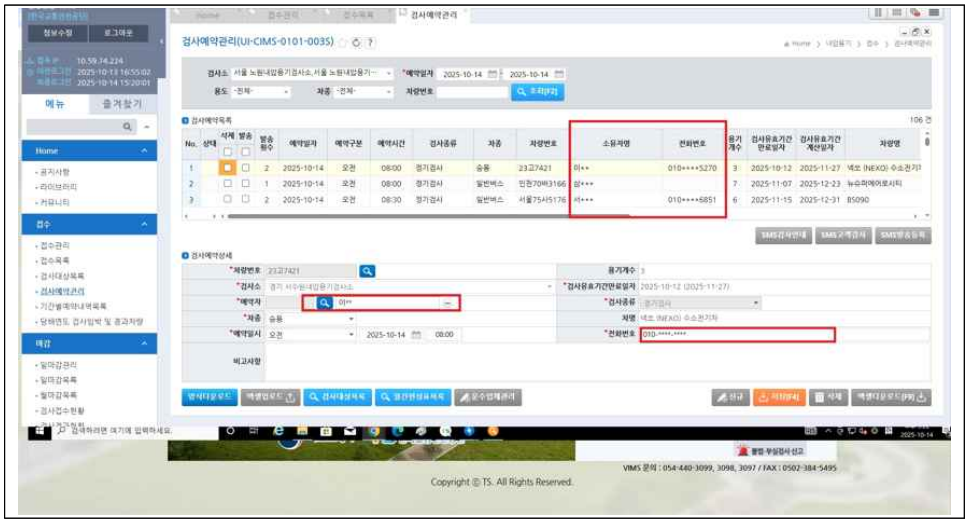


</td></tr>
<tr><td>항목 설명</td><td>● 테스트 데이터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피치 못하게 포함해야 하는 경우라면 테스트 후에 반드시 개인정보를 제거해야 한다.</td></tr>
<tr><td>평가 예시</td><td>● 이행 : 프로그램 테스트 데이터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거나 테스트를 마친 후 개인정보를 제거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프로그램 테스트 데이터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거나 테스트를 마</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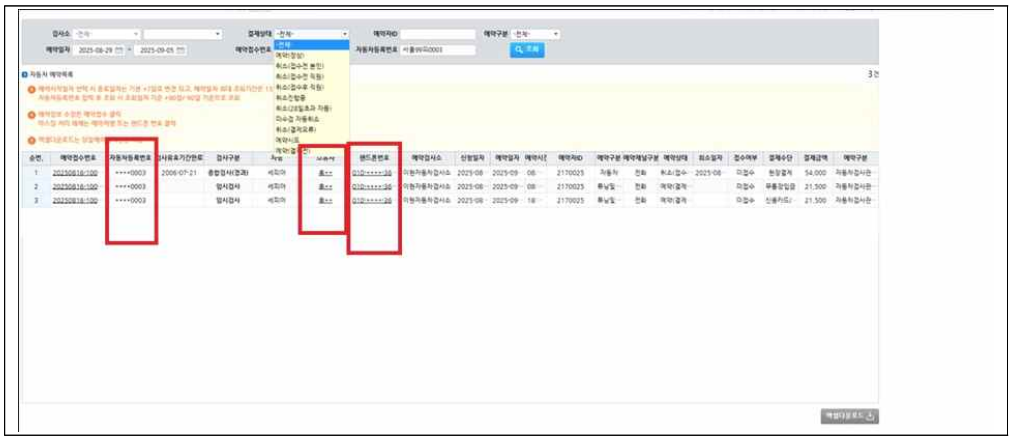
	친 후 개인정보를 제거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제거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본 항목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한 기술적 보호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권장사항임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개인정보 처리화면 보안</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4.8.2</td><td>●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화면을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마스킹, 웹브라우저 우측 마우스 버튼 제한, 임시 파일 및 캐시 통제, 카드번호 등 중요 정보에 대한 복사·화면캡쳐 방지 및 키보드해킹 방지 등 보호대책을 적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개인정보 표시제한 보호조치(마스킹)
② 웹브라우저 우측 마우스버튼 제한(소스보기 등 제한)
③ 웹브라우저 히스토리 기능 통제(Back 버튼, URL 히스토리 등)
④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시파일 및 캐시 생성 통제
⑤ 키보드 해킹 방지
⑥ 화면캡쳐 및 복사 방지(카드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정보)</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용도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항목 최소화, 개인정보 표시제한 조치(마스킹), 웹 브라우저 히스토리 기능, 웹브라우저 우측마우스 버튼 제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캐시 및 임시 파일 생성 통제 기능 등의 보호조치를 적용하여 설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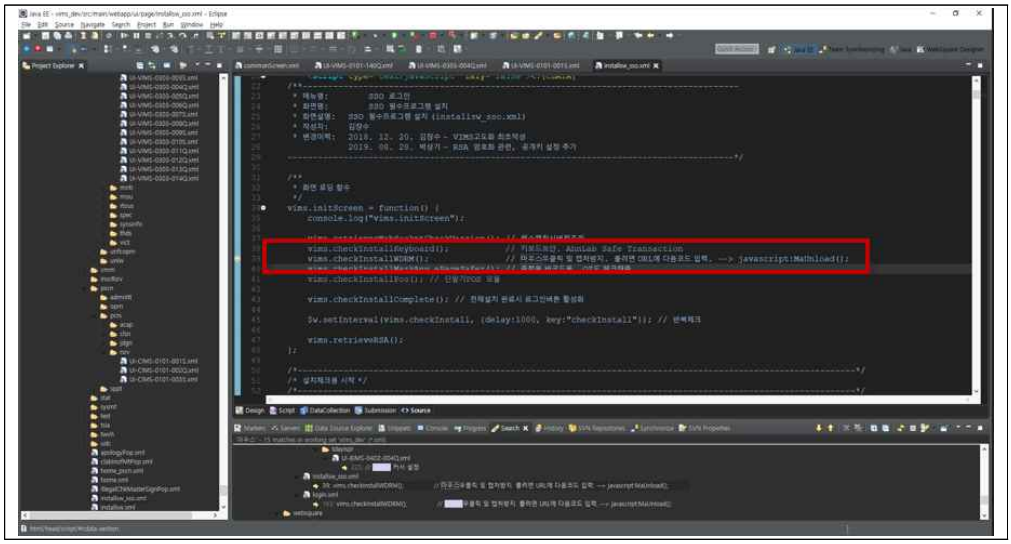
[개인정보처리화면 보호조치 현황]
<table><tr><th>세부 기준</th><th>점검 결과</th><th>적절성</th></tr><tr><td>① 용도에 따른 개인정보 표시항목 최소화</td><td>업무 목적 최소항목 표시 계획</td><td>O</td></tr><tr><td>② 개인정보 표시제한 보호조치(마스킹)</td><td>휴대폰번호 마스킹 처리 계획</td><td>O</td></tr><tr><td>③ 웹브라우저 우측 마우스버튼 제한</td><td>기능 적용</td><td>O</td></tr><tr><td>④ 웹브라우저 히스토리 기능 통제</td><td>기능 적용</td><td>O</td></tr><tr><td>⑤ 개인정보 포함된 임시파일·캐시 생성 통제</td><td>기능 적용</td><td>O</td></tr><tr><td>⑥ 키보드 해킹 방지</td><td>기능 적용</td><td>O</td></tr><tr><td>⑦ 화면캡쳐 및 복사 방지</td><td>기능 적용</td><td>O</td></tr><tr><td colspan="3">[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table>
[평가근거]
- 용도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항목 최소화</td></tr>
</table>



-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화면



- 소스보기, 드래그 및 복사 방지 등을 위하여 웹브라우저 우측 마우스 버튼 사용 통제, 키보드해킹방지



- 웹브라우저 히스토리 제한기능 적용

```
function processUrl()
{

    var pos = url.indexOf("?");
    url = pos != -1 ? url.substr(pos + 1) : "";
    if (!parent._ie_firstload) {
        parent.BrowserHistory.setBrowserURL(url);
        try {
            parent.BrowserHistory.browserURLChange(url);
        } catch(e) { }
    } else {
        parent._ie_firstload = false;
    }
}

var url = document.location.href;
processUrl();
document.write(encodeURIComponent(url));
```

뒤로가기했을때 로그인화면 메인으로

- 개인정보 포함된 임시파일·캐시 생성 통제

```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Transitional//EN" "http://www.w3.org/TR/xhtml1/DTD/xhtml1-trans
<html xmlns="http://www.w3.org/1999/xhtml" xmlns:xf="http://www.w3.org/2002/xforms" xmlns:ev="http://www.w3.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charset=UTF-8" />
<meta http-equiv=Cache-Control content=No-Cache />
<meta http-equiv=Pragma content=No-Cache />
```

항목 설명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와 같은 중요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특정 자릿수를 별표(*) 처리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기관의 업무용 단말기와 원격지 PC에 남는 개인정보를 원천적으로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서버를 통해 모든 작업을 수행하고 업무용 단말은 입.출력 단말 역할만 수행하게 하는 SBC(서버기반 컴퓨팅)나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도록 한다. ● 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화면에서 우측마우스 버튼의 소스보기 기능, 화면캡처 기능 및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한 Drag, Drop, Copy 및 Paste 기능을 통제하

	도록 한다 ● 유무선 개인정보처리 단말기에서 민감정보(아이디, 패스워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를 입력하는 경우 암호화 하도록 키보드 해킹방지 솔루션을 적용하도록 한다. [용어설명] ❖ SBC(Server Base Computer) : 사용자는 PC 대신 서버에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성능에 따라 10~30명의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접속하여 컴퓨팅 업무 수행 ❖ 키보드해킹 방지기술 : USB, PS/2, 무선 등 다양한 유형의 키보드를 통해 입력되는 ID, 패스워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키보드 드라이버 레벨에서 암호화를 실현하는 기술
평가 예시	● 이행 : 개인정보 마스킹, 웹 브라우저 우측 마우스 버튼 제한, 임시 파일 및 캐시 통제, 카드번호 등 중요정보에 대한 복사·화면캡쳐 방지 및 키보드해킹 방지 등 보호대책을 화면설계서 등의 설계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개인정보 마스킹, 웹 브라우저 우측 마우스 버튼 제한, 임시 파일 및 캐시 통제, 카드번호 등 중요정보에 대한 복사·화면캡쳐 방지 및 키보드해킹 방지 등 보호대책을 화면설계서 등의 설계문서에서 일부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본 항목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한 기술적 보호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권장사항임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출력 시 보호조치</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4.8.3</td><td>●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종이로 출력할 경우 출력·복사물에 대하여 출력자・출력일시 표시 등의 보호대책을 적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출력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적용
- 출력기록 저장 및 보관 /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표시 등</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종이로 출력할 경우 출력・복사물의 책임관계 및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출력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출력일시, 출력위치, 출력자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출력물 보호조치 현황]
<table>
<tr><th>세부 기준</th><th>점검 결과</th><th>적절성</th></tr>
<tr><td>① 용도 특정 및 용도에 따른 출력항목 최소화</td><td>출력물에 출력일시, 출력자 성명 표시</td><td>O</td></tr>
<tr><td>②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td><td>-</td><td>-</td></tr>
<tr><td colspan="3">[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
</table>
[평가근거]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출력물</td></tr>
</table>



svsys02 / 2025-10-13 14 : 40

내압용기 자동차 검사시트
HPCV CHECK SHEET

자동차	접수번호	1A1020251013000041	검사구분	정기검사	주행거리	
	등록번호	05어3690	차 명	넥쏘 (NEXO) 수소전기차	최초등록일	2021-10-26
	차대번호	KMHJ881FPMU081136	소유자명	홍길동	차량압류일	
용기	위치번호	1	용기번호	JC-2180920600-20210707-52	제조사	일진복합재료
	제품검사번호	13-075-34-002	용기형식	CHG-4	사용연한	15
	내용적(ℓ)	52	표면적(㎡)	1024100	충전압력(㎫)	70
	길이(㎜)	970	외경(㎜)	364	무게(㎏)	37
	탄이너두께(㎜)	4	복합재두께(㎜)	23.5	도색두께(㎜)	0
밸브	밸브번호	HE-700-2110010998	모델명	HE-700	제조사	엘도상업

검사항목		세 부 항 목	메모
표시사항		□ 용기번호[JC-2180920600-20210707-52] □ 삭이 □ 확손 □ 부식 □ 변형 □ 도장 □ 지울	
		□ 밸브번호[JC-2180920600-20210707-52] □ 삭이 □ 확손 □ 부식 □ 변형 □ 도장 □ 지울	
		□ 용기 이력사물 □ 밸브 이력사물	
		□ 기타	
용기사용연한		□ 사용연한 [20360630 까지] □ 경과	
제원사항		□ 제원상이	
검사준비사항		□ 용기 및 장소불량 □ 보호장치 이탈/ □ 작업발생 □ 잔존가스 누출	
		□ 기타	
용기장착장치		□ 용기밴딩대 (□ 균열 □ 부식 □ 마모 □ 휨 □ 느슨함 □ 기타(	
		□고정띠 [□ 균열 □ 부식 □ 마모 □ 휨 □ 느슨함 □ 기타()]	
		□ 고무라이닝 [□ 마모 □ 들뜸 □ 기타()]	
		□ 기타 □ 용기이력기준위반[□ 폐허 □ 전기만자개폐기(20cm)	
		□ 배기장치(배기관,소음기(10cm) 관단(30cm)]	
		□ 용기고정볼팡(홈볼팡볼) □ 장착장치 제작사 미인증품	
		□ 차체결합부 [□ 손상 □ 볼팡볼팡]	
		□ 환기구 [□ 막힘 □ 찌그러짐 □ 기타()]	
		□ 용기보호장치 손상 □ 일개 손상 □ 기타()	
내압용기	외력손상	□ 자상 [금속부 깊이() 복합재 깊이() □ 섬유 노출 손상	
		□ 긁힘 흠 [금속부 깊이() 복합재 깊이() □ 섬유 노출 손상	
		□ 찍힘 [금속부 깊이() 복합재 깊이() □ 섬유 노출 손상	
		□마모 [복합재 깊이() □ 섬유손상 □ 금속부 넓이() □ 금속부 깊이()]	
		□우그러짐 [최기() 원이()]	
		□충격상해 [□ 연무변형 □ 넓이(가로:) (세로:) (직경:)]	
	부식	□오목부식 [원이()]	
		□선형부식 [원이() 넓이()]	
		□점반부식 [원이() 넓이(가로:) (세로:) (직경:)]	
		□섬유층하부식	
		□균열	
	외력열화	□□균열 □ 열화 □ 자외선상해 [□ 약간바래거나 백악화]	
		□화학물질상해	
	변형	□부풀음 □ 기포들음 [□ 도장 □ 복합재층 □ 금속표면]	
	가스누출	□가스누출 □ 기타()	
용기밸브	밸브	□이송외물 □ 손상 □ 여압이탈할 표시지물 □ 가스누출	
	PRD	□이송외물 □ 용융물질 용출(기능불량) □ 부식 □ 막힘 □ 부품등 □ 주고장점	
		□ 용(균열) [깊이()] □ 밸브과고정불량 □ 체결너트심한마모 □ 수분유입	
		□ 밸브과단 주위 기준위반 □ 가스누출	

항목 설명	●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한다. ※ 출력 시 워터마킹, 개인정보 마스킹, 출력기록 등 ※ 필요 시 복합기 보안 검토 [용어설명] ❖ 워터마킹 :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접어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인쇄하고 이를 말린 뒤 다시 양면을 인쇄하는 기술)로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을 인쇄할 경우 출력물에 해당 기관의 명칭 및 로고, 일련번호, 출력자 성명, 출력시간 등을 표시하는 출력물에 대한 관리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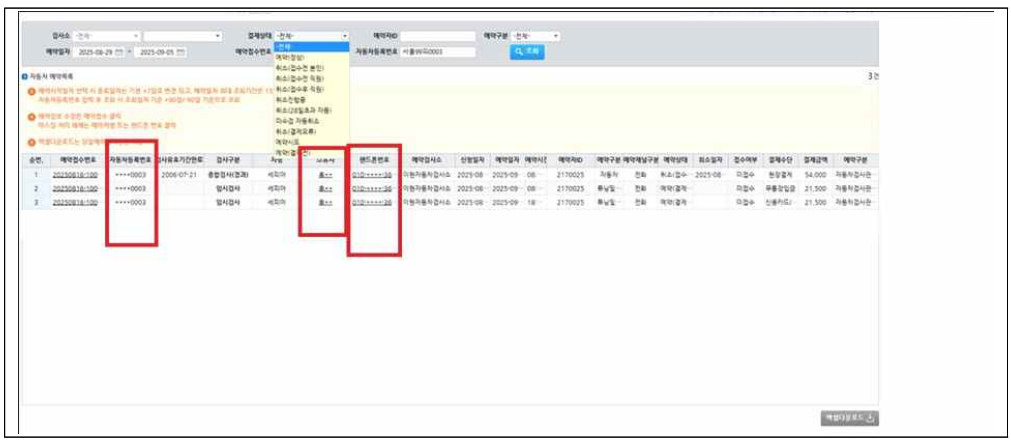
평가 예시	● 이행 : 출력물에 해당 기관의 명칭 및 로고, 일련 번호, 출력기기 고유번호, 출력자 성명, 출력 시간을 표시하도록 설계하고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출력물에 해당 기관의 명칭 및 로고, 일련 번호, 출력기기 고유번호, 출력자 성명, 출력 시간을 표시하도록 설계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3조(출력·복사시 안전조치)**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출력 시 보호조치</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4.8.4</td><td>●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시 용도를 특정하여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 출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 사업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출력 시 용도를 특정하여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 출력 할 예정임.

[개인정보의 출력 시 출력항목 최소화 현황]

<table>
<tr><th>구분</th><th>적용 내용</th><th>적절성</th></tr>
<tr><td>화면표시</td><td>• 현황 화면에서 조회항목을 최소화하고 자동차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마스킹 처리 예정임</td><td>O</td></tr>
<tr><td>인쇄</td><td>• 출력물에서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 출력</td><td>O</td></tr>
<tr><td>파일생성</td><td>• 에약정보파일 생성 시, 자동차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최소 개인정보만 수집</td><td>O</td></tr>
</table>

[평가근거]
- 업무 및 운영담당자 인터뷰
- 내압용기 온라인예약시스템 조회 화면(개인정보 최소화, 마스킹)



- 출력물</td></tr>
</table>



pvsys02 / 2025-10-15 16 : 4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4 서식]

내압용기재검사 결과표

자동차소유자	성명(명칭)	[redacted]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쇄하지 않습니다.		
	주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쇄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차명	넥쏘 (NEXO) 수소전기차	차대번호	KMHJ8816FMU012194
	최초등록일	2020-12-09	주행거리	56,055 Km
	등록번호	05너3676	용기개수	3 개

장착위치	용기에 대한 판정								밸브에 대한 판정				안전장치에 대한 판정		
	용기번호	사용연한	표시사항	외관검사				누출검사	밸브번호	표시사항	외관검사	누출검사	표시사항	외관검사	누출검사
				손상	부식	도색불량	변형								
1	[redacted]	2035-05	-	-	-	-	-	-	HS-700-2013034894	-	-	-	○	○	○
2	[redacted]	2035-05	-	-	-	-	-	-	HS-700-2013035819	-	-	-	○	○	○
3	[redacted]	2035-05	-	-	-	-	-	-	HS-700-2013035862	-	-	-	○	○	○

그 밖의 장치에 대한 판정	합격		
검사유효기간	2024-12-09 ~ 2028-12-08	재검사기간	폐지
종합판정	합격		
검사자	책임검사원 김태훈	검사원	박민호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7조의20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노원내압용기검사소

내압용기 불합격조치에 대한 안내

1. 불합격판정 받은 용기는 시행규칙 제57조의15에 따라 파기하여야 합니다.
2. 내압용기를 교체한 후에는 시행규칙 제57조의13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항목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 형태 및 목적, 유형, 장소 등 여건 및 환경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출력 - 예를 들어,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리스트로 보여주는 화면에서는 업무상 불필요한 상세 주소를 보여주지 않도록 조치 등 ● 용도에 따라 개인정보의 출력항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시 접근 권한에 따라 출력 항목을 다르게 하는 방법 - 개인정보 출력 시 업무상 반드시 조회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 항목에 대해 표시제한 조치(마스킹 등)를 적용하는 방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중요 개인정보 항목은 출력 시 기본적으로 마스킹을

	적용하고, 업무상 조회가 필요할 경우 승인 절차 또는 접근 권한에 따라 마스킹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평가 예시	● 이행 : ● 부분 이행 :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화면에 표시될 때에는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 표시하고 있으나, 다운로드 시에는 과도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파일이 생성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2조(출력·복사시 안전조치)

영향평가 영역	4.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평가분야	4.9 개인정보처리구역보호
평가 목적	●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는지 점검합니다.

세부 분야	보호구역 지정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4.9.1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물리·환경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CCTV, 출입통제 장치, 화재경보기 등 보호설비를 설치·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② 물리적·환경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설비를 설치하고 운영 - 출입통제 장치, CCTV 등 감시장치, 서버랙 및 잠금장치, 화재경보기 등				
평가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은『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63조(물리적 안전조치)'에서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보통신실 출입은 CCTV로 모니터링하며 출입대장 등을 기록하고 있음. ● 내압용기 온라인 예약시스템은 검사관리시스템(VIMS)의 일부로 메인메뉴에 포함하여 운영예정이며 서버와 DB 모두 검사관리시스템(VIMS)과 공유해서 운용할 예정이고 대구통합전산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해당 없음. [평가근거]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제63조(물리적 안전조치)				

	제63조(물리적 안전조치)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보통신실 출입통제대장 
항목 설명	● 각 기관은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다.
평가 예시	● 이행 : 보호구역 지정에 관하여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보호구역 지정에 관하여 문서로 확인할 수 있으나 일부 보호구역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본 항목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한 기술적 보호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권장사항임

<table>
<tr><td>세부 분야</td><td colspan="5">보호구역 지정</td></tr>
<tr><td>질의문 코드</td><td>질의문</td><td>이행</td><td>부분이행</td><td>미이행</td><td>해당없음</td></tr>
<tr><td>4.9.2</td><td>●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 대응 매뉴얼 등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d></td><td></td></tr>
<tr><td>세부기준</td><td colspan="5">①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및 공식적 시행
- 10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 100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기업·단체
② 위기대응 절차에 대한 정기적 점검</td></tr>
<tr><td>평가근거
및 의견</td><td colspan="5">●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Ⅶ. 물리적·관리적 안전조치/4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에서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재해·재난 발생 시를 대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재해·재난 위기대응 절차서』를 수립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장애복구 모의훈련를 연 1회 실시함에 따라 시스템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기적인 장애복구 파급효과에 및 초기대응 계획을 따르도록 계획하고 있음.

<table>
<tr><th>세부 기준</th><th>점검 결과</th><th>적절성</th></tr>
<tr><td>①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및 공식적 시행</td><td>『개인정보 재해·재난 위기대응 절차서』 수립하고 재해복구 훈련 실시하였음</td><td>O</td></tr>
<tr><td>② 정기적인 장애복구 준비</td><td>개인정보처리시스템 소산 백업</td><td>O</td></tr>
<tr><td colspan="3">[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td></tr>
</table>

[평가근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Ⅶ. 물리적·관리적 안전조치/4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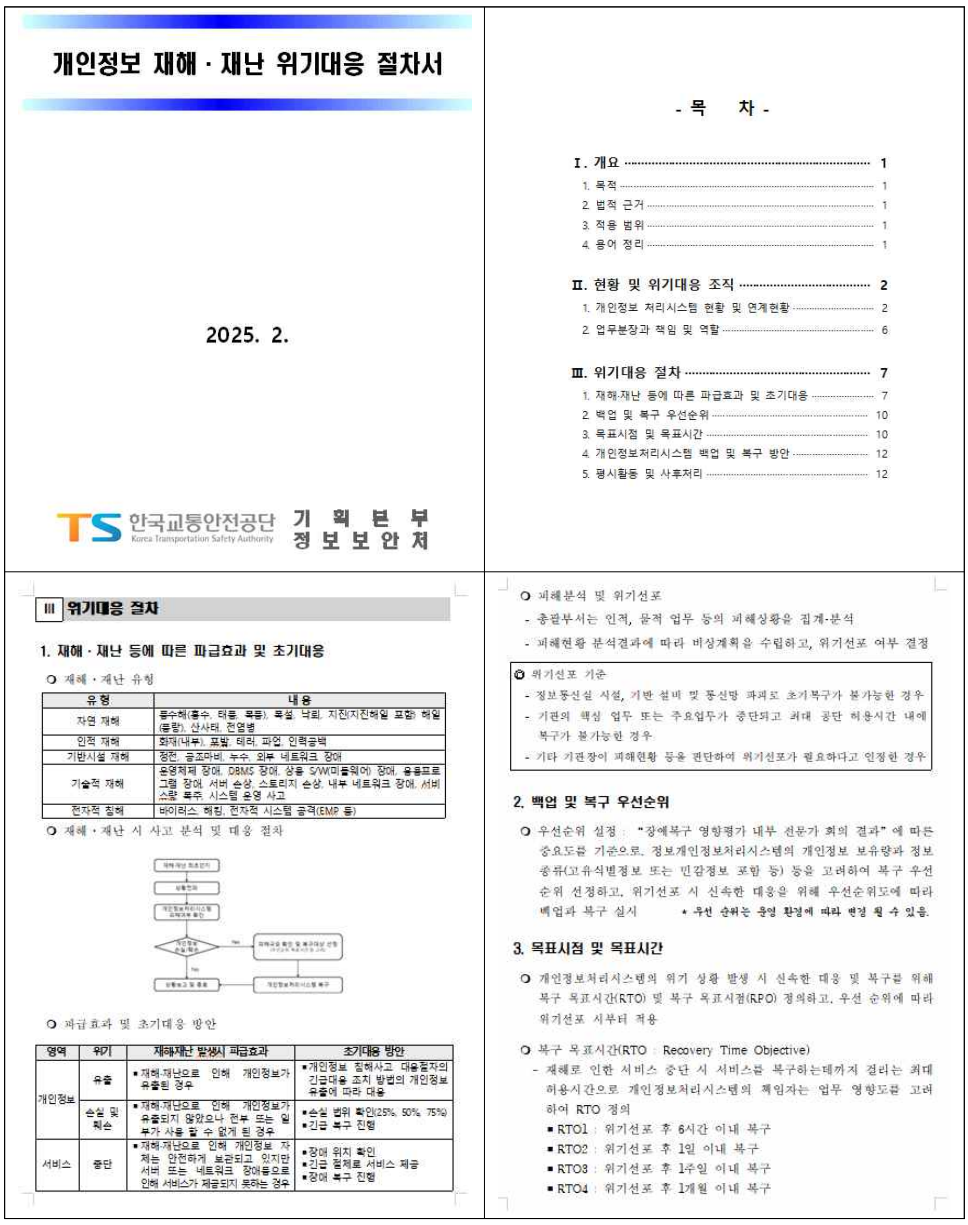
4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개인정보 재해·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1. IT인프라를 운영하는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2. IT인프라를 운영하는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재해·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해·재난 위기대응 절차서』



개인정보 재해·재난 위기대응 절차서

2025. 2.

TS 한국교통안전공단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기획본부 정보보안처

- 목 차 -

Ⅰ. 개요 ····· 1
1. 목적 ····· 1
2. 법적 근거 ····· 1
3. 적용 범위 ····· 1
4. 용어 정리 ····· 1
Ⅱ. 현황 및 위기대응 조직 ····· 2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현황 및 연계현황 ····· 2
2. 업무분장과 책임 및 역할 ····· 6
Ⅲ. 위기대응 절차 ····· 7
1. 재해·재난 등에 따른 파급효과 및 초기대응 ····· 7
2. 백업 및 복구 우선순위 ····· 10
3. 목표시점 및 목표시간 ····· 10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 방안 ····· 12
5. 평시활동 및 사후처리 ····· 12

Ⅲ 위기대응 절차

1. 재해·재난 등에 따른 파급효과 및 초기대응

○ 재해·재난 유형

유형	내용
자연 재해	홍수(홍수, 태풍, 폭풍), 폭설, 낙뢰, 지진(지진해일 포함) 해일(풍랑), 산사태, 전염병
인적 재해	화재(내부), 폭발, 테러, 파업, 인력공백
기반시설 재해	정전, 통신마비, 누수, 외부 네트워크 장애
기술적 재해	운영체제 장애, DBMS 장애, 상용 S/W미들웨어 장애, 응용프로그램 장애, 서버 손상, 스토리지 손상, 내부 네트워크 장애, 서버 소량 복주, 시스템 운영 사고
전자적 침해	바이러스, 해킹, 전자적 시스템 공격(EMP 등)

○ 재해·재난 시 사고 분석 및 대응 절차

○ 파급효과 및 초기대응 방안

영역	위기	재해·재난 발생시 파급효과	초기대응 방안
개인정보	유출	▪재해·재난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의 긴급대응 조치 방법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대응
	손실 및 훼손	▪재해·재난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으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손실 범위 확인(25%, 50%, 75%) ▪긴급 복구 진행
서비스	중단	▪재해·재난으로 인해 개인정보 자체는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지만 서버 또는 네트워크 장애등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장애 위치 확인 ▪긴급 절체로 서비스 제공 ▪장애 복구 진행

○ 피해분석 및 위기선포
- 총괄부서는 인적, 물적 업무 등의 피해상황을 집계·분석
- 피해현황 분석결과에 따라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위기선포 여부 결정

✪ 위기선포 기준
- 정보통신실 시설, 기반 설비 및 통신망 파괴로 초기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 기관의 핵심 업무 또는 주요업무가 중단되고 최대 공단 허용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 기타 기관장이 피해현황 등을 판단하여 위기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백업 및 복구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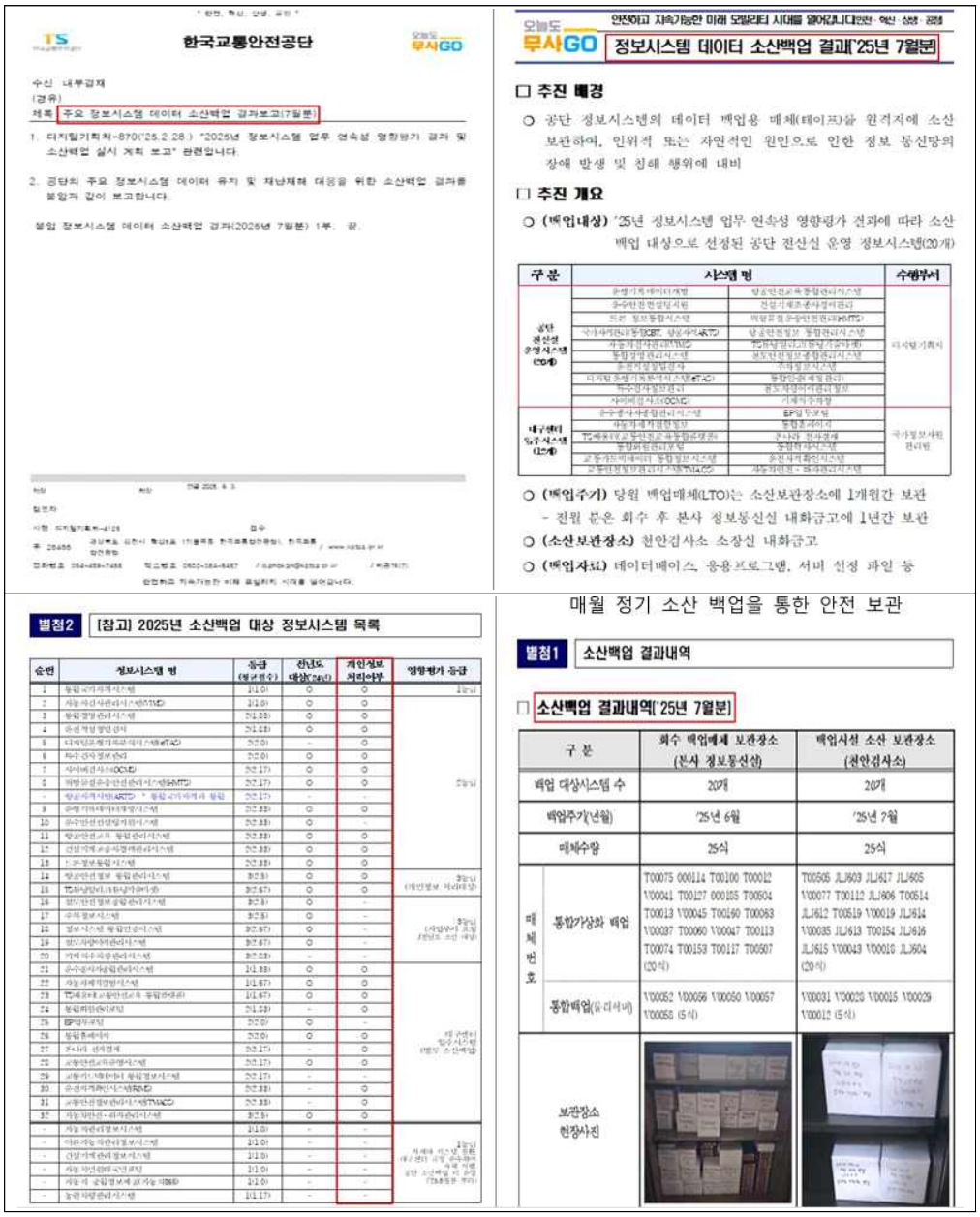
○ 우선순위 설정 : "장애복구 영향평가 내부 전문가 회의 결과"에 따른 중요도를 기준으로, 정보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량과 정보 종류(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 포함 등) 등을 고려하여 복구 우선순위 선정하고, 위기선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우선순위도에 따라 백업과 복구 실시 ※ 우선 순위는 운영 환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목표시점 및 목표시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복구 목표시간(RTO) 및 복구 목표시점(RPO) 정의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위기선포 시부터 적용

○ 복구 목표시간(RTO : Recovery Time Objective)
- 재해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서비스를 복구하는데까지 걸리는 최대 허용시간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책임자는 업무 영향도를 고려하여 RTO 정의
 - RTO1 : 위기선포 후 6시간 이내 복구
 - RTO2 : 위기선포 후 1일 이내 복구
 - RTO3 : 위기선포 후 1주일 이내 복구
 - RTO4 : 위기선포 후 1개월 이내 복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소산 백업

<table>
<tr><td></td><td>
</td></tr>
<tr><td>항목 설명</td><td>●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의 손실 및 훼손 등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문서화하여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대응절차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td></tr>
<tr><td>평가 예시</td><td>● 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위기 대응 매뉴얼 등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한 경우
● 부분 이행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백업 및 복구</td></tr>
</table>

	계획 포함)이 문서화 되어 있으나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11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세부 분야	보호구역 지정				
질의문 코드	질의문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4.9.3	●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			
세부기준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 계획 수립 및 공식적 시행 - 10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 100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기업·단체				

평가근거 및 의견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Ⅶ. 물리적·관리적 안전조치/④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에서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산실에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발생 대비를 위하여 『개인정보 재해·재난 위기대응 절차서』에 따라 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 시스템에 대한 『2025년 08월 정전대비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하였음.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 대책 점검]

세부 기준	점검 결과	적절성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 계획 수립 및 공식적 시행	『개인정보 재해·재난 위기대응 절차서』 수립,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소산백업	O
[범례] ○ : 반영, ▲ : 일부반영, X : 미반영 - : 해당없음		

[평가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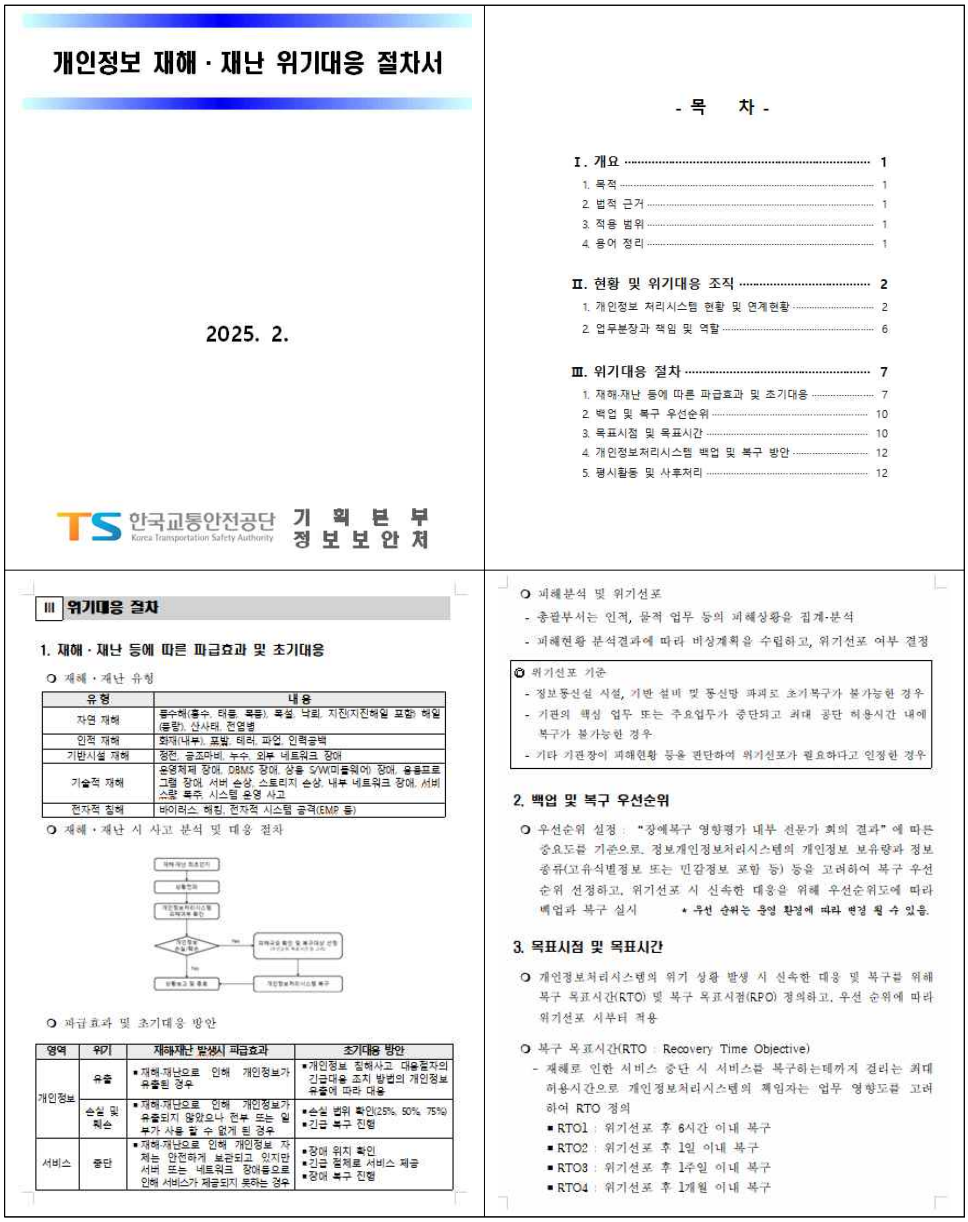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Ⅶ. 물리적·관리적 안전조치/④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④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개인정보 재해·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1. IT인프라를 운영하는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2. IT인프라를 운영하는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재해·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 『재해재난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절차서』



개인정보 재해·재난 위기대응 절차서

2025. 2.

한국교통안전공단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기 획 본 부 정 보 보 안 처

- 목 차 -

Ⅰ. 개요 ····· 1
1. 목적 ····· 1
2. 법적 근거 ····· 1
3. 적용 범위 ····· 1
4. 용어 정리 ····· 1
Ⅱ. 현황 및 위기대응 조직 ····· 2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현황 및 연계현황 ····· 2
2. 업무분장과 책임 및 역할 ····· 6
Ⅲ. 위기대응 절차 ····· 7
1. 재해·재난 등에 따른 파급효과 및 초기대응 ····· 7
2. 백업 및 복구 우선순위 ····· 10
3. 목표시점 및 목표시간 ····· 10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 방안 ····· 12
5. 평시활동 및 사후처리 ····· 12

Ⅲ 위기대응 절차

1. 재해·재난 등에 따른 파급효과 및 초기대응

○ 재해·재난 유형

유형	내용
자연 재해	풍수해(홍수, 태풍, 폭풍), 폭설, 낙뢰, 지진(지진해일 포함) 해일(쓰나미), 산사태, 전염병
인적 재해	화재(내부), 폭발, 테러, 파업, 인력공백
기반시설 재해	정전, 공조마비, 누수, 외부 네트워크 장애
기술적 재해	운영체제 장애, DBMS 장애, 상용 S/W(미들웨어) 장애, 응용프로그램 장애, 서버 손상, 스토리지 손상, 내부 네트워크 장애, 서버 손상 복구, 시스템 운영 사고
전자적 침해	바이러스, 해킹, 전자적 시스템 공격(EMP 등)

○ 재해·재난 시 사고 분석 및 대응 절차

○ 파급효과 및 초기대응 방안

영역	위기	재해재난 발생시 파급효과	초기대응 방안
개인정보	유출	▪재해·재난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의 긴급대응 조치 방법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대응
	손실 및 훼손	▪재해·재난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으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 될 수 없게 된 경우	▪손실 범위 확인(25%, 50%, 75%) ▪긴급 복구 진행
서비스	중단	▪재해·재난으로 인해 개인정보 자체는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지만 서버 또는 네트워크 장애등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장애 위치 확인 ▪긴급 임제로 서비스 제공 ▪장애 복구 진행

○ 피해분석 및 위기선포
- 총괄부서는 인적, 물적 업무 등의 피해상황을 집계·분석
- 피해현황 분석결과에 따라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위기선포 여부 결정

❂ 위기선포 기준
- 정보통신실 시설, 기반 설비 및 통신망 파괴로 초기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 기관의 핵심 업무 또는 주요업무가 중단되고 최대 공단 허용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 기타 기관장이 피해현황 등을 판단하여 위기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백업 및 복구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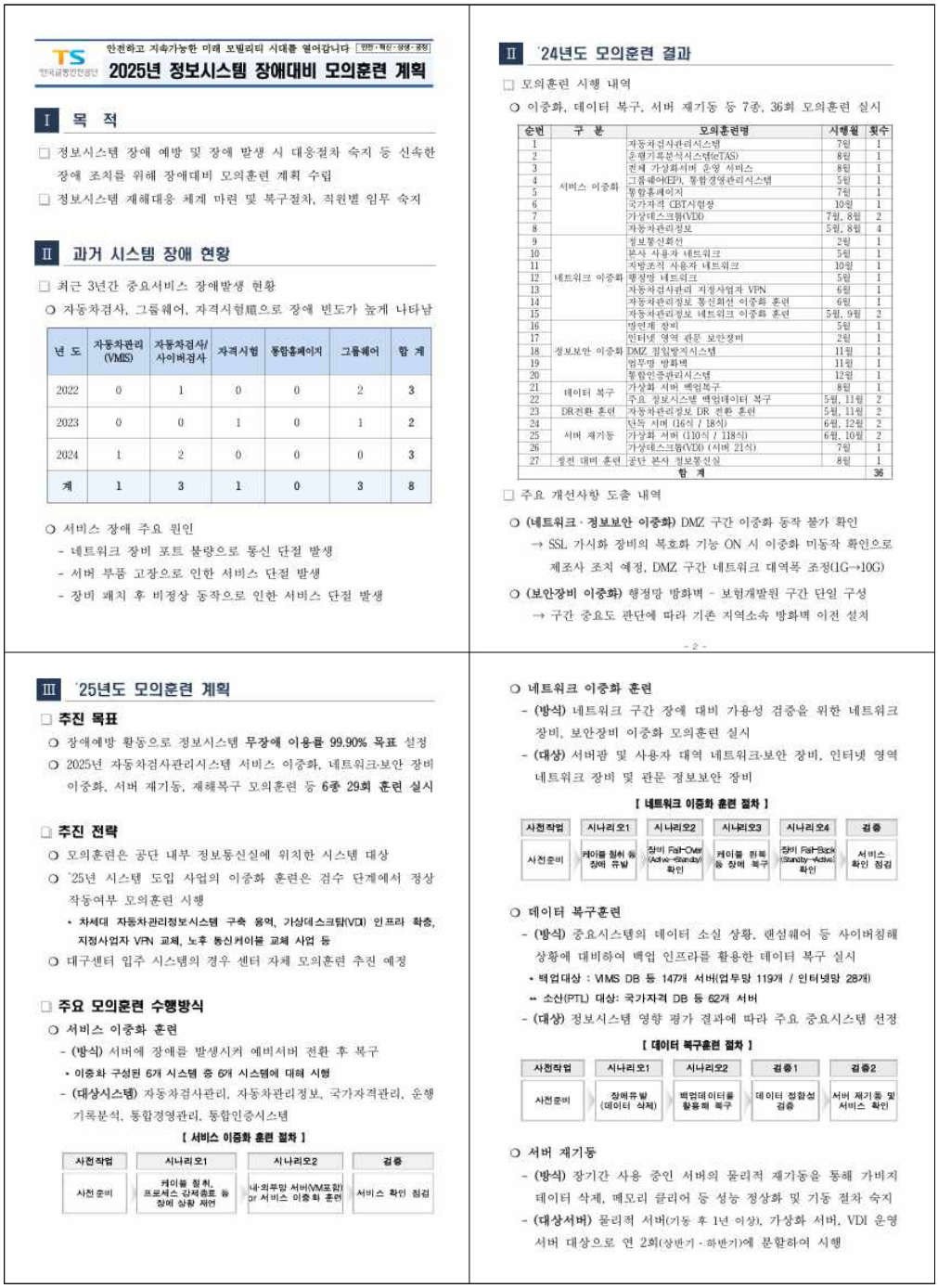
○ 우선순위 설정 : "장애복구 영향평가 내부 전문가 회의 결과"에 따른 중요도를 기준으로, 정보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량과 정보 공유(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 포함 등) 등을 고려하여 복구 우선순위 선정하고, 위기선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우선순위도에 따라 백업과 복구 실시 ★ 우선 순위는 주업 환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목표시점 및 목표시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복구 목표시간(RTO) 및 복구 목표시점(RPO) 정의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위기선포 시부터 적용

○ 복구 목표시간(RTO : Recovery Time Objective)
- 재해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서비스를 복구하는데까지 걸리는 최대 허용시간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책임자는 업무 영향도를 고려하여 RTO 정의
 ▪ RTO1 : 위기선포 후 6시간 이내 복구
 ▪ RTO2 : 위기선포 후 1일 이내 복구
 ▪ RTO3 : 위기선포 후 1주일 이내 복구
 ▪ RTO4 : 위기선포 후 1개월 이내 복구

- 2025년 정보시스템 장애대비 모의훈련 계획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안전·혁신·상생·공정)

2025년 정보시스템 장애대비 모의훈련 계획

Ⅰ 목 적

□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장애 발생 시 대응절차 숙지 등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해 장애대비 모의훈련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재해대응 체계 마련 및 복구절차, 직원별 임무 숙지

Ⅱ 과거 시스템 장애 현황

□ 최근 3년간 중요서비스 장애발생 현황

○ 자동차검사, 그룹웨어, 자격시험順으로 장애 빈도가 높게 나타남

년 도	자동차관리(VMIS)	자동차검사/사이버검사	자격시험	통합홈페이지	그룹웨어	합 계
2022	0	1	0	0	2	3
2023	0	0	1	0	1	2
2024	1	2	0	0	0	3
계	1	3	1	0	3	8

○ 서비스 장애 주요 원인
- 네트워크 장비 포트 불량으로 통신 단절 발생
- 서버 부품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 단절 발생
- 장비 패치 후 비정상 동작으로 인한 서비스 단절 발생

Ⅱ '24년도 모의훈련 결과

□ 모의훈련 시행 내역

○ 이중화, 데이터 복구, 서버 재기동 등 7종, 36회 모의훈련 실시

순번	구 분	모의훈련명	시행월	횟수
1	서비스 이중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7월	1
2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	8월	1
3		전체 가상화서버 운영 서비스	8월	1
4		그룹웨어(EP), 통합정보관리시스템	5월	1
5		통합홈페이지	7월	1
6		국가자격 CBT시험장	10월	1
7		가상데스크톱(VDI)	7월, 8월	2
8		자동차관리정보	5월, 8월	4
9	네트워크 이중화	정보통신회선	2월	1
10		본사 사용자 네트워크	5월	1
11		지방조직 사용자 네트워크	10월	1
12		행정망 네트워크	5월	1
13		자동차검사관리 지정사업자 VPN	6월	1
14		자동차관리정보 통신회선 이중화 훈련	6월	1
15		자동차관리정보 네트워크 이중화 훈련	5월, 9월	2
16	보안장비 이중화	망연계 장비	5월	1
17		인터넷 영역 관문 보안장비	2월	1
18		DMZ 침입방지시스템	11월	1
19		업무망 방화벽	11월	1
20		통합인증관리시스템	12월	1
21	데이터 복구	가상화 서버 백업복구	8월	1
22		주요 정보시스템 백업데이터 복구	5월, 11월	2
23	DR전환 훈련	자동차관리정보 DR 전환 훈련	5월, 11월	2
24	서버 재기동	단독 서버 (16식 / 18식)	6월, 12월	2
25		가상화 서버 (110식 / 118식)	6월, 10월	2
26		가상데스크톱(VDI) (서버 21식)	7월	1
27	장애 대비 훈련	공단 본사 정보통신실	8월	1
합 계				36

□ 주요 개선사항 도출 내역

○ **(네트워크·정보보안 이중화)** DMZ 구간 이중화 동작 불가 확인
→ SSL 가시화 장비의 복호화 기능 ON 시 이중화 미동작 확인으로 제조사 조치 예정, DMZ 구간 네트워크 대역폭 조정(1G→10G)

○ **(보안장비 이중화)** 행정망 방화벽 - 보험개발원 구간 단일 구성
→ 구간 중요도 판단에 따라 기존 지역소속 방화벽 이전 설치

- 2 -

Ⅲ '25년도 모의훈련 계획

□ **추진 목표**

○ 장애예방 활동으로 정보시스템 **무장애 이용률 99.90% 목표** 설정

○ 2025년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서비스 이중화, 네트워크·보안 장비 이중화, 서버 재기동,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 **6종 29회 훈련 실시**

□ **추진 전략**

○ 모의훈련은 공단 내부 정보통신실에 위치한 시스템 대상

○ '25년 시스템 도입 사업의 이중화 훈련은 검수 단계에서 정상 작동여부 모의훈련 시행
-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가상데스크탑(VDI) 인프라 확충, 지정사업자 VPN 교체, 노후 통신케이블 교체 사업 등

○ 대구센터 입주 시스템의 경우 센터 자체 모의훈련 추진 예정

□ **주요 모의훈련 수행방식**

○ 서비스 이중화 훈련
- **(방식)** 서버에 장애를 발생시켜 예비서버 전환 후 복구
- 이중화 구성된 6개 시스템 중 6개 시스템에 대해 시행
- **(대상시스템)** 자동차검사관리, 자동차관리정보, 국가자격관리, 운행기록분석, 통합정영관리, 통합인증시스템

[서비스 이중화 훈련 절차]

사전작업	시나리오1	시나리오2	검증
사전준비	케이블 절취, 프로세스 강제종료 등 장애 상황 재현	내·외부망 서버(VM포함) or 서비스 이중화 훈련	서비스 확인 점검

○ 네트워크 이중화 훈련
- **(방식)** 네트워크 구간 장애 대비 가용성 검증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이중화 모의훈련 실시
- **(대상)** 서버팜 및 사용자 대역 네트워크·보안 장비, 인터넷 영역 네트워크 장비 및 관문 정보보안 장비

[네트워크 이중화 훈련 절차]

사전작업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검증
사전준비	케이블 절취 등 장애 유발	장비 Fail-Over (Active-Standby) 확인	케이블 원복 등 장애 복구	장비 Fail-Back (Standby-Active) 확인	서비스 확인 점검

○ 데이터 복구훈련
- **(방식)** 중요시스템의 데이터 소실 상황, 랜섬웨어 등 사이버침해 상황에 대비하여 백업 인프라를 활용한 데이터 복구 실시
- 백업대상 : VIMS DB 등 147개 서버(업무망 119개 / 인터넷망 28개)
- 소산(PTL) 대상: 국가자격 DB 등 62개 서버
- **(대상)** 정보시스템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주요 중요시스템 선정

[데이터 복구훈련 절차]

사전작업	시나리오1	시나리오2	검증1	검증2
사전준비	장애유발 (데이터 삭제)	백업데이터를 활용해 복구	데이터 정합성 검증	서버 재기동 및 서비스 확인

○ 서버 재기동
- **(방식)** 장기간 사용 중인 서버의 물리적 재기동을 통해 가비지 데이터 삭제, 메모리 클리어 등 성능 정상화 및 기동 절차 숙지
- **(대상서버)** 물리적 서버(기동 후 1년 이상), 가상화 서버, VDI 운영 서버 대상으로 연 2회(상반기·하반기)에 분할하여 시행

항목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해·재난 발생 시 혼란을 완화시키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백업 및 복구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평가 예시	● 이행 :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 부분 이행 :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나 이해관계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11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